정책 17-24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7 장애통계연보

이수용 · 신은경 · 김용진 · 오윤지 · 김태용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2017)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 --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p. ; cm

ISBN 978-89-6921-268-9 93330 : 비매품

장애인[障碍人]
통계 연보[統計年譜]

338.3-KDC6
362.4-DDC23 CIP2017034250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연 구 진

연구책임 : 이수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사패널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신은경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특수 교육학 박사)
오윤지 (파리 12대학 노인복지학 박사수료)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사패널팀 연구원)

발 간 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 및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애통계연보가 2017년 제3번째 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정책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 권리협약(CRPD)을 토대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에 기반을 둔 핵심 통계를 생산·수집하고 있습니다.

'2017 장애통계연보'는 총 13개의 대분류와 국외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분류 내 중분류와 소분류 등은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정책 그리고 투입 및 산출지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2017 장애통계연보'는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 마련에 필요한 건강 및 보건에 관한 지표 추가와 기존 국외 장애통계(OECD, 독일, 프랑스)에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포함해 좀 더 다양한 국가별 비교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장애통계연보가 장애인복지정책수립 및 관련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 및 장애인복지정책 이해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발간에 힘써주신 연구진과 각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목 차

Ⅰ. 2017 장애통계연보 체계 ····· 1
1. 작성배경 ····· 3
2. 작성목표 ····· 4
3. 작성방향 및 체계 ····· 5
4. 세부작성원칙 ····· 7
5. 장애통계연보 체계 ····· 8
1) 국내지표 ····· 8
2) 국외지표 ····· 16

Ⅱ. 국내통계 ····· 21
1. 장애인구 ····· 23
1) 장애인구 ····· 25
2. 건강 및 보건 ····· 33
1) 건강상태 ····· 34
2) 건강관리 ····· 43
3) 보건의료이용 ····· 54
3. 가족 ····· 67
1) 가구구성 ····· 69
2) 가족형성 ····· 70
3) 다문화 가족 ····· 75
4. 주거 ····· 77
1) 주거 ····· 79
2) 주택 환경 ····· 84
3) 주거복지사업 ····· 88
5. 교육 ····· 93
1) 교육수준 ····· 95
2) 보육 ····· 97
3) 유치원 ····· 101
4) 특수교육 ····· 103
5) 교육기관 편의시설 ····· 11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6. 노동과 직업재활 ····· 113
1) 경제활동 ····· 115
2) 의무고용 ····· 127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 129
4) 장애인기업 ····· 131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 135
6) 직업재활 ····· 137
7. 재정 ····· 145
1) 재정 ····· 146
8. 소득과 소비 ····· 151
1) 소득 ····· 153
2) 소비 ····· 156
3) 빈곤 ····· 163
9. 문화 및 사회참여 ····· 165
1) 문화 및 여가활동 ····· 166
2) 사회참여 ····· 168
10. 사회보장 ····· 175
1) 사회보험 ····· 178
2) 공공부조 ····· 183
3) 사회서비스 ····· 195
11. 인권보호 ····· 221
1) 사회적 차별 ····· 223
2) 장애인 인권보호 ····· 232
3) 가정폭력 ····· 239
4) 성폭력 ····· 242
12. 접근성 ····· 251
1) 물리적 접근성 ····· 253
2) 정보 접근성 ····· 263
3) 사법 접근성 ····· 266
13. 재난 및 안전 ····· 267
1) 장애인 응급안전망 ····· 268
2) 장애인 안전시설 ····· 269
3) 장애인 보호구역 ····· 272

Ⅲ. 국외통계 ····· 273
1. OECD 회원국 ····· 275
1) 장애인구 ····· 277
2) 교육 ····· 280
3) 고용 ····· 282
4) 재정 ····· 286

5) 복지 ····· 294
6) 정신건강 ····· 295
2. 프랑스 ····· 301
1) 장애인구 ····· 303
2) 교육 ····· 306
3) 고용 ····· 309
4) 재정 ····· 320
5) 복지 ····· 322
6) 정신건강 ····· 327
3. 독일 ····· 333
1) 장애인구 ····· 335
2) 교육 ····· 339
3) 고용 ····· 343
4) 재정 ····· 350
5) 복지 ····· 352
6) 정신건강 ····· 355
4. 스웨덴 ····· 359
1) 장애인구 ····· 361
2) 교육 ····· 363
3) 고용 ····· 364
4) 복지 ····· 367

Ⅳ. 지표설명 ····· 373
1. 국내통계 지표 ····· 375
2. 국외통계 지표 ····· 387
1) OECD ····· 387
2) 프랑스 ····· 390
3) 독일 ····· 396
4) 스웨덴 ····· 40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목 차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 25
〈표 1-1-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장애등급별 ····· 26
〈표 1-1-3〉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 27
〈표 1-1-4〉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 28
〈표 1-1-5〉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 연도별 ····· 29
〈표 1-1-6〉 장애등급심사 - 연도별 ····· 30
〈표 1-1-7〉 장애등급심사 - 장애유형별 ····· 31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 34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36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 37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39
〈표 2-1-5〉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장애유형별 ····· 40
〈표 2-1-6〉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2
〈표 2-2-1〉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 43
〈표 2-2-2〉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4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 ····· 45
〈표 2-2-4〉 현재 흡연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7
〈표 2-2-5〉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장애유형별 ····· 48
〈표 2-2-6〉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8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 ····· 49
〈표 2-2-8〉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1
〈표 2-2-9〉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장애유형별 ····· 52
〈표 2-2-10〉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2
〈표 2-2-11〉 생활체육 참여형태 - 연도별, 장애유형별 ····· 53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54
〈표 2-3-2〉 장애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 55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 ····· 56
〈표 2-3-4〉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 57
〈표 2-3-5〉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58
〈표 2-3-6〉 장애인 진료비 현황 ····· 59
〈표 2-3-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 60

〈표 2-3-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1
〈표 2-3-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 62
〈표 2-3-1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3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 64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5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 69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 69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 70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0
〈표 3-2-3〉 평균초혼연령 - 장애유형별 ····· 71
〈표 3-2-4〉 평균초혼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1
〈표 3-2-5〉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 장애유형별 ····· 72
〈표 3-2-6〉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2
〈표 3-2-7〉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장애유형별 ····· 73
〈표 3-2-8〉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3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 74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4
〈표 3-3-1〉 다문화 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 75
〈표 3-3-2〉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 75
〈표 4-1-1〉 주택유형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79
〈표 4-1-2〉 주택사용면적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0
〈표 4-1-3〉 사용 방 수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1
〈표 4-1-4〉 무주택 기간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2
〈표 4-1-5〉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3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 84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4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 85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5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 86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7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서비스별 ····· 88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1순위) - 행정구역, 장애유형별 ····· 89
〈표 4-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 91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 95
〈표 5-1-2〉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 96
〈표 5-1-3〉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96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 97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98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원여부, 지역별 ····· 99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 100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 101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02
〈표 5-4-1〉 특수학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 설치별 ····· 103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 설치별 ···· 104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장애영역별 ····· 105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장애영역별, 시도별, 설립별 ····· 106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 107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 108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 109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교육기관 유형별, 편의시설 유형별 ····· 110
〈표 6-1-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 115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비교 ····· 116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 ····· 117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118
〈표 6-1-5〉 취업자의 산업 ····· 119
〈표 6-1-6〉 취업자의 직업 ····· 120
〈표 6-1-7〉 임금근자 특성 ····· 121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 122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 ····· 123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 ····· 124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 ····· 125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 ····· 126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 127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연도별 ····· 128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129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130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31
〈표 6-4-2〉 장애인기업 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32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33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34
〈표 6-5-1〉 최근 3년 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 135
〈표 6-5-2〉 최근 3년 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 136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137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 138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시도별 ····· 139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 140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 141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 142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 143
〈표 6-6-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형 - 연도별 ····· 144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 144
〈표 7-1-1〉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 146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 147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 148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세부항목별 ····· 149
〈표 7-1-5〉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 150
〈표 8-1-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 153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154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 155
〈표 8-2-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 156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157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 158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 159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 161
〈표 8-3-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163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및 5분위배율 ····· 164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 166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67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 168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68
〈표 9-2-3〉 투표 미 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 169
〈표 9-2-4〉 투표 미 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70
〈표 9-2-5〉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연도별, 직급별 ····· 171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시도별 ····· 172
〈표 9-2-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173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 178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 179
〈표 10-1-3〉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 181
〈표 10-1-4〉 건강보험 가입현황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 182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수(전체 수급자 비교) ····· 183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 급여유형별 ····· 184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 185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 187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 189
〈표 10-2-6〉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 191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 192
〈표 10-2-8〉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정신의료기관별 ····· 194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 195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 196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령별 ····· 198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등급별 ····· 199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실시현황 ····· 200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 이용현황 ····· 201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 이용현황 ····· 202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 203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 204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 205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 206
〈표 10-3-12〉 활동보조인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 근무시간 및 월 평균 보수 ····· 207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 208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 209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 210
〈표 10-3-16〉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지원 현황 ····· 210
〈표 10-3-17〉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 211
〈표 10-3-1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211
〈표 10-3-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 212
〈표 10-3-20〉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 212
〈표 10-3-2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현황 ····· 213
〈표 10-3-2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 213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214
〈표 10-3-2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216
〈표 10-3-2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 217
〈표 10-3-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218
〈표 10-3-27〉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 219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 223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25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 226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27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 228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28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229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230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 231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31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232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233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234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 235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 236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기각·각하 사유별 ····· 237

〈표 11-2-7〉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시설별 ····· 238
〈표 11-3-1〉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 239
〈표 11-3-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40
〈표 11-3-3〉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 241
〈표 11-4-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 242
〈표 11-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43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 244
〈표 11-4-4〉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현황 ····· 245
〈표 11-4-5〉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 ····· 246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 247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248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249
〈표 11-4-9〉 보호시설 연령별 보호기간 현황 ····· 250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 ····· 253
〈표 12-1-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현황 - 정부 부처별 ····· 255
〈표 12-1-3〉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 256
〈표 12-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 257
〈표 12-1-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 258
〈표 12-1-6〉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 259
〈표 12-1-7〉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 260
〈표 12-1-8〉 저상버스 도입 현황 ····· 261
〈표 12-1-9〉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262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현황 ····· 263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263
〈표 12-2-3〉 장애인 정보 접근성 현황 -웹사이트 ····· 264
〈표 12-2-4〉 장애인 정보 접근성 현황 - 모바일 앱 ····· 265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 266
〈표 13-1-1〉 응급 출동 현황 ····· 268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 269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 270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 272
〈표 14-1-1〉 OECD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 277
〈표 14-1-2〉 OECD 국가별 및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2000년대 후반) ····· 279
〈표 14-2-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 280
〈표 14-2-2〉 18-29세 청년장애인 교육수준 ····· 281
〈표 14-3-1〉 OECD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 282
〈표 14-3-2〉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고용률 ····· 283
〈표 14-3-3〉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 284
〈표 14-3-4〉 장애청년층(18-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 285
〈표 14-4-1〉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 286

〈표 14-4-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 ····· 287
〈표 14-4-3〉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비율 ····· 288
〈표 14-4-4〉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0년) ····· 289
〈표 14-4-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1년) ····· 290
〈표 14-4-6〉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2년) ····· 291
〈표 14-4-7〉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3년) ····· 292
〈표 14-4-8〉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급여(2014년, 2015년) ····· 293
〈표 14-5-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 294
〈표 14-6-1〉 OECD 국가별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 295
〈표 14-6-2〉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 296
〈표 14-6-3〉 30일 이내 같은 병원 입원비율 ····· 297
〈표 14-6-4〉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 298
〈표 14-6-5〉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률 ····· 299
〈표 14-6-6〉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률 ····· 300
〈표 15-1-1〉 장애인구 현황 ····· 303
〈표 15-1-2〉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현황 ····· 304
〈표 15-1-3〉 장애인 출현율 - 성별, 연령별 ····· 305
〈표 15-2-1〉 교육수준 - 장애정의별, 성별 ····· 306
〈표 15-2-2〉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교육수준 현황 ····· 306
〈표 15-2-3〉 연도별 구직자 교육수준 ····· 307
〈표 15-2-4〉 2015년 구직자 교육수준 ····· 307
〈표 15-2-5〉 고용 및 비활동 장애인구 교육수준 현황 ····· 308
〈표 15-3-1〉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 309
〈표 15-3-2〉 경제활동참여율, 고용율 및 실업률 ····· 309
〈표 15-3-3〉 고용 장애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10
〈표 15-3-4〉 고용의무 기업체의 장애인구 근로자 및 근로자 인정 방식에 따른 근로자수 ····· 311
〈표 15-3-5〉 고용의무자격(OETH) 장애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12
〈표 15-3-6〉 고용의무 민간기업체의 장애인구 ····· 313
〈표 15-3-7〉 고용의무 민간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 규모 및 활동분야별 ····· 314
〈표 15-3-8〉 고용의무 공공기업체의 장애인구 ····· 315
〈표 15-3-9〉 고용의무 공공기업체의 고용의무 달성 정도 ····· 315
〈표 15-3-10〉 장애인구의 실업률 ····· 316
〈표 15-3-11〉 장애인구 구직률 - 전체 인구 비교 ····· 317
〈표 15-3-12〉 장애인구의 구직률 - 연도별 ····· 318
〈표 15-3-13〉 구직 기간 ····· 318
〈표 15-3-14〉 고용의무자격 구직자의 주요 신청 (종사)업종군 ····· 319
〈표 15-4-1〉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현황 ····· 320
〈표 15-4-2〉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 ····· 321
〈표 15-5-1〉 경제활동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 ····· 322
〈표 15-5-2〉 성인장애수당(AAH) 신청 건수와 수급자격 인정 현황 ····· 324

〈표 15-5-3〉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특성 및 현황 ····· 325
〈표 15-5-4〉 고용의무자격 구직자 중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수 추이 ····· 326
〈표 15-6-1〉 정신질환관련 지역사회 시설 수 ····· 327
〈표 15-6-2〉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 ····· 328
〈표 15-6-3〉 정신질환시설 치료환자 현황 ····· 330
〈표 16-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 335
〈표 16-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 336
〈표 16-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 (2015년) ····· 337
〈표 16-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 338
〈표 16-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 339
〈표 16-2-2〉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수치 ····· 340
〈표 16-2-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지원영역 변화 ····· 341
〈표 16-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 342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률 - 연도별 ····· 343
〈표 16-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2015년 평균) ····· 344
〈표 16-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5년) ····· 345
〈표 16-3-4〉 의무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2015년) ····· 346
〈표 16-3-5〉 연방 통합청(Integrationsamt) 지출 현황(2014~2015년) ····· 347
〈표 16-3-6〉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 ····· 348
〈표 16-3-7〉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15년) ····· 348
〈표 16-3-8〉 중증장애인 실업 지속기간(2015년 평균) ····· 349
〈표 16-4-1〉 재정과 참여를 위한 지출(2015년) ····· 350
〈표 16-5-1〉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유형별, 연령별 ····· 352
〈표 16-5-2〉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 - 성별, 연령별, 이용시설 유형별(2015년) ····· 353
〈표 16-5-3〉 장애인 편입급여 급여내용 및 지출액(2015년) ····· 354
〈표 16-6-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2015년) ····· 355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병상 수(2015년) ····· 356
〈표 16-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15년) ····· 357
〈표 17-1-1〉 장애 출현율 및 노동능력 절감 비율 - 장애유형별 ····· 361
〈표 17-1-2〉 활동능력 제한 정도 - 성별, 연령별 ····· 362
〈표 17-2-1〉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현황 - 학교유형별 ····· 363
〈표 17-2-2〉 학교 교육비 지원 현황 - 학교유형별 ····· 363
〈표 17-3-1〉 고용률 - 성별, 연령별, 활동능력 정도별 ····· 364
〈표 17-3-2〉 실업률 - 성별, 연령별 ····· 364
〈표 17-3-3〉 장애인 고용 지원 현황 - 연도별, 고용형태별 ····· 365
〈표 17-3-4〉 경쟁고용 전환 현황 - 연도별, 고용형태별 ····· 365
〈표 17-3-5〉 기타 고용 지원 현황 - 연도별, ····· 366
〈표 17-4-1〉 경제적 상황 - 성별, 장애유무별 ····· 367
〈표 17-4-2〉 LSS 서비스 지원 유형별 수급자 수 - 연령별 ····· 368
〈표 17-4-3〉 LSS 서비스 지원 유형별 수급자 수 - 연도별 ····· 36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4-4〉 특별주택 수급자 수 - 연령별, 주택유형별 ····· 370
〈표 17-4-5〉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가정도우미 서비스 지원 현황 - 연령별 ····· 370
〈표 17-4-6〉 장애 수당 지원 현황 - 연령별, 성별 ····· 371
〈표 17-4-7〉 아동보호 수당 지원 현황 - 연령별, 성별 ····· 372

그 림 목 차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 7
[그림 2-1-1]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 23
[그림 2-1-2]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2016년) ····· 23
[그림 2-1-3] 전체인구 및 장애인구 고령화 비율 ····· 24
[그림 2-2-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 33
[그림 2-2-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33
[그림 2-3-1] 장애인 가구 비율 - 비장애인 가구 비교 ····· 67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 ····· 67
[그림 2-3-3] 다문화 장애가구 및 소득 ····· 68
[그림 2-4-1] 무주택 기간 ····· 77
[그림 2-4-2] 주거비 부담 수준 ····· 77
[그림 2-4-3]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 78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78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 93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 ····· 93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 ····· 94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2016) - 전체인구 비교 ····· 113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 113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 ····· 114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 ····· 114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 114
[그림 2-7-1]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 145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145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 ····· 151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 ····· 151
[그림 2-8-3] 연도별 빈곤율 및 빈곤갭 -전체가구 비교 ····· 152
[그림 2-9-1] 장애인 투표 참여율 ····· 165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165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 175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 175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대비 지원 규모 및 활동보조인 활동인원 ····· 176

[그림 2-10-4]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 176
[그림 2-10-5] 장애인 관련 시설 수 ····· 177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221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221
[그림 2-11-3] 정신보건시설 입원 유형 ····· 222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222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현황 ····· 251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2016년 7월 기준) ····· 251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 ····· 252
[그림 2-13-1] 응급출동 현황 ····· 267
[그림 3-1-1]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2013년 기준) ····· 275
[그림 3-1-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2013년 기준) ····· 275
[그림 3-1-3]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2013년 기준) ····· 276
[그림 3-2-1]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교육수준 ····· 301
[그림 3-2-2]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비교 ····· 301
[그림 3-2-3]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현황 ····· 302
[그림 3-2-4] 2015년 프랑스 정신질환시설 전일제·시간제 치료 환자 수 분포 ····· 331
[그림 3-2-5] 2015년 프랑스 정신질환시설 통원치료 환자 수 분포 ····· 331
[그림 3-3-1] 중증장애인 수 ····· 333
[그림 3-3-2]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비율 ····· 333
[그림 3-3-3] 중증장애인 고용률 ····· 334
[그림 3-3-4]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334
[그림 3-4-1] 장애인 고용 지원 및 경쟁고용 전환 현황 ····· 359
[그림 3-4-2] 경제적 상황 - 비장애인과 비교 ····· 359
[그림 3-4-3] LSS 서비스 지원 수급자 수 - 유형별 ····· 360
[그림 3-4-4] LSS 서비스 지원 수급자 수 - 연도별 ····· 36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Ⅰ

2017 장애통계연보 체계

1. 작성배경
2. 작성목표
3. 작성방향 및 체계
4. 세부작성원칙
5. 장애통계연보 체계

Ⅰ. 2017 장애통계연보 체계

1. 작성배경

□ 신사회적 위험과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 필요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ability: 이하 CRPD)의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에 의하면, '적절한 자료수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및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임을 규정

□ 그러나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집된 통계자료(CRPD의 제31조)들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 및 수준이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가 불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United Nations, 2014)

□ 각 부처에서 발간된 통계들은 실태조사 및 투입지표들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모니터링 역할로써의 산출 및 성과지표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
  -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함

□ 장애인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을 고려한 핵심통계들의 수집이 요구됨
  - 인천전략과 CRPD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애통계연보 틀을 구축하고,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2. 작성목표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과 장애인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함
  - 장애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 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들을 포함

□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함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들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의 장애인 통계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토록 함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작성방향 및 체계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분류 및 중분류를 도출한 후 소분류(세부지표)를 개발
- 사회지표 대분류(11개), 보건복지통계연보 대분류(9개), 장애인통계(7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대분류(13개)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분류 구성함
- 중분류 및 소분류는 각각의 상위분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각각의 분류들의 수준과 내용은 통일성을 기함

□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한 개선 및 관련 정책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분류 체계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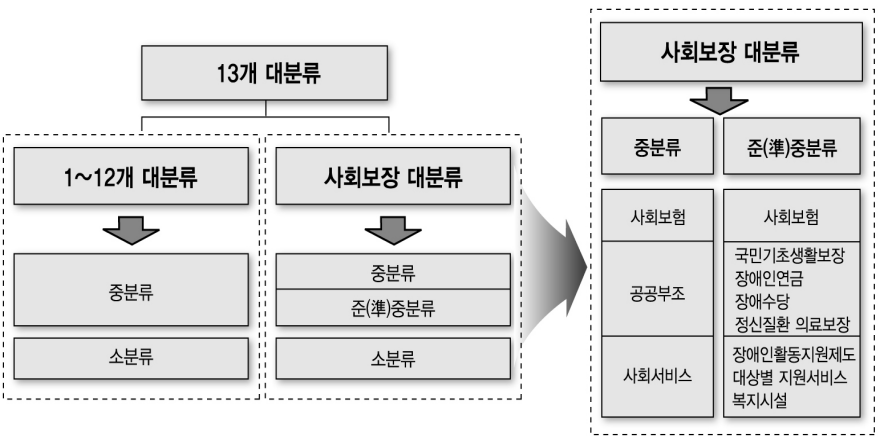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편의증진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제도들을 포괄

□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장애인 소득 및 소득불평등 지표 수집
- 장애인 소득,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5분위 배율 등

□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주거실태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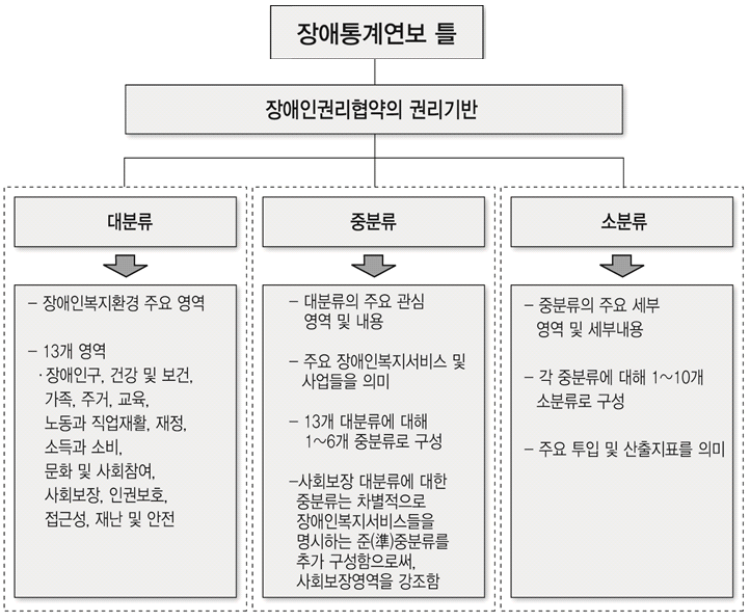
□ 수록된 통계 및 지표는 장애인 특성별(장애유형, 성별, 장애등급 등) 접근이 가능하고, 향후 대표성·연속성·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함

□ 특히 '사회보장' 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중분류(3개)로 체계화 하였으며, 여타 중분류와 다르게 장애인복지서비스들을 명시하는 준(準)중분류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다른 중분류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영역을 강조함



□ 위의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장애통계연보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구, 건강 및 보건, 가족, 주거, 교육, 노동과 직업재활, 재정, 소득과 소비, 문화 및 사회참여, 사회보장, 인권보호, 접근성, 재난 및 안전 등임
-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1~6개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대한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업들을 의미
- 소분류는 각 중분류에 1~10개로 구성되며, 주요 투입 및 산출지표로 구성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4. 세부작성원칙

□ 2017년 장애통계연보의 자료 수록은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각 세부지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로 제시되도록 함
□ 필요시 전국가구와 비교를 가능토록 함
□ 각 세부지표에 대한 주요 설명 및 지표명을 제시하여, 통계 의미와 이해도를 높임
□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5. 장애통계연보 체계

1) 국내지표

(1) 장애인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구	장애인구	등록장애인 수	연도별	표 1-1-1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제1조 제2조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표 1-1-2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	연도별	표 1-1-3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 출현율	연도별	표 1-1-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연도별	표 1-1-5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등급심사	연도별	표 1-1-6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유형별	표 1-1-7		

(2) 건강 및 보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건강 및 보건	건강상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ADL)	장애유형별	표 2-1-1	장애인실태조사	제25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장애유형별	표 2-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4		
		만성질환	장애유형별	표 2-1-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6		
	건강관리	스트레스 정도	장애유형별	표 2-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2		
		흡연 및 금연 여부	장애유형별	표 2-2-3		
				표 2-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4		
				표 2-2-6		
		음주 빈도 및 음주량	장애유형별	표 2-2-7		
				표 2-2-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8		
				표 2-2-10		
		생활체육 참여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2-11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보건의료 이용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성별,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2-3-1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장애와 건강통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표 2-3-2		
		암검진 수검률		표 2-3-3		
		구강검진 수검률		표 2-3-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의료기관 별	표 2-3-5		
		장애인 진료비 현황		표 2-3-6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장애유형별	표 2-3-5	장애인실태조사	
				표 2-3-7		
				표 2-3-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3-6		
				표 2-3-8		
				표 2-3-10		

(3) 가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가족	가구구성	가구구성 및 규모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표 3-1-1	장애인실태조사	제6조 제7조 제23조
				표 3-1-2		
	가족형성	결혼상태	장애유형별	표 3-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2		
		평균초혼연령	장애유형별	표 3-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4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장애유형별	표 3-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6		
		자녀 현황	장애유형별	표 3-2-7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8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장애유형별	표 3-2-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10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가구	연도별,	표 3-3-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표 3-3-2		

(4) 주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주거	주거	주택유형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표 4-1-1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제19조
		주택사용면적		표 4-1-2		
		사용 방 수		표 4-1-3		
		무주택 기간		표 4-1-4		
		주거비 부담수준		표 4-1-5		
	주택 환경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장애유형별	표 4-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장애유형별	표 4-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4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장애유형별	표 4-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6		
	주거 복지사업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행정구역, 점유형태별, 소득별	표 4-3-1	주거실태조사 (장애인가구)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표 4-3-2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실적	연도별	표 4-3-3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5) 교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교육	교육수준	교육수준	연도별	표 5-1-1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7조 제24조 제26조
			장애유형별	표 5-1-2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1-3		
	보육	보육시설 이용	장애유형별	표 5-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2-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여부, 지역별	표 5-2-3	보육통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역별	표 5-2-4		
	유치원	유치원 이용	장애유형별	표 5-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3-2		
	특수교육	특수학교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표 5-4-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학급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표 5-4-2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	연도별,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영역별	표 5-4-3		
			연도별, 장애영역별, 시도별, 설립별	표 5-4-4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표 5-4-5		
		졸업생 진로	연도별, 졸업유형별	표 5-4-6		
				표 5-4-7		
	교육기관 편의시설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교육기관 유형별, 편의시설 유형별	표 5-5-1		

(6) 노동과 직업재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노동과 직업재활	경제활동	경제활동상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1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6조 제26조 제27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2		
		취업자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3		
			종사상지위별	표 6-1-4		
			산업별	표 6-1-5		
			직업별	표 6-1-6		
			(취업자 중 임금근로 장애인)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여부별	표 6-1-7		
			(취업자 중 임금근로 장애인)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8		
		실업자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9		
		실업자 특성	구직기간, 구직경로, 구직방법	표 6-1-10		
			희망 고용형태, 산업, 직업, 사업체, 근로시간, 월 평균 소득	표 6-1-11		
노동과 직업재활	경제활동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12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6조 제26조 제27조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 고용 부담금	연도별	표 6-2-2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기업체 장애인 고용	기업체 장애인 고용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표 6-3-1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표 6-4-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 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표 6-4-4		
	취업 관련 활동 경험	최근 3년 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6-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최근 3년 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성별, 장애정도별	표 6-5-2		
	직업재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도별, 지역별	표 6-6-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표 6-6-2		
			시설유형별, 시도별	표 6-6-3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표 6-6-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자 수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6-6-5		
			연도별, 사업별	표 6-6-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연도별, 생산시설 유형별	표 6-6-8		
			연도별, 지역별	표 6-6-9		

(7) 재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정	재정	장애인 복지 예산	(GDP 대비 비율)연도별	표 7-1-1	SOCX Statistics	–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비율)연도별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	
		장애인 정책국 예산 추이	연도별	표 7-1-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세부항목별	표 7-1-4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세부사업별	표 7-1-5		

(8) 소득과 소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소득과 소비	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1-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제28조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연도별, 소득원천별	표 8-1-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구간별 비중	연도별, 소득구간별	표 8-1-3		
	소비	월 평균 가구지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2-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비목별 소비지출액	연도별, 비목별	표 8-2-2	가계금융·복지조사	
		비목별 비 소비지출액	연도별, 비목별	표 8-2-3		
		최소 생활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2-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연도별, 추가비용 항목별, 장애유형별	표 8-2-5		
소득과 소비	빈곤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연도별, 소득원천별	표 8-3-1	가계금융·복지조사	제28조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5분위배율	연도별, 소득분위별	표 8-3-2		

(9) 문화 및 사회참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문화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장애유형별	표 9-1-1	장애인실태조사	제29조 제30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1-2		
	사회참여	장애인 투표 여부	장애유형별	표 9-2-1		
				표 9-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2-2		
				표 9-2-4		
		장애인 공무원 수	연도별, 직급별	표 9-2-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연도별, 시도별	표 9-2-6		
		온라인 사회참여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장애유형별	표 9-2-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10) 사회보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사회 보장	사회보험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1	장애인실태조사	제19조 제28조
			장애연금 수급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0-1-2	국민연금통계연보	
			산재보험 수급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표 10-1-3	산재보험 사업연보	
			건강보험 가입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4	장애인실태조사	
사회 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체 수급자 비교)연도별	표 10-2-1	보건복지통계연보	제19조 제28조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2-2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표 10-2-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수당	장애수당 수급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표 10-2-4		
			장애아동수당 수급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표 10-2-5		
		정신질환의료보장	만성 정신질환 급여	연도별	표 10-2-6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정신질환 의료급여	연도별, 상병별	표 10-2-7	의료급여통계	
			정신보건 의료보장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10-2-8	중앙정신보건사업 지원단 내부자료	
사회 보장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실적	연도별	표 10-3-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19조 제28조
			수급자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인정조사점수별, 소득별	표 10-3-2		
					표 10-3-3		
					표 10-3-4		
			인정조사 실시	연도별, 시도별	표 10-3-5		
			기본급여 이용	급여종류별, 연도별, 이용시간별	표 10-3-6		
			추가급여 이용	급여종류별, 연도별, 등급별, 인정조사점수별, 소득별	표 10-3-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연도별, 장애등급별	표 10-3-8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인정조사점수별, 소득별	표 10-3-9		
			본인부담금 수준	연도별, 소득별	표 10-3-10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연도별, 시도별	표 10-3-11		
			활동보조인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0-3-12		
		대상별 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실적	연도별, 월별	표 10-3-13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4		
			양육지원사업 지원 실적	연도별	표 10-3-15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실적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8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연도별	표 10-3-19		
					표 10-3-20		
					표 10-3-21		
					표 10-3-22		
		복지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연도별, 시도별	표 10-3-2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표 10-3-2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표 10-3-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0-3-26		
			정신보건기관	기관유형별	표 10-3-27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11) 인권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인권 보호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1	장애인실태조사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2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장애유형별	표 11-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4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사회)	장애유형별	표 11-1-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6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연도별, 지역별, 성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학력별, 직종별, 소득별	표 11-1-7	사회조사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9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10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및 수용	연도별	표 11-2-1	인권통계	
				표 11-2-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연도별, 영역별, 기각·각하 사유별	표 11-2-4		
				표 11-2-5		
				표 11-2-6		
		정신보건시설 입원현황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11-2-7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가정 폭력	장애인 가정폭력	장애유형별	표 11-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3-2		
		가정폭력 관련 시설	시도별	표 11-3-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장애유형별	표 11-4-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4-2		
		성폭력 상담소	시도별	표 11-4-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연도별, 상담 유형	표 11-4-4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연도별, 피해유형별, 피해자 장애유형별	표 11-4-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도별	표 11-4-6		
			연도별	표 11-4-7		
			연도별, 연령별	표 11-4-8		
			연도별, 보호기간별	표 11-4-9		

(12)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보조기구 종류별, 장애유형별	표 12-1-1	장애인실태조사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장애인보조기구 사업운영 실적	정부 부처별	표 12-1-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연도별	표 12-1-3	건강보험주요통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실적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표 12-1-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표 12-1-5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2-1-6		
		이동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표 12-1-7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도별, 시도별	표 12-1-8		
			시도별	표 12-1-9		
	정보 접근성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도별 디지털정보격차 지수 유형별	표 12-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활용 유형별	표 12-2-2		
		정보 접근성	연도별, 정보 접근성 유형별	표 12-2-3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표 12-2-4		
	사법 접근성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연도별	표 12-3-1	대한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3) 재난 및 안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난 및 안전	장애인 응급안전망	응급 출동 실적	연도별, 월별, 응급상황별	표 13-1-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10조 제11조 제14조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안전시설 설치	연도별	표 13-2-1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3-2-2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	연도별, 시도별	표 13-3-1	재난안전통계연보	

(14) 2017 추가지표 및 통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건강 및 보건	보건의료 이용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2-3-1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장애와 건강통계	제25조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표 2-3-2		
		암검진 수검률		표 2-3-3		
		구강검진 수검률		표 2-3-4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의료기관 별	표 2-3-5		
		장애인 진료비 현황		표 2-3-6		
노동과 직업재활	취업 관련 활동 경험	최근 3년 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6-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제6조 제26조 제27조
		최근 3년 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성별, 장애정도별	표 6-5-2		
접근성	정보 접근성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도별, 디지털정보격차 지수 유형별	표 12-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활용 유형별	표 12-2-2		

2) 국외지표

(1) OECD 회원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OECD 회원국	장애인구	장애출현율	국가별	표 14-1-1	2016 장애인통계	-
			국가별, 연령별	표 14-1-2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교육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국가별	표 14-2-1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18-19세 청년장애인 교육수준	국가별, 학력별	표 14-2-2	OECD Family Database	
	고용	고용율	국가별	표 14-3-1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시간제 고용율		표 14-3-2		
		실업률		표 14-3-3		
		장애청년층(18-29세)의 고용율 및 실업률		표 14-3-4	OECD Family Database	
	재정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국가별, 연도별	표 14-4-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GDP 대비 장애인 복지 현금급여		표 14-4-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표 14-4-3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	국가별,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4-4-4		
				표 14-4-5		
				표 14-4-6		
				표 14-4-7		
				표 14-4-8		
	복지	빈곤위험률	국가별	표 14-5-1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정신건강	정신질환관련 병상 수	국가별, 연도별	표 14-6-1	Making mental health count	
		인구 10만명 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국가별	표 14-6-2		
		정신질환의 계획에 없던 재입원(조현병, 조울증)	국가별, 연도별	표 14-6-3	Health at glance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	국가별, 의료공급기관 별	표 14-6-4	Making mental health count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률	국가별, 연도별, 정신질환 별	표 14-6-5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표 14-6-6		

(2) 프랑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프랑스	장애인구	정의에 따른 장애인구	장애의미별	표 15-1-1	장애인 고용과 실업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별	표 15-1-2		
		장애인 출현율	성별, 연령별	표 15-1-3		
	교육	장애정의별 교육 수준	장애정의별, 성별	표 15-2-1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별	표 15-2-2		
		구직자 교육 수준	연도별	표 15-2-3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성별	표 15-2-4	장애인 고용과 실업	
			연도별, 장애의미별, 경제활동상태별	표 15-2-5	장애인 고용과 실업, 장애인 근로자 고용 진입	
	고용	경제활동참여	장애의미별	표 15-3-1	장애인 고용과 실업	
				표 15-3-2	장애인 고용과 실업,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고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직급별, 고용소속별, 고용상태별, 근로시간별, 종사업종별	표 15-3-3		
			연도별, 근로자 인정방식별	표 15-3-4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성별, 연령별, 경력별, 직급별, 고용상태별, 근로시간별, 종사업종별	표 15-3-5		
			성별, 연령별, 직급별, 근속기간별	표 15-3-6	Dares, Emploi et chomage des personnes handicapees	
			기업규모별, 활동분야별	표 15-3-7		
			성별, 연령별, 직급별	표 15-3-8		
			공공기업체별	표 15-3-9		
		실업 및 구직	연도별, 장애의미별	표 15-3-10	장애인 고용과 실업, 장애인 근로자 고용 진입	
			성별, 연령별	표 15-3-11	장애인 고용과 실업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5-3-12	장애인과 고용 주요통계	
			연도별, 구직기간별	표 15-3-13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연도별, 종사업종별	표 15-3-14		
	재정	장애인복지 지출	연도별	표 15-4-1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보고서	
			연도별, 서비스형태별	표 15-4-2	장애 보상 수당 분석	
	복지	소득 및 빈곤수준	연령별, 연도별	표 15-5-1	삶, 소득수준	
		성인장애수당(AAH)	연도별	표 15-5-2	성인장애수당(AAH) 관련 MDPH 활동통계보고서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가족상황별, 장애인정률	표 15-5-3	사회기초수당조사	
			연도별	표 15-5-4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정신건강	정신건강관련 시설	연도별, 시설유형별	표 15-6-1	정신질환돌봄-치료 지역적분포,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표 15-6-2		
			연도별, 치료유형별	표 15-6-3		
			지역별	그림 3-2-5		
				그림 3-2-6		

(3) 독일[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독일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6-1-1	연방건강보고, 연방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6-1-2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6-1-3		
			연도별, 장애원인별	표 16-1-4		
	교육	특수교육	연도별	표 16-2-1	독일에서의 통합-정보와 요소	
			연도별, 장소별	표 16-2-2	특수교육적 지원요구 -세밀한 분석, 교육문화부협의체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연도별, 지원영역별	표 16-2-3		
			연도별	표 16-2-4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연도별, 고용현황, 고용률	표 16-3-1	연방건강보고	
			성별, 연령별, 고용대상별, 산업별	표 16-3-2	통합청연례보고,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연도별	표 16-3-3		
			민간, 공공부문별	표 16-3-4		
		고용 관련 지출	지출항목별	표 16-3-5	ZB-Info	
		중증장애인 실업현황	연도별	표 16-3-6	BIH 연례보고서	
			성별, 연령별, 국적별	표 16-3-7	연방노동에이전트 통계	
			기간별, 연령별	표 16-3-8	독일의 노동시장·중증장애인의 노동상황	
	재정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6-4-1	재활정보	
	복지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연도별, 유형별, 연령별	표 16-5-1	연방건강보고	
			성별, 연령별, 이용시설유형별	표 16-5-2	사회적 급여 통계-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급여내용별	표 16-5-3	연방건강보고	
	정신건강	편입급여	성별, 연령별, 장소별	표 16-6-1		
		정신질환 관련 시설 현황	연도별	표 16-6-2	병원기본통계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환자 유형별, 병원유형별	표 16-6-3		

1) '재정', '정신건강'은 2017 장애통계연보에 추가된 지표임

(4) 스웨덴[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스웨덴	장애인구	장애출현율	장애유형별	표 17-1-1	Funktionshinder och arbetsliv	–
		활동능력 제한	성별, 연령별	표 17-1-2		
	교육	교육비	학교유형별	표 17-2-1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표 16-2-2		
	고용	고용현황	성별, 연령별, 활동능력 정도별	표 17-3-1	Funktionshinder och arbetsliv	
			성별, 연령별	표 17-3-2		
		고용 지원 현황	연도별, 고용형태별	표 17-3-3	Arbetsförmedlingen(the Employment Service) Annual Report	
				표 17-3-4		
			연도별	표 17-3-5		
	복지	경제적 상황	성별, 장애유무별	표 17-4-1	The 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The 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 (ANED)	
		LSS 지원 현황	연령별	표 17-4-2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연도별	표 17-4-3		
		주택지원 및 각종 지원 현황	연령별, 주택유형별	표 17-4-4	Quantity statistics on care and care for elderly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Social Services Act,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연령별	표 17-4-5		
		장애수당 및 아동보호 수당 지원 현황	연령별, 성별	표 17-4-6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표 17-4-7		

2) 스웨덴은 2017 장애통계연보에서 추가된 영역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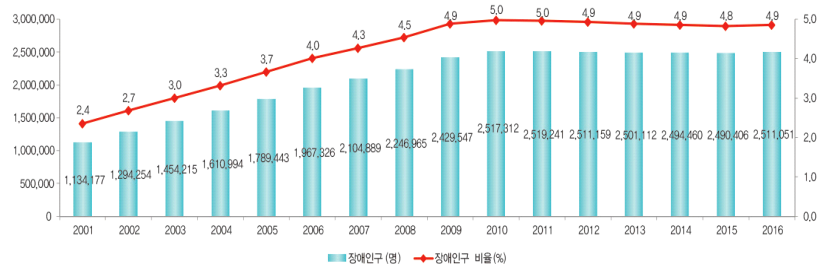
국내통계

1. 장애인구
2. 건강 및 보건
3. 가족
4. 주거
5. 교육
6. 노동과 직업재활
7. 재정
8. 소득과 소비
9. 문화 및 사회참여
10. 사회보장
11. 인권보호
12. 접근성
13. 재난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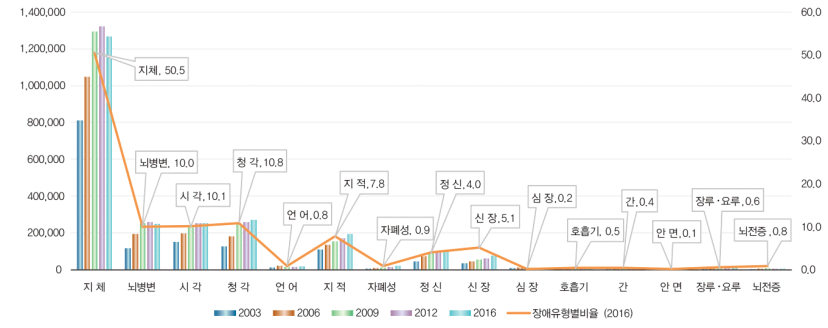
Ⅱ. 국내통계

1. 장애인구

[그림 2-1-1]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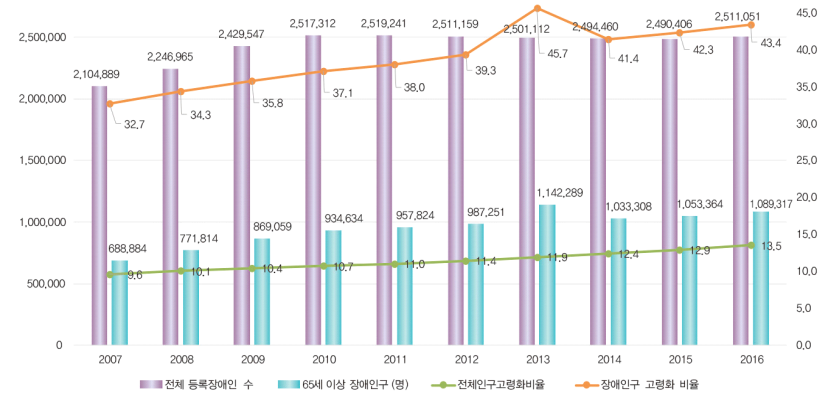
[그림 2-1-2]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2016년)



– 2016년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511,051명으로 2012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에 소폭 상승함
- 등록장애인 수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0.5%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0.8%, 시각장애 10.1%, 뇌병변장애 10.0% 순임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 10개 유형(2000.1.) → 15개 유형(2003.7.)

[그림 2-1-3] 2016년 전체인구고령화비율



–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2,511,051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089,317명(43.4%)으로 고령화수준은 2013년 40%대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장애인구 중 40%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1) 장애인구

(1) 등록장애인 수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1	1,134,177	682,325	64,950	115,911		105,711	94,951	2,516	32,581	28,118	7,114	-	-	-	-	-
2002	1,294,254	754,651	91,998	135,704		123,823	103,640	4,014	39,494	32,094	8,836	-	-	-	-	-
2003	1,454,215	813,916	117,514	152,857	126,488	12,837	112,043	5,717	46,883	34,884	10,409	7,039	3,108	673	6,585	3,262
2004	1,610,994	883,296	142,804	170,107	141,908	13,474	119,207	7,740	54,333	38,175	11,634	9,768	4,072	1,114	8,182	5,180
2005	1,789,373	965,014	168,585	189,933	160,565	15,022	127,811	9,518	63,642	41,823	12,807	11,728	5,160	1,490	9,575	6,700
2006	1,967,326	1,049,396	195,253	196,507	182,361	22,794	137,596	10,926	75,058	44,571	13,739	13,035	5,875	1,863	10,461	7,891
2007	2,104,889	1,114,094	214,751	216,881	203,324	14,882	142,589	11,874	81,961	47,509	14,352	14,289	6,329	2,149	11,184	8,721
2008	2,246,965	1,191,013	232,389	228,126	223,102	15,458	146,898	12,954	86,624	50,474	14,732	14,984	6,968	2,337	11,740	9,166
2009	2,429,547	1,293,331	251,818	241,237	245,801	16,249	154,953	13,933	94,776	54,030	15,127	15,860	7,730	2,505	12,437	9,760
2010	2,517,312	1,337,722	261,746	249,259	260,403	17,207	161,249	14,888	95,821	57,142	12,864	15,551	7,920	2,696	13,072	9,772
2011	2,519,241	1,333,429	260,718	251,258	261,067	17,463	167,479	15,857	94,739	60,110	9,542	14,671	8,145	2,715	13,098	8,950
2012	2,511,159	1,322,131	257,797	252,564	258,589	17,743	173,257	16,906	94,638	63,434	7,744	13,879	8,588	2,709	13,374	7,806
2013	2,501,112	1,309,285	253,493	253,095	255,399	17,830	178,866	18,133	95,675	66,551	6,928	13,150	9,194	2,696	13,546	7,271
2014	2,494,460	1,295,608	251,543	252,825	252,779	18,275	184,355	19,524	96,963	70,434	6,401	12,445	9,668	2,689	13,867	7,084
2015	2,490,406	1,281,497	250,862	252,874	250,334	18,813	189,752	21,103	98,643	74,468	5,833	12,033	10,324	2,685	14,116	7,069
2016	2,511,051	1,267,174	250,456	252,794	271,843	19,409	195,283	22,853	100,069	78,750	5,507	11,831	11,042	2,680	14,404	6,956
	(100.0)	(50.5)	(10.0)	(10.1)	(10.8)	(0.8)	(7.8)	(0.9)	(4.0)	(3.1)	(0.2)	(0.5)	(0.4)	(0.1)	(0.6)	(0.3)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2016년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511,051명으로 2012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에 소폭 상승함
  - 등록장애인 수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0.5%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0.8%, 시각장애 10.1%, 뇌병변장애 10.0% 순임

장애유형 변천사

- 1982년 2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자(「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제2조)
- 1990년12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변경(「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 2000년 1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1단계 확대: 5유형 → 10유형)
- 2003년 7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2단계 확대: 10유형 → 15개 유형)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2007년 10월 시행), 간질장애인 → 뇌전증장애인(2014년 6월 시행)

〈표 1-1-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장애등급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2,511,051	1,267,174	250,456	252,794	271,843	19,409	195,283	22,853	100,069	78,750	5,507	11,831	11,042	2,680	14,404	6,956
	(100.0)	(50.5)	(10.0)	(10.1)	(10.8)	(0.8)	(7.8)	(0.9)	(4.0)	(3.1)	(0.2)	(0.5)	(0.4)	(0.1)	(0.6)	(0.3)
남	1,457,588	732,667	143,359	150,752	147,749	13,900	117,725	19,419	51,838	45,769	3,450	8,822	7,938	1,549	8,876	3,775
	(100.0)	(50.3)	(9.8)	(10.3)	(10.1)	(1.0)	(8.1)	(1.3)	(3.6)	(3.1)	(0.2)	(0.6)	(0.5)	(0.1)	(0.6)	(0.3)
여	1,053,463	534,507	107,097	102,042	124,094	5,509	77,558	3,434	48,231	32,981	2,057	3,009	3,104	1,131	5,528	3,181
	(100.0)	(50.7)	(10.2)	(9.7)	(11.8)	(0.5)	(7.4)	(0.3)	(4.6)	(3.1)	(0.2)	(0.3)	(0.3)	(0.1)	(0.5)	(0.3)
9세 이하	25,810	941	5,668	794	1,819	1,599	9,651	4,915	–	47	75	22	193	7	31	48
	(100.0)	(3.6)	(22.0)	(3.1)	(7.0)	(6.2)	(37.4)	(19.0)	–	(0.2)	(0.3)	(0.1)	(0.7)	(0.0)	(0.1)	(0.2)
10-19세	63,676	4,221	7,465	2,652	3,198	774	34,608	9,422	106	249	387	36	275	75	49	159
	(100.0)	(6.6)	(11.7)	(4.2)	(5.0)	(1.2)	(54.4)	(14.8)	(0.2)	(0.4)	(0.6)	(0.1)	(0.4)	(0.1)	(0.1)	(0.2)
20-29세	90,235	17,138	6,045	6,739	4,827	502	43,451	6,400	2,700	1,265	297	64	141	154	87	425
	(100.0)	(19.0)	(6.7)	(7.5)	(5.3)	(0.6)	(48.2)	(7.1)	(3.0)	(1.4)	(0.3)	(0.1)	(0.2)	(0.2)	(0.1)	(0.5)
30-39세	149,219	59,898	9,463	16,312	7,559	1,340	35,251	1,137	10,730	4,969	298	197	331	378	241	1,115
	(100.0)	(40.1)	(6.3)	(10.9)	(5.1)	(0.9)	(23.6)	(0.8)	(7.2)	(3.3)	(0.2)	(0.1)	(0.2)	(0.3)	(0.2)	(0.7)
40-49세	296,597	152,741	16,952	30,225	14,833	2,514	31,028	155	29,995	12,724	393	652	1,294	582	632	1,877
	(100.0)	(51.5)	(5.7)	(10.2)	(5.0)	(0.8)	(10.5)	(0.1)	(10.1)	(4.3)	(0.1)	(0.2)	(0.4)	(0.2)	(0.2)	(0.6)
50-59세	513,815	295,198	39,894	47,957	34,522	3,836	23,999	28	34,679	21,643	844	2,120	4,228	664	2,069	2,134
	(100.0)	(57.5)	(7.8)	(9.3)	(6.7)	(0.7)	(4.7)	(0.0)	(6.7)	(4.2)	(0.2)	(0.4)	(0.8)	(0.1)	(0.4)	(0.4)
60-69세	550,847	315,907	60,442	56,814	50,986	4,215	10,999	6	16,818	20,267	1,373	3,985	3,731	530	3,801	973
	(100.0)	(57.3)	(11.0)	(10.3)	(9.3)	(0.8)	(2.0)	(0.0)	(3.1)	(3.7)	(0.2)	(0.7)	(0.7)	(0.1)	(0.7)	(0.2)
70-79세	536,904	292,493	69,778	59,326	79,324	3,483	3,640	–	4,448	13,348	1,337	3,697	811	246	4,783	190
	(100.0)	(54.5)	(13.0)	(11.0)	(14.8)	(0.6)	(0.7)	–	(0.8)	(2.5)	(0.2)	(0.7)	(0.2)	(0.0)	(0.9)	(0.0)
80세 이상	282,619	130,036	34,542	32,176	74,737	1,158	760	–	617	4,228	498	1,051	21	58	2,709	28
	(100.0)	(46.0)	(12.2)	(11.4)	(26.4)	(0.4)	(0.3)	–	(0.2)	(1.5)	(0.2)	(0.4)	(0.0)	(0.0)	(1.0)	(0.0)
1급	197,832	34,147	55,367	31,802	6,940	149	50,197	9,920	2,290	4,717	143	1,708	219	98	6	129
	(100.0)	(17.3)	(28.0)	(16.1)	(3.5)	(0.1)	(25.4)	(5.0)	(1.2)	(2.4)	(0.1)	(0.9)	(0.1)	(0.0)	(0.0)	(0.1)
2급	336,849	65,562	50,407	6,731	45,392	2,157	67,827	9,473	29,074	54,969	657	3,366	312	420	115	387
	(100.0)	(19.5)	(15.0)	(2.0)	(13.5)	(0.6)	(20.1)	(2.8)	(8.6)	(16.3)	(0.2)	(1.0)	(0.1)	(0.1)	(0.0)	(0.1)
3급	434,876	153,141	56,566	11,566	41,788	7,961	77,259	3,460	68,704	59	3,974	6,625	537	897	1,040	1,299
	(100.0)	(35.2)	(13.0)	(2.7)	(9.6)	(1.8)	(17.8)	(0.8)	(15.8)	(0.0)	(0.9)	(1.5)	(0.1)	(0.2)	(0.2)	(0.3)
4급	373,054	242,741	31,378	13,359	61,525	9,138	–	–	1	650	43	6	293	1,187	8,633	4,100
	(100.0)	(65.1)	(8.4)	(3.6)	(16.5)	(2.4)	–	–	(0.0)	(0.2)	(0.0)	(0.0)	(0.1)	(0.3)	(2.3)	(1.1)
5급	530,714	370,479	29,101	21,221	75,333	3	–	–	–	18,355	690	126	9,681	76	4,609	1,040
	(100.0)	(69.8)	(5.5)	(4.0)	(14.2)	(0.0)	–	–	–	(3.5)	(0.1)	(0.0)	(1.8)	(0.0)	(0.9)	(0.2)
6급	637,726	401,104	27,637	168,115	40,865	1	–	–	–	–	–	–	–	2	1	1
	(100.0)	(62.9)	(4.3)	(26.4)	(6.4)	(0.0)	–	–	–	–	–	–	–	(0.0)	(0.0)	(0.0)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등록 장애인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등록장애인은 58.0%로 여성 등록장애인 42.0%보다 16.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69세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70-79세 21.4%, 50-59세 20.5% 순임
  - 장애등급별로는 6급이 25.4%로 가장 높았으며, 5급 21.1%, 3급 17.3% 순임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함

〈표 1-1-3〉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구 비율
2001	48,021,543	1,134,177	2.4
2002	48,229,948	1,294,254	2.7
2003	48,386,823	1,454,215	3.0
2004	48,583,805	1,610,994	3.3
2005	48,782,274	1,789,443	3.7
2006	48,991,779	1,967,326	4.0
2007	49,268,928	2,104,889	4.3
2008	49,540,367	2,246,965	4.5
2009	49,773,145	2,429,547	4.9
2010	50,515,666	2,517,312	5.0
2011	50,734,284	2,519,241	5.0
2012	50,948,272	2,511,159	4.9
2013	51,141,463	2,501,112	4.9
2014	51,327,916	2,494,460	4.9
2015	51,529,338	2,490,406	4.8
2016	51,696,216	2,511,051	4.9

주: 1) 비율은 장애인구/주민등록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2)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장애인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6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511,051명으로 전체인구(51,696,216명) 대비 약 4.9%로 2001년(2.4%) 대비 2배 수준임

(2) 장애인 출현율

〈표 1-1-4〉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복장애
2005	4.59	1.99	0.32	0.42	0.40	0.02	0.12	0.01	0.18	0.06	0.08	0.05	0.02	0.01	0.03	0.02	0.86
2011	5.61	2.72	0.59	0.51	0.50	0.04	0.28	0.01	0.23	0.10	0.04	0.04	0.02	0.00	0.03	0.02	0.48
2014	5.59	2.71	0.48	0.53	0.50	0.03	0.36	0.02	0.23	0.12	0.02	0.03	0.02	0.01	0.03	0.01	0.49

주: 1) 2005년 자료는 시설장애인을 포함함
2) 2011, 2014년의 경우 재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별도 산정하였으나, 시설장애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여 중복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3) 2008년 장애인출현율은 조사되지 않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2011년 5.61%에서 2014년 5.59%로 다소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14년 출현율이 0.72%p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타 장애유형에 비하여 지적장애의 출현율은 2005년 0.12%에서 2011년 0.28%, 2014년 0.36%로 꾸준히 증가함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3)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표 1-1-5〉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등록장애인 수	65세 이상 장애인구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
2007	2,104,889	688,884	32.7	9.9
2008	2,246,965	771,814	34.3	10.2
2009	2,429,547	869,059	35.8	10.6
2010	2,517,312	934,634	37.1	10.9
2011	2,519,241	957,824	38.0	11.2
2012	2,511,159	987,251	39.3	11.7
2013	2,501,112	1,142,289	40.4	12.2
2014	2,494,460	1,033,308	41.4	12.7
2015	2,490,406	1,053,364	42.3	13.2
2016	2,511,051	1,089,317	43.4	13.5

주: 1) 인구수는 각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수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용어조회 '고령화율')이므로 전체 등록장애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구로 비율을 구성하였음

자료: 1) 보건복지부(각년도). 「등록장애인현황」
2) 통계청(각년도). 「고령인구비율(시도)」

-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2,511,051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089,317명(43.4%)으로 고령화수준은 2013년 40%대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장애인구 중 40%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고령화는 1956년 UN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 사용한 용어로 각 국가의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져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충격을 줄 만큼 기형적인 연령 구조를 말함.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함(권혁남, 전상길, 2009, 고령자의 고용장애 요인과 고령인구 활용에 과한 국가별 전략 연구, 국제 지역연구 18권 2호, 여름 pp.39-78)

(4) 장애등급심사

〈표 1-1-6〉 장애등급심사 - 연도별

(단위: 건, %)

구 분	총계	등급결정							등급 외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누계	1,627,838	1,363,384	163,034	369,558	347,188	145,711	151,275	186,618	234,068	5,021	25,365
	(100.0)	(83.8)	(10.0)	(22.7)	(21.3)	(9.0)	(9.3)	(11.5)	(14.4)	(0.3)	(1.6)
2007	15,204	14,414	3,459	6,874	3,541	303	163	74	370	29	391
	(100.0)	(94.8)	(22.8)	(45.2)	(23.3)	(2.0)	(1.1)	(0.5)	(2.4)	(0.2)	(2.6)
2008	26,683	25,113	5,511	12,282	5,904	812	423	181	811	71	688
	(100.0)	(94.1)	(20.7)	(46.0)	(22.1)	(3.0)	(1.6)	(0.7)	(3.0)	(0.3)	(2.6)
2009	37,230	35,365	7,138	18,938	7,505	1,129	470	185	916	155	794
	(100.0)	(95.0)	(19.2)	(50.9)	(20.2)	(3.0)	(1.3)	(0.5)	(2.5)	(0.4)	(2.1)
2010	163,943	152,058	35,121	54,340	46,673	9,469	3,455	3,000	7,996	837	3,052
	(100.0)	(92.8)	(21.4)	(33.1)	(28.5)	(5.8)	(2.1)	(1.8)	(4.9)	(0.5)	(1.9)
2011	211,371	169,602	21,298	40,465	50,087	17,918	17,214	22,620	36,653	1,325	3,791
	(100.0)	(80.2)	(10.1)	(19.1)	(23.7)	(8.5)	(8.1)	(10.7)	(17.3)	(0.6)	(1.8)
2012	239,854	192,725	19,519	42,740	51,309	21,808	23,999	33,350	42,104	762	4,263
	(100.0)	(80.4)	(8.1)	(17.8)	(21.4)	(9.1)	(10.0)	(13.9)	(17.6)	(0.3)	(1.8)
2013	232,655	189,433	17,657	44,820	49,421	22,038	23,406	32,091	39,102	656	3,464
	(100.0)	(81.4)	(7.6)	(19.3)	(21.2)	(9.5)	(10.1)	(13.8)	(16.8)	(0.3)	(1.5)
2014	237,548	194,902	17,615	48,751	51,725	22,278	22,904	31,629	38,405	768	3,473
	(100.0)	(82.0)	(7.4)	(20.5)	(21.8)	(9.4)	(9.6)	(13.3)	(16.2)	(0.3)	(1.5)
2015	226,931	189,157	17,607	49,342	47,138	21,376	23,001	30,692	34,501	289	2,984
	(100.0)	(83.4)	(7.8)	(21.7)	(20.8)	(9.4)	(10.1)	(13.5)	(15.2)	(0.1)	(1.3)
2016	236,419	200,617	18,109	51,001	33,890	28,579	36,237	32,801	33,207	130	2,465
	(100.0)	(84.9)	(7.7)	(21.6)	(14.3)	(12.1)	(15.3)	(13.9)	(14.0)	(0.1)	(1.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총계는 누계를 의미함
3)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 등급 심사건수는 2011년 20만명을 넘은 이후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12년 17.6%를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 등급 심사는 총 1,627,838건이 있었고, 이 중 83.8%(1,363,384명)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 중에서는 2급의 비율이 22.7%로 가장 높고 3급이 21.3%, 6급이 11.5% 순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7〉 장애등급심사 – 장애유형별

구분	총계	등급결정							등급외	확인불가	결정보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1,627,838	1,363,384	163,034	369,558	347,188	145,711	151,275	186,618	234,088	5,021	25,365
	(100.0)	(83.8)	(10.0)	(22.7)	(21.3)	(9.0)	(9.3)	(11.5)	(14.4)	(0.3)	(1.6)
뇌병변	315,432	284,488	71,110	41,055	51,082	41,772	40,931	38,538	25,528	1,288	4,128
(19.4)	(100.0)	(90.2)	(22.5)	(13.0)	(16.2)	(13.2)	(13.0)	(12.2)	(8.1)	(0.4)	(1.3)
지체	330,759	200,248	11,300	14,051	15,223	34,681	38,839	86,154	126,539	598	3,374
(20.3)	(100.0)	(60.5)	(3.4)	(4.2)	(4.6)	(10.5)	(11.7)	(26.0)	(38.3)	(0.2)	(1.0)
정신	264,247	235,628	2,795	72,953	159,880	–	–	–	22,779	239	5,601
(16.2)	(100.0)	(89.2)	(1.1)	(27.6)	(60.5)	–	–	–	(8.6)	(0.1)	(2.1)
지적	160,508	152,991	32,813	53,446	66,732	–	–	–	6,631	616	270
(9.9)	(100.0)	(95.3)	(20.4)	(33.3)	(41.6)	–	–	–	(4.1)	(0.4)	(0.2)
신장	146,636	146,053	2	140,422	–	–	5,629	–	65	8	510
(9.0)	(100.0)	(99.6)	(0.0)	(95.8)	–	–	(3.8)	–	(0.0)	(0.0)	(0.3)
시각	111,388	96,003	19,370	3,465	5,354	8,408	10,928	48,478	10,690	1,182	3,513
(6.8)	(100.0)	(86.2)	(17.4)	(3.1)	(4.8)	(7.5)	(9.8)	(43.5)	(9.6)	(1.1)	(3.2)
청각	125,916	111,389	3	15,444	12,631	27,878	41,990	13,443	13,694	108	725
(7.7)	(100.0)	(88.5)	(0.0)	(12.3)	(10.0)	(22.1)	(33.3)	(10.7)	(10.9)	(0.1)	(0.6)
중복	32,401	31,758	11,810	9,414	7,461	2,743	325	5	525	41	77
(2.0)	(100.0)	(98.0)	(36.4)	(29.1)	(23.0)	(8.5)	(1.0)	(0.0)	(1.6)	(0.1)	(0.2)
자폐성	25,630	24,680	10,176	11,134	3,370	–	–	–	915	22	13
(1.6)	(100.0)	(96.3)	(39.7)	(43.4)	(13.1)	–	–	–	(3.6)	(0.1)	(0.1)
뇌전증	23,482	14,921	–	892	2,567	9,381	2,081	–	6,555	62	1,944
(1.4)	(100.0)	(63.5)	–	(3.8)	(10.9)	(39.9)	(8.9)	–	(27.9)	(0.3)	(8.3)
호흡기	21,655	15,946	2,941	4,785	8,088	–	132	–	3,640	425	1,644
(1.3)	(100.0)	(73.6)	(13.6)	(22.1)	(37.3)	–	(0.6)	–	(16.8)	(2.0)	(7.6)
언어	24,351	18,862	–	–	9,873	8,989	–	–	3,750	351	1,388
(1.5)	(100.0)	(77.5)	–	–	(40.5)	(36.9)	–	–	(15.4)	(1.4)	(5.7)
장루,요루	17,809	16,182	–	112	719	11,702	3,649	–	457	2	1,168
(1.1)	(100.0)	(90.9)	–	(0.6)	(4.0)	(65.7)	(20.5)	–	(2.6)	(0.0)	(6.6)
심장	13,541	4,306	126	724	2,942	–	514	–	8,669	49	517
(0.8)	(100.0)	(31.8)	(0.9)	(5.3)	(21.7)	–	(3.8)	–	(64.0)	(0.4)	(3.8)
간	12,617	9,390	588	1,580	1,121	–	6,101	–	2,715	30	482
(0.8)	(100.0)	(74.4)	(4.7)	(12.5)	(8.9)	–	(48.4)	–	(21.5)	(0.2)	(3.8)
안면	1,466	539	–	81	145	157	156	–	916	–	11
(0.1)	(100.0)	(36.8)	–	(5.5)	(9.9)	(10.7)	(10.6)	–	(62.5)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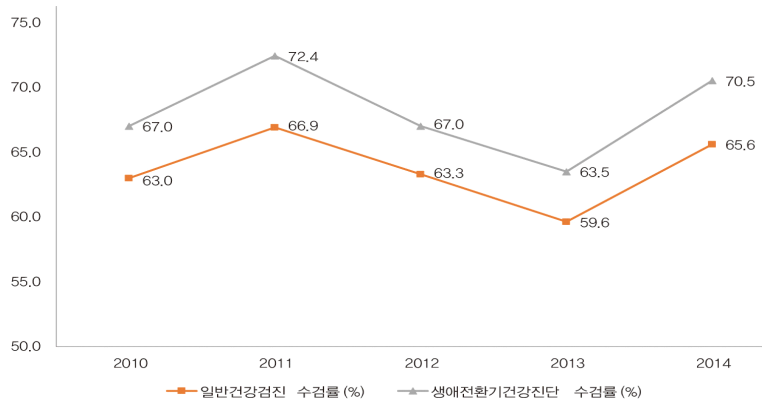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등급 심사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장애 31.8%, 안면장애 36.8%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장애를 인정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뇌병변, 지적, 신장, 자폐성, 장루·요루장애의 장애인정률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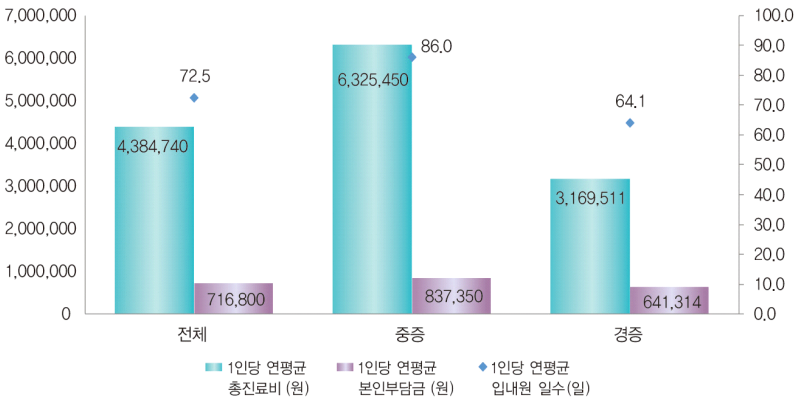
장애등급심사: 2007년 4월 중증장애인 장애판정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 2007년 4월부터 의사중심의 장애등급심사 체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로 변경됨

2. 건강 및 보건

[그림 2-2-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그림 2-2-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연도별로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화기건강진단 모두 건강검진 대상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추가된 2012년 수검률이 감소함. 2014년 수검률은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2014년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4,384,740원이며,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716,800원임.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72.5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입내원 일수 모두 경증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1) 건강상태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옷 입고 벗기	완전자립	81.1	91.1	43.2	79.3	95.5	80.8	47.2	23.2
	부분도움	15.2	7.3	37.3	18.7	3.5	18.6	48.6	73.2
	완전도움	3.7	1.6	19.5	2.0	1.0	0.6	4.2	3.6
세수하기	완전자립	89.5	96.4	64.9	91.8	97.4	92.5	65.9	38.2
	부분도움	7.2	2.4	17.3	7.1	1.4	6.9	30.0	55.4
	완전도움	3.3	1.3	17.8	1.0	1.2	0.6	4.1	6.4
양치질 하기	완전자립	89.4	96.7	65.6	92.3	97.1	89.5	62.1	63.5
	부분도움	7.4	2.1	17.8	6.8	1.9	9.9	33.2	52.3
	완전도움	3.1	1.2	16.7	0.9	0.9	0.6	4.7	11.2
목욕하기	완전자립	75.2	85.3	33.9	77.7	92.1	76.0	36.2	15.1
	부분도움	18.3	11.9	36.5	18.5	6.2	14.8	51.6	68.5
	완전도움	6.5	2.7	29.6	3.8	1.7	9.2	12.2	16.4
식사하기	완전자립	88.6	96.9	63.1	81.9	97.4	86.0	66.5	35.9
	부분도움	9.4	2.3	26.0	16.7	2.4	9.4	31.6	57.1
	완전도움	2.0	0.8	10.8	1.4	0.2	4.6	1.9	7.0
체위변경 하기	완전자립	92.9	95.0	67.8	97.1	98.8	96.9	95.3	98.3
	부분도움	5.3	4.0	21.5	2.4	0.9	3.1	4.3	-
	완전도움	1.8	1.0	10.7	0.4	0.3	-	10.3	1.7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0.9	92.8	61.6	97.2	97.9	93.4	96.2	100.0
	부분도움	7.0	6.0	27.1	2.1	1.6	6.6	3.2	-
	완전도움	2.1	1.2	11.3	0.7	0.5	-	0.6	-
옮겨앉기	완전자립	88.4	90.7	57.3	90.9	97.4	90.3	95.4	98.1
	부분도움	8.9	7.8	28.1	8.4	2.1	9.7	4.0	1.9
	완전도움	2.6	1.4	14.6	0.7	0.5	-	0.6	0.0
방 밖으로 나가기	완전자립	83.2	86.5	48.2	81.8	95.1	92.3	87.2	87.6
	부분도움	13.1	11.2	34.0	15.9	4.1	7.7	10.9	12.4
	완전도움	3.7	2.4	17.7	2.3	0.7	-	2.1	-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87.4	94.0	60.4	86.6	96.8	86.4	71.7	59.9
	부분도움	8.8	4.4	23.4	12.1	2.2	13.1	25.1	38.3
	완전도움	3.8	1.6	16.3	1.3	1.0	0.6	3.1	1.9
대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3.2	97.3	73.2	97.1	97.5	99.4	85.4	89.4
	부분도움	3.4	1.1	12.6	1.1	2.0	0.6	12.5	8.9
	완전도움	3.4	1.6	14.3	1.2	0.5	-	2.1	1.7
소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3.0	96.5	70.7	97.5	96.9	98.3	88.0	93.3
	부부도움	3.8	1.7	14.4	1.3	2.6	1.7	9.5	6.7
	완전도움	3.2	1.7	14.8	1.3	0.5	-	2.5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완전자립에 응답한 비율에서 '목욕하기'가 75.2%, '옷 입고 벗기'가 81.1%, '방 밖으로 나가기'가 83.2%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옷 입고 벗기	완전자립	79.7	92.9	87.9	83.4	96.9	100.0	91.9	84.5
	부분도움	18.3	5.2	8.2	16.6	3.1	–	8.1	10.1
	완전도움	1.9	1.9	4.0	–	–	–	–	5.4
세수하기	완전자립	85.2	96.0	96.0	84.8	100.0	100.0	96.6	84.0
	부분도움	13.5	1.9	–	15.2	–	–	3.4	10.6
	완전도움	1.2	2.1	4.0	–	–	–	0.0	5.4
양치질 하기	완전자립	8.0	96.9	96.0	84.8	100.0	100.0	100.0	84.0
	부분도움	15.8	1.3	–	15.2	–	–	–	16.0
	완전도움	1.2	1.9	4.0	–	–	–	–	–
목욕하기	완전자립	76.1	83.8	85.0	62.6	96.0	100.0	85.2	81.3
	부분도움	20.7	12.3	11.0	31.0	4.0	–	14.8	8.8
	완전도움	3.2	3.9	4.0	6.5	–	–	–	9.9
식사하기	완전자립	85.1	97.2	96.0	90.7	100.0	100.0	96.6	85.8
	부분도움	13.8	2.3	–	9.3	–	–	3.4	14.2
	완전도움	1.0	0.5	4.0	–	–	–	–	–
체위변경 하기	완전자립	97.4	97.9	94.1	89.2	100.0	100.0	96.6	94.1
	부분도움	2.0	1.4	5.9	10.8	–	–	3.4	5.9
	완전도움	0.6	0.7	–	–	–	–	–	–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7.5	95.7	94.0	83.4	100.0	100.0	96.6	89.2
	부분도움	1.9	2.8	2.0	16.6	–	–	3.4	5.4
	완전도움	0.6	1.5	4.0	–	–	–	–	5.4
옮겨앉기	완전자립	97.1	92.2	87.9	77.9	100.0	100.0	96.2	86.4
	부분도움	1.8	6.2	8.2	22.1	–	–	3.8	8.2
	완전도움	1.0	1.5	4.0	–	–	–	–	5.4
방 밖으로 나가기	완전자립	92.6	89.7	84.2	75.4	96.9	100.0	94.7	86.4
	부분도움	6.3	9.5	11.8	24.6	3.1	–	5.3	7.7
	완전도움	1.0	0.7	4.0	–	–	–	–	5.9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94.9	93.8	94.0	82.8	100.0	100.0	8.7	85.3
	부분도움	3.8	4.7	2.0	17.2	–	–	2.1	9.3
	완전도움	1.3	1.5	4.0	–	–	–	94.2	5.4
대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5.7	97.4	96.0	90.8	100.0	100.0	5.6	94.6
	부분도움	3.0	1.4	–	9.2	–	–	–	–
	완전도움	1.3	1.2	4.0	–	–	–	94.4	5.4
소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5.7	98.2	91.7	86.2	100.0	100.0	62.9	94.6
	부부도움	3.1	0.6	4.3	13.8	–	–	1.5	–
	완전도움	1.2	1.2	4.0	–	–	–	35.5	5.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는 '목욕하기', '옷 입고 벗기', '양치질하기', '세수하기'에서의 도움 정도가 각각 84.9%, 76.8%, 63.5%, 61.8%로 각 항목에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함
- 장루·요루장애는 '화장실 사용하기'에서의 도움 정도가 96.3%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옷 입고 벗기	완전자립	81.1	80.7	81.6	37.6	76.6	86.0	81.1	61.4	94.2	81.4
	부분도움	15.2	16.0	14.2	47.6	19.1	12.2	14.3	30.1	5.2	15.0
	완전도움	3.7	3.3	4.2	14.8	4.2	1.7	4.6	8.4	0.6	3.3
세수하기	완전자립	89.5	89.8	89.1	49.2	84.7	94.0	89.8	76.7	97.9	89.6
	부분도움	7.2	7.2	7.3	35.7	11.7	4.3	6.3	16.0	1.7	7.2
	완전도움	3.3	3.0	3.7	115.0	3.5	1.6	3.9	7.4	0.5	3.2
양치질 하기	완전자립	89.4	90.0	88.7	49.0	84.2	93.7	90.2	76.0	98.0	89.4
	부분도움	7.4	7.3	7.7	34.1	12.1	4.8	6.3	16.8	1.5	7.5
	완전도움	3.1	2.8	3.6	16.9	3.7	1.5	3.5	7.1	0.5	3.1
목욕하기	완전자립	75.2	77.4	72.1	28.9	73.6	83.0	71.9	54.5	89.8	76.0
	부분도움	18.3	16.7	20.4	43.9	19.4	13.8	20.1	31.2	8.9	17.7
	완전도움	6.5	5.8	7.5	27.3	7.0	3.2	8.0	14.2	1.3	6.3
식사하기	완전자립	88.6	89.0	88.0	55.5	83.8	92.8	88.8	75.2	97.4	88.7
	부분도움	9.4	9.1	9.7	32.4	13.5	6.1	9.2	20.1	2.2	9.2
	완전도움	2.0	1.8	2.3	12.0	2.7	1.1	2.0	4.7	0.3	2.1
체위 변경하기	완전자립	92.9	93.7	91.8	87.4	94.7	95.5	90.4	86.2	97.4	93.0
	부분도움	5.3	4.7	6.1	7.0	3.6	3.5	7.4	9.7	2.3	5.2
	완전도움	1.8	1.6	2.1	5.6	1.8	1.1	2.2	4.1	0.3	1.8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0.9	92.6	88.7	87.4	93.9	94.2	87.2	83.7	95.9	91.1
	부분도움	7.0	5.4	9.0	7.3	4.0	4.6	10.1	11.6	3.8	6.8
	완전도움	2.1	2.0	2.3	5.3	2.1	1.2	2.7	4.7	0.4	2.1
옮겨앉기	완전자립	88.4	90.1	86.2	86.2	92.5	91.8	84.1	79.1	94.7	88.6
	부분도움	8.9	7.6	10.7	6.5	4.8	6.7	12.6	14.9	4.9	8.8
	완전도움	2.6	2.3	3.0	7.3	2.7	1.5	3.2	5.9	0.4	2.6
방밖으로 나가기	완전자립	83.2	85.9	79.4	78.6	89.4	87.9	77.0	71.5	91.5	83.7
	부분도움	13.1	10.9	16.1	14.0	6.6	9.9	18.4	20.5	7.6	12.7
	완전도움	3.7	3.1	4.5	7.4	4.0	2.1	4.7	8.0	0.8	3.6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87.4	88.4	86.1	58.3	86.3	92.3	85.4	74.7	96.1	87.7
	부분도움	8.8	8.2	9.6	29.4	10.0	5.5	9.9	18.1	2.4	8.5
	완전도움	3.8	3.4	4.3	12.3	3.7	2.2	4.6	7.2	1.5	3.8
대변조절 하기	완전자립	93.2	93.9	92.3	74.8	92.7	96.5	91.7	86.7	97.7	93.4
	부분도움	3.4	2.9	4.0	16.0	3.8	1.6	4.0	7.0	0.8	3.2
	완전도움	3.4	3.2	3.7	9.2	3.5	1.9	4.3	6.3	1.5	3.4
소변조절 하기	완전자립	93.0	94.4	91.0	80.5	93.9	96.5	90.3	86.2	97.7	93.2
	부부도움	3.8	2.9	5.0	10.7	3.0	1.9	5.4	7.4	1.3	3.7
	완전도움	3.2	2.7	3.9	8.8	3.1	1.6	4.3	6.4	1.0	3.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성별에 따른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주요 항목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에서 '목욕하기' 28.9%, '옷 입고 벗기' 37.6%, '양치질하기' 49.0% 로 각 항목에서의 자립정도가 낮음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이란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전화 사용하기	완전자립	74.4	92.9	53.2	74.7	37.2	31.6	29.5	13.9
	적은부분도움	13.4	4.4	17.1	17.7	37.2	33.7	29.4	32.0
	많은부분도움	4.7	1.0	7.7	4.6	11.4	6.5	17.3	16.9
	완전도움	7.5	1.8	22.0	3.0	14.2	28.2	23.8	37.2
물건사기	완전자립	72.9	88.9	42.6	68.1	75.0	49.8	14.2	5.4
	부분도움	16.7	7.3	26.7	22.0	20.4	35.9	49.9	41.9
	완전도움	10.4	3.8	30.7	9.8	4.5	14.3	35.9	52.7
식사준비	완전자립	67.0	79.7	27.9	67.1	81.3	61.7	15.1	1.7
	적은부분도움	13.1	10.7	18.4	12.5	8.6	23.7	23.7	21.8
	많은부분도움	9.3	5.1	17.5	8.5	6.3	11.3	31.1	35.0
	완전도움	10.6	4.5	36.2	11.8	3.7	3.4	30.1	41.6
집안일	완전자립	64.6	74.7	25.3	67.3	84.6	61.7	16.1	–
	적은부분도움	18.1	16.2	25.1	13.9	9.5	20.5	38.7	39.3
	많은부분도움	6.9	4.1	13.7	7.7	3.4	7.6	20.4	31.8
	완전도움	10.3	4.9	35.8	11.1	2.5	10.2	24.8	28.9
빨래하기	완전자립	67.3	78.3	26.9	68.7	84.5	94.0	21.2	–
	적은부분도움	15.0	12.4	21.6	14.4	8.5	12.6	31.8	33.8
	많은부분도움	7.0	4.2	14.2	7.4	3.8	8.0	19.1	33.3
	완전도움	10.7	5.2	37.4	9.5	3.2	12.4	27.8	32.8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83.6	95.4	59.9	81.7	92.9	75.2	34.5	12.8
	부분도움	10.7	2.8	19.3	14.8	5.7	15.3	46.2	53.7
	완전도움	5.7	1.8	20.8	3.5	1.5	9.5	19.3	33.5
금전관리	완전자립	74.4	90.8	47.5	71.0	79.1	55.1	9.2	5.8
	부분도움	12.7	6.2	18.5	18.4	14.7	29.5	29.6	26.2
	완전도움	13.0	2.9	34.0	10.6	6.2	15.4	61.2	68.1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66.2	80.2	31.0	64.1	74.7	57.0	16.4	7.5
	적은부분도움	14.8	10.5	17.8	17.7	17.5	23.3	30.2	27.7
	많은부분도움	6.5	3.2	12.4	7.4	2.6	4.3	21.6	18.1
	완전도움	12.6	6.2	38.8	10.9	5.1	15.4	31.8	46.7
본인물건 관리하기	완전자립	21.3	66.3	23.1	62.5	84.2	–	10.0	–
	부분도움	46.3	22.8	8.7	37.5	15.8	42.4	68.5	30.6
	완전도움	32.4	10.9	68.2	–	–	57.6	21.5	69.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본인 물건 관리하기'가 21.3%, '집안일'이 64.6%, '교통수단 이용하기'가 66.2%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화 사용하기	완전자립	90.0	93.3	77.9	90.6	96.9	96.5	93.0	71.2
	적은부분도움	17.7	4.8	13.8	9.1	3.1	3.5	4.6	14.1
	많은부분도움	7.1	1.3	4.3	–	–	–	2.3	5.4
	완전도움	5.1	0.5	4.0	0.3	–	–	–	9.3
물건사기	완전자립	61.1	87.8	79.6	90.0	96.9	100.0	89.9	66.8
	부분도움	27.2	9.6	10.3	22.6	3.1	–	3.3	23.3
	완전도움	11.7	2.7	10.2	7.5	–	–	6.7	9.9
식사준비	완전자립	51.8	76.0	70.4	47.1	94.0	100.0	78.2	59.5
	적은부분도움	23.6	12.6	10.7	20.7	1.3	–	13.7	14.5
	많은부분도움	14.6	7.3	18.8	11.1	4.7	–	4.8	10.6
	완전도움	10.0	4.1	–	21.1	–	–	3.4	15.3
집안일	완전자립	55.8	73.8	61.2	41.2	94.4	100.0	69.7	69.2
	적은부분도움	23.9	14.6	25.5	36.5	–	–	23.5	15.5
	많은부분도움	10.8	5.7	13.2	4.4	0.9	–	3.4	–
	완전도움	9.5	5.8	–	17.8	4.7	–	3.4	15.3
빨래하기	완전자립	59.8	74.1	72.1	49.4	94.4	100.0	96.9	62.1
	적은부분도움	21.7	15.5	14.7	22.5	0.9	–	19.2	16.9
	많은부분도움	10.4	5.0	13.3	8.4	1.6	–	6.1	–
	완전도움	8.1	5.4	–	19.6	3.1	–	4.8	21.0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68.1	92.9	92.5	85.8	96.9	100.0	93.3	87.5
	부분도움	24.6	5.6	3.6	14.2	3.1	–	6.7	7.1
	완전도움	7.3	1.5	4.0	–	–	–	–	5.4
금전관리	완전자립	46.9	91.3	74.9	76.5	96.9	96.5	90.6	68.3
	부분도움	29.9	3.3	21.1	12.9	3.1	3.5	8.1	16.5
	완전도움	23.2	5.4	4.0	10.6	–	–	1.3	15.3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51.8	80.3	54.7	53.9	96.9	100.0	87.6	58.2
	적은부분도움	22.7	6.4	31.5	20.6	–	–	3.7	15.1
	많은부분도움	13.3	5.8	9.9	7.6	–	–	5.3	5.2
	완전도움	12.2	7.5	4.0	17.9	3.1	–	3.4	21.4
본인물건 관리하기	완전자립	–	–	–	–	–	–	–	–
	부분도움	–	–	–	–	–	–	–	100.0
	완전도움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전화 사용하기	완전자립	74.4	77.0	70.9	89.8	70.9	83.9	70.2	55.9	87.5	75.1
	적은부분도움	13.4	11.8	15.6	22.3	14.1	9.1	16.3	19.3	9.0	13.0
	많은부분도움	4.7	4.3	5.3	16.5	5.5	3.0	5.2	8.8	1.9	4.6
	완전도움	7.5	6.9	8.3	31.4	9.6	4.0	8.3	16.1	1.7	7.3
물건사기	완전자립	72.9	75.8	68.9	18.0	63.9	81.1	72.6	48.2	90.1	73.7
	부분도움	16.7	15.2	18.8	38.6	22.2	13.1	16.4	29.1	7.6	16.0
	완전도움	10.4	9.0	12.3	43.4	13.9	5.8	11.0	22.7	2.3	10.2
식사준비	완전자립	67.0	66.5	67.6	17.0	59.2	75.1	64.0	41.3	84.2	67.8
	적은부분도움	13.1	12.2	14.2	25.5	13.1	10.9	14.7	19.5	8.7	12.8
	많은부분도움	9.3	10.8	7.2	23.8	13.1	7.6	9.0	16.9	4.1	9.0
	완전도움	10.6	10.4	10.9	33.6	14.6	6.3	12.4	22.4	3.0	10.4
집안일	완전자립	64.6	66.1	62.5	14.6	59.8	72.7	60.5	39.9	81.3	65.5
	적은부분도움	18.1	17.6	18.9	40.7	18.8	15.4	19.8	25.7	13.0	17.8
	많은부분도움	6.9	6.6	7.4	25.7	8.1	5.1	7.6	13.1	2.7	6.7
	완전도움	10.3	9.7	11.2	19.0	13.4	6.8	12.1	21.4	3.0	10.0
빨래하기	완전자립	67.3	67.8	66.6	17.1	61.5	75.7	63.4	42.8	83.6	68.0
	적은부분도움	15.0	14.8	15.4	31.6	15.9	12.4	16.6	21.9	10.4	14.8
	많은부분도움	7.0	7.2	6.6	21.9	8.3	5.6	7.3	13.0	3.0	6.8
	완전도움	10.7	10.2	11.4	29.3	14.3	6.3	12.8	22.4	3.1	10.5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83.6	84.2	82.9	25.0	75.9	90.2	84.5	65.0	96.4	84.1
	부분도움	10.7	10.5	10.9	41.1	15.6	7.3	9.8	22.3	2.6	10.3
	완전도움	5.7	5.4	6.2	33.9	8.5	2.5	5.7	12.7	1.0	5.6
금전관리	완전자립	74.4	78.5	68.7	12.6	64.5	83.9	73.7	51.4	90.4	75.1
	부분도움	12.7	10.0	16.2	22.5	14.8	8.6	14.7	20.3	7.0	12.2
	완전도움	13.0	11.5	15.1	65.0	20.7	7.4	11.6	28.3	2.6	12.7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66.2	71.4	59.1	18.0	62.0	76.4	61.9	42.1	83.7	67.4
	적은부분도움	14.8	12.1	18.5	18.2	16.2	11.0	17.2	20.4	10.2	14.2
	많은부분도움	6.5	5.8	7.4	22.6	7.8	4.4	6.7	11.7	2.8	6.3
	완전도움	12.6	10.8	15.0	41.3	14.0	8.1	14.1	25.7	3.3	12.1
본인물건 관리하기	완전자립	21.3	14.6	32.4	21.3	–	–	–	16.9	50.7	22.0
	부분도움	46.3	48.4	43.0	46.3	–	–	–	45.4	40.0	44.6
	완전도움	32.4	37.0	24.6	32.4	–	–	–	37.7	9.3	33.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전화 사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에서 자립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본인 물건 관리하기'에서 자립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7세 이하의 자립정도가 낮음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이란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이상의 것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3) 만성질환

〈표 2-1-5〉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연도별	2011	70.0	68.3	88.1	64.7	70.7	56.1	36.1	20.8
	2014	75.8	75.5	88.1	71.5	76.7	54.0	44.7	37.2
만성질환 유형별	고혈압	52.6	53.9	66.3	57.4	53.0	47.5	23.8	-
	이상지혈증	12.4	13.6	14.6	13.2	12.4	10.6	3.3	-
	뇌졸증	12.9	4.4	70.3	6.9	3.3	38.5	1.3	-
	심근경색증	4.5	4.3	7.1	3.9	5.7	-	1.7	-
	협심증	4.8	5.6	5.5	5.3	3.9	3.7	-	-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	29.7	39.7	19.4	27.1	27.4	15.1	8.0	-
	류미티스관절염	3.5	4.9	2.7	2.1	2.8	2.1	0.6	-
	요통	16.7	22.5	11.0	12.2	17.1	7.5	6.0	-
	폐결핵	0.5	0.3	0.4	0.8	0.8	-	0.5	-
	천식	3.6	3.5	2.4	4.2	3.7	4.0	2.8	15.5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2.4	2.0	1.8	1.7	1.9	2.1	2.9	-
	우울증	9.1	7.5	12.0	5.6	5.1	-	9.6	-
	아토피 피부염	2.1	2.0	1.5	3.0	1.2	-	6.3	4.9
	신부전	4.1	1.5	1.8	2.2	1.3	-	0.7	-
	당뇨병	25.1	24.3	29.1	29.2	20.9	30.6	20.0	10.4
	갑상선장애	3.5	4.2	2.2	3.9	3.7	3.9	1.4	-
	위암	0.8	0.9	0.4	0.8	0.9	-	-	-
	간암	0.4	0.3	-	-	0.7	-	-	-
	대장암	0.7	0.4	1.0	0.7	8.0	-	-	-
	유방암	0.3	0.5	0.3	0.4	-	-	-	0.4
	자궁경부암	0.2	0.1	0.5	-	0.2	-	-	-
	폐암	0.1	0.1	-	0.2	-	3.9	-	-
	기타암	2.3	1.8	2.6	2.8	2.3	32.1	0.2	-
	위십이지장궤양	2.7	2.5	2.7	4.0	4.7	5.9	0.9	-
	B형간염	1.1	1.1	0.8	0.2	1.5	-	2.0	-
	C형간염	0.2	0.1	0.4	0.3	0.6	-	-	-
	간경변증	0.7	0.5	1.0	0.7	0.7	-	-	-
	기타	37.4	34.3	30.7	36.1	35.8	38.6	56.3	8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은 2011년 70.0%에서 2014년 75.8%로 다소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2014년 기준, 심장장애 100.0%, 뇌전증장애 98.5%, 호흡기장애 97.9% 순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1-5〉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11	83.2	95.8	69.5	96.6	70.0	57.9	81.1	100.0
	2014	92.6	96.3	100.0	97.9	94.1	68.1	95.9	98.5
만성질환 유형별	고혈압	14.6	72.5	53.9	43.9	45.5	34.5	40.0	17.1
	이상지혈증	5.1	12.4	5.5	6.3	9.7	–	0.9	5.3
	뇌졸증	0.9	5.2	14.9	5.3	–	–	4.0	13.7
	심근경색증	–	2.6	34.5	6.7	3.6	–	2.0	–
	협심증	–	4.8	13.4	9.2	3.2	–	4.0	–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5.3	14.4	23.0	12.7	15.9	11.7	15.3	12.9
	류미티스관절염	1.5	1.3	–	2.4	–	–	1.2	0.5
	요통	4.5	4.2	–	7.8	5.2	31.3	6.6	14.5
	폐결핵	1.3	–	–	9.5	–	–	–	–
	천식	1.3	2.9	–	38/.9	0.4	5.1	0.3	–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1.4	1.2	–	73.6	1.7	–	–	–
	우울증	39.0	4.6	19.1	7.0	4.6	–	3.2	5.7
	아토피 피부염	0.8	3.4	–	–	1.6	19.6	5.6	–
	신부전	–	76.3	6.6	–	3.3	–	1.1	–
	당뇨병	16.0	43.4	16.7	32.8	34.2	29.5	26.1	8.4
	갑상선장애	1.9	4.9	–	0.7	6.3	–	1.0	–
	위암	0.5	1.0	3.6	–	0.9	–	6.4	–
	간암	–	–	–	–	25.0	–	0.8	–
	대장암	–	0.4	–	–	–	–	23.3	–
	유방암	0.3	–	–	–	–	–	–	0.3
	자궁경부암	–	0.7	–	–	–	–	1.0	–
	폐암	–	–	–	3.2	–	–	–	–
	기타암	–	0.9	–	4.6	–	–	30.5	5.3
	위십이지장궤양	1.2	1.7	6.6	1.4	1.6	26.9	–	–
	B형간염	0.9	1.0	–	–	28.6	–	–	–
	C형간염	–	–	–	–	1.9	–	–	–
	간경변증	0.2	–	–	–	34.0	–	–	–
	기타	78.2	22.7	53.0	54.2	20.7	45.9	34.7	93.5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질환유형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이 5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37.4%,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29.7% 순임
- 질환유형 및 장애유형별로는 고혈압에서는 신장장애가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골관절염(퇴행정관절염)에서는 지체장애가 39.7%, 당뇨병에서는 신장장애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6〉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연도별	2011	70	63.4	79.1	33.2	38.9	68.9	88.3	68.0	70.2	69.7
	2014	75.8	70.0	83.7	33.8	45.5	73.3	92.0	74.4	75.8	75.2
만성질환 유형별	고혈압	52.6	51.7	53.5	-	17.4	48.1	63.5	47.0	55.5	52.2
	이상지혈증	12.4	11.4	13.5	1.5	4.7	13.8	13.1	10.2	13.5	12.2
	뇌졸증	12.9	13.7	12.0	0.7	2.5	11.3	16.2	18.9	9.2	13.0
	심근경색증	4.5	5.0	3.9	1.4	0.8	2.7	6.5	3.9	4.9	4.5
	협심증	4.8	4.3	5.4	-	0.6	3.3	6.7	3.5	5.7	4.9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	29.7	18.4	42.5	2.6	7.1	21.3	40.3	21.1	34.5	29.3
	류미티스관절염	3.5	1.6	5.6	-	2.0	3.0	4.2	2.4	4.0	3.4
	요통	16.7	13.3	20.5	3.4	5.9	14.7	20.4	10.8	19.8	16.3
	폐결핵	0.5	0.5	0.5	-	0.4	0.3	0.6	0.8	0.3	0.5
	천식	3.6	3.3	3.9	8.3	1.3	1.9	5.1	3.4	3.7	3.6
	폐질환 (만성기관지염,폐기종)	2.4	2.8	1.9	3.3	1.2	1.8	3.0	2.8	2.0	2.3
	우울증	9.1	7.1	11.3	0.5	17.6	9.2	7.6	13.2	6.1	8.8
	아토피 피부염	2.1	2.0	2.2	19.7	3.7	2.0	1.5	3.0	1.7	2.2
	신부전	4.1	4.4	3.7	-	5.3	3.9	4.0	7.6	1.6	3.9
	당뇨병	25.1	25.9	24.2	1.6	9.7	24.5	29.0	25.3	24.5	24.8
	갑상선장애	3.5	1.4	5.9	2.2	3.0	3.6	3.7	3.3	3.4	3.4
	위암	0.8	1.2	0.4	-	-	0.5	1.2	0.7	0.9	0.8
	간암	0.4	0.6	0.2	-	-	0.6	0.4	0.1	0.5	0.3
	대장암	0.7	1.0	0.3	-	-	0.5	1.0	0.5	0.8	0.6
	유방암	0.3	-	0.7	-	0.2	0.4	0.3	0.1	0.4	0.3
	자궁경부암	0.2	-	0.4	-	-	0.3	0.1	0.2	0.2	0.2
	폐암	0.1	0.2	0.1	-	-	-	0.3	0.1	0.1	0.1
	기타암	2.3	2.7	1.9	0.7	2.4	2.2	2.4	1.6	2.6	2.2
	위십이지장궤양	2.7	2.6	2.9	-	1.5	2.7	3.1	2.5	2.9	2.7
	B형간염	1.1	1.5	0.7	-	2.8	1.9	0.3	1.4	1.0	1.1
	C형간염	0.2	0.2	0.1	-	0.2	0.1	0.3	0.1	0.3	0.2
	간경변증	0.7	1.0	0.5	-	0.3	1.2	0.5	0.8	0.7	0.7
	기타	37.4	38.1	36.6	69.6	56.6	34.8	34.8	43.4	33.5	37.4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 유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3.7%, 남성이 70.0%로 남성보다 여성의 만성질환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92.0%로 가장 많고 45-64세 73.3%, 18-44세 44.5%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의 만성질환은 75.8%로 중증의 만성질환 74.4%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건강관리

(1) 스트레스 정도

〈표 2-2-1〉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11.5	10.0	16.1	14.6	7.8	18.8	6.3	19.9	18.0	19.3	6.1	10.7	19.9	23.9	13.1	22.5
	많이 느끼는 편	41.2	41.4	46.2	36.6	38.1	44.5	36.1	45.2	44.0	43.4	68.6	52.7	19.3	31.0	48.0	57.9
	조금 느끼는 편	34.5	37.4	26.6	34.4	38.5	20.9	36.0	23.9	21.8	31.5	24.7	24.3	35.9	30.1	30.8	13.9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2.8	11.6	11.1	14.3	15.6	15.8	21.6	11.1	16.2	5.7	0.7	12.3	24.9	15.0	8.2	5.7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20.9	21.2	24.9	18.1	17.2	17.4	13.0	37.9	27.1	24.7	32.7	13.8	33.0	40.9	39.2	27.3
	느끼는 편	40.1	40.3	41.0	44.2	37.8	41.0	36.8	31.0	38.5	39.9	32.3	45.9	17.2	33.5	30.2	42.5
	보통	21.1	21.0	19.7	21.1	24.3	23.3	23.0	26.6	16.8	16.7	24.2	24.1	17.1	–	23.0	24.8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0.6	13.2	17.7	15.5	22.3	–	13.7	13.7	10.8	12.9	30.7	25.6	7.6	5.4
	전혀 느끼지 않음	2.9	2.2	3.8	3.4	2.9	2.9	4.9	4.6	3.9	5.0	–	3.3	2.0	–	–	–

주: 1) 무응답제외
2) 가중치 반영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에서 '매우 많이 느낌(대단히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매우 많이 느끼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7%에서 2014년 61.0%로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매우 많이 느낌'의 응답이 각각 33.0%, 40.9%, 39.2%로 다른 장애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아 신체 내부장애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2〉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11.5	11.5	11.4	8.2	11.4	12.8	10.5	17.5	9.5	11.4
	많이 느끼는 편	41.2	40.6	42.1	34.8	41.2	43.6	39.3	42.7	41.0	41.4
	조금 느끼는 편	34.5	34.5	34.4	39.5	34.6	32.8	35.8	26.8	37.0	34.7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2.8	13.4	12.0	17.5	12.8	10.8	14.4	13.0	12.4	12.6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20.9	20.3	21.9	-	22.8	23.5	18.0	23.4	19.1	20.7
	느끼는 편	40.1	39.5	40.9	-	41.6	40.9	38.8	39.5	40.3	40.0
	보통	21.1	22.2	19.6	-	19.7	19.9	22.6	19.6	22.1	21.2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4.6	-	12.9	13.6	17.0	14.1	15.7	15.1
	전혀 느끼지 않음	2.9	2.8	3.0	-	2.9	2.1	3.5	3.4	2.8	3.0

주: 1) 무응답제외
2) 가중치 반영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정도에서 '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62.8%로 남성 59.8%보다 다소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56.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62.9%로 경증 59.4%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흡연 및 금연 여부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22.4	27.1	13.0	24.0	17.0	4.7	9.6	1.6
	가끔 피움	1.1	1.3	1.0	1.0	1.0	–	1.0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1.3	19.7	29.5	22.9	24.2	42.6	4.5	–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5.2	51.9	56.6	52.1	57.9	52.7	84.9	98.4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17.7	20.9	9.0	20.9	12.6	11.5	12.1	–
	가끔 피움	2.5	2.6	2.2	3.1	1.8	1.3	1.5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7	19.7	26.9	22.0	17.9	18.6	1.7	–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0.2	56.9	61.9	54.1	67.7	68.7	84.7	10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흡연여부에서 '매일 피움'의 비율은 2011년 22.4%에서 2014년 17.7%로 감소함
– 2014년 기준으로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는다'의 비율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38.7	9.2	–	3.8	39.3	12.8	6.9	26.3
	가끔 피움	0.9	1.1	–	–	–	–	–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8.1	34.8	28.2	68.8	15.7	28.8	35.7	–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2.2	54.9	71.8	27.4	45.0	58.3	57.3	69.5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29.7	10.2	–	3.1	6.1	16.3	10.8	8.6
	가끔 피움	2.6	4.5	–	0.7	3.6	–	1.3	7.4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4.8	26.7	39.2	58.6	49.8	22.6	30.2	17.3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2.9	58.7	60.8	37.6	40.5	61.1	57.7	66.7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흡연여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경우 흡연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84.7%, 100.0%로 매우 높음
- 반면, 호흡기장애와 간장애의 과거 흡연 비율은 각각 58.6%, 49.8%로 다른 장애에 비해 과거 흡연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32.3%, 24.0%, 23.5%로 다른 장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2-4〉 현재 흡연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22.4	36.1	3.7	0.5	34.1	28.8	11.6	15.7	24.6	22.6
	가끔 피움	1.1	1.7	0.3	-	1.6	1.1	0.9	1.2	1.0	1.1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1.3	34.8	2.7	-	8.6	22.5	26.6	19.7	21.7	21.3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5.2	27.4	93.3	99.5	55.7	47.6	60.9	63.3	52.6	55.0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17.7	28.3	3.2	-	24.4	27.0	7.7	14.9	19.7	17.8
	가끔 피움	2.5	3.8	0.7	-	3.2	3.2	1.6	2.4	2.5	2.4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7	32.5	2.3	-	9.8	22.1	22.2	17.4	20.8	19.5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0.2	35.4	93.8	100.0	62.6	47.7	68.6	65.3	57.1	60.3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흡연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흡연율은 4.0%로 남성의 흡연율 37.8%보다 매우 낮음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45-64세 이하의 흡연율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흡연율이 22.2%로 중증의 흡연율인 17.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2-5〉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28.1	32.2	18.7	27.7	23.2	4.7	34.0	–	27.3	20.1	–	5.2	36.7	30.8	17.4	32.9
2014	예	28.5	30.8	23.8	28.2	24.3	37.3	17.5	–	23.5	34	32.3	20.4	28.1	41.9	21.4	33.3
	아니오	71.5	69.2	76.2	71.8	75.7	62.7	82.5	–	76.5	66	67.7	79.6	71.9	58.1	78.6	66.7

주: 국민건강통계(2014)에 의하면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57.5%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2-2-6〉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28.1	28.2	25.9	–	44.1	29.2	18.4	22.9	29.7	28.5
2014	예	28.5	28.2	32.9	–	34.2	30.4	23.1	27.9	28.7	28.4
	아니오	71.5	71.8	67.1	–	65.8	69.6	76.9	72.1	71.3	71.6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2014년 금연시도율은 28.5%로 2011년 28.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전체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인 57.5%에 비해 매우 낮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장애, 신장장애의 금연시도율이 각각 37.3%, 34.0%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다소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의 금연시도율은 32.9%로 남성의 금연시도율 28.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8–44세 이하의 금연시도율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는 경증의 금연시도율이 28.7%로 중증의 금연시도율 27.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음주 빈도 및 음주량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0.1	51.9	76.0	53.1	60.7	55.9	82.9	95.4
	한 달에 1번미만	6.8	7.0	4.9	7.6	8.9	15.1	3.8	4.6
	한 달에 1번정도	5.5	6.6	4.3	6.0	4.6	4.8	2.3	-
	한 달에 2-4번	10.7	13.1	6.4	13.7	9.5	1.3	5.9	-
	일주일에 2-3번	9.7	13.1	4.2	9.9	8.8	17.9	1.3	-
	일주일에 4번이상	7.1	8.4	4.2	9.7	7.5	5.0	3.8	-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3.9	54.5	82.7	57.5	65.7	69.9	85.3	100.0
	한 달에 1번미만	4.8	5.1	4.0	5.4	6.0	3.9	4.8	-
	한 달에 1번정도	4.9	5.9	3.2	4.6	4.7	4.8	3.4	-
	한 달에 2-4번	9.7	12.6	4.6	11.3	7.4	13.6	3.0	-
	일주일에 2-3번	10.6	14.4	2.4	13.4	10.1	4.4	1.9	-
	일주일에 4번이상	6.1	7.5	3.2	7.7	6.1	3.4	1.6	-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최근 1년 동안 음주빈도에서 '전혀 마시지 않음'은 2011년 60.1%에서 2014년 63.9%로 다소 증가함
  - 술을 마시는 장애인의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주로 '일주일에 2-3번', '한 달에 2-4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73.5	82.4	81.0	83.6	87.2	84.5	66.6	78.1
	한 달에 1번미만	7.8	6.6	5.4	6.8	1.5	–	7.5	5.6
	한 달에 1번정도	4.0	2.5	7.5	6.1	–	–	3.5	6.0
	한 달에 2–4번	5.2	5.2	6.1	–	6.9	15.5	1.3	7.4
	일주일에 2–3번	2.8	3.0	–	2.1	4.5	–	18.3	2.9
	일주일에 4번이상	6.7	0.3	–	1.4		–	2.7	–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79.8	91.1	77.2	85.7	84.4	87.9	76.5	94.8
	한 달에 1번미만	2.5	1.9	8.3	2.1	2.6	–	4.6	–
	한 달에 1번정도	3.2	5.0	3.0	3.9	2.6	–	–	–
	한 달에 2–4번	5.8	7.5	7.5	2.1	1.6	–	5.6	–
	일주일에 2–3번	2.4	3.9	4.0	6.3	8.9	–	6.6	0.8
	일주일에 4번이상	6.3	0.7	–	–	–	12.1	6.7	4.4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비율은 자폐성장애 100.0%, 뇌전증장애 94.8%, 신장장애 91.1% 순으로 높음
- 반면 지체장애 54.5%, 시각장애 57.5%, 청각장애 65.7%로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표 2-2-8〉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0.1	46.2	79.2	97.2	50.9	50.5	72.4	76.9	54.9	59.7
	한 달에 1번미만	6.8	6.0	8.0	-	7.7	7.8	5.7	5.4	7.3	6.8
	한 달에 1번정도	5.5	6.1	4.8	-	5.6	7.2	4.1	3.8	6.0	5.5
	한 달에 2-4번	10.7	14.9	4.9	2.8	16.7	12.6	6.3	5.1	12.4	10.8
	일주일에 2-3번	9.7	15.3	2.1	-	13.3	13.2	4.9	5.1	11.3	9.9
	일주일에 4번이상	7.1	11.5	1.1	-	5.8	8.6	6.5	3.9	8.1	7.2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3.9	49.9	82.9	100.0	57.7	51.8	75.3	74.2	56.4	63.3
	한 달에 1번미만	4.8	5.0	4.6	-	6.0	5.0	4.4	3.5	5.6	4.8
	한 달에 1번정도	4.9	5.7	3.9	-	6.2	6.3	3.4	4.6	5.2	5.0
	한 달에 2-4번	9.7	13.1	5.2	-	13.7	13.5	5.3	6.5	12.1	10.0
	일주일에 2-3번	10.6	16.5	2.5	-	12.9	15.1	6.2	6.9	13.3	10.9
	일주일에 4번이상	6.1	9.9	0.9	-	3.5	8.3	5.4	4.2	7.3	6.1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최근 1년 동안 음주빈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음주율은 50.1%로 여성의 음주율 17.1%보다 매우 높음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45-46세 이하의 음주율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음주율이 43.5%로 중증의 음주율 25.7%보다 높게 나타남

〈표 2-2-9〉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5	26.0	41.8	28.2	34.6	11.9	51.9	100.0	55.9	61.1	64.0	79.6	54.8	88.7	58.2	38.7
	3-4잔	23.1	22.1	23.8	25.1	26.1	57.3	16.3	–	25.3	12.2	10.3	5.5	45.2		29.1	2.7
	5-6잔	11.2	12.1	7.2	12.5	10.7	9.2	4.3	–	4.8	15.6	25.8	–	–	–	5.6	–
	7-9잔	24.2	27.2	17.7	25.8	18.6	12.6	15.4	–	9.8	9.2	–	14.9	–	11.3	5.6	47.9
	10잔 이상	11.1	12.6	9.6	8.3	10.0	9.0	12.1	–	4.2	1.9	–		–	–	1.5	10.7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0	25.8	49.8	25.8	44.7	31.6	49.8	–	33.9	23.4	50.1	49.3	84.5	–	39.9	85.2
	3-4잔	25.1	26.6	15.0	21.8	23.1	36.0	28.1	–	24.2	29.2	35.7	18.2	–	–	38.5	14.8
	5-6잔	14.3	14.1	13.9	18.5	8.7	13.3	7.7	–	28.4	25.7	–	5.0	–	–	–	–
	7-9잔	19.7	20.6	16.7	24.0	17.1	19.2	10.7	–	4.2	16.1	14.2	12.7	15.5	100.0	21.6	–
	10잔 이상	10.8	12.9	4.6	10.0	6.5	–	3.9	–	9.4	5.6	–	14.8	–	–	–	–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2-2-10〉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5	21.0	64.1	100.0	21.3	25.0	47.8	42.0	28.6	30.3
	3-4잔	23.1	23.7	20.7	–	20.2	23.6	24.5	21.2	23.0	22.8
	5-6잔	11.2	12.6	6.2	–	14.3	12.0	7.2	12.4	11.0	11.2
	7-9잔	24.2	28.9	7.5	–	26.4	28.0	15.4	13.7	26.1	24.5
	10잔 이상	11.1	13.8	1.5	–	17.9	11.4	5.0	10.7	11.3	11.2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0	22.5	60.3	–	23.5	20.1	51.0	33.9	28.4	29.8
	3-4잔	25.1	25.3	24.4	–	22.8	26.3	24.6	27.4	24.4	25.2
	5-6잔	14.3	15.9	7.9	–	16.1	17.4	7.8	12.8	14.5	14.1
	7-9잔	19.7	23.1	6.3	–	22.3	22.9	12.6	18.4	20.8	20.1
	10잔 이상	10.8	13.3	1.1	–	15.3	13.2	3.9	7.6	11.9	10.8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2014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이 1-2잔의 경우, 30%로 가장 높았으며 10잔 이상은 10.8%로 나타나 대체로 음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0잔 이상의 음주량은 지체장애 12.9%, 시각장애 10.0%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음주량이 많음
- 성별로는 남성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13.3%로 여성 1.1%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15.3%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11.9%로 중증 7.6%보다 높게 나타남

(4) 생활체육 참여형태

〈표 2-2-11〉 생활체육 참여형태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연도별	2008	100.0	6.3	55.5	24.3	13.9
	2009	100.0	7.0	62.8	19.5	10.7
	2010	100.0	8.6	56	22.9	12.3
	2011	100.0	9.6	60.8	15.9	13.7
	2012	100.0	10.6	49	25.7	14.7
	2013	100.0	12.3	57	21.8	8.9
	2014	100.0	14.1	51.7	20.5	13.7
	2015	100.0	15.8	54.6	16.5	13.1
	2016	100.0	17.7	57.1	13.2	12.0
장애 유형별	지체	100.0	17.7	59.1	12.2	11.1
	시각	100.0	17.5	55.6	13.6	13.3
	청각·언어	100.0	21.9	53.0	14.9	10.2
	지적·자폐	100.0	18.0	54.4	13.7	13.9
	뇌병변	100.0	15.0	56.2	13.1	15.7
	기타	100.0	15.2	56.4	16.5	11.9

주: 1) 15개 장애유형을 연구편의상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함

2) 참여형태 구분

구분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미실시	-	-	-	-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미실시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16).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의 비율은 2008년 6.3%에서 2016년 17.7%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 · 언어장애에서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비율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하지만,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의지가 없는 자의 경우 2013년에 8.9%로 크게 감소했을 뿐, 그 비율 변화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운동을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운동을 실시할 가능성이 운동의 의지가 없는 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예측됨

'생활체육'이란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말함

3) 보건의료이용

(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63.0	66.9	63.3	59.6	65.6
성별	남성	64.5	68.6	64.4	60.2	66.7
	여성	60.7	64.3	61.8	58.7	64.0
연령별	20세-64세	66.8	72.0	65.5	60.8	67.6
	65세 이상	57.5	58.8	59.4	57.6	62.5
장애기간	10년 이하	62.7	66.4	63.2	59.7	65.1
	10년-19년	63.7	68.1	64.2	59.9	66.6
	20년 이상	63.1	66.5	59.1	56.7	63.6
장애정도	중증	51.7	55.2	50.7	48.6	54.8
	경증	67.1	71.2	69.7	65.2	71.1
장애유형	지체	67.3	71.7	69.5	65.1	71.2
	뇌병변	43.4	45.8	44.8	42.1	46.7
	시각	63.4	67.7	65.8	61.7	68.0
	청각	62.2	64.9	63.3	59.9	65.4
	언어	58.5	61.6	57.5	54.6	60.1
	지적	62.3	65.5	49.9	51.6	58.9
	자폐성	80.1	82.8	68.0	62.8	75.2
	정신	46.4	51.6	40.3	41.6	48.6
	신장	36.2	39.7	37.8	35.2	42.1
	심장	57.0	61.2	60.3	54.7	61.2
	호흡기	54.8	55.3	53.2	50.7	54.6
	간	45.1	50.2	51.3	46.1	54.2
	안면	70.7	74.8	67.0	66.5	71.7
	장루·요루	48.5	51.4	50.1	47.2	53.0
	뇌전증	63.3	69.3	57.4	55.5	61.7

주: 1)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 2012년부터 건강검진 대상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추가됨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6).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 2014년 기준,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5.6%로 전년도에 비해 6.0%p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7%p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20-64세의 수검률이 65세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16.3%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 안면, 지체장애가 각각 75.2%, 71.7%, 71.2%로 수검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신장, 뇌병변, 정신 장애는 각각 42.1%, 46.7%, 48.6%로 낮게 나타남

일반건강검진

- 실시범위 및 대상
- **1차 대상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2차 대상자: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또는 만 70세, 만74세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판정자**

- 주요항목
- **1차 대상자: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공복혈당, 콜레스테롤 등), 요검사, 구강검진 등**
- **2차 대상자: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 등**

〈표 2-3-2〉 장애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연도별	2010	67.0
	2011	72.4
	2012	67.0
	2013	63.5
	2014	70.5
성별	남성	65.5
	여성	69.2
연령별	40세	59.0
	66세	71.1
장애기간	10년 이하	68.1
	10년-19년	66.3
	20년 이상	58.8
장애정도	중증	52.7
	경증	74.5
장애유형	지체	73.4
	뇌병변	51.1
	시각	70.2
	청각	72.1
	언어	58.6
	지적	48.7
	자폐성	23.1
	정신	45.2
	신장	38.0
	심장	59.1
	호흡기	57.7
	간	48.8
	안면	75.3
	장루·요루	60.7
	뇌전증	57.3

주: 1)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 2012년부터 건강검진 대상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추가됨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6).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 2014년 기준, 장애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은 70.5%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3.7%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66세의 수검률은 71.1%인 반면 40세는 59.0%로 낮게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21.8%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청각, 안면장애인이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인 반면, 자폐성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은 각각 23.1%, 38.0%로 낮게 나타남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실시범위 및 대상**
  - **1차 대상자: 만40세, 만66세에 해당하는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 근로자, 직장피부양자**
  - **2차 대상자: 1차검진 대상자 전체**
- **주요항목**

검진종류		검진항목
1차	만40세	- 진찰 및 상담, B형 간염항원, 항체검사 등
	만66세	- 진찰 및 상담,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2차	만40세	-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건강진단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
	만66세	- 만40세와 동일, 정신건강검사(인지기능장애)항목 추가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전체		36.8
성별	남성	36.5
	여성	37.1
연령별	20세-44세	40.1
	45세-64세	40.4
	65세 이상	33.5
장애기간	10년 이하	36.7
	10년-19년	37.2
	20년 이상	34.9
장애정도	중증	28.2
	경증	40.1
장애유형	지체	40.7
	뇌병변	23.1
	시각	37.6
	청각	35.3
	언어	29.9
	지적	24.1
	자폐성	14.9
	정신	29.4
	신장	21.1
	심장	33.9
	호흡기	31.2
	간	26.9
	안면	40.4
	장루·요루	25.4
	뇌전증	42.4

주: 1) 2012년 12월 말 기준
2)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6). 「장애와 건강통계」

- 2012년 기준,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36.8%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0.6%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11.9%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안면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이 40% 이상의 수검률을 보인 반면, 자폐성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은 각각 14.9%, 21.1%로 낮게 나타남

암검진

검진종류	검진대상	검진항목
위암	- 만40세 이상인 자	-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 자	-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간암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만성간지로한자 등) 중 만40세 이상인 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 -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 간초음파검사, 혈청아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 만40세 이상인 여성	- 유방촬영(양측)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인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표 2-3-4〉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전체		19.1
성별	남성	21.0
	여성	16.2
연령별	20세-44세	25.9
	45세-64세	21.6
	65세 이상	12.7
장애기간	10년 이하	18.7
	10년-19년	20.0
	20년 이상	18.2
장애정도	중증	14.6
	경증	21.3
장애유형	지체	21.4
	뇌병변	12.1
	시각	19.4
	청각	18.6
	언어	19.1
	지적	14.3
	자폐성	26.7
	정신	10.9
	신장	12.5
	심장	20.4
	호흡기	15.6
	간	19.9
	안면	24.8
	장루·요루	13.0
	뇌전증	19.3

주: 1) 2012년 12월 말 기준
2)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6). 「장애와 건강통계」

- 2012년 기준,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19.1%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4.8%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6.7%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 안면, 지체, 심장장애인이 20% 이상의 수검률을 보인 반면, 정신, 뇌병변, 신장장애인은 각각 10.9%, 12.1%, 12.5%로 낮게 나타남

(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표 2-3-5〉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단위: 명, 일, 원)

구분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1회당 진료비
전체		2,418,273	175,441,496	72.5	60,438.9
성별	남성	1,391,139	89,520,385	64.4	63,882.0
	여성	1,027,134	85,921,111	83.7	56,851.7
연령별	0세-19세	87,692	4,073,506	46.5	61,070.9
	20세-44세	364,371	15,877,052	43.6	67,307.6
	45세-64세	947,005	61,528,208	65.0	64,148.5
	65세 이상	1,019,205	93,962,730	92.2	56,821.9
장애기간	10년 이하	1,207,729	98,682,400	81.7	65,562.9
	10년-19년	1,046,784	67,847,194	64.8	54,370.7
	20년 이상	163,612	8,904,290	54.4	49,897.6
장애정도	중증	931,183	80,078,473	86.0	73,554.7
	경증	1,487,090	95,363,023	64.1	49,425.3
장애유형	지체	1,255,389	78,979,548	62.9	47,210.1
	뇌병변	245,288	27,038,897	10.2	7,494.0
	시각	243,895	14,282,556	58.6	47,451.3
	청각	245,306	16,597,851	67.7	4,853.7
	언어	17,608	1,208,960	68.7	62,933.0
	지적	169,590	8,903,015	52.5	45,104.4
	자폐성	18,204	597,663	32.8	35,960.1
	정신	98,980	13,703,481	138.4	48,675.3
	신장	69,970	10,440,748	149.2	169,441.7
	심장	7,984	525,811	65.9	95,226.1
	호흡기	12,345	1,018,918	82.5	72,058.4
	간	9,665	547,518	56.7	39,897.3
	안면	2,537	11,438	43.9	4,334.7
	장루·요루	13,799	954,165	69.1	78,284.8
	뇌전증	7,713	530,927	68.8	61,820.1
의료기관	입원	61,384	49,810,334	15.6	102,869.6
	외래	2,382,483	85,952,448	36.1	4,321.8
	약국	2,263,228	39,678,714	17.5	42,087.2

주: 1) 2014년 12월 말 기준
2)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를 말함
3) 입내원일수는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를 통칭함
4)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 입내원일수/진료실인원
5) 1회당 진료비 = 총진료비/입내원일수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6).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 2014년 기준, 장애인 진료실 이용자 수는 총 2,418,273명이고, 입내원일수는 총 175,441,496일임. 이에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72.5일이며, 1회당 진료비는 60,438.9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9.3일 더 오래 입원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7,030.3원 더 나옴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회당 진료비는 20-44세가 가장 많이 나오고 65세는 가장 적게 나옴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와 1회당 진료비가 더 크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신장, 정신장애가 각각 149.2일, 138.4일로 가장 높게 나타남. 1회당 진료비는 신장장애가 169,441.7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표 2-3-6〉 장애인 진료비 현황

(단위: 명, 천원, 원)

구분		진료실인원	총진료비 (천원)	본인부담금 (천원)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원)	본인부담금(원)
전체		2,418,273	10,603,498,709	1,733,417,643	4,384,740	716,800
성별	남성	1,391,139	5,718,740,781	896,233,191	4,110,833	644,244
	여성	1,027,134	4,884,757,928	837,184,452	4,755,716	815,068
연령별	0세-19세	87,692	248,772,685	38,218,364	2,836,891	435,825
	20세-44세	364,371	1,068,646,962	131,124,533	2,932,854	359,865
	45세-64세	947,005	3,946,941,924	54,531,014	4,167,815	575,003
	65세 이상	1,019,205	5,339,137,138	1,019,543,731	5,238,531	1,000,332
장애기간	10년 이하	1,207,729	6,469,900,478	1,069,228,309	5,357,080	85,321
	10년-19년	1,046,784	3,688,899,098	602,641,848	3,524,031	575,708
	20년 이상	163,612	44,302,468	61,476,988	2,715,586	375,749
장애정도	중증	931,183	5,890,151,042	79,726,382	6,325,450	837,350
	경증	1,487,090	4,713,347,667	953,691,261	3,169,511	641,314
장애유형	지체	1,255,389	3,728,633,619	754,710,333	2,970,102	601,176
	뇌병변	245,288	2,095,352,783	382,888,538	8,542,419	1,560,975
	시각	243,895	67,725,897	131,734,379	2,778,761	540,127
	청각	245,306	744,474,600	15,586,805	3,034,881	634,256
	언어	17,608	76,083,416	13,204,535	4,320,957	749,917
	지적	169,590	401,565,008	43,516,728	2,367,858	256,600
	자폐성	18,204	21,492,014	5,163,676	1,180,620	283,656
	정신	98,980	667,021,511	43,021,958	6,738,952	434,653
	신장	69,970	1,769,098,359	150,743,596	25,283,670	2,154,403
	심장	7,984	50,070,920	7,298,243	6,271,408	914,109
	호흡기	12,345	73,421,611	12,906,880	5,947,478	1,045,515
	간	9,665	186,099,874	16,692,864	19,255,031	1,727,146
	안면	2,537	4,940,572	872,072	1,947,407	343,741
	장루·요루	13,799	74,696,586	11,007,143	5,413,188	797,677
	뇌전증	7,713	32,821,939	4,069,893	4,255,405	527,667
의료기관	입원	61,384	5,123,966,713	73,535,586	7,747,340	1,109,092
	외래	2,382,483	3,809,564,836	642,488,789	1,598,989	269,672
	약국	2,263,228	1,669,967,160	357,393,268	737,870	157,913

주: 1) 2014년 12월 말 기준
2)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를 말함
3) 진료비는 용야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를 말함
4) 본인부담금은 심사 결정 된 총 진료비 중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
5)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 총 진료비/진료실인원
6)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진료실인원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6).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 2014년 기준, 장애인의 총 진료비는 약 10조 6천억원이며, 그 중 본인부담금은 총 1조 7천억원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4,384,74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716,800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7만원 정도 더 부담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1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증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약 20만원 정도 더 부담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신장, 간, 뇌병변장애가 각각 2,154,403원, 1,727,146원, 1,560,975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은 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3)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표 2-3-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20.3	26.7	29.6	9.1	11.7	5.3	5.6	–	7.6	4.7	11.5	2.5	4.2	21.9	8.5	3.3
	작업치료	1.0	0.2	4.0	0.4	–	–	2.4	12.1	3.1	–	–	–	–	11.2	–	–
	언어치료	1.5	0.1	2.1	0.1	0.6	11.0	12.5	45.3	0.3	–	–	–	–	–	–	–
	음악치료	0.9	–	0.9	0.1	0.3	2.4	5.5	22.1	6.4	–	–	–	–	–	–	–
	놀이치료	0.5	–	0.6	–	0.1	5.2	3.9	11.9		–	–	–	–	–	–	–
	미술치료	1.1	–	1.6	0.1	0.3	5.1	7.9	23.6	4.6	–	–	–	–	–	–	–
	심리행동치료	1.0	0.1	0.5	0.1	–	7.5	5.8	8.8	8.8	–	–	–	–	11.2	–	11.2
	기타	1.2	0.5	1.9	0.4	0.1	5.2	6.4	23.1	2.3	–	–	–	–	–	–	–
2014	물리치료	22.4	29.6	31.6	12.7	15.8	11.9	4.4	4.2	2.0	4.8	19.8	3.4	11.8	7.9	16.8	20.6
	작업치료	1.6	0.2	7.4	–	0.2	–	5.1	14.1	4.6	–	–	4.6	–	–	–	4.2
	언어치료	1.7	–	3.5	0.2	1.7	5.3	9.9	42.6	–	–	–	–	–	–	–	4.0
	음악치료	1.0	–	0.6	–	0.4	–	7.8	17.4	6.9	–	–	–	–	–	–	–
	놀이치료	0.7	–	0.9	–	0.4	–	3.5	14.5	4.6	–	–	–	–	–	–	–
	미술치료	1.1	–	0.8	0.2	0.4	3.5	7.4	28.5	4.2	–	–	–	–	–	–	–
	심리행동치료	1.1	0.2	0.7	0.2	–	–	4.8	23.1	6.6	–	1.4	–	–	–	–	3.3
	기타	1.1	0.3	1.5	–	0.2	1.8	6.7	26.8	1.4	–	–	3.2	–	–	–	–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률은 기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서비스가 2011년에 비해 2014년 동일하거나 다소 증가함
- 재활치료서비스 중 물리치료의 이용률이 2011년 20.3%에서 2014년 22.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체적으로는 물리치료가 22.4%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재활치료로 나타났고, 그 외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은 1-2% 정도의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높음

〈표 2-3-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20.3	15.8	26.4	14.1	11.2	17.4	27.8	15.6	21.6	20.2
	작업치료	1.0	0.9	1.0	9.9	1.7	0.5	0.4	3.2	0.3	1.0
	언어치료	1.5	1.7	1.3	36.8	0.9	0.2	–	4.7	0.6	1.5
	음악치료	0.9	0.9	0.9	14.0	1.9	–	0.1	3.0	0.3	0.9
	놀이치료	0.5	0.5	0.4	9.3	0.6	0.1	0.1	1.6	0.2	0.5
	미술치료	1.1	1.1	1.0	20.6	1.8	0.1	0.1	3.2	0.5	1.1
	심리행동치료	1.0	1.1	0.8	13.7	1.9	0.4	–	2.1	0.7	1.0
	기타	1.2	1.2	1.2	15.6	1.3	0.6	0.4	2.9	0.7	1.2
2014	물리치료	22.4	16.2	30.8	16.8	7.1	19	31.4	16.8	25.7	22.2
	작업치료	1.6	1.9	1.2	24.3	2.3	0.8	0.6	9.7	0.3	1.6
	언어치료	1.7	1.9	1.3	45.9	1.4	0.2	0.2	3.9	0.2	1.6
	음악치료	1.0	1.1	0.9	14.5	2.9	0.4	–	2.7	–	1.1
	놀이치료	0.7	0.8	0.5	9.2	1.6	0.3	0.1	1.7	–	0.7
	미술치료	1.1	1.2	0.9	20.4	2.4	0.2	0.1	1.1	0.1	1.1
	심리행동치료	1.0	1.5	0.3	16.6	1.7	0.7	–	2.2	0.2	1.0
	기타	1.1	1.4	0.7	16.9	2.0	0.5	0.3	2.5	0.2	1.1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30.8%로 남성 16.2%에 비해 높았으나 그 외의 서비스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31.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17세 이하는 발달재활과 관련된 치료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25.7%로 중증에 16.8%에 비해 높은 반면, 그 외의 서비스에서는 중증이 경증보다 높게 나타남

〈표 2-3-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2.4	2.2	3.2	1.9	2.0	2.1	1.6	–	2.5	1.7	2.9	2.2	2.0	3.5	3.0	1.9
	작업치료	3.4	2.5	2.8	1.0	–	–	7.5	2.3	3.2	–	–	–	–	1.0	–	–
	언어치료	1.8	2.0	2.5	1.0	1.6	1.7	1.7	1.8	2.0	–	–	–	–	–	–	–
	음악치료	1.8	–	2.8	2.0	1.0	1.0	1.6	1.6	2.0	–	–	–	–	–	–	–
	놀이치료	2.7	–	3.1	–	1.0	1.2	2.4	1.5	4.2	–	–	–	–	–	–	–
	미술치료	1.8	2.0	2.4	1.0	1.0	1.3	1.4	1.6	2.4	–	–	–	–	–	–	–
	심리행동치료	1.5	1.0	1.1	1.0	–	1.2	1.5	1.9	1.6	–	–	–	–	1.0	–	1.0
	기타	2.9	4.0	3.7	5.0	1.0	2.0	2.3	2.6	1.0	–	–	–	–	–	–	–
2014	물리치료	2.4	2.3	3.2	2.3	2.2	2.5	2.6	2.1	1.6	1.9	2.4	1.9	2.5	1.0	2.3	1.6
	작업치료	4.5	3.9	3.5		1.6	–	7.3	2.8	6.3	–	–	1.0	–	–	–	1.0
	언어치료	2.0	2.0	2.3	2.7	2.7	1.5	1.7	1.8	–	–	–	–	–	–	–	1.0
	음악치료	2.2	1.0	2.4	–	4.0	–	2.4	1.2	2.0	–	–	–	–	–	–	–
	놀이치료	2.2	–	1.5	–	4.0	–	1.7	1.5	3.1	–	–	–	–	–	–	–
	미술치료	1.8	1.0	1.6	2.0	4.0	4.4	1.3	1.3	3.1	–	–	–	–	–	–	–
	심리행동치료	2.3	1.2	1.6	2.0	–	–	2.1	1.8	3.6	–	1.0	–	–	–	–	1.0
	기타	6.0	2.3	3.6	–	3.0	1.0	7.9	4.1	15.0	–	–	13.0	–	–	–	–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은 놀이치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서비스가 2011년에 비해 2014년 동일하거나 다소 증가함
-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시간은 기타를 제외하고 작업치료가 주당 평균 4.5시간으로 가장 길고 물리치료가 2.4시간, 심리·행동치료가 2.3시간, 음악치료와 놀이치료가 각각 2.2시간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각각 3.2시간, 3.5시간으로 다른 치료에 비해 더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의 경우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이 각각 7.3시간, 6.3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3-1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2.4	2.5	2.3	2.2	2.6	2.4	2.3	3.2	2.2	2.3
	작업치료	3.4	4.3	2.3	1.8	5.3	5.0	1.7	3.2	3.9	3.4
	언어치료	1.8	1.7	2.1	1.7	3.1	2.1	1.0	1.9	1.6	1.8
	음악치료	1.8	1.6	2.2	1.6	2.1	1.0	2.6	1.9	1.5	1.8
	놀이치료	2.7	1.9	4.1	1.9	3.4	7.5	4.4	3.0	2.0	2.7
	미술치료	1.8	1.5	2.2	1.4	1.9	7.5	3.3	2.1	1.2	1.8
	심리행동치료	1.5	1.4	1.6	1.5	1.7	1.0	-	1.8	1.1	1.4
	기타	2.9	2.7	3.2	2.3	2.9	3.8	3.7	3.1	2.8	2.9
2014	물리치료	2.4	2.4	2.4	2.9	2.1	2.5	2.4	2.6	2.4	2.5
	작업치료	5.4	4.6	4.4	2.9	7.6	4.2	4.8	4.5	5.6	4.6
	언어치료	2.0	2.0	1.9	1.8	1.7	3.3	3.8	2.0	2.3	2.0
	음악치료	2.2	2.4	1.8	3.0	1.7	1.8	1.0	2.2	2.4	2.2
	놀이치료	2.2	2.3	1.9	1.8	2.3	2.7	2.1	2.2	1.0	2.2
	미술치료	1.8	1.7	1.9	1.5	2.1	2.5	1.5	1.7	3.4	1.8
	심리행동치료	2.3	2.3	2.3	1.6	3.8	1.8	-	2.4	1.2	2.3
	기타	6.0	7.4	2.0	5.1	8.0	6.3	3.4	6.5	2.0	5.9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물리치료 2.4시간 심리행동치료 2.3시간으로 같았고 그 외의 치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가 작업치료에 주당 평균 7.6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이 중증에 비해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에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증은 경증에 비해 물리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함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4.4	4.0	7.0	3.6	1.9	4.4	7.3	–	1.4	3.2	1.0	1.0	–	–	4.8	180.0
	작업치료	11.2	18.0	9.3	20.0	–	–	10.2	12.9	2.0	–	–	–	–	–	–	–
	언어치료	13.0	16.5	17.0	6.0	9.4	6.7	10.2	18.3	–	–	–	–	–	–	–	–
	음악치료	7.8	–	2.3	24.0	4.0	6.8	8.8	12.0	1.2	–	–	–	–	–	–	–
	놀이치료	6.9	–	7.2	–	5.0	7.3	5.1	17.3	1.0	–	–	–	–	–	–	–
	미술치료	6.8	26.0	2.8	3.0	–	18.4	7.0	7.8	1.0	–	–	–	–	–	–	–
	심리행동치료	10.2	1.0	14.8	2.5	–	3.4	11.3	30.6	2.0	–	–	–	–	1.0	–	2.0
	기타	11.1	5.7	9.1	1.0	6.0	14.5	12.5	23.9	1.0	–	–	–	–	–	–	–
2014	물리치료	2.7	2.5	4.9	2.6	1.4	1.5	2.3	0.9	1.4	1.7	3.4	0.9	5.1	2.0	5.7	0.5
	작업치료	5.2	3.7	6.7	–	1.0	–	4.2	11.8	0.1	–	–	–	–	–	–	2.9
	언어치료	9.3	–	7.2	5.6	6.1	4.2	9.0	16.2	–	–	–	–	–	–	–	4.0
	음악치료	2.5	–	5.5	–	–	–	2.5	6.4	0.8	–	–	–	–	–	–	–
	놀이치료	5.3	–	4.9	–	–	–	9.2	6.5	0.3	–	–	–	–	–	–	–
	미술치료	3.7	3.7	6.7	0.7	–	7.9	2.3	9.3	0.6	–	–	–	–	–	–	–
	심리행동치료	4.0	3.3	4.7	0.7	–	–	4.2	8.1	1.5	–	5.0	–	–	–	–	4.2
	기타	9.2	19.0	13.7	–	2.5	0.4	6.3	6.1	0.4	–	–	22.0	–	–	–	–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은 모든 서비스가 2011년에 비해 2014년 감소함
- 재활치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치료를 제외하고 언어치료가 평균 9만 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놀이치료 5만 3천원, 작업치료 5만 2천원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의 각 서비스별 치료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 두 장애가 바우처로 시행되고 있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서 작업, 언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으며 그에 따라 비용부담 역시 커짐을 알 수 있음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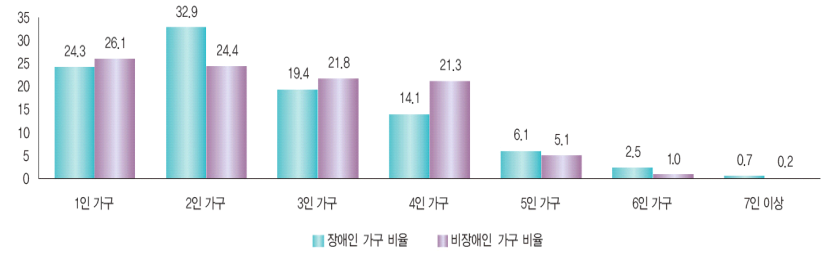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4.4	4.6	4.2	15.0	4.7	5.5	3.1	6.5	3.9	4.3
	작업치료	11.2	13.2	8.8	11.9	5.7	23.7	8.5	11.8	9.3	11.2
	언어치료	13.0	12.8	13.3	13.1	13.7	12.2	5.0	15.0	9.9	13.3
	음악치료	7.8	7.8	7.9	9.5	4.7	4.0	3.0	6.9	10.6	7.8
	놀이치료	6.9	8.0	4.7	8.4	2.4	–	4.7	6.8	7.1	6.9
	미술치료	6.8	7.2	6.3	8.0	2.6	–	4.3	7.1	6.1	6.8
	심리행동치료	10.2	11.5	7.4	12.4	2.6	1.4	–	9.1	7.8	8.5
	기타	11.1	12.4	8.9	17.9	4.6	6.0	4.3	13.2	8.5	11.1
2014	물리치료	2.7	3.0	2.6	8.6	3.4	3.5	2.1	3.3	2.6	2.8
	작업치료	5.2	5.5	4.3	5.8	2.6	1.9	12.3	4.0	14.5	5.0
	언어치료	9.3	10.6	6.7	9.3	9.6	0.8	13.4	9.4	8.8	9.4
	음악치료	2.5	1.9	3.4	5.1	1.0	–	–	2.4	7.4	2.5
	놀이치료	5.3	5.0	5.8	9.3	3.4	–	3.2	4.6	20	4.8
	미술치료	3.7	4.5	2.2	5.8	1.5	–	4.7	3.4	12.0	3.7
	심리행동치료	4.0	4.3	2.3	4.7	4.0	2.7	–	3.5	5.6	3.8
	기타	9.2	6.5	16.7	10.7	4.4	11.3	13.3	7.2	18.2	8.6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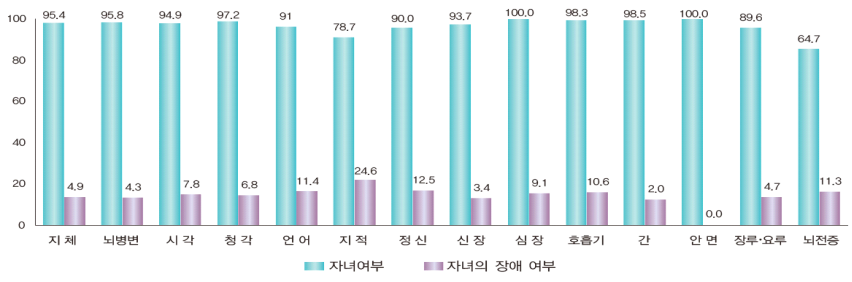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월 평균 비용을 성별로 살펴보면, 음악치료, 놀이치료,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물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작업치료와 언어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함

3. 가족

[그림 2-3-1] 6인가구 비장애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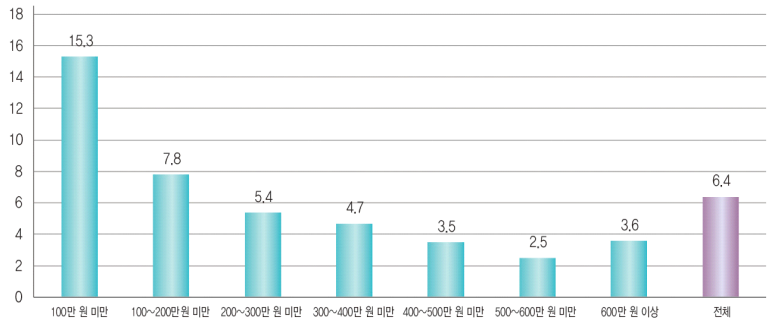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



– 비장애인 가구의 규모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짐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2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5.0%가 자녀가 있고 자녀수는 2명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5.8%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비율은 뇌전증장애가 35.3%로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 21.3%, 장루·요루장애 10.4% 순임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4.6%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 12.5%, 언어장애 11.4% 순임

[그림 2-3-3] 다문화 장애가구 및 소득



주: 그림에서 전체의 비율은 다문화 가구 중 장애가구의 비율임

- 장애인 가구원을 가진 다문화 가구 중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구가 1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1) 가구구성

(1) 가구구성 및 규모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단위: %)

구분	전체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가구
계	100.0	100.0	100.0
1인 가구	25.8	24.3	26.1
부부	18.8	25.1	17.7
기타1세대(형제, 자매)	1.0	1.0	1.0
부부+미혼자녀	37.9	25.5	40.1
부부+기혼자녀	0.2	0.5	0.1
편부+미혼자녀	1.7	1.8	1.6
편모+미혼자녀	6.6	5.5	6.8
부부+양친	0.1	0.1	0.1
부부+편부모	0.9	1.9	0.7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0.3	0.6	0.2
조부모+손자녀	0.6	1.2	0.5
기타2세대	1.0	2.0	0.8
부부+자녀(미혼, 기혼)+양친	0.6	1.5	0.4
부부+자녀(미혼, 기혼)+편부모	2.6	5.1	2.2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1.8	3.8	1.4
비 혈연 가구	0.3	0.2	0.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단위: %, 명)

구분	전체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가구
계	100.0	100.0	100.0
1인 가구	25.8	24.3	26.1
2인 가구	25.7	32.9	24.4
3인 가구	21.4	19.4	21.8
4인 가구	20.2	14.1	21.3
5인 가구	5.3	6.1	5.1
6인 가구	1.2	2.5	1.0
7인 이상	0.3	0.7	0.2
평균 가구원 수	2.58	2.55	2.5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전체 가구의 구성은 부부+미혼자녀의 비율이 37.9%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 25.8%, 부부 18.8% 순임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부' 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율은 낮음
  • '부부+자녀(미혼, 기혼)+양친', '부부+자녀(미혼, 기혼)+편부모'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인 장애인가구의 비율은 10.4%로 3세대 이상인 비장애인 가구의 비율 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가구의 규모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적어짐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2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가족형성

(1) 결혼상태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4.7	59.3	57.0	59.8	59.7	40.1	14.4	–	18.3	62.6	77.7	55.9	78.0	45.8	62.9	44.5
사별	19.5	21.8	18.5	21.3	25.6	15.6	3.3	–	3.9	11.4	14.5	26.0	3.3	13.4	23.1	13.0
이혼	8.7	8.8	8.7	6.9	7.3	11.8	5.5	–	19.0	11.0	–	4.6	11.0	–	14.1	21.1
별거	1.6	1.9	2.4	1.9	0.1	–	0.5	–	0.5	1.8	–	4.1	5.1	–	–	–
미혼	15.4	8.1	13.5	10.0	7.2	32.5	76.1	100.0	57.7	13.3	7.9	9.5	2.6	40.8	–	21.4
기타(미혼모/부)	0.1	0.1	–	–	–	–	–	–	0.5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4.7	63.7	42.5	–	33.7	62.7	55.9	43.5	61.8	54.9
사별	19.5	5.6	38.2	–	0.6	6.9	37.5	14.6	21.5	18.9
이혼	8.7	9.3	8.0	–	6.5	15.1	4.1	10.1	8.0	8.8
별거	1.6	2.0	1.0	–	0.4	2.6	1.1	1.1	1.9	1.6
미혼	15.4	19.2	10.1	–	58.5	12.7	1.3	30.6	6.7	15.7
기타(미혼모/부)	0.1	0.1	0.1	–	0.2	0.1	–	0.1	0.1	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가 54.7%로 가장 많았고 사별 19.5%, 미혼 15.4%, 이혼 8.7%, 별거 1.6%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인은 미혼율이 100.0%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 정신장애, 안면장애의 또한 각각 76.1%, 57.7%, 40.8%로 다른 장애에 비해 미혼율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유배우자 비율은 63.7%로 여성 42.5%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은 사별한 비율이 38.2%로 남성 5.6%에 비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유배우자 비율이 61.8%로 중증 43.5%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평균초혼연령

〈표 3-2-3〉 평균초혼연령 – 장애유형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10–19세	12.0	11.5	12.5	11.7	17.2	7.2	11.5	–	5.7	9.0	11.2	21.3	0.6	21.6	8.6	–
만20–29세	69.0	70.2	67.5	68.7	68.0	64.0	56.9	–	58.7	74.9	70.3	63.2	76.7	54.3	69.6	37.6
만30–39세	16.5	15.6	18.6	15.9	12.8	28.8	30.4	–	33.4	14.7	18.5	12.4	21.2	24.1	21.8	46.2
만40–49세	2.0	2.0	1.0	3.6	1.5	–	–	–	2.2	1.5	–	–	1.5	–	–	11.6
만50세이상	0.5	0.7	0.3	0.1	0.4	–	1.2	–	–	–	–	3.1	–	–	–	4.6
평균연령	25.6	25.7	25.5	25.9	24.7	26.5	27.3	–	27.3	25.6	25.5	25.3	26.8	27.5	26.3	32.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4〉 평균초혼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10–19세	12.0	2.9	23.2	–	1.0	4.2	19.8	11.5	11.7	11.7
만20–29세	69.0	67.6	70.6	–	61.3	70.3	69.2	66.7	70.3	69.1
만30–39세	16.5	25.5	5.4	–	35.7	21.3	9.7	18.7	15.7	16.7
만40–49세	2.0	3.2	0.5	–	2.0	3.4	0.9	2.3	1.8	2.0
만50세이상	0.5	0.8	0.3	–	–	0.8	0.4	0.8	0.5	0.6
평균연령	25.6	28.1	22.7	–	28.5	27.4	23.8	26.0	25.6	25.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25.6세이며, 초혼연령 중 만20–29세가 69.0%로 가장 많았고 만30–39세 16.5%, 만10–19세 12.0%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만20–39세 사이에 대부분 결혼하는 반면, 여성은 만10–29세 사이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초혼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음

(3)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표 3-2-5〉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본인	22.6	22.5	4.6	35.8	25.0	34.8	84.3	–	25.2	8.2	16.6	14.6	2.3	7.2	3.4	67.5
	배우자	2.5	1.7	0.8	3.1	4.7	2.4	25.4	–	4.4	0.6	–	9.0	–	–	4.6	1.3
2014	본인	24.2	22.5	7.4	34.9	33.4	30.2	78.0	–	39.3	7.9	17.0	11.7	5.3	51.8	4.7	52.5
	배우자	2.7	1.7	1.0	2.1	6.2	3.4	22.1	–	9.5	0.7	–	–	–	–	–	16.1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6〉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본인	22.6	25.3	19.2	–	58.9	28.0	9.8	25.7	22.3	22.9
	배우자	2.5	1.9	3.3	–	7.9	3.3	0.7	8.0	1.5	2.6
2014	본인	24.2	28.2	19.2	–	68.7	31.5	11.5	31.4	22.0	24.9
	배우자	2.7	2.1	3.4	–	10	3.8	0.7	7.1	0.8	2.7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2014년 결혼 당시 본인의 장애여부는 24.2%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장애여부는 2.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과 유사한 수치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지적장애가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전증장애가 52.5%, 안면장애가 51.8% 순임
- 반면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뇌병변 장애는 각각 4.7%, 5.3%, 7.4%로 나타나 다른 장애에 비해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본인이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던 비율은 28.2%로 여성 19.2%에 비해 높은 반면에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여성이 3.4%로 남성 2.1%에 비해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당시 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아짐
- 장애정도별로 보면 결혼 당시 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중증이 38.5%로 경증 22.8%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자녀 현황

〈표 3-2-7〉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여부	예	95.0	95.4	95.8	94.9	97.2	91.0	78.7	-	90.0	93.7	100.0	98.3	98.5	100.0	89.6	64.7
	아니오	5.0	4.6	4.2	5.1	2.8	9.0	21.3	-	10.0	6.3	-	1.7	1.5	-	10.4	35.3
자녀 수	1명	12.7	12.3	10.4	14.1	8.6	19.2	35.9	-	33.5	16.1	16.6	17.4	4.1	24.1	5.6	11.3
	2명	36.9	38.9	33.3	37.7	29.8	24.5	26.8	-	38.1	43.5	11.5	32.5	63.1	33.4	34.0	56.5
	3명	23.4	23.2	26.7	20.5	24.9	18.6	24.9	-	13.8	22.6	28.9	19.0	26.4	26.7	31.2	26.1
	4명	13.9	13.3	15.7	13.3	16.8	24.3	9.8	-	10.8	10.5	34.3	18.2	6.5	-	18.9	-
	5명이상	13.1	12.3	13.8	14.4	19.9	13.5	2.6	-	3.9	7.3	8.6	12.8	-	15.8	10.4	6.1
자녀의 장애 여부	예	5.8	4.9	4.3	7.8	6.8	11.4	24.6	-	12.5	3.4	9.1	10.6	2.0	-	4.7	11.3
	아니오	94.2	95.1	95.7	92.2	93.2	88.6	75.4	-	87.5	96.6	90.9	89.4	98.0	100.0	95.3	88.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8〉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여부	예	95.0	94.7	95.4	-	80.7	94.1	98.0	92.7	96.2	95.1
	아니오	5.0	5.3	4.6	-	19.3	5.9	2.0	7.3	3.8	4.9
자녀 수	1명	12.7	14.1	11.0	-	35.0	17.6	6.1	15.6	11.7	12.8
	2명	36.9	43.4	29.1	-	49.5	58.9	19.1	36.8	37.9	37.5
	3명	23.4	24.0	22.7	-	13.4	17.9	28.7	24.1	23.1	23.4
	4명	13.9	10.5	18.1	-	1.7	4.0	22.9	12.8	14.0	13.6
	5명이상	13.1	8.1	19.1	-	0.4	1.6	23.2	10.7	13.4	12.6
자녀의 장애 여부	예	5.8	4.4	7.6	-	3.6	4.6	7.1	7.4	5.1	5.8
	아니오	94.2	95.6	92.4	-	96.4	95.4	92.9	92.6	94.9	94.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5.0%가 자녀가 있고 자녀수는 2명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5.8%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비율은 뇌전증장애가 35.3%로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 21.3%, 장루·요루장애 10.4% 순임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4.6%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 12.5%, 언어장애 11.4% 순임

(5)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	100.0
산후조리 도우미	남편	14.3	8.7	–	3.9	18.9	–	49.0	–	3.6	–	–	–	–	–	–	–
	친정식구	47.5	54.2	29.9	54.4	41.8	100.0	19.5	–	59.4	100.0	–	–	–	–	–	29.3
	시댁식구	18.2	14.0	13.1	27.6	9.7	–	31.5	–	23.7	–	–	–	–	–	–	70.7
	복지기관	1.2	–	–	–	7.2	–	–	–	–	–	–	–	–	–	–	–
	산후조리원	10.1	16.9	–	8.8	11.7	–	–	–	–	–	–	–	–	–	–	–
	산후도우미	7.7	5.1	56.9	5.2	8.4	–	–	–	13.3	–	–	–	–	–	–	–
	돌봐주는사람없었음(혼자했음)	0.9	1.2	–	–	2.2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산후조리의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10.8	17.9	22.3	–	–	–	8.8	–	16.7	–	–	–	–	–	–	–
	충분하다	52.2	46.9	7.6	61.2	65.2	100.0	51.0	–	52.3	100.0	–	–	–	–	–	29.3
	부족하다	30.8	29.5	27.6	31.4	32.6	–	40.2	–	31.0	–	–	–	–	–	–	–
	매우 부족하다	6.2	5.7	42.5	7.5	2.2	–	–	–	–	–	–	–	–	–	–	70.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산후조리 도우미	남편	14.3	–	14.3	–	11.0	19.7	–	24.0	6.7	14.4
	친정식구	47.5	–	47.5	–	42.0	57.0	–	45.2	50.6	48.2
	시댁식구	18.2	–	18.2	–	17.2	20.0	–	19.6	15.2	17.2
	복지기관	1.2	–	1.2	–	2.0	–	–	–	2.3	1.2
	산후조리원	10.1	–	10.1	–	16.1	–	–	1.3	17.5	10.3
	산후도우미	7.7	–	7.7	–	11.1	2.0	–	8.8	7.1	7.8
	돌봐주는사람없었음(혼자했음)	0.9	–	0.9	–	0.6	1.3	–	1.1	0.7	0.9
	기타	–	–	–	–	–	–	–	–	–	–
산후조리의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10.8	–	10.8	–	11.5	9.5	–	15.6	7.1	10.9
	충분하다	52.2	–	52.2	–	49.5	56.8	–	57.6	49.1	52.9
	부족하다	30.8	–	30.8	–	31.2	30.2	–	23.4	36.4	30.6
	매우 부족하다	6.2	–	6.2	–	7.8	3.4	–	3.4	7.3	5.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식구가 47.5%로 가장 많았고 시댁식구 18.2%, 남편 14.3% 순임
–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여성 장애인의 63.0%가 충분했던 것으로, 37.0%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장애인의 산후조리 충분도가 100.0%로 가장 높은 반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의 부족함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이용 비율에서 '18–44세 이하'가 27.2%로 '45–64세 이하'의 2%에 비해 매우 높음
  • 장애정도별로 보면 남편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중증이 24%로 경증 6.7%에 높은 반면,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은 경증이 17.5%로 중증 1.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의 부족함은 경증이 43.7%로 중증 26.8%에 비해 높음

3) 다문화 가족

(1)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가구

〈표 3-3-1〉 다문화 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구분	장애인 가구비율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2012	8.6	9.7	60.4	11.2	0.1	1.5	22.8	0.2	0.2	0.4	2.6	0.4	–
2015	6.4	10.7	61.6	9.5	–	1.7	14.9	–	0.1	0.4	–	1.0	0.1

주: 1) 다문화 가구원 개개인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임
2) 본인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을 의미하고, 배우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2015년 다문화 가족의 장애인 가구 비율은 6.4%로 2012년 8.6%에 비해 낮아졌으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국내 전체 장애인 가구원의 비율인 1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2년에 비하여 2015년의 본인 및 배우자의 등록장애 비율은 각각 1.0%p와 1.2%p 증가함
• 반면,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등록장애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2〉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단위: %, 가구)

		있음	없음	계
전체		6.4	93.6	100.0
		(17,700)	(206,336)	(278,036)
거주지역	동부	5.8	94.2	100.0
	읍면부	8.2	91.8	100.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5.3	84.7	100.0
	100~200만 원 미만	7.8	92.2	100.0
	200~300만 원 미만	5.4	94.6	100.0
	300~400만 원 미만	4.7	95.3	100.0
	400~500만 원 미만	3.5	96.5	100.0
	500~600만 원 미만	2.5	97.5	100.0
	600만 원 이상	3.6	96.4	100.0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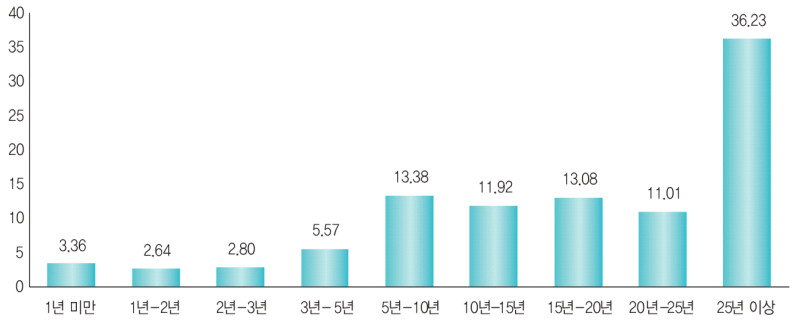
– 거주지역에 따른 장애인 가구원 유무는 동부가 5.8%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지원 체계가 취약한 읍면부가 8.2%로 더 높게 나타남
– 가구원 중 장애인 가구원 유무에 따른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원은 장애인 가구원이 없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문화 가족'이란
-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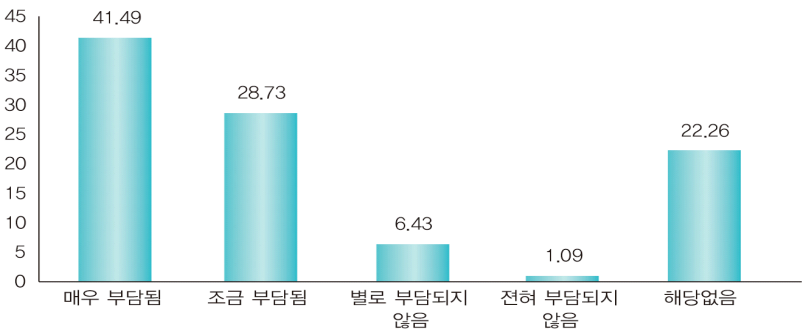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주거

[그림 2-4-1] 무주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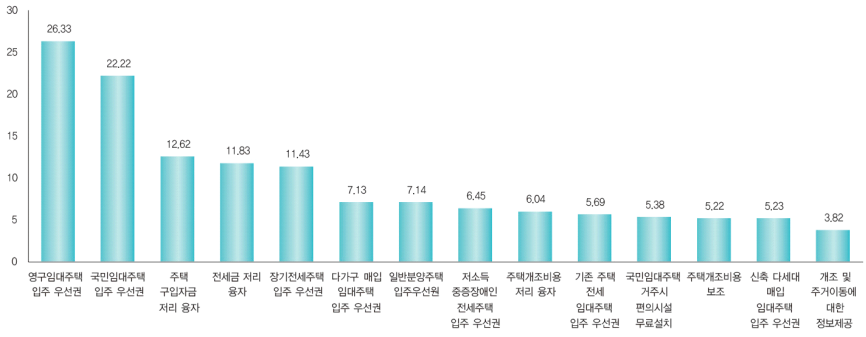


[그림 2-4-2] 주거비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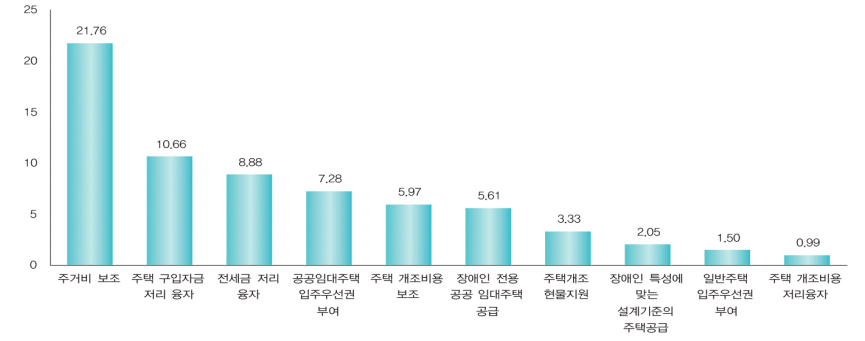


- 무주택 가구 중 25년 이상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36.2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조사 장애인 중 약 1/30이 25년 이상 무주택 상황임을 의미함
-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2%(매우부담41.49%, 조금 부담 28.73%)로 나타남. 반면 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은 7.52%로 나타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약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3]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각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26.33%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론 국민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이 22.22%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개조 및 주거이동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또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20.0% 이상 안다고 응답하였으나,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등 다른 주택형태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 1순위를 살펴보면 주거비 보조가 2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구입자금 저리 융자가 10.6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 주거

(1) 주택유형

〈표 4-1-1〉 주택유형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100.0	43.81	41.59	4.67	7.44	1.43	1.07
행정구역	서울	16.22	5.84	6.41	0.95	2.39	0.4	0.23
	부산	6.87	3.06	2.81	0.39	0.55	0.03	0.04
	대구	4.63	2.08	2.03	0.17	0.35	–	–
	인천	5.41	1.3	2.54	0.79	0.58	0.15	0.05
	광주	2.74	0.73	1.79	0.06	0.12	0.03	0.02
	대전	2.82	0.71	1.73	0.12	0.22	0.03	0.01
	울산	1.96	0.66	1.08	0.08	0.11	0.03	0.01
	경기	20.36	5.01	11.76	1.17	1.7	0.3	0.43
	강원	3.92	1.87	1.66	0.16	0.2	0.02	0.01
	충북	3.65	2.12	1.36	0.07	0.05	0.06	–
	충남	5.29	3.1	1.64	0.28	0.13	0.08	0.07
	전북	5.2	3.35	1.58	0.02	0.11	0.11	0.03
	전남	5.73	4.29	1.25	0.02	0.07	0.05	0.04
	경북	6.72	4.86	1.37	0.07	0.21	0.1	0.1
	경남	7.19	4.01	2.42	0.17	0.55	0.02	0.02
	제주	1.28	0.82	0.18	0.16	0.09	0.01	0.03
점유형태	자가	58.47	27.31	23.32	3.24	3.73	0.47	0.38
	전세	11.0	4.65	3.97	0.47	1.49	0.27	0.14
	보증금 있는 월세	20.15	5.84	11.85	0.59	1.44	0.29	0.15
	보증금 없는 월세	2.69	1.86	0.27	0.03	0.25	0.09	0.2
	무상	7.69	4.15	2.18	0.33	0.53	0.31	0.19
소득	1분위	20.5	11.74	6.15	0.82	1.45	0.12	0.22
	2분위	21.35	11.35	7.05	0.95	1.37	0.26	0.37
	3, 4분위	26.8	11.19	10.8	1.63	2.51	0.5	0.18
	5, 6분위	14.73	5.26	7.42	0.88	0.85	0.11	0.21
	7, 8분위	7.21	2.35	3.83	0.22	0.61	0.2	–
	9, 10분위	8.9	1.73	6.14	0.17	0.59	0.19	0.08
	모름/무응답	0.5	0.18	0.2	–	0.05	0.05	0.01

주: 1)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2)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고소득 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43.81%로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 41.59%,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7.44% 순임
-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85.4%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 36.58%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 거주 형태는 아파트 인 것으로 나타남. 광역 · 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세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보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비율이 모든 주거유형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4분위까지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5분위부터는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주택사용면적

〈표 4-1-2〉 주택사용면적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60㎡ 이하 (18평이하)	60㎡-85㎡ (18-25평)	85㎡-102㎡ (25-30평)	102㎡ 초과 (30평 초과)	모름/무응답	평균(㎡)
계		100.0	39.53	30.71	12.92	16.8	0.04	73.39
행정구역	서울	16.22	9.12	3.97	1.37	1.76	–	63.24
	부산	6.87	3.13	2.01	0.69	1.03	–	70.8
	대구	4.63	1.61	1.62	0.72	0.69	–	75.23
	인천	5.41	2.55	1.4	0.43	1.0	0.03	70.28
	광주	2.74	0.64	0.64	0.38	1.08	–	87.45
	대전	2.82	1.13	0.76	0.39	0.54	–	70.51
	울산	1.96	0.39	0.64	0.34	0.59	–	87.19
	경기	20.36	7.59	4.61	2.87	5.29	0.01	79.52
	강원	3.92	1.46	1.45	0.61	0.4	–	70.61
	충북	3.65	1.26	1.37	0.56	0.47	–	73.94
	충남	5.29	1.48	2.07	0.88	0.86	–	77.79
	전북	5.2	1.6	1.97	1.07	0.56	–	74.72
	전남	5.73	2.02	2.19	0.6	0.92	–	75.66
	경북	6.72	2.37	2.97	0.88	0.5	–	70.7
	경남	7.19	2.67	2.66	0.93	0.93	–	72.55
	제주	1.28	0.54	0.39	0.19	0.16	–	72.35
점유형태	자가	58.47	12.43	22.33	10.2	13.5	0.01	84.92
	전세	11.0	6.18	2.39	0.99	1.42	0.03	64.63
	보증금 있는 월세	20.15	15.34	3.3	0.73	0.78	–	50.7
	보증금 없는 월세	2.69	2.06	0.39	0.16	0.08	–	44.31
	무상	7.69	3.52	2.31	0.83	1.03	–	67.91
소득	1분위	20.5	12.78	5.49	1.4	0.8	0.03	56.11
	2분위	21.35	10.62	6.71	2.26	1.76	–	64.18
	3, 4분위	26.8	10.49	9.33	3.35	3.63	–	72.38
	5, 6분위	14.73	3.58	4.9	2.86	3.38	0.01	83.49
	7, 8분위	7.21	1.2	2.34	1.23	2.43	–	91.69
	9, 10분위	8.9	0.68	1.85	1.66	4.71	–	106.89
	모름/무응답	0.5	0.18	0.09	0.15	0.08	–	71.56

주: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주택사용 면적 중 60㎡ 이하(18평이하)가 39.53%로 가장 많은 장애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60-85㎡ 가 2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세 및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의 경우 60㎡ 이하가 각각 6.18%, 15.34%, 2.0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앞서 살펴본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LH주택공사나 S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일 가능성이 높음
- 소득별로 1-4분위까지는 60㎡ 이하의 주택의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5,6분위는 60-85㎡ 에 7분위부터 10분위는 102㎡ 초과의 면적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사용 방 수

〈표 4-1-3〉 사용 방 수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평균 (개)
계		100.0	2.45	5.54	25.92	38.8	22.83	4.45	3.89
행정구역	서울	16.22	0.32	1.33	6.15	5.24	2.74	0.44	3.63
	부산	6.87	0.05	0.59	1.96	2.39	1.39	0.5	3.91
	대구	4.63	0.09	0.22	0.92	2.22	0.9	0.28	3.96
	인천	5.41	0.1	0.56	1.51	1.91	1.13	0.2	3.74
	광주	2.74	0.08	0.11	0.54	1.01	0.86	0.13	4.05
	대전	2.82	0.11	0.14	0.83	1.03	0.57	0.13	3.8
	울산	1.96	0.04	0.11	0.56	0.95	0.23	0.08	3.75
	경기	20.36	0.55	0.98	4.84	8.34	4.57	1.09	3.93
	강원	3.92	0.1	0.25	1.21	1.49	0.87	0.01	3.72
	충북	3.65	0.14	0.11	0.82	1.55	0.88	0.15	3.95
	충남	5.29	0.21	0.1	1.38	2.38	1.08	0.14	3.86
	전북	5.2	0.14	0.25	1.24	1.65	1.77	0.15	3.98
	전남	5.73	0.15	0.18	0.85	2.44	1.8	0.31	4.15
	경북	6.72	0.17	0.33	1.53	2.62	1.7	0.37	3.97
	경남	7.19	0.13	0.28	1.4	3.24	1.71	0.43	4.04
	제주	1.28	0.06	0.02	0.19	0.34	0.64	0.04	4.25
점유형태	자가	58.47	0.16	1.13	8.21	27.42	17.86	3.68	4.26
	전세	11.0	0.43	0.84	3.89	4.05	1.53	0.25	3.56
	보증금 있는 월세	20.15	0.84	2.51	11.22	4.08	1.28	0.21	3.15
	보증금 없는 월세	2.69	0.55	0.61	0.79	0.55	0.19	-	2.71
	무상	7.69	0.46	0.44	1.81	2.69	1.96	0.31	3.83
소득	1분위	20.5	1.01	2.47	8.01	5.93	2.78	0.3	3.39
	2분위	21.35	0.75	1.67	6.68	7.82	3.91	0.53	3.67
	3, 4분위	26.8	0.51	1.01	7.29	10.74	6.27	0.98	3.91
	5, 6분위	14.73	0.12	0.19	2.42	7.16	4.18	0.67	4.17
	7, 8분위	7.21	0.01	0.08	0.8	3.47	2.25	0.6	4.36
	9, 10분위	8.9	0.01	0.11	0.65	3.56	3.2	1.38	4.62
	모름/무응답	0.5	0.06	-	0.06	0.13	0.25	-	4.02

주: 1) 원룸은 사용 방 수를 1개로 표시함
2)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일세가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개수는 4개가 38.8%로 가장 많았고 3개 25.92%, 5개 22.83% 순임
  -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와 전세의 경우 방 4개가 각각 27.42%, 4.05%로 가장 많았고 무상의 경우 역시 2.69%로 방 4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의 경우 각각 11.22%, 0.79%로 방 3개인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보면, 소득 1분위만 방 3개에 거주하는 비율이 8.01%로 가장 높았고 그 외의 다른 분위에서는 방4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4) 무주택 기간

〈표 4-1-4〉 무주택 기간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이상
계		100.0	3.36	2.64	2.8	5.57	13.38	11.92	13.08	11.01	36.23
행정구역	서울	23.02	0.41	0.36	0.38	1.17	2.56	2.26	3.82	2.01	10.04
	부산	8.08	0.1	0.13	0.19	0.47	1.58	0.96	0.76	1.1	2.79
	대구	4.09	0.05	0.14	0.04	0.17	0.28	0.58	0.53	0.41	1.86
	인천	5.0	0.07	–	0.05	0.39	0.68	0.59	0.55	0.62	2.05
	광주	2.82	0.3	0.15	0.06	0.12	0.3	0.36	0.17	0.16	1.21
	대전	3.92	0.11	0.15	0.11	0.25	0.41	0.61	0.3	0.63	1.35
	울산	1.21	0.04	0.02	0.15	0.1	0.14	0.04	0.19	0.15	0.38
	경기	20.29	0.46	0.99	0.83	1.33	2.62	2.44	2.21	2.8	6.6
	강원	4.4	0.09	0.23	0.25	0.11	0.16	0.89	0.78	0.33	1.57
	충북	2.71	0.43	0.23	0.04	0.09	0.16	0.33	0.19	0.24	1.01
	충남	3.9	0.12	0.08	0.16	0.19	0.68	0.66	0.81	0.39	0.8
	전북	4.88	0.28	0.08	0.13	0.18	0.99	0.62	0.62	0.69	1.3
	전남	3.99	0.1	0.01	0.18	0.25	0.7	0.43	0.41	0.37	1.53
	경북	5.05	0.62	0.01	0.14	0.31	0.61	0.39	0.71	0.54	1.72
	경남	5.44	0.1	0.02	0.02	0.38	1.33	0.62	0.75	0.42	1.81
	제주	1.21	0.07	0.04	0.07	0.05	0.18	0.13	0.28	0.15	0.23
점유형태	자가	–	–	–	–	–	–	–	–	–	–
	전세	22.53	0.65	0.58	0.85	1.87	2.42	2.9	3.26	2.53	7.46
	보증금 있는 월세	52.5	1.52	1.72	1.03	2.09	6.87	5.92	6.68	6.8	19.88
	보증금 없는 월세	7.07	0.23	0.11	0.19	0.27	0.99	0.96	0.8	0.62	2.89
	무상	17.9	0.96	0.23	0.74	1.34	3.1	2.14	2.34	1.05	6.0
소득	1분위	30.33	1.2	0.48	0.9	2.04	4.09	3.88	2.87	3.02	11.85
	2분위	25.77	0.71	0.78	0.46	1.35	3.43	2.59	3.41	2.65	10.39
	3, 4분위	29.2	0.92	0.67	1.0	1.25	4.34	3.56	4.05	3.79	9.62
	5, 6분위	9.64	0.11	0.51	0.22	0.45	0.92	1.2	1.91	0.9	3.42
	7, 8분위	2.49	0.04	0.2	–	0.09	0.39	0.48	0.48	0.46	0.34
	9, 10분위	2.37	0.38	–	0.23	0.38	0.22	0.19	0.36	0.19	0.42
	모름/무응답	0.21	–	–	–	–	–	0.01	–	–	0.19

주: 1) 계는 현재주택 외 보유주택이 없는 자가 및 무상가구 중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가구를 기준으로 함
2)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무주택 가구 중 25년 이상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36.2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조사 장애인 중 약 1/30이 25년 이상 무주택 상황임을 의미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23.02%, 20.29%로 1년 이상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2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인 비율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10.04%, 6.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은 무주택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2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52.5%가 1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도 19.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2분위가 56.1%로 1년 이상 무주택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며, 3,4분위에서 5,6분위로 넘어가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주거비 부담 수준

〈표 4-1-5〉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계		100.0	41.49	28.73	6.43	1.09	22.26
행정구역	서울	18.61	8.13	5.9	0.72	0.39	3.47
	부산	6.39	2.45	2.41	0.37	0.08	1.08
	대구	5.82	2.42	1.29	0.28	0.02	1.8
	인천	7.04	2.94	1.84	0.39	0.03	1.83
	광주	2.74	0.92	1.02	0.09	-	0.71
	대전	3.48	1.24	1.0	0.38	0.03	0.81
	울산	1.87	0.75	0.49	0.07	0.06	0.5
	경기	23.15	10.46	7.43	1.43	0.26	3.56
	강원	3.28	1.72	0.92	0.3	0.03	0.3
	충북	2.74	0.69	0.73	0.36	0.04	0.92
	충남	4.58	1.18	1.14	0.66	0.01	1.59
	전북	5.21	2.01	1.41	0.22	0.03	1.54
	전남	3.97	1.55	0.69	0.21	0.02	1.5
	경북	4.15	1.73	1.02	0.45	0.05	0.9
	경남	5.65	2.71	1.18	0.4	0.04	1.31
	제주	1.34	0.57	0.24	0.1	-	0.43
점유형태	자가	44.91	13.31	8.15	1.99	0.14	21.33
	전세	5.71	2.3	2.18	0.27	0.04	0.92
	보증금 있는 월세	43.56	22.37	16.92	3.41	0.87	-
	보증금 없는 월세	5.81	3.52	1.49	0.77	0.05	-
	무상	-	-	-	-	-	-
소득	1분위	17.4	8.47	4.99	1.38	0.06	2.51
	2분위	19.89	8.96	5.81	1.14	0.33	3.65
	3, 4분위	30.05	12.96	8.75	1.56	0.48	6.3
	5, 6분위	15.19	5.95	3.9	1.13	0.14	4.08
	7, 8분위	8.04	2.77	2.4	0.36	0.02	2.5
	9, 10분위	9.19	2.21	2.88	0.86	0.07	3.16
	모름/무응답	0.24	0.18	0.01	-	-	0.05

주: 1) 계는 점유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이거나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2) '해당없음'은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이면서 주택마련 및 임차 당시 대출을 했더라도 현재 모두 상환한 경우임
3)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2%(매우부담41.49%, 조금 부담 28.73%)로 나타남. 반면 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은 7.52%로 나타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약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과 서울 지역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각각 17.89%,14.0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가 매우 부담됨이 22.37%, 조금 부담됨이 16.9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의 경우 대출금 상환부담 정도가 매우 부담됨이 13.3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소득 3,4분위가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2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위 7분위 이상부터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약 5%정도로 다른 분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

2) 주택 환경

(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78.1	77.2	81.4	74.9	80.5	91.4	80.0	90.4	75.9	75.3	76.7	88.8	64.6	58.3	77.7	94.0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82.9	82.9	83.7	79.4	84.4	92.5	85.2	91.1	80.4	81.5	74.4	94.7	67.8	56.7	85.6	93.4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13.9	12.9	15.3	16.6	11.1	8.2	16.2	6.7	14.6	23.1	26.6	5.7	14.9	32.7	17.7	20.2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92.4	92.4	92.0	92.7	91.7	99.0	91.7	97.2	94.0	92.2	88.0	91.0	85.1	68.3	97.5	100.0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	35.1	34.0	36.8	34.4	36.3	40.6	38.1	61.8	32.8	40.3	30.3	31.0	25.9	34.9	39.8	18.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6–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78.1	77.5	79.0	86.6	80.4	77.9	76.9	78.0	78.3	78.2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82.9	81.8	84.5	92.2	84.4	81.6	82.9	82.6	83.4	83.1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13.9	15.5	11.8	7.5	16.5	15.2	12.2	14.7	13.5	14.0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92.4	91.9	93.0	97.1	93.2	92.3	91.8	92.4	92.4	92.4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	35.1	34.2	36.5	44.4	40.6	36.6	31.2	37.5	34.2	35.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구조·성능 및 환경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함이 35.1%로 가장 열악하며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이 78.1%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장애와 안면장애의 주거 구조·성능 및 환경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특히, 동 장애유형의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의 충족 비율은 각각 67.8%, 56.7%로 평균인 82.9%에 못 미치며, 나머지 기준 또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한 비율이 61.8%로 다른 장애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편리함	19.1	17.8	15.4	20.7	23.0	16.1	24.1	22.2	16.5	29.1	10.5	20.7	20.8	18.5	20.3	16.5
약간편리함	53.6	55.2	46.5	51.9	56.8	65.4	50.4	61.1	59.1	42.3	59.6	58.2	58.9	24.8	44.1	55.7
약간불편함	22.0	21.8	27.7	23.4	17.6	13.4	21.0	12.7	21.8	22.7	22.5	18.6	11.1	43.8	26.9	22.6
매우불편함	5.3	5.3	10.4	4.0	2.6	5.1	4.5	3.9	2.6	5.8	7.4	2.5	9.3	12.9	8.7	5.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편리함	19.1	19.6	18.5	26.2	20.7	19.4	17.8	17.9	20.1	19.2
약간편리함	53.6	53.6	53.6	53.9	55.2	53.9	52.7	51.2	55.2	53.7
약간불편함	22.0	21.4	22.8	16.5	20.2	21.3	23.6	24.4	20.1	21.8
매우불편함	5.3	5.4	5.1	3.4	3.9	5.4	5.9	6.5	4.6	5.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의 생활 편리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72.7%는 집구조가 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7.3%는 불편한 것으로 인식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집 구조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낀 비율은 안면장애가 56.7%로 가장 높았으며 뇌병변장애 38.1%, 장루·요루장애 35.6% 순임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이 30.9%로 경증 24.7%에 비해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개조 의사	반드시 개조 원함	4.3	4.4	6.8	3.7	4.5	2.7	2.9	1.2	1.2	2.1	7.2	3.9	4.9	18.3	4.2	-
	가급적 개조 원함	16.6	16.0	29.2	16.9	12.8	16.7	10.8	8.5	12.4	19.2	15.5	9.2	1.5	-	18.0	22.8
	별로개조 원치 않음	45.3	45.5	39.9	46.2	48.7	34.3	46.6	45.6	50.9	42.9	38.6	47.2	45.7	51.8	36.6	37.1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1.2	31.3	21.1	29.4	32.6	43.3	38.2	44.7	35.3	32.5	35.1	36.8	46.4	29.8	41.2	38
	이미 개조하였음	2.6	2.8	3.0	3.9	1.4	3.0	1.6	-	0.2	3.3	3.7	2.8	1.6	-	-	2.1
희망 개조 장소 (1순위)	부엌	14.6	18.7	6.9	12.5	5.2	16.0	16.3	-	38.2	16.0	7.3	13.9	-	-	-	-
	변기	10.0	10.9	11.3	9.6	5.3	8.8	8.8	29.5	14.2	5.0	-	-	23.0	-	1.2	-
	욕조	11.4	10.1	13.9	8.6	11.9	-	14.4	48.6	6.7	17.0	-	10.7	-	-	43.3	17.2
	문턱 낮추기	21.6	21.3	31.7	30.0	7.7	16.4	11.1	21.9	2.5	19.9	8.8	-	-	-	15.2	2.3
	방문(출입문 고치기)	5.1	5.9	4.8	1.5	4.5	13.9	9.9	-	4.7	-	-	-	-	-	-	-
	냉·난방	6.6	5.7	2.2	7.4	11.2	-	13.3	-	12.2	16.2	12.7	4.7	28.5	100.0	12.7	-
	채광	2.1	1.5	0.6	3.9	1.3	1.7	5.6	-	4.7	6.7	-	18.7	-	-	-	13.6
	아파트 출입구(계단)	5.2	5.7	7.0	5.0	-	-	3.9	-	1	1.4	23.8	15.4	-	-	24.4	-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경광등)	3.9	-	-	-	45.3	-	-	-	-	-	-	-	-	-	-	-
	현관(계단)	12.8	15.1	13.3	12.8	3.0	43.3	3.1	-	3.2	16.2	31.7	-	48.5	-	3.2	23.7
	미끄럼방지	3.1	3.5	3.4	3.7	-	-	2.5	-	5.0	-	15.7	24.6	-	-	-	-
	비상 연락장치	1.3	-	1.4	2.2	4.1	-	4.5	-	7.7	-	-	-	-	-	-	6.4
	기타	2.3	1.4	3.6	2.9	0.7	-	6.5	-	-	1.6	-	12.0	-	-	-	36.7

주: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주택 개조 의사를 살펴보면, 개조를 원치 않는 비율이 76.5%로 개조를 원한다고 답한 20.9%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 희망하는 개조 장소(1순위)는 문턱 낮추기가 21.6%로 가장 많았고, 부엌 14.6%, 현관(계단) 12.8% , 욕조 11.4% 순임
  - 장애유형별로 주택개조 의사(반드시 개조 원함 + 가급적 개조 원함)를 살펴보면, 뇌병변장애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전증장애 22.8%, 심장장애 22.7%, 장루·요루장애 22.2% 순임
  - 장애유형별 희망개조장소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의 경우 문턱 낮추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언어장애, 심장장애, 간장애의 희망개조장소는 현관(계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부엌, 자폐성장애와 장루·요루장애는 욕조가 가장 높음
  - 그 외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호흡기장애는 미끄럼방지, 뇌전증장애는 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주택개조 의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드시 개조 원함	4.3	3.6	5.2	4.1	3.3	4.4	4.6	5.3	3.5	4.2
	가급적 개조 원함	16.6	14.2	20.0	17.2	13.1	14.6	19.7	21.0	13.4	16.4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5.3	46.1	44.2	43.4	44.2	44.8	46.3	42.2	47.5	45.4
	전혀 개조 원치 안함	31.2	33.7	27.7	32.0	37.8	33.5	26.6	29.1	32.9	31.4
	이미 개조하였음	2.6	2.3	2.9	3.2	1.7	2.6	2.8	2.4	2.7	2.6
희망 개조장소 (1순위)	부엌	14.6	12.7	16.5	2.1	22.1	15.2	13.0	10.1	19.6	14.8
	변기	10.0	11.0	9.1	6.6	9.3	11.7	9.2	10.0	11.2	10.6
	욕조	11.4	12.9	9.9	25.3	15.8	13.3	8.2	13.6	9.6	11.6
	문턱 낮추기	21.6	19.8	23.4	19.2	14.9	20.4	24.4	27.2	16.0	21.6
	방문 (출입문 고치기)	5.1	5.2	4.9	9.5	4.8	3.9	5.6	4.9	5.5	5.2
	냉·난방	6.6	6.6	6.6	6.2	7.2	7.0	6.2	6.4	6.7	6.6
	채광	2.1	1.9	2.3	1.7	2.7	1.9	2.0	2.2	2.1	2.1
	아파트 출입구(계단)	5.2	5.4	5.0	–	5.5	3.9	6.3	4.2	6.2	5.2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3.9	4.6	3.3	5.1	4.5	3.2	4.2	4.8	2.8	3.8
	현관(계단)	12.8	12.5	13.2	2.0	9.9	11.7	15.0	9.0	15.5	12.2
	미끄럼방지	3.1	2.5	3.8	13.5	0.4	3.1	3.3	2.9	2.9	2.9
	비상연락장치	1.3	1.7	0.9	–	2.2	1.4	1.0	2.0	0.3	1.2
	기타	2.3	3.3	1.2	8.8	0.7	3.2	1.6	2.8	1.7	2.2

주: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자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주택 개조 의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개조의사가 25.2%로 남성 17.8%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주택개조의사가 24.3%로 가장 높고, 17세 이하 21.3%, 45–64세 이하 19.0% 순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개조의사가 26.3%로 경증 16.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희망개조장소를 보면 17세 이하에서는 욕조가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8–44세 이하는 부엌이 22.1%, 45–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문턱 낮추기가 각각 20.4%,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3) 주거복지사업

(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서비스별

(단위: %)

구분	전체	알고 있음	모름
주택 구입자금 저리 융자	100.0	12.62	87.38
전세금 저리 융자	100.0	11.83	88.17
주택개조비용 저리 융자	100.0	6.04	93.96
주택개조비용 보조	100.0	5.22	94.78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26.33	73.67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22.22	77.78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100.0	11.43	88.57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7.13	92.87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5.23	94.77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5.69	94.3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100.0	6.45	93.55
일반분양주택 입주우선원	100.0	7.14	92.86
국민임대주택 거주시 편의시설 무료설치	100.0	5.38	94.62
개조 및 주거이동에 대한 정보제공	100.0	3.82	96.18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각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26.33%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론 국민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이 22.22%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개조 및 주거이동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또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20%이상 안다고 응답하였으나,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등 다른 주택형태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주거지원 프로그램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1순위) – 행정구역,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주택 구입자금 저리융자	전세금 저리융자	주거비 보조	주택 개조비용 보조	주택 개조비용 저리융자
계		100.0	10.66	8.88	21.76	5.97	0.99
행정 구역	서울	16.22	1.65	1.6	2.29	0.73	0.03
	부산	6.87	0.99	0.89	1.05	0.37	0.09
	대구	4.63	0.28	0.19	0.88	0.17	0.02
	인천	5.41	0.68	0.32	1.33	0.33	–
	광주	2.74	0.35	0.31	0.75	0.25	0.02
	대전	2.82	0.33	0.2	0.55	0.12	0.12
	울산	1.96	0.28	0.26	0.15	0.01	0.01
	경기	20.36	3.13	2.48	3.5	0.84	0.14
	강원	3.92	0.21	0.52	1.05	0.16	0.02
	충북	3.65	0.48	0.49	0.61	0.45	0.1
	충남	5.29	0.43	0.16	2.11	0.25	0.12
	전북	5.2	0.23	0.54	2.09	0.77	0.08
	전남	5.73	0.55	0.17	1.56	0.7	0.03
	경북	6.72	0.26	0.21	1.12	0.35	0.03
	경남	7.19	0.68	0.5	2.4	0.35	0.18
	제주	1.28	0.13	0.04	0.31	0.11	–
장애 유형	지체장애	53.24	6.31	4.45	11.37	3.69	0.58
	뇌병변장애	9.64	0.82	0.99	2.43	0.5	0.08
	시각장애	10.3	1.06	1.05	1.79	0.48	0.14
	청각장애	10.26	0.89	0.79	2.28	0.58	0.08
	언어장애	0.76	0.07	0.09	0.14	0.04	–
	지적장애	6.4	0.51	0.62	1.47	0.28	0.03
	자폐성장애	0.75	0.13	0.08	0.12	0.01	0.01
	정신장애	3.54	0.25	0.29	0.96	0.22	0.02
	신장장애	2.94	0.42	0.32	0.71	0.07	0.02
	심장장애	0.26	0.04	0.03	0.06	0.01	–
	호흡기장애	0.51	0.04	0.05	0.13	0.01	–
	간장애	0.41	0.06	0.03	0.09	0.02	–
	안면장애	0.11	0.01	0.01	0.02	–	–
	장루·요루장애	0.59	0.04	0.05	0.12	0.03	0.01
	뇌전증장애	0.29	0.02	0.02	0.09	0.02	–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 1순위를 살펴보면 주거비 보조가 2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구입자금 저리 융자가 10.6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이는 앞서 〈표 4-1-5〉 주거비 부담수준에서 살펴본 임차료나 대출상환금 부담에 대한 정도와 같은 의미의 결과라 할 수 있겠음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1순위) - 행정구역,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주택개조 현물지원	장애인 전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의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일반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기타	없음
계		3.33	5.61	2.05	7.28	1.5	0.11	31.88
행정구역	서울	0.23	1.62	0.59	1.79	0.65	0.02	5.02
	부산	0.14	0.52	0.2	0.53	0.04	-	2.06
	대구	0.1	0.17	0.03	0.53	0.13	-	2.13
	인천	0.06	0.2	0.12	0.59	0.06	-	1.71
	광주	0.35	0.16	0.05	0.05	0.06	0.02	0.38
	대전	0.03	0.18	0.09	0.1	0.02	-	1.09
	울산	0.02	0.06	0.01	0.15	0.02	-	0.99
	경기	0.55	1.42	0.32	2.16	0.17	0.04	5.61
	강원	0.07	0.16	0.04	0.07	-	-	1.61
	충북	0.3	0.24	0.12	0.1	0.03	-	0.73
	충남	0.36	0.25	0.25	0.29	0.19	-	0.89
	전북	0.17	0.11	0.06	0.18	0.03	-	0.95
	전남	0.34	0.23	0.03	0.09	0.02	-	2.0
	경북	0.46	0.1	0.08	0.34	0.03	0.02	3.7
	경남	0.12	0.11	0.04	0.22	0.02	-	2.55
	제주	0.04	0.07	0.02	0.09	-	0.01	0.47
장애유형	지체장애	1.8	2.75	1.08	3.38	0.74	0.03	17.07
	뇌병변장애	0.32	0.71	0.23	0.67	0.1	0.03	2.77
	시각장애	0.37	0.49	0.3	1.07	0.17	-	3.38
	청각장애	0.41	0.43	0.19	0.73	0.2	0.03	3.65
	언어장애	0.03	0.04	0.02	0.06	0.02	-	0.24
	지적장애	0.21	0.55	0.06	0.46	0.09	0.02	2.09
	자폐성장애	0.01	0.08	0.03	0.05	0.01	-	0.22
	정신장애	0.09	0.3	0.05	0.32	0.03	-	1.01
	신장장애	0.04	0.11	0.03	0.32	0.05	-	0.83
	심장장애	-	0.03	0.01	0.02	-	-	0.06
	호흡기장애	0.01	0.03	0.02	0.04	0.01	-	0.17
	간장애	-	0.02	0.01	0.04	0.02	-	0.1
	안면장애	-	-	-	0.01	-	-	0.04
	장루·요루장애	0.02	0.03	0.02	0.08	0.02	-	0.18
	뇌전증장애	-	0.03	-	0.02	0.02	-	0.07

• 즉, 주택에 개조에 대한 지원 또는 입주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하는 것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있어 필요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을 더 필요한 서비스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표 4-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가구)

구분	지원액			총 지원가구	세부지원				
	계	국비	지방비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도배	싱크대 설치	기타
2006	4,000	2,000	2,000	1,091	544	76	102	95	466
2007	3,800	1,900	1,900	1,037	477	72	80	77	425
2008	3,800	1,900	1,900	1,075	491	111	193	160	291
2009	3,800	1,900	1,900	1,093	544	94	143	111	432
2010	3,800	1,900	1,900	1,090	487	128	151	137	444
2011	3,800	1,900	1,900	1,115	449	114	61	128	513
2012	3,800	1,900	1,900	1,054	423	107	58	123	489
2013	3,800	1,900	1,900	1,048	408	128	50	132	443
2014	3,420	1,710	1,710	934	387	102	69	120	385
2015	3,028	1,514	1,514	806	384	109	76	108	312
구분	지원액			총 지원가구	세부지원				
	계	국비	지방비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기타
2016	1,508	753	755	413	188	76	81	59	145

주: 1) 한 가구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음. 이에 세부지원 합과 총 지원가구의 합이 다름
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16년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함
3)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201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총 지원가구 수와 지원액이 2015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함
- 복합지원이 포함되었으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실개조와 기타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기타지원에 비해 화장실개조 지원이 높은 편이나 그 이후부터는 두 지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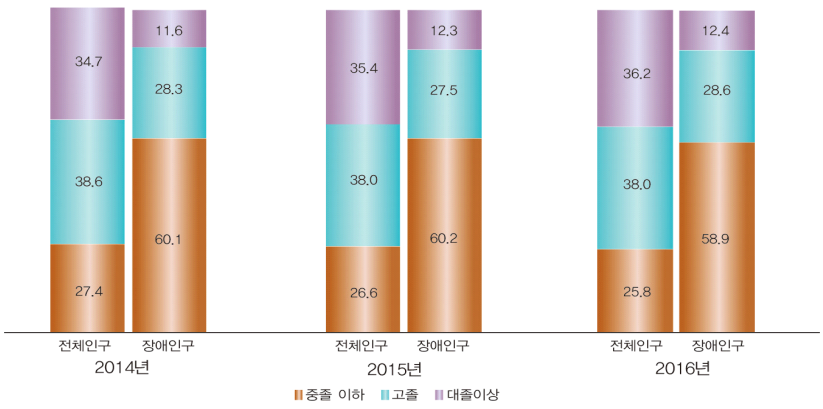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국토교통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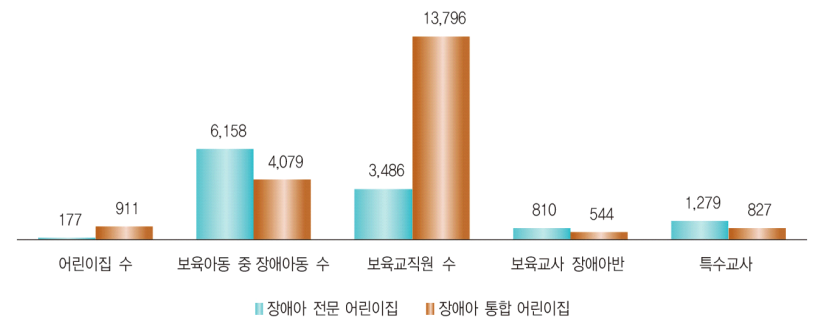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5. 교육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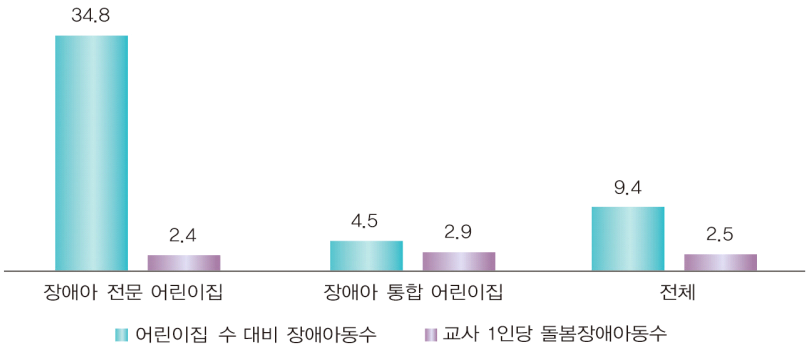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임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16년 기준 중졸 이하가 58.9%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8.6%, 대졸 이상 12.4%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8.0%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36.2%, 중졸 이하 25.8% 순이며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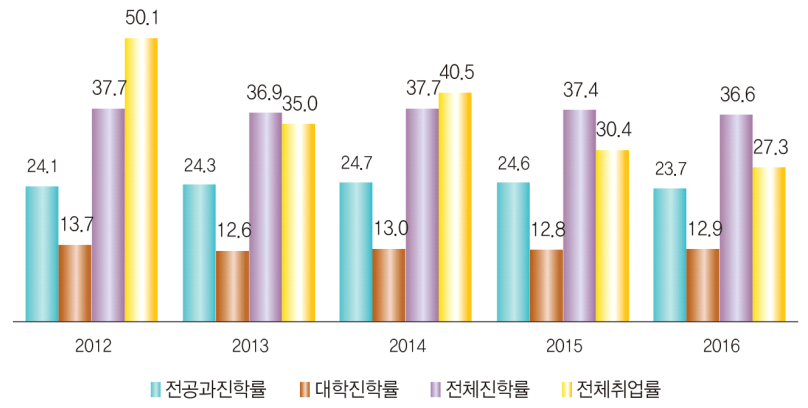
–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은 전체 177개소이며, 이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3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은 전체 911개소이며, 서울이 326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기가 279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



주: 교사수는 장애아반, 특수교사, 치료사를 합한 수임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률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1곳 당 약 34.8명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반면,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1곳당 4.5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교사 1인당 장애아동수를 살펴보면, 전문 어린이집은 1명 당 2.4명인 것에 비해, 통합 어린이집은 1명당 2.9명으로 나타남
- 졸업생 수와 진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전체 진학률은 36.6%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고등학교 졸업이후 진로도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비하여 절반 정도가 전공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률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취업률은 27.3%로 전년도에 비해 3.1%p 감소함

1) 교육수준

(1) 교육수준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명	%	명	%	명	%
장애 인구	2014년	2,449,437	1,473,017	60.1	692,724	28.3	283,696	11.6
	2015년	2,444,194	1,470,735	60.2	672,425	27.5	301,032	12.3
	2016년	2,441,167	1,438,700	58.9	699,331	28.6	303,136	12.4
	증 감	△3,027	△32,035	△1.3	26,906	1.1	2,104	0.1
전체 인구	2014년	42,513,000	11,642,000	27.4	16,269,000	38.6	14,601,000	34.7
	2015년	42,975,000	11,422,000	26.6	16,330,000	38.0	15,223,000	35.4
	2016년	43,387,000	11,192,000	25.8	16,487,000	38.0	15,708,000	36.2
	증 감	412,000	△230,000	△0.8	157,000	–	485,000	0.8

주: 1) 대졸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증감은 '15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3)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6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 2016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 26.2%는 장애인구 12.4%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편임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임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16년 기준 중졸 이하가 58.9%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8.6%, 대졸 이상 12.4%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8.0%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36.2%, 중졸 이하 25.8% 순임. 이를 통해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전체인구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5-1-2〉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간질)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11.6	11.7	12.3	10.6	19.4	8.8	9.7	5.0	2.2	6.8	10.1	4.5	-	11.4	2.9	12.0
초등학교	28.8	30.2	30.2	28.5	33.7	34.4	23.9	21.3	7.8	20.4	18.8	49.6	37.9	10.5	33.4	13.4
중학교	16.2	16.7	16.3	16.1	15.3	15.3	12.9	21.7	19.1	13.7	9.1	24.7	7.6	-	17.4	24.7
고등학교	28.1	26.1	25.7	27.9	20.1	25.2	45.6	38.8	42.3	34.7	42.4	11.8	34.5	43.5	36.4	45.2
대학이상	15.3	15.4	15.5	16.9	11.5	16.2	7.9	13.1	28.6	24.3	19.6	9.4	20.0	34.7	9.8	4.6

주: 1) 대학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무응답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5-1-3〉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3급)	경증(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11.6	4.7	21.0	7.7	2.3	4.3	21.7	10.9	11.7	11.4
초등학교	28.8	23.0	36.8	30.9	4.3	24.8	41.5	26.0	30.2	28.5
중학교	16.2	17.7	14.2	36.8	7.3	19.1	16.0	16.3	16.2	16.2
고등학교	28.1	34.5	19.3	24.6	49.8	35.2	13.8	32.5	25.9	28.4
대학이상	15.3	20.2	8.6	-	36.4	16.7	7.0	14.4	16.1	15.4

주: 1) 대학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무응답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가 28.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이상 15.3%, 무학 11.6%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학의 비율은 청각장애가 19.4%로 가장 높고 뇌병변장애 12.3%, 뇌전증장애 12.0%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4.7%로 여성 27.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가 86.2%로 가장 높고, 45-64세 이하 51.9%, 65세 이상 20.8%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중증이 46.9%로 경증 42.0%보다 높게 나타남

2) 보육

(1) 보육시설 이용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보육시설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일반보육시설	14.1	-	23.4	-	14.9	51.1	10.7	5.7	-	-	-	-	-	-	-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9.8	-	3.0	-	-	-	16.3	22.4	-	-	-	-	-	-	-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6.5	-	19.8	-	-	-	-	8.0	-	-	-	-	-	-	-	-
	다니지 않음	69.6	100.0	53.9	100.0	85.1	48.9	73.1	63.8	-	-	100.0	-	-	-	-	100.0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
	1-5시간	32.8	-	17.0	-	28.2	100.0	12.9	84.3	-	-	-	-	-	-	-	-
	6-10시간	67.2	-	83.0	-	71.8	-	87.1	15.7	-	-	-	-	-	-	-	-
	평균이용시간	6.5	-	7.3	-	5.7	5.0	7.7	3.2	-	-	-	-	-	-	-	-
월 평균 비용	계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
	무료	36.7	-	28.7	-	100.0	-	12.5	87.9	-	-	-	-	-	-	-	-
	1-5만원	8.2	-	10.4	-	-	-	5.9	12.1	-	-	-	-	-	-	-	-
	6-10만원	16.7	-	10.2	-	-	-	41.0	-	-	-	-	-	-	-	-	-
	11-15만원	7.9	-	-	-	-	100.0	8.4	-	-	-	-	-	-	-	-	-
	16-20만원	30.5	-	50.7	-	-	-	32.3	-	-	-	-	-	-	-	-	-
	평균비용	8.2	-	10.0	-	-	14.0	10.8	0.4	-	-	-	-	-	-	-	-

주: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6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는 일반보육시설이 14.1%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아통합보육시설 9.8%, 장애아전담보육시설 6.5% 순임
  - 장애유형별로 일반보육시설에는 언어장애와 뇌병변장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는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6-10시간이 6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7.7시간, 뇌병변장애 7.3시간, 청각장애 5.7시간 순으로 평균 이용시간이 길음
  -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36.7%로 가장 많았고 16-20만원 30.5%, 6-10만원 16.7% 순임
  - 장애유형별 월 평균 비용은 언어장애가 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가 10.8만원, 뇌병변장애가 10만원임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보육시설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일반보육시설	14.1	10.9	20.3	14.1	–	–	–	13.5	–	12.0
	장애아통합보육시설	9.8	10.7	8.1	9.8	–	–	–	11.9	–	10.6
	장애아전담보육시설	6.5	8.8	1.9	6.5	–	–	–	7.9	–	7.0
	다니지 않음	69.6	69.6	69.7	69.6	–	–	–	66.6	100.0	70.4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	100.0
	1–5시간	32.8	40.0	18.8	32.8	–	–	–	30.4	–	30.4
	6–10시간	67.2	60.0	81.2	67.2	–	–	–	69.6	–	69.6
	평균이용시간	6.5	5.9	7.8	6.5	–	–	–	6.5	–	6.5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	100.0
	무료	36.7	39.0	32.0	36.7	–	–	–	40.6	–	40.6
	1–5만원	8.2	6.4	11.8	8.2	–	–	–	9.1	–	9.1
	6–10만원	16.7	25.2	–	16.7	–	–	–	13.7	–	13.7
	11–15만원	7.9	8.1	7.6	7.9	–	–	–	2.8	–	2.8
	16–20만원	30.5	21.2	48.6	30.5	–	–	–	33.8	–	33.8
	평균비용	8.2	7.6	9.4	8.2	–	–	–	7.8	–	7.8

주: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시설에 다니는 여성의 비율은 20.3%로 남성 10.9%보다 높음
- 여성의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7.8시간으로 남성 5.9시간보다 길었으며, 월 평균 비용도 여성은 9.4만원, 남성은 7.6만원으로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더 많았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은 보육시설을 전혀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원여부, 지역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계	177	8,504	7,121	6,158	963	3,486	177	810	277	1,279	501	187	255
서울 지원	9	287	224	221	3	130	9	20	3	55	15	9	19
서울 미지원	1	64	44	20	24	18	1	1	5	6	2	1	2
부산	16	597	549	542	7	286	16	57	10	123	48	16	16
대구	17	991	826	752	74	395	17	97	25	158	63	18	17
인천	6	140	133	132	1	89	6	10	9	36	14	6	8
광주	11	684	599	507	92	274	11	68	19	98	48	12	18
대전	5	121	114	112	2	66	5	17	6	22	9	5	2
울산	9	499	442	357	85	210	9	54	19	74	31	10	13
세종시	–	–	–	–	–	–	–	–	–	–	–	–	–
경기도 지원	18	687	605	532	73	327	18	44	32	140	47	20	26
경기도 미지원	2	53	32	32	–	19	2	7	1	5	1	2	1
강원	4	199	146	115	31	59	4	26	5	11	5	4	4
충북	7	369	266	177	89	125	7	41	20	22	14	7	14
충남	10	441	375	295	80	174	10	53	15	45	21	10	20
전북	10	453	386	377	9	186	10	67	3	57	29	11	9
전남	13	869	704	533	171	330	13	79	41	99	56	17	25
경북	14	913	783	678	105	376	14	55	33	183	53	14	24
경남	21	949	729	645	84	353	21	99	27	115	38	21	32
제주	4	188	164	131	33	69	4	15	4	30	7	4	5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서울과 경기도는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 지원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운영됨
3)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4)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5) 장애아동: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은 전체 177개소이며, 이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3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21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기 20개소, 대구 17개소, 부산 16개소 순으로 나타남
-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는 대구가 75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678명, 경남이 645명 순이었음
- 보육교직원 중 특수 교사가 1,279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현황을 보였으며, 지역별 전체 보육 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가 39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376명, 경남이 353명으로 장애아동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계	911	84,019	75,122	4,079	71,043	13,796	905	544	9,011	827	58	1,398	1,053
서울	326	31,687	29,040	1,641	27,399	5,366	322	151	3,533	418	40	531	371
부산	33	2,791	2,517	126	2,391	460	33	16	292	26	–	43	50
대구	14	1,321	1,026	98	928	224	14	18	143	12	–	20	17
인천	59	5,118	4,572	324	4,248	873	58	48	557	61	10	96	43
광주	1	163	135	14	121	23	1	1	12	3	–	2	4
대전	14	810	706	48	658	158	14	9	106	7	–	16	6
울산	14	1,338	1,219	72	1,147	210	14	10	138	13	–	26	9
세종	6	1,194	1,118	13	1,105	215	6	1	160	3	–	19	26
경기	279	24,882	22,847	1,261	21,586	4,060	279	197	2,632	227	4	431	290
강원	17	1,523	1,157	51	1,106	231	16	11	143	5	–	24	32
충북	12	1,182	787	23	764	142	12	6	96	2	–	15	11
충남	32	2,667	2,060	45	2,015	368	32	11	238	1	–	36	50
전북	11	1,130	793	62	731	170	11	14	102	7	4	15	17
전남	13	1,537	1,403	35	1,368	216	13	8	148	3	–	21	23
경북	19	1,676	1,235	89	1,146	253	19	19	162	8	–	22	23
경남	27	2,318	1,990	90	1,900	363	27	18	239	12	–	36	31
제주	34	2,682	2,517	87	2,430	464	34	6	310	19	–	45	5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3)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4) 장애아동: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은 전체 911개소이며, 서울이 326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기가 279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광주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이 1곳에 불과하며, 장애아동 또한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의 경우 어린이집수는 6곳이지만 장애아동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 중 장애아반은 전체 544명이었으며, 특수교사는 827명으로 나타남
- 단순하게 비교하긴 어려우나, 장애아반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를 합친 수와 장애아동 수를 비교해 보면, 교사 수는 총 1,371명 장애아동 수는 총 4,079명으로 교사 일인당 약 3.0명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유치원

(1) 유치원 이용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유치원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일반유치원	5.5	–	9.5	–	11.5	18.0	3.2	–	–	–	–	–	–	–	–	–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4.7	–	6.7	–	5.2	–	3.8	6.5	–	–	–	–	–	–	–	–
	특수학교 유치원(부)	2.2	–	5.0	–	–	–	–	–	–	–	–	–	–	–	–	67.2
	기타	–	–	–	–	–	–	–	–	–	–	–	–	–	–	–	–
	다니지 않음	87.6	100.0	78.8	100.0	83.3	82.0	93.0	93.5	–	–	100.0	–	–	–	–	32.8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
	1–5시간	66.6	–	95.0	–	31.1	–	54.4	100.0	–	–	–	–	–	–	–	–
	6–10시간	33.4	–	5.0	–	68.9	100.0	45.6	–	–	–	–	–	–	–	–	100.0
	평균이용시간	5.1	–	4.3	–	6.1	6.0	6.4	4.0	–	–	–	–	–	–	–	6.0
월 평균 비용	계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100.0
	무료	67.0	–	60.4	–	31.1	–	100.0	100.0	–	–	–	–	–	–	–	100.0
	1–5만원	11.4	–	24.8	–	–	–	–	–	–	–	–	–	–	–	–	–
	6–10만원	4.6	–	–	–	–	100.0	–	–	–	–	–	–	–	–	–	–
	11–15만원	6.7	–	14.7	–	–	–	–	–	–	–	–	–	–	–	–	–
	16–20만원	–	–	–	–	–	–	–	–	–	–	–	–	–	–	–	–
	21만원이상	10.3	–	–	–	68.9	–	–	–	–	–	–	–	–	–	–	–
	평균비용	4.4	–	3.5	–	15.8	10.0	–	–	–	–	–	–	–	–	–	–

주: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8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유치원 중에서는 일반유치원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4.7%, 특수학교 유치원(부) 2.2% 순임

- 장애유형별로 일반유치원에는 언어장애와 청각장애,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에는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는 뇌전증장애와 뇌변병장애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1–5시간이 6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6.4시간, 청각장애 6.1시간, 언어장애와 뇌전증장애는 각각 6.0시간 순으로 평균이용시간이 길음
-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67.0%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11.4%, 21만 원 이상 10.3% 순임
- 장애유형별 월 평균 비용은 청각장애가 1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장애가 10만원, 뇌병변장애가 3.5만원임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유치원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일반유치원	5.5	5.7	5.0	5.5	-	-	-	4.4	17.5	5.9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4.7	6.7	0.8	4.7	-	-	-	5.7	-	5.0
	특수학교 유치원(부)	2.2	3.4	-	2.2	-	-	-	1.6	-	1.5
	기타	-	-	-	-	-	-	-	-	-	-
	다니지 않음	87.6	84.2	94.2	87.6	-	-	-	88.3	82.5	87.6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1-5시간	63.1	85.6	66.6	-	-	-	85.6	-	71.8	66.6
	6-10시간	-	-	-	-	-	-	-	-	-	-
	평균이용시간	5.1	5.0	5.1	-	-	-	4.7	6.7	5.1	5.1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00.0
	무료	74.3	27.9	67.0	-	-	-	76.7	-	64.4	67.0
	1-5만원	-	72.1	11.4	-	-	-	14.6	-	12.3	11.4
	6-10만원	5.5	-	4.6	-	-	-	-	31.0	5.0	4.6
	11-15만원	8.0	-	6.7	-	-	-	8.7	-	7.3	6.7
	16-20만원	-	-	-	-	-	-	-	-	-	-
	21만원이상	12.2	-	10.3	-	-	-	-	69.0	11.1	10.3
	평균비용	4.6	3.6	4.4	-	-	-	2.0	19.0	4.8	4.4

주: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남성이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비율은 6.7%로 여성 0.8%에 비해 높음
  - 남성과 여성의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월 평균 비용은 여성이 4.4만원, 남성은 3.6만원으로 여성의 유치원 이용비용이 더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보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높고, 1일 평균 이용시간이 길며, 월 평균 비용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특수교육

(1) 특수학교 수

〈표 5-4-1〉 특수학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 설치별

(단위: 교)

구분	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 장애	영아 학급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공과
2009	150	5	55	90	12	18	94	18	8	–	–	–	–	–	–
2010	150	5	55	90	12	18	95	18	7	18	118	140	139	136	83
2011	155	5	59	91	12	18	100	18	7	23	118	145	145	141	100
2012	156	5	60	91	12	16	102	19	7	23	116	145	146	143	108
2013	162	5	66	91	12	16	107	20	7	25	119	150	152	149	115
2014	166	5	69	92	12	15	112	20	7	22	120	154	157	155	121
2015	167	5	70	92	12	15	113	20	7	23	118	155	158	155	127
2016	170	5	74	91	12	14	119	18	7	24	124	158	161	160	133
서울	29	3	8	18	2	4	15	5	3	7	20	26	26	26	22
부산	15	–	8	7	1	1	12	1	–	7	10	12	13	12	9
대구	9	–	3	6	1	1	4	2	1	–	4	9	9	9	9
인천	7	–	3	4	1	1	4	1	–	1	6	7	7	7	6
광주	5	–	3	2	1	–	3	1	–	1	2	5	5	5	4
대전	5	–	3	2	1	–	3	1	–	1	5	5	5	5	5
울산	4	–	2	2	–	1	3	–	–	1	3	4	4	4	4
세종	1	–	1	–	–	–	1	–	–	1	1	1	1	1	1
경기	34	2	11	21	–	2	30	1	1	2	30	29	31	31	24
강원	7	–	5	2	1	1	5	–	–	–	7	7	7	7	6
충북	9	–	2	7	2	1	3	2	1	1	9	9	9	9	7
충남	6	–	4	2	–	–	5	1	–	1	3	6	6	6	5
전북	11	–	6	5	1	1	7	2	–	1	5	10	10	10	6
전남	8	–	3	5	1	1	6	–	–	–	6	8	8	8	6
경북	8	–	3	5	–	–	7	–	1	–	4	8	8	8	8
경남	9	–	7	2	–	–	9	–	–	–	6	9	9	9	8
제주	3	–	2	1	–	–	2	1	–	–	3	3	3	3	3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16년 특수학교의 수는 170개교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수학교의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4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개교, 부산 15개교 순임
  - 설립별로 보면 사립이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공립 74개교, 국립 5개교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정신지체(지적장애)가 119개교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18개교, 청각장애 14개교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중학교가 161개교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60개교, 초등학교 158개교 순임. 특히 유치원의 경우 2015년에 전년대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임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2) 특수학급 수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 설치별

(단위: 교,개)

구분	학교수	특수학급수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5,797	7,792	40	7,641	111	274	4,682	1,748	1,088
2011	6,243	8,415	41	8,236	138	287	4,897	1,971	1,260
2012	6,595	8,927	45	8,726	156	344	4,999	2,144	1,440
2013	6,915	9,343	46	9,102	195	380	5,085	2,268	1,610
2014	7,136	9,617	48	9,363	206	464	5,073	2,353	1,709
2015	7,378	9,868	46	9,590	232	551	5,121	2,378	1,789
2016	7,543	10,065	46	9,781	238	640	5,155	2,353	1,917
서울	758	1,272	7	1,238	27	59	677	289	247
부산	479	552	2	539	11	20	319	123	90
대구	303	423	4	418	1	20	228	99	76
인천	428	578	1	569	8	56	302	117	103
광주	204	268	4	255	9	13	134	66	55
대전	254	319	–	309	10	39	158	74	48
울산	169	233	–	233	–	17	118	54	44
세종	64	75	–	75	–	17	33	15	10
경기	1,825	2,649	–	2,593	56	198	1,209	651	591
강원	346	369	3	366	–	20	210	79	60
충북	339	410	8	400	2	37	206	95	72
충남	467	612	4	595	13	46	316	138	112
전북	330	371	3	361	7	17	224	78	52
전남	428	516	1	509	6	31	257	132	96
경북	468	565	1	514	50	10	320	133	102
경남	586	740	3	699	38	36	385	181	138
제주	95	113	5	108	–	4	59	29	21

주: 1) 학교 수 :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수
2) 2010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1학급 포함(인천)
3) 2011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학급 포함(인천 1, 경기 1)
4) 2012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5학급 포함(인천 공립 2, 경기 공립 3)
5) 2013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7학급 고등학교에 포함(인천 공립 2, 경기 공립4, 충북공립 1)
6) 2014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18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2, 경기 12, 충북 3)
7) 2015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9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2, 충북 3)
8) 2016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2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3)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16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수는 7,543개교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825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758개교, 경남 586개교 순임
- 특수학급 수는 설립별로 보면 공립이 9,781개로 가장 많았고 사립 238개, 국립 46개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155개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353개, 고등학교 1,917개 순임

특수학급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3)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장애영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2009	23,606	1,470	1,257	15,353	3,206	860	983	92	13	16	356
2010	23,776	1,563	1,150	15,316	3,238	895	1,267	79	15	24	229
2011	24,580	1,495	1,153	15,819	3,371	429	1,917	86	20	35	255
2012	24,720	1,479	1,060	15,513	3,548	340	2,459	79	12	19	211
2013	25,138	1,468	1,053	15,172	3,584	279	3,191	113	38	33	207
2014	25,288	1,380	976	15,235	3,615	217	3,531	76	23	29	206
2015	25,531	1,353	952	14,891	3,707	199	4,000	85	13	48	283
2016	25,467	1,313	863	14,285	3,889	97	4,639	97	18	12	254
서울	4,496	342	362	1,885	871	10	968	1	–	–	57
부산	1,821	113	48	922	331	9	321	11	5	3	58
대구	1,540	80	63	849	239	3	291	12	–	–	3
인천	1,308	106	55	771	165	3	194	9	–	1	4
광주	965	104	10	494	215	–	140	–	–	–	2
대전	1,059	113	26	575	107	–	234	–	–	–	4
울산	719	19	50	446	96	5	91	1	1	–	10
세종	66	1	1	32	15	–	15	–	–	–	2
경기	4,579	33	57	2,692	631	24	1,089	17	2	1	33
강원	932	85	18	564	88	1	165	4	1	1	5
충북	1,245	184	107	594	196	5	142	7	–	–	10
충남	930	6	8	636	147	1	112	5	1	–	14
전북	1,235	45	16	824	176	2	144	13	–	2	13
전남	1,044	61	17	727	110	7	107	8	–	1	6
경북	1,526	6	13	1,157	120	3	193	6	1	1	26
경남	1,558	13	7	891	295	24	313	2	7	1	5
제주	444	2	5	226	87	–	120	1	–	1	2

주: 1) 정신지체: 2016.2.3.부터 지적장애로 개정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장애구분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장애 구분과 다름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16년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5,467명으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에 소폭 감소함
-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4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579명, 부산 1,821명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정신지체(지적)장애가 14,285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과반이 넘어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4,639명 지체장애 3,889명 순임
-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장애영역별, 시도별, 설립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9	23,606	958	10,641	12,007
2010	23,776	948	10,842	11,986
2011	24,580	946	11,313	12,321
2012	24,720	904	11,536	12,280
2013	25,138	892	12,232	12,014
2014	25,288	858	12,706	11,724
2015	25,531	856	13,087	11,588
2016	25,467	855	13,416	11,196
시각	1,246	201	201	844
청각	1,313	114	232	967
정신지체	18,975	189	11,835	6,951
지체장애	2,591	163	975	1,453
정서장애	1,342	188	173	981
서울	4,496	478	1,480	2,538
부산	1,821	-	1,253	568
대구	1,540	-	762	778
인천	1,308	-	850	458
광주	965	-	694	271
대전	1,059	-	696	363
울산	719	-	468	251
세종	66	-	66	-
경기	4,579	377	2,106	2,096
강원	932	-	744	188
충북	1,245	-	343	902
충남	930	-	712	218
전북	1,235	-	733	502
전남	1,044	-	513	531
경북	1,526	-	362	1,164
경남	1,558	-	1,368	190
제주	444	-	266	178

주: 학생 개인의 장애영역이 아닌,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학생 수임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전체 25,467명 중 국 · 공립학교에 다니는 수가 총 14,271명으로 사립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지적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 유형에서 국 · 공립학교에 다니는 수 보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충북, 전남, 경북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대상자 수가 국 · 공립학교 대상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와 경기지역의 경우 국 · 공립학교 대상자 수와 사립학교 대상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립학교 대상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단위: 명)

구분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9	39,380	–	–	–	720	22,469	9,197	6,994
2010	42,021	256	41,087	678	815	22,886	10,230	8,090
2011	43,183	266	42,112	805	924	22,414	10,951	8,894
2012	44,433	261	43,248	924	1,138	21,695	11,659	9,941
2013	45,181	262	43,762	1,157	1,394	21,087	12,023	10,677
2014	45,803	267	44,349	1,187	1,675	20,586	11,973	11,569
2015	46,351	254	44,808	1,293	2,039	20,991	11,312	12,009
2016	46,645	233	45,123	1,289	2,504	21,192	10,602	12,347
서울	5,940	44	5,728	168	260	2,818	1,305	1,557
부산	2,596	9	2,512	75	71	1,264	608	653
대구	1,895	24	1,867	4	68	860	447	520
인천	3,077	6	3,011	60	255	1,466	635	721
광주	1,274	27	1,197	50	56	560	299	359
대전	1,639	–	1,571	68	165	745	355	374
울산	1,166	–	1,166	–	64	561	262	279
세종	250	–	250	–	43	106	54	47
경기	12,581	–	12,290	291	704	5,212	2,938	3,727
강원	1,500	16	1,484	–	86	715	352	347
충북	1,899	32	1,851	16	156	849	398	496
충남	2,770	14	2,702	54	217	1,297	602	654
전북	1,565	14	1,527	24	57	755	382	371
전남	2,241	3	2,199	39	99	1,018	535	589
경북	2,365	1	2,110	254	36	1,126	548	655
경남	3,359	14	3,159	186	147	1,596	767	849
제주	528	29	499	–	20	244	115	149

주: 1) 2010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5명 포함
2) 2011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6명 포함
3) 2012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30명(인천 10명, 경기 20명) 포함
4) 2013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46명(인천 13명, 경기 27명, 충북 6명) 고등학교에 포함
5) 2014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15명(인천 22명, 대구 11명, 경기 65명, 충북 17명) 고등학교에 포함
6) 2015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86명(대구 11명, 인천 33명, 경기 123명, 충북 19명) 고등학교에 포함
7) 2016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15명(대구 11명, 인천 27명, 경기 155명, 충북 22명) 고등학교에 포함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학급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은 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 공립이나 사립의 경우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늘어났으나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듦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학생이 12,581명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 수 보다 많았으며, 그 중 공립학교 학생수가 12,2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의 학생 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졸업생 진로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전공과	대학 (전문대 포함)	
2009	5,317	2,018	1,258	759	38.0
2010	6,937	2,359	1,391	968	34.0
2011	6,663	2,509	1,577	932	37.7
2012	7,493	2,828	1,803	1,025	37.7
2013	8,103	2,992	1,967	1,025	36.9
2014	8,672	3,266	2,139	1,127	37.7
2015	8,979	3,358	2,212	1,146	37.4
2016	9,482	3,471	2,246	1,225	36.6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2,460	1,354	1,258	96	55.0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629	1,400	967	433	38.6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1,354	690	21	669	51.0
전공과 졸업자	2,039	27	–	27	1.3

주: 1)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2)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취업률 기준 변경: 20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졸업생 수와 진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진학률은 36.6%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비슷한 수준임(2010년 제외). 고등학교 졸업이후 진로도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비하여 절반 이상이 전공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졸업 유형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이 55.0%로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였으며, 전공과 졸업자가 1.3%로 가장 낮은 진학률을 보임
-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이후 대학진학률보다 전공과로의 진학의 비율이 더 높으며, 그 비율은 특수학교가 특수학급에 비해 높음.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전체 진학자 690명중 669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취업														취업률
		전체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제과 제빵	IT정보 서비스	상업	의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 등	기타		
2009	5,317	1,632	29	245	37	21	16	7	133	122	14	90	863	55		49.5
2010	6,937	1,937	16	196	121	62	13	10	126	121	32	385	933	225		42.3
2011	6,663	2,100	14	405	21	30	16	7	118	143	40	66	749	491		50.6
2012	7,493	2,338	19	412	26	33	26	5	120	208	63	98	711	617		50.1
2013	8,103	1,788	17	451	19	53	16	2	105	314	138	139	–	534		35.0
2014	8,672	2,187	8	512	24	48	35	10	110	334	170	168	–	768		40.5

구분	졸업생 수	취업														취업률
		전체	보건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 제과 제빵	의료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2015	8,979	1,710	43	522	21	15	119	64	17	150	211	12	125	68	343	30.4
2016	9,482	1,639	44	611	22	14	127	63	31	122	168	10	120	49	258	27.3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2,460	155	7	48	4	1	10	46	2	4	5	2	7	2	17	14.0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629	696	17	237	5	4	63	–	14	55	85	2	70	32	112	31.2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1,354	124	4	56	9	4	10	–	6	4	6	1	5	1	18	18.7
전공과 이수자	1,960	664	16	270	4	5	44	17	9	59	72	5	38	14	111	34.4

주: 1)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 * 100
2) 복지관 등: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3) 취업률 기준 변경: 20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4)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부터 취업 분류가 세분화 됨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16년 전체 졸업생 수 9,482명 중 취업한 경우는 1,639명으로 27.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3.1%p 감소함. 취업영역 중 제품제조가 6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졸업 유형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공과 이수자가 3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이 31%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경우 제품제조영역과 의료영역에 각각 48명과 46명으로 가장 많이 취업하였으며, 그 외 졸업 유형에서는 제품제조영역의 취업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5) 교육기관 편의시설

(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교육기관 유형별, 편의시설 유형별

(단위: 교, %)

구분	시설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 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2009	12145	10,054	82.8	10,702	88.1	9,688	79.8	9,616	79.2	7,804	64.3	6,224	51.2
2010	11655	9,880	84.8	10,240	87.9	9,360	80.3	9,551	81.9	7,240	62.1	5,956	51.1
2011	11788	10,502	89.1	11,047	93.7	10,251	87.0	10,154	86.1	8,365	71.0	7,585	64.3
2012	11897	11,083	93.2	11,565	97.2	11,114	93.4	10,796	90.7	9,570	80.4	8,570	72.0
2013	12122	11,101	91.6	11,474	94.7	11,300	93.2	11,249	92.8	9,466	78.1	8,922	73.6
2014	12,253	11,474	93.6	11,763	96.0	11,524	94.1	11,583	94.5	10,982	89.6	10,111	82.5
2015	12,332	11,778	95.5	12,010	97.4	11,812	95.8	11,840	96.0	11,466	93.0	10,857	88.0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472	461	97.7	464	98.3	458	97.0	462	97.9	445	94.3	443	93.9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	6,811	6,703	98.4	6,776	99.5	6,744	99.0	6,702	98.4	6,479	95.1	6,475	95.1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	4,886	4,452	91.5	4,610	94.7	4,447	91.4	4,513	92.7	4,379	90.0	3,778	77.6
특수학교	163	162	99.4	160	98.2	163	100.0	163	100.0	163	100.0	161	98.8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15년 교육기관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89.5%로 2010년 이후 꾸준히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편의시설 유형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설치가 용이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97.4%로 가장 높았으며, 유도 및 안내설비가 70.8%, 점자블록이 80.1%, 경보 및 피난설비가 84.2%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안내시설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평균 98.3%로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수학급 미설치 초 · 중 · 고가 84.9%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교육기관 유형별, 편의시설 유형별(계속)

(단위: 교, %)

구분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전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2009	9,952	81.9	–	–	–	–	–	–	–	–	75.3
2010	9,368	80.4	7,911	67.9	4,175	35.8	4,324	37.1	5,589	48.0	65.2
2011	10,466	88.8	9,564	81.1	6,782	57.5	6,122	51.9	7,922	67.2	76.2
2012	11,180	94.0	10,424	87.6	8,671	72.9	8,338	70.1	9,556	80.3	84.7
2013	11,185	92.3	9,669	79.8	8,338	68.8	6,765	55.8	9,097	75.0	81.4
2014	11,391	93.0	10,126	82.6	8,897	72.6	7,942	64.8	9,537	77.8	85.6
2015	11,682	94.7	11,020	89.4	9,879	80.1	8,725	70.8	10,378	84.2	89.5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438	92.8	708	86.4	–	–	–	–	–	–	94.8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	6,736	98.9	6,207	91.1	6,021	88.4	5,241	76.9	6,285	92.3	93.9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	4,347	89.3	3,945	81.1	3,700	76.0	3,331	68.5	3,934	80.8	84.9
특수학교	161	98.8	160	98.2	158	96.9	153	93.9	159	97.5	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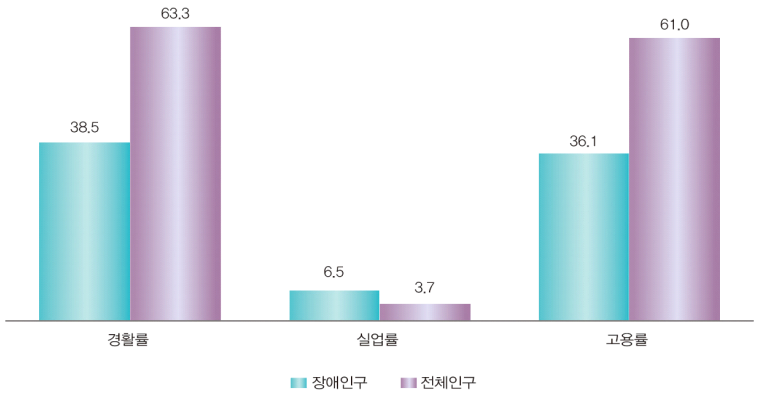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기관 유형별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주 출입구 접근로의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수학급 설치 초 · 중 · 고는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수학급 미설치 초 · 중 · 고 역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 유도 및 안내설비(68.5%), 계단 또는 승강기(77.6%), 점자블록(76.0%)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95%이상의 설치율을 보였으나 유도 및 안내설비가 93.9%로 다른 편의시설현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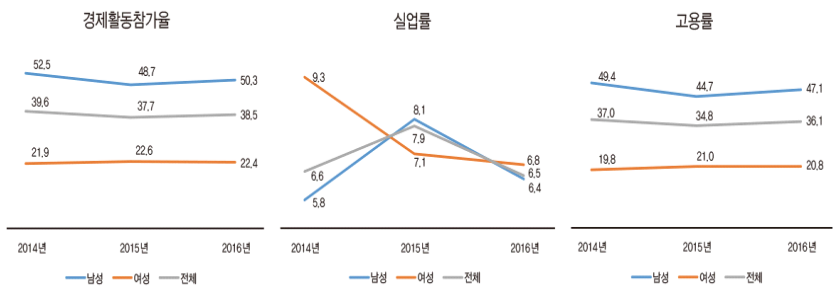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6. 노동과 직업재활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2016) - 전체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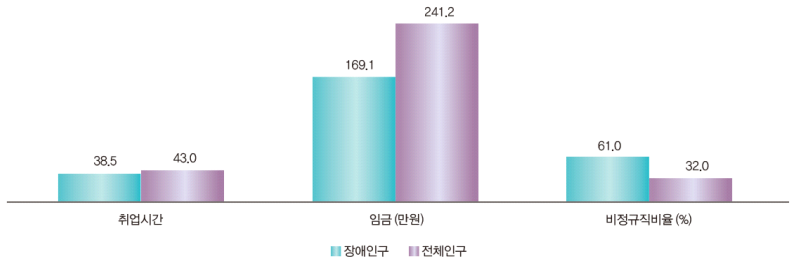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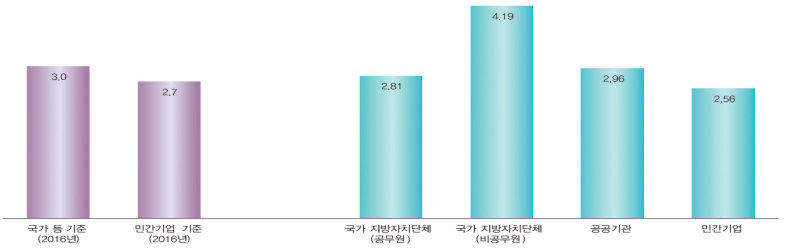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로 전체인구 63.3%의 절반수준에 그침
  - 실업률은 장애인구 6.5%로 전체인구 3.7%보다 2.8%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구 36.1%로 전체인구 61.9% 보다 25.8%p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최근 3년간 유사한 반면, 실업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최근 3년간 전체와 남성의 실업률은 증감을 반복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감소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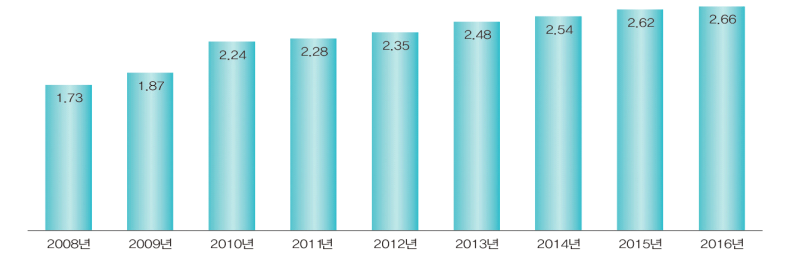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주: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2017년부터 3.2%, 2019년 이후 3.4%), 민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7%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함(2017년 년부터 2.9%, 2019년 이후에는 3.1%)

- 임금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주 평균 근무시간(취업시간)은 38.5시간으로 전체인구의 주 평균 근무시간인 43.0시간보다 적으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241.2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은 169.1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70%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고용률은 2.66%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7%에도 미치지 못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81%로 의무고용률 3.0%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4.19%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96%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타 공공기관의 고용률 2.22%를 제외하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6%로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1) 경제활동

(1) 경제활동상태

〈표 6-1-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 경제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비율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전체	2,441,166	100.0	941,051	880,090	60,961	1,500,115	38.5	6.5	36.1
	남성	1,414,972	58.0	711,664	666,248	45,416	703,308	50.3	6.4	47.1
	여성	1,026,194	42.0	229,387	213,842	15,545	796,807	22.4	6.8	20.8
	15-29세	125,932	5.2	46,116	38,387	7,729	79,816	36.6	16.8	30.5
	30-39세	154,406	6.3	94,019	86,315	7,704	60,387	60.9	8.2	55.9
	40-49세	298,101	12.2	184,725	175,145	9,580	113,376	62.0	5.2	58.8
	50-59세	520,217	21.3	286,925	275,382	11,543	233,292	55.2	4.0	52.9
	60세 이상	1,342,509	55.0	329,265	304,860	24,405	1,013,244	24.5	7.4	22.7
	수도권	1,016,951	41.7	404,115	374,096	30,019	612,836	39.7	7.4	36.8
	광역시권	462,230	18.9	165,852	155,598	10,254	296,378	35.9	6.2	33.7
	기타시도	961,985	39.4	371,084	350,396	20,688	590,901	38.6	5.6	36.4
	중졸이하	1,438,700	58.9	393,344	373,502	19,842	1,045,356	27.3	5.0	26.0
	고졸	699,331	28.6	353,025	325,766	27,259	346,306	50.5	7.7	46.6
	대졸이상	303,136	12.4	194,683	180,823	13,860	108,453	64.2	7.1	59.7
전체인구	전체	43,387,000	1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15,932,000	63.3	3.7	61.0
	남성	21,271,000	49.0	15,800,000	15,204,000	596,000	5,472,000	74.3	3.8	71.5
	여성	22,116,000	51.0	11,655,000	11,246,000	410,000	10,460,000	52.7	3.5	50.8
	15-29세	9,449,000	21.8	4,469,000	4,036,000	433,000	4,980,000	47.3	9.7	42.7
	30-39세	7,570,000	17.4	5,832,000	5,653,000	179,000	1,738,000	77.0	3.1	74.7
	40-49세	8,388,000	19.3	6,798,000	6,650,000	148,000	1,590,000	81.0	2.2	79.3
	50-59세	8,172,000	18.8	6,260,000	6,112,000	148,000	1,912,000	76.6	2.4	74.8
	60세 이상	9,809,000	22.6	4,097,000	4,000,000	97,000	5,712,000	41.8	2.4	40.8
	수도권	21,575,000	49.7	13,802,000	13,238,000	564,000	7,773,000	64.0	4.1	61.4
	광역시권	8,580,000	19.8	5,195,000	5,006,000	189,000	3,386,000	60.5	3.6	58.3
	기타시도	13,233,000	30.5	8,459,000	8,208,000	253,000	4,772,000	63.9	3.0	62.0
	중졸이하	11,192,000	25.8	4,440,000	4,339,000	101,000	6,752,000	39.7	2.3	38.8
	고졸	16,487,000	38.0	10,751,000	10,303,000	449,000	5,736,000	65.2	4.2	62.5
	대졸이상	15,708,000	36.2	12,264,000	11,808,000	455,000	3,445,000	78.1	3.7	75.2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4)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5)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6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 2016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로 전체인구 63.3% 보다 24.8%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구 6.5%로 전체인구 3.7%보다 2.8%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구 36.1%로 전체인구 61.9% 보다 25.8%p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지역 간, 연령 간 차이보다 성별, 학력별에 따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47.1%로 여성 20.8%에 비해 26.3%p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59.7%로 가장 높고, 고졸 46.6%, 중졸이하 26.0% 순임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비교

(단위: 명,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
전체	38.3	39.6	37.7	38.5	0.8	5.9	6.6	7.9	6.5	△1.4	36.0	37.0	34.8	36.1	1.3
남성	49.9	52.5	48.7	50.3	1.6	6.0	5.8	8.1	6.4	△1.7	46.9	49.4	44.7	47.1	2.4
여성	22.1	21.9	22.6	22.4	△0.2	5.6	9.3	7.1	6.8	△0.3	20.9	19.8	21.0	20.8	△0.2
15~29세	33.1	34.1	31.7	36.6	4.9	13.5	10.6	17.5	16.8	△0.7	28.6	30.5	26.1	30.5	4.4
30~39세	60.1	67.6	63.5	60.9	△2.6	5.9	9.2	11.2	8.2	△3.0	56.6	61.4	56.4	55.9	△0.5
40~49세	63.2	56.9	58.9	62.0	3.1	6.4	6.2	6.7	5.2	△1.5	59.2	53.4	54.9	58.8	3.9
50~59세	49.4	57.1	54.4	55.2	0.8	5.5	4.3	8.0	4.0	△4.0	46.7	54.6	50.1	52.9	2.8
60세 이상	24.1	24.8	23.2	24.5	1.3	4.8	7.6	6.0	7.4	1.4	23.0	22.9	21.8	22.7	0.9
중증	21.5	24.8	20.8	21.7	0.9	10.8	8.5	11.2	9.2	△2.0	19.2	22.7	18.4	19.7	1.3
경증	46.0	46.4	45.4	46.4	1.0	4.8	6.2	7.2	5.9	△1.3	43.8	43.6	42.1	43.6	1.5
신체 외부 지체장애	46.8	48.6	47.1	47.7	0.6	4.3	6.0	7.3	5.7	△1.6	44.8	45.7	43.7	45	1.3
신체 외부 지체 외	12.3	13.1	11.8	12.4	0.6	9.1	10.4	11.7	11.8	0.1	11.2	11.8	10.4	10.9	0.5
감각 시각장애	43.0	45.7	40.7	45.6	4.9	8.6	6.8	7.5	5.8	△1.7	39.3	42.6	37.6	42.9	5.3
감각 시각 외	35.5	34.5	35.3	35.3	-	4.1	8.1	7.1	6.5	△0.6	34.0	31.7	32.8	33	0.2
정신적	23.9	25.1	21.4	21.6	0.2	16.9	7.7	13.9	11.6	△2.3	19.9	23.2	18.4	19.1	0.7
신체내부	24.2	26.6	24.8	26.6	1.8	8.5	9.2	8.3	9.7	1.4	22.1	24.2	22.8	24.1	1.3
수도권	39.5	38.9	37.8	39.7	1.9	7.1	9.5	9.4	7.4	△2.0	36.7	35.2	34.2	36.8	2.6
광역시권	33.6	39.7	33.2	35.9	2.7	8.3	8.0	7.6	6.2	△1.4	30.8	36.5	30.7	33.7	3.0
기타시도	39.2	40.3	39.8	38.6	△1.2	3.6	3.1	6.4	5.6	△0.8	37.7	39.1	37.3	36.4	△0.9
중졸이하	30.4	29.2	27.3	27.3	-	5.4	6.2	5.8	5.0	△0.8	28.7	27.4	25.7	26.0	0.3
고졸	47.3	50.8	49.1	50.5	1.4	7.3	7.1	10.0	7.7	△2.3	43.8	47.2	44.2	46.6	2.4
대졸이상	60.3	66.6	63.3	64.2	0.9	4.5	6.8	8.5	7.1	△1.4	57.6	62.0	57.9	59.7	1.8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4)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4)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5)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6)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7) 증감은 2016년 수치에서 2015년 수치를 뺀 값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년도).「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격년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실업률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감소함
- 2015년 대비 2016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0.8%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1.4%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0.2% 감소하였으며 실업률 역시 0.3%p 감소한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1.6%p, 2.4%p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1.7% 감소함
  -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가장 큰 증감을 보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5년에 비해 각각 4.9%p, 4.4%p 증가하고 실업률은 0.7%p 감소함

(2) 취업자 특성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0,090	100.0	26,450,000	100.0
성별	남성		666,248	75.7	15,204,000	57.5
	여성		213,842	24.3	11,246,000	42.5
연령별	15-29세		38,387	4.4	4,036,000	15.3
	30-39세		86,315	9.8	5,653,000	21.4
	40-49세		175,145	19.9	6,650,000	25.1
	50-59세		275,382	31.3	6,112,000	23.1
	60세 이상		304,860	34.6	4,000,000	15.1
장애정도별	중증		152,640	17.3	-	-
	경증		727,450	82.7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575,715	65.4	-	-
		지체 외	26,611	3.0	-	-
	감각	시각	107,753	12.2	-	-
		시각 외	87,235	9.9	-	-
	정신적		53,200	6.0	-	-
	신체내부		29,575	3.4	-	-
지역별	수도권		374,096	42.5	13,238,000	50.0
	광역시권		155,598	17.7	5,006,000	18.9
	기타 시도		350,396	39.8	8,208,000	31.0
학력별	중졸 이하		373,502	42.4	4,339,000	16.4
	고졸		325,766	37.0	10,303,000	39.0
	대졸 이상		180,823	20.5	11,808,000	44.6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6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 취업률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남녀 성비는 57.5% 대 42.5%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구의 남녀성비는 75.7% 대 24.3%로 나타나 장애인구의 성별에 따른 취업률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49세까지는 전체인구의 취업률이 높은 반면, 50-60세 이상에서는 장애인구의 취업률이 전체인구의 취업률 보다 높음
  - 특히 15-39세 미만의 청년 장애인의 취업률은 14.2%로 전체인구 36.7%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지역 및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취업률은 수도권과 대졸이상에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의 취업률은 기타시도와 중졸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0,090	100.0	26,450,000	100.0
임금근로자	소계	594,721	67.6	19,643,000	74.3
	상용근로자	333,962	37.9	12,987,000	49.1
	임시근로자	162,130	18.4	5,215,000	19.7
	일용근로자	98,629	11.2	1,441,000	5.4
비 임금근로자	소계	285,369	32.4	6,807,000	25.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3,320	6.1	1,566,000	5.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89,649	21.5	4,065,000	15.4
	무급 가족 종사자	42,401	4.8	1,175,000	4.4

주: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6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경우, 74.3%가 임금근로자인 반면에 장애인구는 67.6% 수준임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가 각각 49.1%와 37.9%,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15.4%와 21.5로 가장 높음
  - 임금근로자중 일용근로자 비율이 전체 인구 5.4%에 비해 장애인구는 11.2%로 더 높았으며, 비 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전체인구에서는 각각 5.9%, 4.4%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는 각각 6.1%, 4.8%로 더 높게 나타남

〈표 6-1-5〉 취업자의 산업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0,090	100.0	594,722	100.0	285,369	100.0	26,451,000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33,867	15.2	15,573	2.6	118,293	41.5	1,454,000	5.5
제조업	138,773	15.8	119,466	20.1	19,306	6.8	4,514,000	17.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3,285	0.4	3,243	0.5	43	0.0	91,000	0.3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45	0.2	2,045	0.3	–	–	97,000	0.4
건설업	82,145	9.3	72,431	12.2	9,714	3.4	1,840,000	7.0
도매 및 소매업	79,814	9.1	35,444	6.0	44,371	15.5	3,692,000	14.0
운수업	61,647	7.0	38,659	6.5	22,988	8.1	1,424,000	5.4
숙박 및 음식점업	49,604	5.6	25,665	4.3	23,939	8.4	2,263,000	8.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781	0.9	5,916	1.0	1,865	0.7	771,000	2.9
금융 및 보험업	15,584	1.8	12,945	2.2	2,639	0.9	788,000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949	3.3	23,187	3.9	5,762	2.0	562,000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057	1.7	12,167	2.0	2,891	1.0	1,109,000	4.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254	5.7	48,751	8.2	1,503	0.5	1,307,000	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8,883	5.6	48,883	8.2	–	–	1,032,000	3.9
교육 서비스업	31,945	3.6	27,362	4.6	4,583	1.6	1,851,000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3,328	7.2	62,135	10.4	1,194	0.4	1,877,000	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577	1.1	5,481	0.9	4,096	1.4	407,000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581	6.0	32,100	5.4	20,480	7.2	1,283,000	4.9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4,971	0.6	3,269	0.5	1,702	0.6	89,000	0.3

주: 1)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6년 5월 기준임
2)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부터 "기타=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조정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 취업자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제조업이 17.1%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14.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구에서도 제조업이 15.8%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이 15.2%로 나타남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20.1%, 건설업 12.2% 순이었고, 장애인 비임금근로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41.5%, 도매 및 소매업 15.5% 순임

〈표 6-1-6〉 취업자의 직업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0,090	100.0	594,721	100.0	285,370	100.0	26,451,000	100.0
관리자	15,765	1.8	5,886	1.0	9,879	3.5	338,000	1.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6,059	8.6	57,923	9.7	18,135	6.4	5,351,000	20.2
사무 종사자	88,204	10.0	77,048	13.0	11,157	3.9	4,559,000	17.2
서비스 종사자	60,987	6.9	39,991	6.7	20,996	7.4	2,809,000	10.6
판매종사자	67,704	7.7	29,362	4.9	38,342	13.4	3,041,000	11.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24,109	14.1	5,704	1.0	118,405	41.5	1,336,000	5.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8,824	9.0	55,505	9.3	23,320	8.2	2,356,000	8.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2,092	15.0	100,697	16.9	31,395	11.0	3,176,000	12.0
단순노무 종사자	235,381	26.7	222,595	37.4	12,787	4.5	3,485,000	13.2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964	0.1	10	–	954	0.3	–	–

주: 1) 기타에는 군인 등이 포함됨
2)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6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 취업자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2%로 가장 높으며 사무종사자 17.2%, 단순노무 종사자 13.2% 순임
– 반면, 장애인구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6.7%로 가장 높았고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1% 순임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

(단위: 명, %, 시간, 만원)

구분		추정 수	비율	취업시간	임금
전체인구		19,233,000	100.0	43.0	241.2
장애인구		594,721	100.0	38.5	169.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33,962	56.2	45.0	220.5
	임시근로자	162,130	27.3	29.9	92.4
	일용근로자	98,629	16.6	30.3	120.5
산업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	15,573	2.6	33.6	101.9
	제조업	119,466	20.1	41.1	216.5
	건설업	72,431	12.2	37.0	189.5
	도소매, 음식 숙박업	61,109	10.3	40.3	153.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263,089	44.3	36.0	141.2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62,808	10.6	45.0	204.9
직업	관리자, 전문가	63,810	10.7	37.1	286.1
	사무 종사자	77,048	13.0	38.4	227.3
	서비스, 판매 종사자	69,353	11.7	38.7	144.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704	1.0	29.9	115.9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156,202	26.3	43.9	202.6
	단순노무 종사자	222,595	37.4	35.2	101.3
사업체 규모	1-4인	131,069	22.3	34.5	122.3
	5-49인	303,307	51.7	39.5	161.6
	50-299인	109,117	18.6	39.9	203.0
	300인 이상	43,204	7.4	40.3	292.8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363,052	61.0	33.9	122.5
	정규직	231,669	39.0	45.6	242.1

주: 1) 취업시간은 '지난 주 평균 실제로 일한 시간', 임금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의미함
2) 취업시간과 임금의 임금노동자 추정 수는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취업시간의 추정 수를 표기함
3) 평균 취업시간은 일시 휴직자의 경우 0시간으로 대입하여 산정함
4)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에 대해 모름/ 응답 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5)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6)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7)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본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년 3월)」

– 임금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8.5시간으로 전체인구의 주 평균 근무시간인 43.0시간보다 적으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241.2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은 169.1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70%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집단의 평균 근무시간은 37.1시간으로 두 번째로 높으나, 평균 임금은 286.1만원으로 가장 높음
-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 비율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7.4%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시간은 35.2시간, 평균 임금은 101.3만원으로 가장 적음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단위: %)

구분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		61.0	32.0
남성		57.4	25.5
여성		72.2	40.3
15-29세		58.5	32.8
30-39세		38.5	21.1
40-49세		51.1	25.9
50-59세		57.6	34.2
60세 이상		82.1	67.4
중증		67.4	-
경증		59.6	-
신체외부	지체	60.0	-
	지체 외	64.2	-
감각	시각	57.6	-
	시각 외	67.7	-
정신적		67.0	-
신체내부		57.7	-
수도권		56.0	30.9
광역시권		60.7	31.9
기타 시도		67.9	34.3
중졸 이하		76.2	59.5
고졸		60.2	37.2
대졸 이상		37.2	21.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년 3월))」

-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61.0%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2.0% 비해 약 1.9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남성이 25.5%, 여성이 40.3%이며 장애인구에서는 남성이 57.4%, 여성이 72.2%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에서 60세 이상이 비율이 각각 67.4%, 82.1%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과 경증의 큰 차이가 없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시각 외 감각장애가 67.7%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장애인구에서는 기타 시도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이 67.9%로 가장 높고 수도권이 56.0%로 가장 낮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이 59.5%로 가장 높고 장애인구에서도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3) 실업자 특성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60,961	100.0	1,005,000	100.0
성별	남성		45,416	74.5	596,000	59.3
	여성		15,545	25.5	410,000	40.8
연령별	15-29세		7,729	12.7	434,000	43.1
	30-39세		7,704	12.6	179,000	17.8
	40-49세		9,580	15.7	148,000	14.7
	50-59세		11,543	18.9	148,000	14.7
	60세 이상		24,405	40.0	97,000	9.6
장애정도별	중증		15,546	25.5	-	-
	경증		45,415	74.5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34,557	56.7	-	-
		지체 외	3,547	5.8	-	-
	감각	시각	6,622	10.9	-	-
		시각 외	6,077	10.0	-	-
	정신적		6,997	11.5	-	-
	신체내부		3,162	5.2	-	-
지역별	수도권		30,019	49.2	564,000	56.1
	광역시권		10,254	16.8	189,000	18.8
	기타 시도		20,688	33.9	253,000	25.1
학력별	중졸 이하		19,842	32.5	101,000	10.0
	고졸		27,259	44.7	449,000	44.7
	대졸 이상		13,860	22.7	455,000	45.3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6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 실업률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남성이 59.3%, 여성이 40.8%이며 장애인구는 남성이 74.5% 여성이 25.5%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남성의 실업률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의 경우 20대 이하가 43.1%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는 60세 이상이 40.0%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임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실업률은 74.5%로 중증 25.5%보다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체인구의 경우 대졸 이상이 45.3%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는 고졸이 44.7%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임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60,961	100.0	1,005,000	100.0
구직기간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1,030	50.9	471,000	46.8
		3-6개월 미만	19,112	31.4	431,000	42.8
		소계	50,142	82.3	902,000	89.7
	6개월 이상	6-12개월 미만	4,609	7.6	95,000	9.4
		12개월 이상	6,202	10.2	9,000	0.9
		소계	10,810	17.7	104,000	10.3
	모름/응답거절		8	0.0	-	-
구직경로	공공 취업알선기관		14,634	24.0	-	-
	민간 취업알선기관		11,276	18.5	-	-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16,169	26.5	-	-
	학교, 학원		779	1.3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25,443	41.7	-	-
	기타		965	1.6	-	-
	모름/응답거절		-	-		
구직방법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31,404	51.5	-	-
	시험접수, 시험응시		1,179	1.9	-	-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		12,262	20.1	-	-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484	0.8	-	-
	자영업 준비		2,055	3.4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부탁		27,406	45.0	-	-
	모름/응답거절		-	-		

주: 1) '공공 취업알선기관'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가 포함됨
2) 구직경로와 구직방법은 두 개까지 응답받음
3)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6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경우 6개월 이상이 17.7%로 전체인구 10.3%에 비해 7.4%p 높게 나타남
  - 장애인구의 구직경로는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이 41.7%로 가장 많았고 공공 취업알선기관 24.0%, 대중매체 26.5% 순임
  - 구직방법은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가 51.5%로 가장 많았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부탁이 45.0%로 두 번째로 많음
  - 구직경로와 구직방법에서 취업알선기관(공공 및 민간포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 장애인의 구직활동이 직접 취업(사업주-구직자)보다는 주로 간접취업 형태를 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전체		60,961	100.0
희망 고용형태	임금근로	55,740	91.4
	비 임금근로	5,221	8.6
희망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521	0.9
	제조업	10,574	17.3
	건설업	3,771	6.2
	도소매, 음식 숙박업	7,202	11.8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31,101	51.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7,792	12.8
희망직업	관리자, 전문가	8,945	14.7
	사무 종사자	10,450	17.1
	서비스, 판매 종사자	9,258	15.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2	0.7
	기능, 기계조직 종사자	8,805	14.4
	단순노무 종사자	23,091	37.9
희망 사업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등)	3,506	6.3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8,368	15.0
	그 외 일반사업체(공무원 등 포함)	43,866	78.7
희망 근로시간	전일제 근로	37,289	66.9
	시간제 근로	18,452	33.1
희망 월 평균소득	49만 원 이하	6,831	11.2
	50-99만원	6,685	11.0
	100-149만원	18,791	30.8
	150-199만원	13,614	22.3
	200-299만원	10,164	16.7
	300만 원 이상	4,877	8.0

주: 1) 희망 사업체, 희망 근로시간은 희망 고용형태를 '임금근로'로 응답한 응답자 55,740명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3)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실업자의 희망산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7.9%로 가장 많음
  - 희망사업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공공성을 띄는 일자리보다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일반사업체를 원하는 실업자가 78.7%로 가장 많음
  - 희망 근로시간은 전일제 근로 66.9%, 시간제 근로 33.1%로 전일제 근로를 더 선호함
  - 월 평균 희망소득은 100-149만원이 30.8%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원이 22.3%로 두 번째로 많음

(4)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1,500,115	100.0	15,932,000	100.0
성별	남성		703,308	46.9	5,472,000	34.3
	여성		796,807	53.1	10,460,000	65.6
연령별	15-29세		79,816	5.3	4,980,000	31.3
	30-39세		60,387	4.0	1,738,000	10.9
	40-49세		113,376	7.6	1,590,000	10.0
	50-59세		233,292	15.6	1,912,000	12.0
	60세 이상		1,013,244	67.5	5,712,000	35.9
장애정도별	중증		605,697	40.4	-	-
	경증		894,418	59.6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668,925	44.6	-	-
		지체 외	214,026	14.3	-	-
	감각	시각	136,684	9.1	-	-
		시각 외	171,245	11.4	-	-
	정신적		219,035	14.6	-	-
	신체내부		90,200	6.0	-	-
지역별	수도권		612,836	40.9	7,773,000	48.8
	광역시권		296,378	19.8	3,386,000	21.3
	기타시도		590,901	39.4	4,772,000	30.0
학력별	중졸		1,045,356	69.7	6,752,000	42.4
	고졸		346,306	23.1	5,736,000	36.0
	대졸이상		108,453	7.2	3,445,000	21.6
구직단념자 수	통계청 기준		5,944	0.4	420,000	2.6
	EDI 기준		41,518	2.8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중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중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남성이 34.3%, 여성이 65.6%로 나타났고 장애인구는 남성이 46.9%, 여성이 53.1%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6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나 장애인구는 67.5%로 전체인구의 35.9%에 비해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59.6%로 중증 40.4%보다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4.6%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수도권에서 각각 48.8%, 40.9%로 가장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중졸이하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나 장애인구는 69.7%로 전체인구의 42.4%에 비해 약 1.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구의 구직단념자 비율(EDI 기준)은 2.8%로 전체인구의 2.6%보다 높게 나타남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2) 의무고용

(1) 장애인 의무고용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체 수(개소)	상시근로자수(명)	장애인수(명)	고용률(%)
연도별		2008	22,106	6,035,950	104,132	1.73
		2009	22,209	6,091,555	114,053	1.87
		2010	23,249	6,511,624	126,416	2.24
		2011	24,083	6,909,276	133,451	2.28
		2012	25,688	7,199,417	142,022	2.35
		2013	27,349	7,499,665	153,955	2.48
		2014	27,488	7,570,281	158,388	2.54
		2015	28,218	7,713,036	164,876	2.62
		2016	28,708	7,852,861	168,614	2.66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	313	852,554	20,850	2.81
		중앙행정기관	49	169,971	5,014	3.44
		헌법기관	4	26,082	570	2.41
		지방자치단체	243	262,510	9,235	4.08
		교육청	17	393,991	6,031	1.72
	비공무원	계	294	277,048	8,394	4.19
		중앙행정기관	33	44,355	939	2.57
		헌법기관	3	757	19	3.17
		지방자치단체	241	84,679	4,741	7.17
		교육청	17	147,257	2,695	2.97
공공기관	소계		596	440,748	11,444	2.96
	공기업		30	111,618	3,180	3.11
	준정부기관		89	96,130	2,842	3.42
	기타공공기관		180	141,712	2,681	2.22
	지방공기업		297	91,288	2,741	3.47
민간기업			27,505	6,282,511	127,926	2.56

주: 1) 2016년 12말 기준
2)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적용함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고용률은 2.66%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7%에도 미치지 못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81%로 의무고용률 3.0%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4.19%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그러나 비공무원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특히 교육청의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96%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타 공공기관의 고용률 2.22%를 제외하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6%로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에서 2017년부터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제27조, 제28조의2, 시행 2017.1.1.)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2%
- 2019년 이후: 3.4%
–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7%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9%
- 2019년 이후: 3.1%

(2) 장애인 고용부담금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b/a)
합계	80,148	3,860,197	75,928	3,741,943	4,220	118,251	97.0
2016	8,283	449,178	7,877	434,718	406	14,460	96.8
2015	8,247	428,433	7,945	418,087	302	10,346	97.6
2014	7,662	351,962	7,373	341,958	389	10,004	97.2
2013	7,678	326,515	7,403	318,777	275	7,738	97.6
2012	7,331	250,506	7,034	243,466	297	7,040	97.2
2011	6,778	219,130	6,512	214,384	266	4,746	97.8
2010	6,119	149,947	5,880	146,086	239	3,860	97.4
2009	6,372	151,771	5,890	144,860	482	6,911	95.4
2008	6,123	151,240	5,644	143,249	479	7,990	94.7
2007	3,319	156,716	3,034	151,269	285	5,446	96.5
2006	2,364	139,912	2,180	136,298	184	3,614	97.4
2005	2,321	129,140	2,146	125,910	175	3,230	97.5
2004이전	7,551	955,747	7,010	922,881	541	32,866	96.6

주: 미수납 및 불납결손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5-2016년까지 부과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2016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가건수는 8,28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건 증가함
- 부가금액 대비 징수금액인 징수율은 매년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신설)」 제32조의2. 시행 2017.1.1.)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1) 기업체 장애인 고용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13년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전 체		1,531,716	100.0	59,885	100.0	1,471,830	100.0	3.9	4.5
비고용 의무기업체	계	1,504,529	98.2	40,413	67.5	1,464,116	99.5	2.7	3.3
	1-4명	1,136,926	74.2	18,063	30.2	1,118,863	76.0	1.6	2.2
	5-49명	367,603	24.0	22,350	37.3	345,253	23.5	6.1	6.4
고용 의무기업체	계	27,187	1.8	19,473	32.5	7,714	0.5	71.6	69.6
	50-299명	23,554	1.5	15,932	26.6	7,622	0.5	67.6	66.1
	300-999명	2,838	0.2	2,748	4.6	90	0.0	96.8	94.0
	1,000명 이상	795	0.1	792	1.3	3	0.0	99.6	97.7
산업별	계	1,531,717	100.0	59,886	100.0	147,1831	100.0	3.9	4.5
	제조업	253,018	16.5	19,816	33.1	233,202	15.8	7.8	10.3
	서비스업 1	697,220	45.5	14,375	24.0	682,845	46.4	2.1	2.5
	서비스업 2	485,479	31.7	22,356	37.3	463,123	31.5	4.6	4.7
	기타	96,000	6.3	3,339	5.6	92,661	6.3	3.5	4.3
지역별	계	1,531,716	100.0	59,884	100.0	1,471,830	100.0	3.9	4.5
	수도권	938,180	61.3	34,262	57.2	903,917	61.4	3.7	4.5
	광역시권	363,855	23.8	13,252	22.1	350,602	23.8	3.6	4.0
	기타 지역	229,681	15.0	12,370	20.7	217,311	14.8	5.4	4.9

주: 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3)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고용기업체 수 / 전체기업체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16). 「2016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장애인 고용 기업비율은 2013년 4.5%에서 0.6%p 감소한 3.9%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고용의무기업체 중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는 71.6%로 2013년 69.6%에 비해 2.0%p 증가하였으나, 비고용의무기업체 중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의 비율은 2.7%로 그 수준이 매우 낮으며 2013년 3.3%에 비해서도 0.6%p 감소함

- 전체 기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비고용의무기업체가 98.2%로 압도적인 반면 고용의무기업체는 1.8%에 불과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기업체 중 서비스업 1이 45.5%로 가장 높으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 비율에서는 2.1%로 가장 낮고 제조업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전체 기업체 중 61.3%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 비율 또한 3.7%로 가장 높음

(2)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명, %)

구 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13년 장애인 고용률
		전 체	비 율	장애인	비 율		
전 체		12,872,245	100.0	187,630	100.0	1.46	1.42
비고용 의무기업체	계	6,299,523	48.9	57,457	30.6	0.91	0.96
	1–4명	2089136	16.2	18,703	10.0	0.90	1.10
	5–49명	4210387	32.7	38,753	20.7	0.92	0.90
고용 의무기업체	계	6,572,722	51.1	130,173	69.4	1.98	1.89
	50–299명	2,528,805	19.6	56,785	30.3	2.25	2.17
	300–999명	1,401,804	10.9	28,176	15.0	2.01	2.05
	1,000명 이상	2,642,113	20.5	45,212	24.1	1.71	1.54
산업별	계	12,872,245	100.0	187,630	100.0	1.46	1.42
	제조업	3,795,447	29.5	61,959	33.0	1.63	1.66
	서비스업 1	2,474,057	19.2	21,779	11.6	0.88	0.92
	서비스업 2	5,698,189	44.3	95,001	50.6	1.67	1.57
	기 타	904,553	7.0	8,890	4.7	0.98	0.84
지역별	계	12,872,245	100.0	187,630	100.0	1.46	1.42
	수도권	8,361,882	65.0	117,029	62.4	1.40	1.38
	광역시권	2,350,643	18.3	36,138	19.3	1.54	1.58
	기타 지역	2,159,721	16.8	34,463	18.4	1.60	1.43

주: 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3)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16). 「2016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 1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전체 187,630명이며,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46%로 2013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며 매우 낮은 수준임

– 비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로 2013년에 비해 0.05%p 감소하였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98%로 2013년에 비해 0.09%p 증가하였으나 두 기업체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규모별로는 비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30.6%,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69.4%로 나타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비율은 서비스업 2가 50.6%로 가장 높으며 장애인 고용률 또한 1.67%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비율은 수도권이 62.4%로 가장 높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1.40%로 가장 낮음

4)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 수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개소, %)

구분		2009		2011		2013		2015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 체		32,027	100.0	32,685	100.0	34,761	100.0	39,536	100.0
규모별	소상공인	29,945	93.5	30,519	93.4	31,494	90.6	34,538	87.4
	소기업	1,602	5.0	1,653	5.1	2,737	7.9	3,446	8.7
	중기업	480	1.5	510	1.6	530	1.5	1,552	3.9
업종별	제조업	5,862	18.3	5,964	18.2	14,755	42.4	4,725	12.0
	도/소매업	10,921	34.1	11,117	34.0	7,842	22.6	12,957	32.7
	숙박/음식점업	4,803	15.0	4,892	15.0	3,575	10.3	6,213	15.7
	개인서비스업	4,484	14.0	4,634	14.2	3,289	9.5	6,663	16.9
	기타	5,957	18.6	6,078	18.6	5,300	15.2	8,978	22.7

주: 1)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추정 수 및 비율임
2) 규모별 장애인기업 규정은 중소기업범위(2009.5, 중소기업청) 종사자 규모범주에 따름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소상공인(10인 미만), 소기업(10-50인 미만), 중기업(50인 이상)
- 그 밖의 모든 업종 : 소상공인(5인 미만), 소기업(5-10인 미만), 중기업(10인 이상)
3) 업종은 통계청의 20개 업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분석 시 5개로 재분류하였음
4) 개인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업종을 말함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09). 「200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11).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4)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5). 「2015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2015년 전체 장애인 기업 수는 39,5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2009년 93.5%, 2011년 93.4%, 2013년 90.6%, 2015년 87.4%로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소기업은 2009년 5%, 2011년 5.1%, 2013년 7.9% 2015년 8.7%로 증가하는 추세임
  - 업종별로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도/소매업의 비율이 2009년, 2011년,2015년에 각각 34.1%, 34.0%,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애인기업이란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2) 장애인기업 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

구분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외 법인
	2009	95.7	3.7	0.6
	2011	88.7	10.8	0.5
	2013	76.9	22.4	0.6
	2015	90.9	5.5	3.6
규모별	소상공인	96.2	2.3	1.5
	소기업	57.8	27.2	15.0
	중소기업	38.8	26.8	34.4
업종별	제조업	89.2	10.2	0.6
	도/소매업	97.5	2.5	-
	숙박/음식점업	99.6	0.4	-
	개인서비스업	87.5	2.7	9.8
	기타	78.9	12.8	8.2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09). 「200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11).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4)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5). 「2015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기업의 형태는 개인사업체가 2009년 95.7%, 2011년 88.7%, 2015년 90.9%로 가장 많으며, 2013년 76.9%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고, 회사법인은 2013년 22.4%에서 2015년 5.5%로 2013년에 비해 대폭 감소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모두 개인사업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각각 96.2%, 57.8%, 38.8%임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개인사업체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각각 99.6%, 97.5%로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

구분		단독사업체	공장, 지사, 영업소	본사, 본점, 본부
	2009	97.8	0.9	1.2
	2011	95.9	2.5	1.6
	2013	94.0	3.4	2.5
	2015	97.6	1.7	0.7
규모별	소상공인	99.5	0.5	0.1
	소기업	87.5	8.9	3.6
	중기업	70.2	16.5	13.2
업종별	제조업	98.0	1.2	0.8
	도/소매업	99.6	0.4	–
	숙박/음식점업	100.0	–	–
	개인서비스업	96.7	3.1	0.2
	기타	93.4	4.0	2.6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09). 「200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11).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4)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5). 「2015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단독사업체가 2009년 97.8%, 2011년 95.9%, 2013년 94.0%, 2015년 97.6%로 가장 높았으며 공장, 지사, 영업소 및 본사, 본점, 본부는 그 비율이 증가하다가 2013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함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명, %)

구분		현 종사자 수(명)	현 장애인 근로자(명)	장애인근로자 비율(%)
	2009	2.87	1.19	41.6
	2011	3.14	1.27	40.6
	2013	4.25	1.38	32.5
	2015	3.27	1.32	40.4
규모별	소상공인	1.78	1.05	58.8
	소기업	10.51	2.50	23.8
	중기업	27.38	6.44	23.5
업종별	제조업	5.48	1.73	31.5
	도/소매업	2.23	1.07	47.8
	숙박/음식점업	2.41	1.04	42.9
	개인서비스업	2.69	1.38	51.2
	기타	4.63	1.63	35.3

주: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장애인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을 조사함에 따라 중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09). 「200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11).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4)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5). 「2015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2015년 40.4%로 2013년 32.5%에 비해 7.9%p 증가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규모에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58.8%로 가장 높음
  - 업종별로는 개인서비스업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 51.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 47.8%, 숙박/음식점업 42.9% 순임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1) 취업 관련 활동 경험 현황

〈표 6-5-1〉 최근 3년 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전 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남성	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중증	경증	신체 외부	감각	정신적	신체 내부
1.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9.2	9.8	7.9	13.1	21.6	10.2	5.8	6.7	10.7	10.6	10.6	3.9	7.5
2. 신문, 취업정보지 등을 통해 채용, 창업정보 탐색	8.6	8.4	9.0	4.8	8.4	9.3	8.9	5.1	10.7	10.6	8.2	3.3	6.5
3.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취업알선	12.0	10.5	16.2	23.9	15.3	13.1	9.3	20.6	9.1	9.0	12.6	28.2	12.8
4. 국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근로	6.6	5.8	9.0	13.5	7.2	4.6	6.4	10.3	5.3	5.6	6.2	12.3	9.9
5. 민간 취업알선업체 구직등록, 취업알선	5.0	5.1	4.7	6.3	6.6	4.3	4.8	4.6	5.1	4.7	5.0	5.9	7.8
6.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	24.4	24.9	23.0	34.0	25.9	22.2	23.8	23.7	24.6	24.4	22.0	28.6	24.3
7. 직접 일자리에 채용 문의	11.4	11.6	10.8	13.5	10.6	11.0	11.5	9.0	12.2	11.4	13.1	7.6	13.5
8. 다른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	6.1	5.9	6.9	8.1	8.4	7.2	5.0	4.8	6.5	5.9	8.4	4.1	4.2
9. 다른 일자리의 면접 참여	4.9	4.7	5.3	6.7	6.7	4.8	4.3	3.6	5.2	4.8	6.3	3.4	2.9
10. 공공/민간/사업체/학교 직업교육훈련 참여	2.3	2.4	2.2	6.1	2.0	2.7	1.6	2.5	2.2	2.3	2.4	2.5	1.4
11. 사설학원 외국어, 자격 취득, 채용시험 등 준비	0.9	0.8	1.1	2.9	1.4	1.3	0.4	0.8	1.0	1.1	0.8	0.5	1.1
12. 자격증 취득 준비	2.5	2.4	2.6	5.9	3.8	2.4	1.7	2.3	2.5	2.6	2.3	2.1	2.9
13. 일자리에서의 현장실습이나 인턴	1.3	1.2	1.6	3.0	1.5	1.4	1.0	1.1	1.4	1.3	2.2	0.6	1.8
14. 채용시험 준비	1.0	1.1	0.8	2.9	2.2	1.4	0.3	1.1	0.9	1.2	0.9	0.3	1.4
15. 창업을 위한 활동	2.1	2.1	2.0	0.8	2.3	2.9	1.8	2.7	1.9	2.0	2.4	1.2	4.2
16. 장애인 자립, 창업 자금 등 지원, 융자	0.6	0.6	0.4	0.6	0.8	1.0	0.3	0.5	0.6	0.7	0.5	0.1	1.1
17. 기타	0.2	0.1	0.3	0.2	–	0.2	0.2	0.4	–	–	–	0.7	–

주: 1) "활동 경험 비율"은 모름/응답거절을 포함하여 산출함
2) 1, 2, 10, 11, 12, 13, 14, 16은 전체 장애인에게 응답 받음
3) 3, 4, 5, 6, 7, 15는 최근 3년 내 구직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하고 응답 받음
4) 8, 9는 취업자에게 응답 받음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1차조사)」

– 전체 장애인 중 최근 3년 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은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이 9.2%로 가장 높으며, '신문, 취업정보지 등을 통해 채용, 창업정보 탐색'이 8.6%로 두 번째로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의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이 21.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 내 구직경험이 없는 미취업자를 제외한 장애인의 취업 관련 활동 경험은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취업자 중 최근 3년 내 '다른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 경험은 6.1%, '다른 일자리의 면접 참여' 경험은 4.9%로 나타남

(2) 직업교육훈련 경험

〈표 6-5-2〉 최근 3년 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중증	경증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 횟수	1회	88.8	92.5	82.4	86.8	89.9
	2회 이상	11.2	7.5	17.6	13.2	10.1
종류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21.0	22.2	19.3	12.2	26.7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12.1	16.8	4.9	12.5	11.9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10.9	14.2	5.8	3.1	15.8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16.1	12.7	21.3	34.1	4.7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훈련	2.3	3.1	1.1	0.3	3.6
	학교 직업교육훈련	2.6	1.4	4.4	3.9	1.8
	사설학원 교육훈련	19.3	13.9	27.6	13.4	23.1
	기타	5.7	5.7	5.6	9.7	3.1
	모름/응답거절	10.0	10.1	9.9	10.9	9.5
분야	농림어업, 광업 분야	0.5	0.9	–	–	0.9
	섬유 분야	2.9	–	7.3	4.7	1.8
	기계장비 및 금속 분야	4.1	6.8	–	0.3	6.5
	건설 및 운송 분야	4.1	6.7	–	1.9	5.5
	전기전자 분야	5.8	9.5	–	13.4	0.9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17.1	22.5	8.8	13.8	19.1
	서비스 분야	19.3	22.2	14.9	23.4	16.8
	사무, 업무관리 분야	6.6	2.8	12.5	10.8	4.0
	의료 분야	8.6	1.6	19.2	–	14.0
	산업응용 분야	1.5	1.5	1.5	3.0	0.5
	공예 분야	–	–	–	–	–
	공무원교원, 일반 입사 준비	3.2	1.8	5.2	2.3	3.7
	토익, 토플 등 외국어 학습	3.9	1.7	7.2	3.9	3.8
	기타	13.8	13.2	14.8	13.8	13.9
	모름/응답거절	8.7	8.8	8.5	8.8	8.6

주: 1) '최근 3년 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표 6-5-1)'에서 '10. 공공/민간/사업체/ 학교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받음
2) 경험횟수는 훈련자 수 기준이며, 훈련 종류 및 분야는 훈련 총 수 기준임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1차조사)」

- 최근 3년 간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장애인의 경험 횟수는 1회가 88.8%, 2회 이상이 11.2%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2회 이상 경험 비율이 17.6%로 남성 7.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 직업교육훈련 종류 중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이 21.0%로 가장 높고, '사설학원 교육훈련' 19.3%,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 기관 훈련' 16.1%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직업교육훈련 총 수의 교육훈련 분야를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 19.3%와 '컴퓨터 정보 · 통신 분야' 17.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6) 직업재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 장애인 수	국비 예산
2007	339	–	10,059	8,854
2008	364	–	10,422	11,554
2009	386	–	11,048	16,506 (추경 6,000)
2010	417	–	11,770	11,886
2011	456	–	12,870	24,286
2012	478	–	13,758	11,470
2013	511	–	14,739	13,732
2014	541	3,160	15,651	11,455
2015	560	3,133	16,414	13,357
2016	582	3,256	17,131	13,090
서울	124	680	4,081	1,696
부산	32	157	944	872
대구	39	166	1047	1,176
인천	28	158	854	535
광주	22	133	677	696
대전	19	126	543	51
울산	14	54	289	190
세종	3	14	77	–
경기	98	675	2,960	1,031
강원	33	158	778	92
충북	21	156	760	545
충남	18	119	587	752
전북	19	99	504	686
전남	17	66	402	1,731
경북	38	201	1,136	1,579
경남	48	206	1,142	1,079
제주	9	88	350	379

자료 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수와 이용 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 예산은 격년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시설 수와 이용 장애인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경남, 대구 순임
- 국비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북, 대구, 경남 순임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지적	지체	정신	자폐성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기타
2014	계	15,651	11,353	1,386	843	737	483	424	292	56	43	34
		(100.0)	(72.5)	(8.9)	(5.4)	(4.7)	(3.1)	(2.7)	(1.9)	(0.4)	(0.3)	(0.2)
	근로	2,721	1,541	535	164	74	155	89	124	23	9	7
		(100.0)	(56.6)	(19.7)	(6.0)	(2.7)	(5.7)	(3.3)	(4.6)	(0.8)	(0.3)	(0.3)
	보호	12,930	9,812	851	679	663	328	335	168	33	34	27
		(100.0)	(75.9)	(6.6)	(5.3)	(5.1)	(2.5)	(2.6)	(1.3)	(0.3)	(0.3)	(0.2)
2015	계	16,414	12,001	1,294	895	871	509	442	291	45	33	33
		(100.0)	(73.1)	(7.9)	(5.5)	(5.3)	(3.1)	(2.7)	(1.8)	(0.3)	(0.2)	(0.2)
	근로	2,798	1,653	456	170	85	164	99	135	17	12	7
		(100.0)	(59.1)	(16.3)	(6.1)	(3.0)	(5.9)	(3.5)	(4.8)	(0.6)	(0.4)	(0.3)
	보호	13,616	10,348	838	725	786	345	343	156	28	21	26
		(100.0)	(76.0)	(6.2)	(5.3)	(5.8)	(2.5)	(2.5)	(1.1)	(0.2)	(0.2)	(0.2)
2016	계	17,131	12,582	1,285	930	986	539	434	290	42	38	32
		(100.0)	(73.4)	(7.3)	(5.4)	(5.8)	(3.1)	(2.5)	(1.7)	(0.2)	(0.2)	(0.2)
	근로	2,762	1,650	427	160	96	162	92	136	19	14	6
		(100.0)	(59.7)	(15.5)	(5.8)	(3.5)	(5.9)	(3.3)	(4.9)	(0.7)	(0.5)	(0.2)
	보호	14,335	10,905	831	769	884	377	342	154	23	24	26
		(100.0)	(76.1)	(5.8)	(5.4)	(6.2)	(2.6)	(2.4)	(1.1)	(0.2)	(0.2)	(0.2)
	직업적응훈련	34	27	–	1	6	–	–	–	–	–	–
		(100.0)	(79.4)	–	(2.9)	(17.6)	–	–	–	–	–	–

주: 장애유형 중 기타에는 신장, 안면, 심장, 장루·요루, 간, 호흡기 장애인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 2015년 대비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은 16,414명에서 17,131명으로 소폭 상승함
  • 장애유형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지적 장애인이 73.4%로 가장 높으며, 지체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순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시도별

(단위: 원, 명, %)

구분	월 평균 임금	근로장애인 수	10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70 만원 미만	70-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전체	542,000	10,688	549	3,425	2,588	1295	969	1862
		(100.0)	(5.1)	(32.0)	(24.2)	(12.1)	(9.1)	(17.4)
근로	1,011,000	2,550	6	49	367	305	513	1310
		(100.0)	(0.2)	(1.9)	(14.4)	(12.0)	(20.1)	(51.4)
보호	395,000	8,138	543	3,376	2,221	990	456	552
		(100.0)	(6.7)	(41.5)	(27.3)	(12.2)	(5.6)	(6.8)
서울		2,528	173	910	445	252	200	548
		(100.0)	(6.8)	(36.0)	(17.6)	(10.0)	(7.9)	(21.7)
부산		678	35	352	188	42	27	34
		(100.0)	(5.2)	(51.9)	(27.7)	(6.2)	(4.0)	(5.0)
대구		567	18	164	165	96	57	67
		(100.0)	(3.2)	(28.9)	(29.1)	(16.9)	(10.1)	(11.8)
인천		414	16	152	93	57	31	65
		(100.0)	(3.9)	(36.7)	(22.5)	(13.8)	(7.5)	(15.7)
광주		490	30	157	85	70	108	40
		(100.0)	(6.1)	(32.0)	(17.3)	(14.3)	(22.0)	(8.2)
대전		299	45	81	77	20	21	55
		(100.0)	(15.1)	(27.1)	(25.8)	(6.7)	(7.0)	(18.4)
울산		252	-	86	64	13	27	62
		(100.0)	-	(34.1)	(25.4)	(5.2)	(10.7)	(24.6)
세종		45	14	5	19	5	1	1
		(100.0)	(31.1)	(11.1)	(42.2)	(11.1)	(2.2)	(2.2)
경기	-	1,909	97	539	475	210	155	433
		(100.0)	(5.1)	(28.2)	(24.9)	(11.0)	(8.1)	(22.7)
강원		480	36	132	84	53	30	145
		(100.0)	(7.5)	(27.5)	(17.5)	(11.0)	(6.3)	(30.2)
충북		552	9	250	146	34	54	59
		(100.0)	(1.6)	(45.3)	(26.4)	(6.2)	(9.8)	(10.7)
충남		277	1	22	131	90	21	12
		(100.0)	(0.4)	(7.9)	(47.3)	(32.5)	(7.6)	(4.3)
전북		375	28	124	121	35	30	37
		(100.0)	(7.5)	(33.1)	(32.3)	(9.3)	(8.0)	(9.9)
전남		243	19	63	111	26	12	12
		(100.0)	(7.8)	(25.9)	(45.7)	(10.7)	(4.9)	(4.9)
경북		560	3	138	128	105	67	119
		(100.0)	(0.5)	(24.6)	(22.9)	(18.8)	(12.0)	(21.3)
경남		755	25	239	236	123	67	65
		(100.0)	(3.3)	(31.7)	(31.3)	(16.3)	(8.9)	(8.6)
제주		264	-	11	20	64	61	108
		(100.0)	-	(4.2)	(7.6)	(24.2)	(23.1)	(40.9)

주: 월 평균 임금 계산 시에는 임금이 없는 장애인도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근로 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542,000원이며, 근로시설은 1,011,000원, 보호시설은 395,000원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은 17.4%이며, 근로시설은 51.4%, 보호시설은 6.8%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지역별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가 40.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30.2%, 울산 24.6%, 경기 22.7% 순임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체		15,250	4,761	9,467	738
2016년 배정인원		14,827	4,746	9,044	760
참여인원		15,250	4,761	9,467	738
참여율		102.9	100.3	104.7	97.1
성별	남	8,048	2,238	5,143	499
	여	7,202	2,523	4,324	239
연령별	29세 이하	3,339	858	2,223	46
	39세 이하	1,960	993	832	79
	49세 이하	2,235	1,310	806	110
	59세 이하	2,354	1,166	1,050	203
	65세 미만	1,229	285	818	126
	65세 이상	4,066	149	3,738	179
장애유형	지체장애	5,903	2,517	3,386	–
	뇌병변장애	1,678	658	1,020	–
	시각장애	1,919	352	829	738
	청각장애	957	287	670	–
	언어장애	117	32	85	–
	안면장애	22	18	4	–
	신장장애	289	126	163	–
	심장장애	39	24	15	–
	호흡기장애	45	24	21	–
	간장애	23	13	10	–
	장루/요루장애	44	16	28	–
	뇌전증(간질)장애	70	36	34	–
	지적장애	3,178	482	2,430	–
	자폐성장애	250	43	189	–
	정신장애	661	133	528	–
	특수교육대상	55	–	55	–
장애등급	1급	1,767	223	922	608
	2급	3,477	960	2,350	35
	3급	4,649	1,614	2,857	40
	4급	1,655	575	1,066	14
	5급	1,845	652	1,182	11
	6급	1,802	737	1,090	30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102.9%이며 일자리 유형별로는 복지일자리가 104.7%(9,467명)로 가장 높음
- 성별 전체 참여인원은 남성이 8,048명으로 여성 7,202명보다 더 많으며, 일자리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일자리에서는 여성이, 복지일자리 및 특화형일자리 유형에서는 남성의 참여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전체 참여인원은 65세 이상이 4,066명으로 가장 많았음. 일자리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일자리에서는 30~59세의 청장년층의 참여인원이 많은 반면 복지일자리에서는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즉 사회초년생과 고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짐
- 장애유형별 전체 참여인원은 지체장애인이 5,90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자리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화형일자리를 제외한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참여함
- 장애등급별 전체 참여인원은 3급이 4,649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자리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에서도 3급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특화형일자리의 경우 1급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일자리사업은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보건복지부(2017).「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자 수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직업 재활센터	직업 평가센터	장애인 단체	보호 작업장			직업적응 훈련기관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관	직업재활 프로그램 수행기관
					직업 훈련시설	작업 활동시설	보호 작업시설			
2008	182	34	6	32	8	29	43	10	12	8
2009	184	34	6	32	8	29	43	10	12	10
2010	186	34	6	32	8	29	43	10	14	10
2011	186	34	6	32	8	28	43	10	15	10
2012	190	34	6	32	8	28	43	10	19	10
2013	192	34	6	32	8	–	43	10	21	10
2014	191	34	6	32	–	–	88	–	21	10
2015	185	34	6	32	–	–	83	–	21	9
2016	176	34	6	32	–	–	75	–	20	9
개소 당 정원	301	138	24	64	–	–	75	–	–	–
총 배치 인원	301	138	24	64	–	–	75	–	–	–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은 176개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기관유형별로는 보호작업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란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단위: 명)

구분	계	구인등록	구직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확정	적응지도	지원고용		적응훈련		
								계	취업	계	수료	취업
2001	53,376	10,323	10,825	6,660	6,134	2,665	13,770	779	–	2,220	415	–
2002	90,485	13,076	28,450	10,996	7,692	3,467	22,912	565	438	3,327	415	163
2003	108,926	12,671	35,201	11,356	8,402	3,655	33,600	662	423	3,379	375	138
2004	107,173	18,366	36,283	16,608	8,563	3,678	21,022	488	364	2,165	512	90
2005	109,660	18,771	36,638	17,181	8,300	3,731	22,193	696	488	2,150	773	190
2006	104,539	12,583	31,516	16,886	8,593	3,977	28,134	734	524	2,116	798	235
2007	88,663	10,924	24,833	15,598	9,178	4,266	21,275	869	640	1,720	533	119
2008	96,371	13,336	32,671	13,167	11,471	4,846	18,145	905	498	1,830	719	173
2009	98,949	15,820	35,251	11,756	12,604	5,385	14,573	948	552	2,612	1,024	287
2010	98,915	16,179	31,576	12,750	13,884	5,500	15,017	1,195	690	2,814	752	300
2011	97,037	16,388	32,823	16,054	10,182	6,067	10,441	1,342	676	3,740	1,473	554
2012	96,125	16,559	31,041	16,282	10,526	6,312	10,253	1,497	807	3,655	1,340	481
2013	99,071	14,878	32,731	17,739	11,423	6,571	10,406	1,524	920	3,799	754	504
2014	90,072	11,958	32,205	15,116	9,309	6,780	9,463	1,155	609	4,086	1,089	318
2015	89,958	12,047	30,300	15,670	9,525	6,909	9,608	1,313	638	4,586	908	405
2016	90,028	12,365	28,900	17,065	9,089	7,001	9,889	1,442	777	4,277	933	455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원자 수는 90,02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사업 내용 중 각 연도별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구직상담으로, 2016년엔 총 28,900명이 구직상담을 지원 받음
  • 한편 취업이 확정된 지원자는 2016년 7,00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국가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2007	155,702	–	48,158	–	1,153	–	30,454	–	44,513	–	32,577	–
2008	132,016	–	41,950	–	1,927	–	39,063	–	30,119	–	20,884	–
2009	165,811	–	44,153	–	3,576	–	56,113	–	39,545	–	26,000	–
2010	190,179	–	28,018	–	670	–	71,250	–	42,584	–	48,327	–
2011	235,808	0.55	45,780	0.47	1,288	1.06	59,286	0.53	50,672	1.19	80,070	0.46
2012	251,828	0.49	52,437	0.62	979	0.89	52,864	0.40	37,361	0.68	109,166	0.62
2013	295,836	0.72	40,144	0.62	1,563	1.12	84,422	0.71	36,814	0.68	134,456	0.76
2014	352,998	0.91	59,541	1.06	1,729	1.27	90,416	0.83	34,299	0.72	168,742	0.97
2015	464,046	1.02	74,709	1.10	2,569	1.36	97,124	0.80	43,740	0.89	248,473	1.15
2016	531,214	1.13	96,447	1.41	4,384	2.37	111,123	0.90	46,307	0.89	277,337	1.23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2010년 까지는 18개 품목별 우선구매, 2011년부터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0% 이상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함
3) 보건복지부는 본부 구매실적에 한함(소속 및 산하기관 제외)
4)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및 지자체 관할 지방공기업 실적 포함
5) 합계(531,214)는 보건복지부 구매실적이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해마다 모든 기관에서 구매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의무구매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3조)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 6-6-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형 – 연도별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	장애인복지단체
2009	153	22	108	23
2010	196	28	130	38
2011	260	34	178	48
2012	352	48	213	91
2013	379	49	227	103
2014	402	53	246	103
2015	417	54	253	110
2016	492	55	304	133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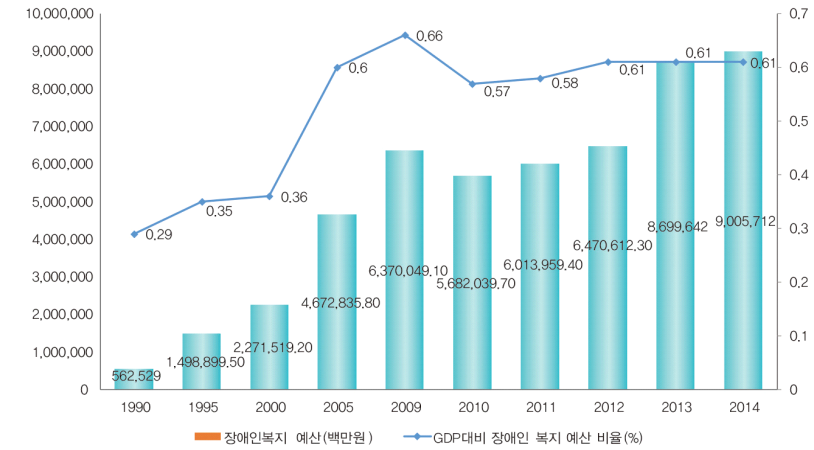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02	100.0	417	100.0	492	100.0
서울	78	19.4	80	19.2	93	18.9
부산	19	4.7	21	5.0	26	5.3
대구	13	3.2	14	3.4	20	4.1
인천	21	5.2	20	4.8	21	4.3
광주	14	3.5	15	3.6	18	3.7
대전	10	2.5	10	2.4	10	2.0
울산	8	2.0	8	1.9	10	2.0
경기	114	28.4	119	28.5	135	27.4
강원	18	4.5	18	4.3	20	4.1
충북	15	3.7	16	3.8	21	4.2
충남	17	4.2	17	4.1	18	3.7
전북	16	4.0	16	3.8	20	4.1
전남	9	2.2	12	2.9	14	2.8
경북	19	4.7	19	4.6	20	4.1
경남	20	5.0	19	4.6	30	6.1
제주	8	2.0	8	1.9	9	1.8
세종	3	0.7	5	1.2	7	1.4

주: 각년도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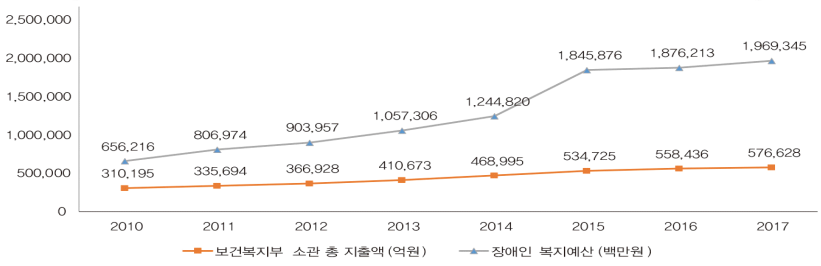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6년 492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유형별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이 304개소로 가장 많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역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7.4%(135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지역이 18.9%(93개소)로 두 번째로 높음

7. 재정

[그림 2-7-1]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2014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9,005,712백만원으로 GDP대비 0.61%임
-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1990년 0.29%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0.66%로 정점이었다가 2010년 0.57%로 감소하여, 2012년에 0.61%로 반등함

- 2017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1,969,345백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5.80%로 나타남
  -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3.42%로 2016년 3.44%에서 0.02%p 감소함
  -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5.80%로 2016년 5.65%보다 0.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재정

(1) 장애인 복지 예산

〈표 7-1-1〉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197,712,300	428,927,100	635,184,600	919,797,300	1,151,707,800	1,265,308,000	1,332,681,000	1,377,456,700	1,429,445,400	1,485,078,000
장애인 복지 예산	562,529	1,498,899	2,271,519	5,492,186	7,588,390	7,187,509	7,769,873	8,460,569	8,699,642	9,005,712
비율	0.29	0.35	0.36	0.60	0.66	0.57	0.58	0.61	0.61	0.61

주: 장애인복지예산은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s)만을 합한 것으로,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2017). 「SOCX Statistics」(2017년 12월 검색)

- 2014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9,005,712백만원으로 GDP대비 0.61%임
-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1990년 0.29%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0.66%로 정점이었다가 2010년 0.57%로 감소하여 2012년에 0.61%로 반등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단위: 억원,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총 지출액(A)		310,195	335,694	366,928	410,673	468,995	534,725	558,436	576,628
	예산	총계(B)	194,736	206,922	221,815	254,056	294,705	332,300	331,784	339,450
		일반회계	192,169	204,952	219,745	251,761	292,416	327,236	326,938	334,589
		특별회계	2,567	1,970	2,070	2,295	2,289	5,064	4,846	4,861
	기금	총계	115,459	128,772	145,113	156,617	174,290	202,425	226,652	237,178
		건강증진기금	17,630	17,960	18,718	19,007	20,030	27,357	31,834	33,001
		국민연금기금	95,807	109,102	124,405	135,534	152,187	172,775	192,507	201,977
		응급의료기금	2,022	1,710	1,990	2,076	2,073	2,293	2,311	2,200
장애인 복지 예산	총계(C)		656,216	806,974	903,957	1,057,306	1,244,820	1,845,876	1,876,213	1,969,345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639,052	789,810	886,623	1,038,572	1,225,528	1,825,234	1,856,284	1,949,184
	장애인 재활지원		17,164	17,164	17,334	18,734	19,292	20,642	19,929	20,161
비율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A)		2.12	2.40	2.46	2.57	2.65	3.45	3.44	3.42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B)		3.37	3.90	4.08	4.16	4.22	5.55	5.65	5.80

주: 1)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인복지예산은 예산을 기반으로 책정됨
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의 단위는 '억원'이며, 장애인복지예산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4)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5)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6)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7) 보건복지부(2016).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8)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9) 대한민국 국회(2017). 「2017년도 예산」

– 2017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1,969,345백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5.80%로 나타남
-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3.42%로 2016년 3.44%에서 0.02%p 감소함
-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5.80%로 2016년 5.65%보다 0.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단위: 백만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예산액	694,582	814,074	937,649	1,026,274	1,271,434	1,881,636	1,909,078	2,067,026	
증가액	-	119,492	123,575	88,625	245,160	610,202	27,442	101,869	16.9
증가율	-	17.2	15.2	9.5	23.9	48.0	4.4	5.2	

주: 1)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감하는 예산 비율을 말함
2) 연평균증가율(%) = (2017년 예산/2010년 예산)^(1/7)-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안)은 2,067,02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함
  -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연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세부항목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증감액	증감율
합계	1,965,157	2,067,026	101,869	5.2
(일반회계) 계	1,956,472	2,063,410	106,938	5.5
장애인의료비	35,774	27,575	△8,199	△22.9
장애수당(기초)	77,582	78,102	520	0.7
장애수당(차상위 등)	55,059	54,609	△450	△0.8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29,185	31,095	1,910	6.5
장애인실태조사	0	1,039	1,039	100.0
장애인연금	558,457	559,967	1,510	0.3
장애인보조기구지원	3,175	3,290	115	3.6
장애인지원관리	1,517	1,374	△143	△9.4
장애인자립자금이자 및 손실보전금지원	435	390	△45	△10.3
장애인활동지원	522,070	606,123	84,053	16.1
장애아동가족지원	78,732	79,280	548	0.7
여성장애인지원	2,720	2,818	98	3.6
발달장애인지원	9,446	9,081	△365	△3.9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34,479	29,367	△5,112	△14.8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36,988	455,098	18,110	4.1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5,671	6,550	879	15.5
장애인단체지원	7,111	7,111	–	–
장애인일자리지원	70,725	82,256	11,531	16.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279	5,279	–	–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616	571	△45	△7.3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1,323	2,071	748	56.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1,452	1,452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477	18,709	232	1.3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총액)	92	97	5	5.4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107	106	△1	△0.9
(증진기금) 계	8,685	3,616	△5,069	△58.4
재활병원건립	8,000	3,000	△5,000	△62.5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685	616	△69△	△10.1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감하는 예산 비율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7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은 2,067,02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869백만원(5.2%) 증가함
- 2016년 대비 2017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7개의 항목 중 10개의 항목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 세부항목 중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액이 606,123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장애인연금 559,9677백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55,098백만 원 순임
- 증감률을 살펴보면, 장애인실태조사의 예산이 100.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6.5%, 장애인일자리 지원 16.3% 순임. 반면 재활병원건립의 예산은 △62.5%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장애인의료비 △22.9%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14.8% 순으로 나타남

(3)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표 7-1-5〉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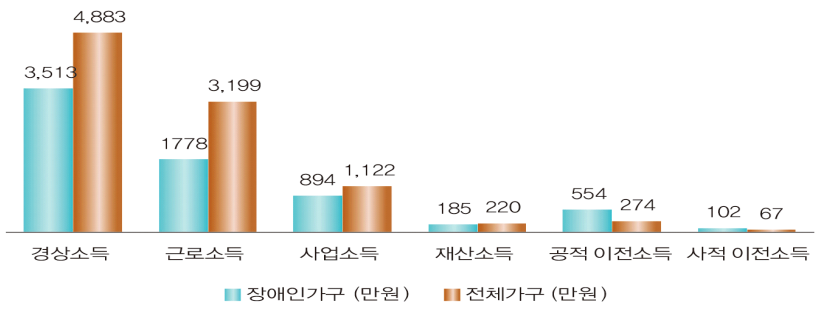
세부사업	국고보조율 (서울/지방)	2014년		2015년		2016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계	–	1,192,890	645,229	1,804,982	959,056	1,898,161	992,133
장애인의료비지원	50/80	24,088	7,620	30,188	9,144	35,774	10,789
장애수당(기초)	50/70	69,906	34,621	69,906	34,621	77,582	38,278
장애수당(차상위 등)	50/70	61,381	30,418	61,381	30,418	55,059	27,046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30/50	503	554	503	554	503	554
장애인연금	50/70	561,443	287,453	561,443	287,453	558,457	274,738
장애인자녀학비지원	50/80	600	222	600	222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보조기구교부사업) 50/80 (사례관리사업) 50/50	2,355	1,444	2,575	1,484	2,375	1,46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0/70	3,660	5,490	3,660	5,490	5,279	7,138
여성장애인지원사업	(교육지원) 80/80 (출산지원) 50/70 (공공후견) 50/70	2,038	863	2,037	863	2,720	1,317
발달장애인 지원	(부모심리상담) 50/8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0/5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50/70	2,801	1,265	2,801	1,265	9,446	5,225
장애인활동지원	50/70	452,727	233,583	452,727	233,583	522,070	265,189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언어발달) 50/70 (양육지원) 30/70	75,039	37,497	80,039	39,640	78,732	39,30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거주시설) 50/50 (의료재활시설) 30/30 (생산품판매시설) 40/40	41,055	39,686	39,301	42,277	34,479	35,77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50/50 50/70 (일반일자리) 30/50	427,763	205,762	427,763	205,441	436,988	208,948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30/50 (시각장애인안마사) 80/80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50	65,474	63,955	65,474	63,954	70,012	68,194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농특)	50/50	1,710	1,710	3,030	1,514	–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기금)	50/50	565	141	565	141	685	171
재활병원 건립(기금)	50/50	988	988	988	988	8,000	8,000

주: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은 장애인지원관리사업의 내역사업에 편성(국비 24백만원, 지방비 8.4백만원), 17년 종료사업 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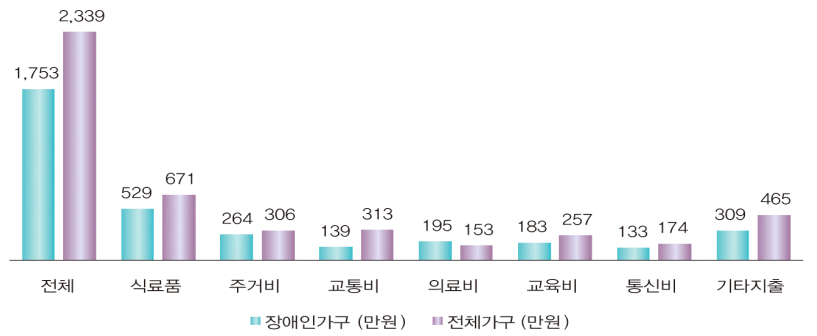
– 2016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액은 국고 1,898,161백만원, 지방비 992,133백만원으로 나타남
- 서울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장애인일자리지원 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국고보조율이 80%로 가장 높음
- 지방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여성장애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국고보조율이 80%로 가장 높음

8. 소득과 소비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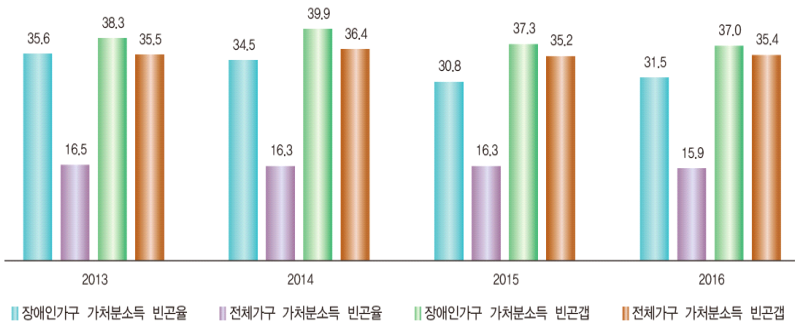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



- 2016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3,513만원으로 전체가구 4,883만원의 71.9% 수준에 불과함
-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50.1%, 공적이전 소득은 1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각각 65.5%, 5.61%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 2016년 연간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연평균 1,753만원(월평균 146.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는 2,339만원(월평균 194.9만원)으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7.9%로 전체가구 13.4%에 비하여 5.5%p 적으며, 이에 반해 의료비는 장애인가구 11.1%, 전체가구 6.5%로 약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3] 연도별 빈곤율 및 빈곤갭 -전체가구 비교



-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2015년 30.8%에서 2016년 31.3%로 증가한 반면에, 전체가구는 2015년 16.3%, 2016년 16.0%으로 감소함
  - 2016년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1.3%로 전체가구의 16.0%에 비하여 약 2배 높으며, 빈곤갭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에 비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 소득

(1) 월평균 가구소득

〈표 8-1-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0	108.2	–	–	–	–	–	–	–	–	–	–	–	–	–	–	–	–	–
2005	157.2	–	–	–	–	–	–	–	–	–	–	–	–	–	–	–	–	283.7
2011	198.2	204.4	179.4	198.2	185.6	227.1	215.8	297.7	148.1	230.2	181.1	208.2	243.7	108.0	128.4	148.0		371.3
2014	223.5	218.6	233.1	235.2	213.8	267.7	277.2	349.9	152.1	258.8	246.3	181.3	219.4	251.8	178.9	106.5		415.2

주: 전체가구는 가계 동향 조사 기준이며, 2005년, 2011년, 2014년 6월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2000년 108.2만원에서 2014년 223.5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임
-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6월 기준 415.2만원)의 53.8% 수준으로, 2011년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1년 6월 기준 371.3만원)의 53.4%에 비해 소폭 상승한 금액임(가계 동향 조사 기준)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폐성장애가 349.9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지적장애 277.2만원, 언어장애 267.7만원의 순임
- 반면에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뇌전증 장애 106.5만원, 정신장애 152.1만원 등임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2012	2,708	1,407	610	156	406	128	4,233	2,645	1,135	189	180	84
2013	2,864	1,511	683	141	415	114	4,479	2,889	1,125	204	187	74
2014	3,113	1,632	785	153	434	109	4,658	3,025	1,159	190	211	73
2015	3,423	1,832	853	148	497	94	4,770	3,130	1,142	191	240	67
2016	3,513	1,778	894	185	554	102	4,883	3,199	1,122	220	274	67

주: 1)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3)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5)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6)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7)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8) 연간 기준임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연간)을 살펴보면, 2012년 2,708만원에서 2016년 3,513만원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전체가구 역시 2011년 4,233만원에서 2015년 4,88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
  - 2016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3,513만원으로 전체가구 4,883만원의 71.9% 수준에 불과함
-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50.1%, 공적이전 소득은 1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각각 65.5%, 5.61%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3) 소득구간별 비중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2012	100.0	30.6	36.5	17.6	8.1	5.0	2.3	100.0	14.2	29.9	25.1	14.4	9.8	6.5
2013	100.0	27.5	37.9	17.8	8.2	6.1	2.6	100.0	12.9	27.9	25.2	15.9	10.8	7.3
2014	100.0	27.8	33.7	19.8	9.1	6.1	3.5	100.0	12.8	25.5	25.6	15.9	12.0	8.1
2015	100.0	22.9	34.1	19.9	10.4	7.9	4.8	100.0	12.2	25.6	25.0	15.9	12.5	8.8
2016	100.0	22.5	34.8	18.9	10.9	8.1	4.9	100.0	12.0	24.7	24.3	16.4	13.2	9.3

주: 1)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2) 연간 기준임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소득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과반수 이상인 57.3%가 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36.7% 수준임
- 2016년 기준 구간별 소득 분포율에서 장애인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 57.3%지만, 전체 가구는 36.7%로 나타남. 이에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가구는 42.8%인 반면에, 전체가구는 장애인가구의 약 1.5배 수준인 63.2%로 나타남

2) 소비

(1) 월평균 가구지출

〈표 8-2-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0	98.9	–	–	–	–	–	–	–	–	–	–	–	–	–	–	–	–	–
2005	134.5	–	–	–	–	–	–	–	–	–	–	–	–	–	–	–	–	227.6
2011	161.8	165.0	156.7	156.2	149.4	200.1	177.8	244.3	121.9	189.0	137.8	171.4	253.3	100.8	118.3	125.2		300.4
2014	170.6	165.9	182.1	166.7	164.9	199.3	215.1	310.9	122.0	207.2	198.5	148.0	209.5	212.3	154.2	102.0		324.9

주: 전체가구는 가계 동향 조사 기준이며, 2005년, 2011년, 2014년 6월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지출은 2000년 98.9만원에서 2011년 161.8만원, 2014년 170.6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임
  -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14년 6월 기준 324.9만원)의 52.5% 수준으로, 2011년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11년 6월 기준 300.4만원)의 53.9%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금액임(가계 동향 조사 기준)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폐성장애가 310.9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지적장애 215.1만원, 안면장애 212.3만원 등의 순임
  - 이에 반해 월평균 지출이 낮은 장애유형은 뇌전증 장애 102.0만원, 정신장애 122.0만원임

(2) 비목별 소비지출액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2012	1,664	505	244	179	158	171	111	296	2,302	638	292	349	132	267	161	463
2013	1,702	461	261	176	177	192	124	311	2,303	624	302	340	138	269	173	456
2014	1,722	483	254	178	186	189	128	303	2,306	633	303	335	148	268	175	445
2015	1,821	532	264	166	199	203	136	322	2,327	661	303	321	151	266	176	449
2016	1,753	529	264	139	195	183	133	309	2,339	671	306	313	153	257	174	465

주: 1)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2)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3)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4)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5)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6)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7) 기타 소비지출: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8)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9) 연간 기준임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주요 소비 지출액은 2013년 1,702만원, 2014년 1,722만원, 2015년 1,821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6년 1,753만원으로 소폭 감소함
  • 전체가구의 경우에는 2013년 2,303만원, 2014년 2,306만원, 2015년 2,327만원, 2016년 2,339만원으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변화가 적음
– 2016년 연간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연평균 1,753만원(월평균 146.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는 2,339만원(월평균 194.9만원)으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7.9%로 전체가구 13.4%에 비하여 5.5%p 적으며, 이에 반해 의료비는 장애인가구 11.1%, 전체가구 6.5%로 약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비목별 비 소비지출액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2012	378	71	124	23	44	116	757	186	239	75	77	181
2013	459	81	137	44	52	146	828	193	259	99	85	192
2014	480	103	149	40	53	135	839	206	274	91	85	183
2015	511	111	172	43	60	124	843	213	283	88	89	170
2016	509	104	168	32	63	142	860	215	294	89	86	177

주: 1) 비 소비지출: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
2) 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3)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 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5)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6)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7)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8) 연간 기준임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은 주요 지출(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비, 기타 소비지출 등) 외의 지출로서 2012년 378만원, 2013년 459만원, 2014년 480만원, 2015년 511만원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6년 509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전체가구의 경우, 2012년 757만원, 2013년 828만원, 2014년 839만원, 2015년 843만원, 2016년 86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 양상을 보임
– 2016년 비 소비지출액의 경우, 장애인가구는 연평균 509만원(월평균 41.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는 860만원(월평균 71.7만원)으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 소비지출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4) 최소 생활비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 만원)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11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만원	5.2	5.2	4.4	6.9	6.8	0.6	4.1	–
	50-99만원	24.9	24.0	28.7	24.6	25.9	15.4	18.7	4.6
	100-149만원	22.1	21.9	21.6	22.1	23.9	22.3	23.4	6.8
	150-199만원	16.0	15.1	16.7	17.3	16.2	33.9	17.2	9.5
	200-249만원	13.9	14.1	11.6	12.3	14.6	19.2	16.9	22.8
	250-299만원	5.4	6.1	4.0	5.6	4.1	4.6	4.0	12.7
	300-349만원	6.7	7.6	7.4	5.7	4.3	0.5	7.4	21.6
	350-399만원	1.8	2.1	1.5	1.0	1.7	1.0	2.9	2.4
	400-499만원	2.3	2.0	1.4	2.7	1.9	–	4.4	11.5
	500만원	1.7	1.8	2.6	1.8	0.6	2.3	1.1	8.1
	전체 평균	154.0	157.5	152.2	149.4	139.6	159.2	168.4	270.3
2014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만원	4.5	4.5	3.2	5.7	4.9	5.5	2.7	–
	50-99만원	23.0	23.8	21.0	23.1	26.6	16.6	13.0	–
	100-149만원	20.5	19.8	24.6	18.6	22.5	15.9	20.3	11.4
	150-199만원	16.3	16.8	14.7	16.4	15.4	12.8	16.7	16.6
	200-249만원	14.7	14.9	13.9	16.5	12.7	27.1	14.7	9.5
	250-299만원	5.6	5.5	5.9	4.5	3.7	9.4	11.0	14.9
	300-349만원	7.6	6.9	6.9	9.1	6.6	4.7	11.9	24.4
	350-399만원	2.0	1.8	2.3	1.6	1.5	3.4	4.0	5.2
	400-499만원	3.5	3.7	4.0	2.8	3.8	2.6	3.9	6.1
	500만원	2.3	2.2	3.5	1.7	2.3	1.9	1.8	12.0
	전체 평균	164.9	162.7	173.2	160.3	154.2	178.5	190.1	273.9

주: 1) 월간 기준임
2)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는 2014년 164.9만원으로 2011년 월평균 154.0만원 대비 10.9만원이 증가함
• 생활비 범주별로는 2014년 50-99만원 범주가 2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0-149만원 20.5%, 150-199만원이 16.3%, 200-249만원이 14.7%의 순임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계속)

(단위: %, 만원)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만원	4.8	3.0	5.3	12.5	–	–	2.8	0.9
	50-99만원	36.3	16.9	38.6	25.3	8.4	59.8	44.5	28.2
	100-149만원	26.2	20.2	9.5	19.4	15.0	17.4	14.4	23.1
	150-199만원	16.6	22.2	10.8	11.2	13.7	19.1	7.3	16.0
	200-249만원	8.5	17.8	18.5	14.1	6.5	–	16.3	27.9
	250-299만원	4.8	5.9	9.1	2.2	9.6	1.7	6.1	–
	300-349만원	0.5	5.5	1.9	6.1	35.5	2.0	–	1.7
	350-399만원	0.6	2.7	–	3.9	–	–	–	–
	400-499만원	1.3	5.1	6.2	5.3	5.3	–	8.6	1.6
	500만원	0.3	0.7	–	–	5.9	–	–	0.6
	전체 평균	119.1	169.0	145.7	147.6	237.5	99.8	134.9	139.3
2014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만원	6.8	1.8	5.9	12.2	–	–	–	15.9
	50-99만원	33.9	21.0	9.7	21.9	9.0	34.7	34.4	18.5
	100-149만원	18.6	22.6	24.0	23.2	6.6	18.4	20.1	28.2
	150-199만원	16.5	16.4	7.8	9.3	32.6	17.2	18.0	13.2
	200-249만원	12.8	13.5	15.6	18.5	22.9	–	13.1	15.1
	250-299만원	3.4	6.9	6.0	2.6	4.8	–	2.8	–
	300-349만원	5.4	10.2	17.4	5.1	8.3	29.7	6.4	1.5
	350-399만원	0.3	0.4	4.0	1.9	8.2	–	2.2	4.9
	400-499만원	1.1	3.4	–	5.3	4.4	–	3.0	–
	500만원	1.2	3.7	9.6	–	3.2	–	–	2.7
	전체 평균	133.1	178.6	229.7	146.6	210.6	156.9	144.2	135.6

주: 1) 월간 기준임
2)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월 평균 생활비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273.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장장애 229.7만원, 간장애 210.6만원, 지적장애 190.1만원 등의 순임
- 반면에 월 평균 최소 생활비가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133.1만원, 뇌전증 장애 135.6만원, 장루·요루장애 144.2만원, 호흡기장애 146.6만원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5)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05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55.4	120.5	272.8	78.1	55.8	112.0	156.5	323.1
	교통비	22.9	23.1	33.5	13.9	7.0	13.5	24.2	49.3
	의료비	90.2	69.1	159.3	39.3	22.5	44.9	30.6	33.6
	교육비	6.1	0.2	5.9	0.4	2.7	36.5	47.5	177.6
	보호·간병비	11.8	8.2	44.7	–	0.3	–	–	0.8
	재활기관이용료	2.1	0.6	3.1	–	0.1	5.1	23.9	22.0
	통신비	1.2	0.6	0.5	2.9	2.7	–	5.9	2.4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6.4	5.1	3.2	8.8	17.0	0.1	1.1	0.4
	부모사후대비비	8.8	10.6	4.1	11.4	2.2	7.7	17.8	33.0
	기타	6.0	3.1	18.5	1.5	1.5	4.3	5.5	4.1
2011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60.7	141.5	274.2	84.2	119.6	126.4	188.4	503.2
	교통비	22.8	27.7	28.6	10.8	4.2	17.2	36.0	85.7
	의료비	56.8	49.3	122.3	18.3	5.9	28.7	23.8	64.5
	보육·교육비	6.0	1.1	5.8	2.0	0.7	32.2	49.7	200.4
	보호·간병비	14.1	9.5	53.6	6.2	0.8	–	11.0	17.0
	재활기관 이용료	1.9	0.1	3.7	–	0.6	2.8	13.3	69.7
	통신비	9.6	1.8	3.1	28.9	24.1	24.2	8.7	12.5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31.7	33.5	17.6	12.4	82.1	–	1.9	9.6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5.4	4.6	1.9	4.5	1.0	15.4	35.2	41.8
	기타	12.3	14.4	37.6	1.1	0.2	5.9	8.8	1.8
2014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64.2	137.3	283.1	104.2	120.4	143.7	197.8	418.1
	교통비	25.6	28.8	30.3	17.0	9.0	21.5	32.9	79.2
	의료비	66.0	56.9	138.6	26.8	11.7	54.2	47.1	22.7
	보육·교육비	4.1	0.1	4.9	0.3	0.2	7.3	32.5	154.6
	보호·간병비	13.6	8.8	51.7	6.1	2.8	0.5	10.2	30.2
	재활기관 이용료	4.2	0.9	13.1	0.3	2.8	1.1	20.4	80.3
	통신비	9.9	2.9	4.7	27.1	24.0	18.9	9.8	9.2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8.9	15.0	11.2	12.5	59.1	25.4	0.7	–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16.8	20.3	10.4	12.0	11.8	13.6	39.5	41.3
	기타	5.1	3.6	18.2	2.2	1.1	1.2	4.6	0.6

주: 월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월 평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총 추가비용은 2014년 164.2천원으로 2011년 160.7천원 보다 3,500원 증가함
  • 추가비용의 주요 항목을 보면, 2014년 기준 의료비가 66.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 25.6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8.9천원,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 16.8천원, 보호·간병비 13.6천원으로 나타남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계속)

(단위: 천원)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5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06.3	343.9	121.8	237.6	357.0	279.0	283.9	115.0
	교통비	11.6	42.9	15.1	19.4	46.9	9.3	18.0	10.6
	의료비	84.8	280.2	104.5	184.0	267.0	47.7	178.3	56.2
	교육비	1.3	–	–	–	–	–	–	–
	보호·간병비	–	5.7	–	13.9	2.4	–	3.1	–
	재활기관이용료	0.2	–	–	–	–	–	–	–
	통신비	0.9	0.8	0.3	0.5	0.2	–	0.1	–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	4.1	0.6	19.6	0.0	1.5	80.7	–
	부모사후대비비	4.5	4.3	1.1	–	–	220.5	–	38.9
	기타	3.0	5.8	0.3	0.2	40.4	–	3.8	9.3
2011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73.8	241.6	172.3	255.0	597.0	122.4	263.8	167.8
	교통비	12.5	48.8	20.9	33.4	60.6	18.0	14.0	7.2
	의료비	50.8	167.3	127.7	162.8	512.2	26.4	91.7	61.5
	보육·교육비	–	–	–	1.1	–	15.8	–	–
	보호·간병비	2.2	4.5	0.0	3.0	19.1	–	31.6	10.3
	재활기관 이용료	0.3	–	–	–	–	–	–	–
	통신비	2.5	6.4	1.1	1.1	–	1.5	1.1	3.6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0.0	10.8	2.0	44.9	–	0.7	117.2	79.6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3.7	1.9	9.0	–	0.7	–	–	3.8
	기타	1.8	1.9	11.6	8.7	4.4	–	8.2	1.7
2014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03.9	303.3	350.7	254.7	271.5	323.9	269.0	175.4
	교통비	15.4	51.9	37.8	34.6	32.5	19.2	26.0	35.7
	의료비	66.3	218.2	276.3	172.3	221.2	288.9	86.3	98.6
	보육·교육비	0.8	–	3.0	–	–	–	–	0.2
	보호·간병비	1.7	7.8	6.0	10.4	–	–	69.2	3.0
	재활기관 이용료	1.0	–	0.8	–	–	–	–	7.2
	통신비	1.6	3.5	1.5	1.1	2.7	15.7	1.3	3.7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	8.9	23.9	18.2	1.2	–	84.0	7.8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11.6	9.0	1.5	12.3	13.4	–	1.0	12.2
	기타	5.3	4.0	–	5.7	0.5	–	1.1	7.1

주: 월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418.1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다음은 심장장애 350.7천원, 안면장애 323.9천원, 신장장애 303.3천원의 순임

3) 빈곤

(1)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표 8-3-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시장소득 빈곤율	가처분소득 빈곤율	가처분소득 빈곤갭	시장소득 빈곤율	가처분소득 빈곤율	가처분소득 빈곤갭
2012	44.4	36.3	37.0	19.4	16.6	34.5
2013	43.2	35.6	38.3	19.0	16.5	35.5
2014	41.5	34.5	39.9	18.9	16.3	36.4
2015	39.0	30.8	37.3	19.0	16.3	35.2
2016	41.2	31.5	37.0	19.5	15.9	35.4

주: 1)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빈곤갭: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3) 균등화소득 :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에 소득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조정소득
4)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5) 가처분 소득: 경상소득 - 비 소비지출
6)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빈곤율 및 빈곤갭은 전년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2015년 30.8%에서 2016년 31.3%로 증가한 반면에, 전체가구는 2015년 16.3%, 2016년 16.0%으로 감소함
  - 2016년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1.3%로 전체가구의 16.0%에 비하여 약 2배 높으며, 빈곤갭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에 비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는 2012년 8.1%p, 2016년 9.6%p로 전체가구의 2012년 2.8%p, 2016년 3.5%p에 비해 정부정책에 의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갭 :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2)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및 5분위배율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및 5분위배율

(단위: 만원, 배)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분위별 소득					5분위 배율	전체	분위별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2012	2,708	766	1,947	3,348	4,955	9,050	11.8	4,233	761	1,991	3,344	5,040	10,029	13.2
2013	2,864	817	2,134	3,557	5,312	9,443	11.6	4,479	814	2,179	3,589	5,389	10,420	12.8
2014	3,113	818	2,226	3,758	5,613	10,513	12.9	4,658	827	2,299	3,794	5,635	10,735	13.0
2015	3,456	867	2,319	3,872	5,747	10,257	11.8	4,767	862	2,354	3,895	5,791	10,930	12.7
2016	3,513	904	2,327	3,900	5,896	10,901	13.2	4,883	890	2,409	3,989	5,953	11,171	12.6

주: 1) 경상소득 기준임
2)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3) 5분위 배율: 소득 5분위 소득/소득 1분위 소득
4)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5) 연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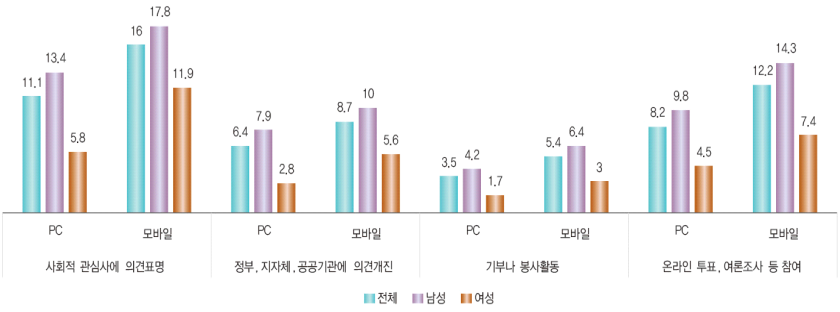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장애인가구의 2016년 1분위소득(연간)은 904만원으로 전년 867만원에 비하여 4.3% 상승하였으며, 5분위소득은 2015년 10,901만원으로 2014년 10,257만원 대비 6.3% 증가함
  - 전체가구의 1분위소득은 890만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며, 5분위소득도 2.2% 증가함
- 장애인가구의 분위별 소득을 전체가구와 비교하면, 5분위소득간의 격차가 다른 분위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5분위 평균 소득은 10,901만원으로 전체가구 11,171만원에 비해 약 270만원이 적음

5분위 배율(숫자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짐)
- 소득 5분위 평균소득/소득 1분위 평균소득

9. 문화 및 사회참여

[그림 2-9-1]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장애인의 선거 참여율은 2005년 76.5%에서 2011년 71.6%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74.8%로 다소 증가함
-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PC보다 모바일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참여율이 낮음

1) 문화 및 여가활동

(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감상·관람 (연극, 영화 등)	7.1	7.9	5.3	5.1	4.8	2.7	10.3	10.9	7.9	8.7	10.2	2.1	14.2	2.1	-	10.0
TV시청 (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6.0	98.1	92.1	91.4	95.9	98.0	95.3	83.5	92.6	98.2	96.0	100.0	87.1	96.3	94.6	96.0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9.1	31.8	19.0	27.6	23.3	28.3	35.9	49.8	19.2	40.9	38.5	16.3	40.3	78.1	19.5	29.6
승부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5.6	6.3	4.1	4.7	5.7	4.9	3.9	5.0	3.6	7.2	10.0	9.5	7.4	12.1	8.3	12.3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연주 등)	4.0	3.7	1.7	5.0	3.1	2.5	6.7	25.2	5.1	4.6	-	-	4.1	14.2	5.2	5.4
독서, 신문이나 잡지 읽기	25.0	28.7	18.9	22.1	25.9	19.3	11.0	28.2	18.2	30.8	41.6	17.4	41.7	39.7	25.3	19.3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9.5	9.9	5.2	8.5	9.5	7.4	15.4	40.2	8.5	7.0	8.2	-	10.8	-	8.9	0.9
학습활동 (영어, 한문, 교양강좌, 등)	3.9	3.5	3.3	4.4	2.2	3.3	7.9	27.3	4.0	3.0	1.4	-	5.1	16.4	1.8	14.7
사회(자원)봉사 활동	3.9	4.8	2.7	3.6	3.5	1.5	1.5	-	4.9	3.2	-	-	2.2	-	8.3	-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9.8	11.9	2.6	9.6	10.6	8.1	6.1	24.9	2.0	13.1	18.7	2.1	16.1	28.5	12.3	5.4
사교 일 (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56.1	64.5	36.7	60.8	58.8	50.0	35.4	36.1	29.1	56.2	51.9	33.5	55.6	52.4	53.5	45.6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3.9	5.3	1.1	3.5	2.4	3.3	2.8	3.6	0.7	5.5	12.1	-	3.5	-	6.7	-
가족관련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34.1	38.8	20.7	30.8	36.2	31.2	29.7	53.9	18.9	39.5	27.7	23.0	31.7	44.8	23.5	19.2
가사잡일(장보기 포함)	58.5	67.2	33.7	58.9	65.2	36.0	36.3	12.1	49.1	58.6	69.8	44.0	64.7	44.5	64.5	62.1
휴식(사우나 등)	29.0	32.8	21.2	29.2	29.6	29.4	22.9	21.9	14.9	30.6	25.4	20.3	26.1	18.5	23.1	19.0
기타	1.3	1.2	1.3	2.3	1.0	2.7	0.8	-	1.6	1.8	-	-	2.9	-	3.1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지난 1주일 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TV 시청이 96.0%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잡일 58.5%, 사교 일 56.1%의 비율로 나타남
  - 기타를 제외하고 해외여행, 사회(자원)봉사 활동, 학습활동이 각각 3.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	7.1	8.2	5.6	14.8	19.7	6.8	2.2	7.5	7.2	7.3
TV시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6.0	96.2	95.7	92.1	95.0	97.1	95.6	93.4	97.8	96.1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9.1	37.2	18.2	59.5	66.7	36.2	6.9	4.5	4.0	4.2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5.6	8.7	1.5	5.6	8.8	6.9	3.3	20.6	28.3	25.3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연주 등)	4.0	4.0	4.0	23.8	5.9	3.6	2.4	8.9	10.3	9.7
독서, 신문이나 잡지 읽기	25.0	31.0	16.7	34.0	34.4	29.9	16.5	4.7	3.7	4.1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9.5	11.9	6.3	28.3	15.9	10.0	5.5	3.3	4.5	4.1
학습활동(영어, 한문, 교양강좌, 등)	3.9	4.0	3.9	33.8	8.1	2.6	1.7	6.4	12.4	10.0
사회(자원)봉사 활동	3.9	4.0	3.9	5.3	4.8	5.1	2.5	43.6	65.7	57.1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9.8	12.9	5.6	15.7	15.2	13.0	4.6	2.0	5.4	4.1
사교 일(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56.1	57.8	53.9	57.9	54.6	59.3	53.8	28.1	39.4	35.0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3.9	4.3	3.5	4.7	7.2	4.5	2.1	44.5	68.2	58.9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34.1	35.8	31.7	44.8	43.7	38.3	26.1	21.6	34.2	29.3
가사잡일(장보기 포함)	58.5	49.7	70.6	17.9	55.1	63.3	58.2	1.2	1.4	1.3
휴식(사우나 등)	29.0	29.6	28.1	23.7	32.4	32.3	25.1	27.3	31.7	30.0
기타	1.3	1.0	1.8	-	1.0	1.1	1.8	5.4	6.1	5.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TV시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TV시청을 제외하고 남성은 사교 일(57.8%)이, 여성은 가사잡일(70.6%)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TV시청을 제외하고 17세 이하와 18-44세 이하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45-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가사잡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사회참여

(1) 장애인 투표 여부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5		76.5	81.7	57.7	81.0	83.7	88.3	51.4	33.6	54.3	80.0	86.2	77.4	70.2	74.1	87.7	72.4
2011		71.6	80.9	50.5	77.4	82.2	52.9	32.6	8.7	48.4	72.5	70.6	71.2	75.6	58.3	74.1	51.3
2014	참여함	74.8	85.1	59.8	78.0	81.4	62.5	32.8	14.9	42.7	75.2	81.3	75.0	93.2	85.0	76.6	64.7
	참여하지 않음	22.0	14.6	36.2	20.5	16.8	29.2	44.0	21.2	55.3	24.8	13.4	25.0	6.8	–	23.4	26.0
	비 해당 (투표권 없었음)	3.2	0.3	4.0	1.5	1.8	8.3	23.3	63.9	2.0	–	5.4	–	–	15.0	–	9.4

주: 1) 2005년의 경우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2011년의 경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4년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2005년의 경우는 비 해당(투표권 없음) 255건 및 무응답 14건을 제외하고 비율을 제시함
3) 비 해당: 만 19세 미만, 금치산자 등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71.6	73.7	68.8	–	54.6	80.1	76.9	47.4	78.9	71.7
2014	참여함	74.8	77.1	71.7	–	61.8	79.1	80.6	57.9	86.4	75.3
	참여하지 않음	22.0	19.4	25.6	–	35.5	20.8	19.3	34.7	13.1	21.5
	비 해당 (투표권 없었음)	3.2	3.6	2.7	100.0	2.7	0.1	–	7.5	0.5	3.2

주: 1) 2011년의 경우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4년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비 해당: 만 19세 미만, 금치산자 등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선거 참여율은 2005년 76.5%에서 2011년 71.6%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74.8%로 다소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장애의 선거 참여율이 93.2%로 가장 높으며 자폐성장애의 선거 참여율이 14.9%로 가장 낮음
  - 성별로는 남성 투표 참여율은 77.1%로 여성의 투표 참여율 71.7%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투표 참여율이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57.9%,이고 경증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86.4%로 경증장애인의 투표율이 중증장애인 보다 더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표 9-2-3〉 투표 미 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교통 불편	1.1	1.7	0.4	–	–	–	1.4	–	2.5	–	–	–	–	–	–	–
편의시설 부족	1.0	0.7	0.6	–	–	3.9	4.2	7.2	0.2	–	–	–	–	–	–	–
몸이 불편해서	43.9	35.2	76.5	39.7	40.1	35.3	29.6	31.7	32.9	62.0	53.7	88.9	66.1	–	65.5	48.3
도우미가 없어서	3.0	2.1	2.6	3.8	0.7	5.8	8.4	–	–	5.1	–	–	–	–	–	–
정보 부족	5.2	4.4	1.9	8.5	7.6	–	8.6	22.8	3.6	7.9	–	–	–	–	–	–
시간이 없어서	8.4	15.4	1.9	12.2	10.2	4.8	2.6	–	2.4	8.8	–	–	–	–	–	–
본인이 원치 않아서	34.1	39.2	14.0	35.3	41.4	50.2	32.8	22.7	53.6	16.2	46.3	11.1	33.9	–	34.5	44.2
주위의 시선 때문에	0.7	0.2	0.5	0.5	–	–	3.2	–	0.4	–	–	–	–	–	–	–
기타	2.6	1.2	1.6	–	–	–	9.3	15.5	4.3	–	–	–	–	–	–	7.5

주: 무응답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몸이 불편해서가 43.9%,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34.1%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장애는 50.2%, 정신장애는 53.6%가 본인이 원치 않아서였으며, 다른 장애유형은 모두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9-2-4〉 투표 미 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1.1	1.0	1.1	-	1.9	0.3	1.2	0.8	1.7	1.2
편의시설 부족	1.0	1.6	0.4	-	1.4	1.2	0.5	1.6	0.3	1.1
몸이 불편해서	43.9	36.6	51.4	-	25.8	28.5	71.1	47.2	34.3	42.4
도우미가 없어서	3.0	2.2	3.8	-	1.8	2.8	4.0	4.4	0.8	3.1
정보 부족	5.2	5.0	5.5	-	7.6	4.3	4.4	5.2	5.6	5.4
시간이 없어서	8.4	11.1	5.7	-	11.2	13.6	1.7	4.1	15.9	8.5
본인이 원치 않아서	34.1	39.0	29.1	-	42.9	46.6	16.2	31.9	40.9	35.2
주위의 시선 때문에	0.7	0.1	1.2	-	1.9	0.4	0.1	1.0	-	0.7
기타	2.6	3.4	1.7	-	5.4	2.3	0.8	3.7	0.6	2.5

주: 무응답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39.0%, 여성은 몸이 불편해서가 51.4%가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8-44세 이하와 45-64세 이하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각각 42.9%, 46.6%,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해서가 71.1%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은 몸이 불편해서가 47.2%, 경증은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40.9%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장애인 공무원 수

〈표 9-2-5〉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연도별, 직급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2008		6,551		1,040			3,983			1,528	
2009		7,553		1,292			4,761			1,500	
2010		7,859		1,360			4,703			1,796	
2011		8,117	282	559	552	2,169	1,123	1,590	235	689	918
2012		8,323	278	492	645	2,223	1,087	1,679	256	694	969
2013		8,488	277	576	575	2,316	1,118	1,813	220	692	901
2014		8,633	267	589	592	2,310	1,112	1,888	236	663	976
2015		8,975	284	589	588	2,376	1,200	2,032	214	634	1,058
2016		9,236	296	598	589	2,360	1,193	2,036	239	669	1,256
일반직	소계	9,223	291	598	585	2,358	1,191	2,036	239	669	1,256
	1급	-	-	-	-	-	-	-	-	-	-
	2급	3	1	1	1	-	-	-	-	-	-
	3급	11	-	5	3	-	-	3	-	-	-
	4급	72	1	24	22	13	4	8	-	-	-
	5급	515	20	78	91	112	64	47	8	45	50
	6급	2,330	70	191	174	649	364	417	71	226	168
	7급	3,198	132	197	166	969	422	739	66	187	320
	8급	1,631	16	65	54	375	206	468	44	84	319
	9급	1,281	41	10	28	186	95	348	50	125	398
	시간선택제 7급	-	-	-	-	-	-	-	-	-	-
	시간선택제 8급	-	-	-	-	-	-	-	-	-	-
	시간선택제 9급	3	-	-	-	1	-	-	-	1	1
	전문경력관	8	1	1	-	1	4	1	-	-	-
	전담직위	5	-	-	-	4	-	1	-	-	-
	일반 임기제 5급 이상	8	-	3	3	1	1	-	-	-	-
	일반 임기제 6급 이하	26	1	4	5	8	4	4	-	-	-
	일반 임기제 연구관	-	-	-	-	-	-	-	-	-	-
	일반 임기제 연구사	-	-	-	-	-	-	-	-	-	-
	일반 임기제 지도관	-	-	-	-	-	-	-	-	-	-
	일반 임기제 지도사	-	-	-	-	-	-	-	-	-	-
	연구관	22	1	6	14	1	-	-	-	-	-
	연구사	45	6	9	24	6	-	-	-	-	-
	지도관	6	-	1	-	2	2	-	-	1	-
	지도사	59	1	3	-	30	25	-	-	-	-
특정직	소계	8	5	-	3	-	-	-	-	-	-
	소방직	-	-	-	-	-	-	-	-	-	-
	교육직	8	5	-	3	-	-	-	-	-	-
	자치경찰	-	-	-	-	-	-	-	-	-	-
별정직	소계	4	-	-	1	1	2	-	-	-	
	5급 상당 이상	1	-	-	1	-	-	-	-	-	-
	6급 상당 이하	3	-	-	-	1	2	-	-	-	-
정무직		1	-	-	-	1	-	-	-	-	-

주: 각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는 2008년 6,551명에서 2016년 9,23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7급이 3,198명으로 가장 많음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시도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2008	6,551		1,040			3,983			1,528	
2009	7,553		1,292			4,761			1,500	
2010	7,859		1,360			4,703			1,796	
2011	8,117	282	559	552	2,169	1,123	1,590	235	689	918
2012	8,323	278	492	645	2,223	1,087	1,679	256	694	969
2013	8,488	277	576	575	2,316	1,118	1,813	220	692	901
2014	8,633	267	589	592	2,310	1,112	1,888	236	663	976
2015	8,975	284	589	588	2,376	1,200	2,032	214	634	1,058
2016	9,236	296	598	589	2,360	1,193	2,036	239	669	1,256
서울	1,781	296	-	-	-	-	1,100	-	-	385
부산	607	-	124	-	-	26	323	3	-	131
대구	391	-	113	-	-	19	163	6	7	83
인천	361	-	103	-	-	20	158	-	10	70
광주	252	-	80	-	-	-	114	-	-	58
대전	218	-	70	-	-	-	118	-	-	30
울산	178	-	62	-	-	20	60	6	8	22
세종	46	-	46	-	-	-	-	-	-	-
경기	1,340	-	-	114	886	53	-	31	48	208
강원	471	-	-	63	178	141	-	28	35	26
충북	375	-	-	54	120	112	-	16	57	16
충남	531	-	-	67	204	119	-	22	93	26
전북	488	-	-	54	207	114	-	10	66	37
전남	633	-	-	52	152	251	-	36	121	21
경북	717	-	-	58	279	184	-	38	106	52
경남	667	-	-	57	275	134	-	29	109	63
제주	180	-	-	70	59	-	-	14	9	28

주: 1) 일반직 기준
2) 각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2015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781명, 경기도 1,340명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시(46명)를 제외한 울산광역시가 178명으로 가장 적음

(3) 온라인 사회참여

〈표 9-2-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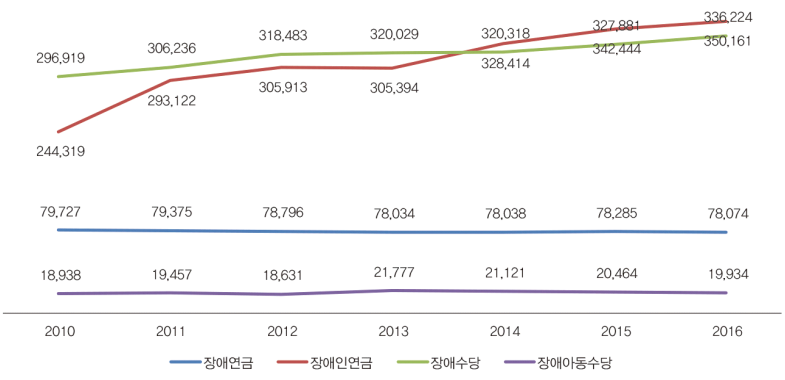
구분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견개진		기부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 참여	
		PC	모바일	PC	모바일	PC	모바일	PC	모바일
전체		11.1	16.0	6.4	8.7	3.5	5.4	8.2	12.2
성별	남성	13.4	17.8	7.9	10.0	4.2	6.4	9.8	14.3
	여성	5.8	11.9	2.8	5.6	1.7	3.0	4.5	7.4
연령별	19세 이하	19.7	18.0	6.6	6.6	1.6	1.6	6.6	6.6
	20대	23.5	35.3	9.8	23.5	9.8	3.9	19.6	17.6
	30대	20.5	28.6	9.9	17.4	6.8	9.9	14.9	19.9
	40대	12.5	17.5	7.5	9.2	4.5	6.1	10.9	15.0
	50대	9.4	15.3	6.8	8.2	3.0	5.6	7.1	12.0
	60대이상	4.9	6.6	2.3	3.2	1.1	3.2	2.9	6.3
학력별	초졸이하	6.7	5.8	4.9	2.7	0.4	2.7	1.3	6.2
	중졸	9.6	11.8	3.6	6.0	1.4	4.1	6.6	12.1
	고졸	10.2	18.4	6.1	10.0	3.5	5.8	8.6	12.8
	대졸이상	25.1	27.5	15.6	16.2	12.0	10.2	19.2	18.0
직업별	농/임/어업	8.9	8.9	6.7	6.7	–	6.7	2.2	6.7
	서비스/판매직	13.3	18.0	8.6	11.2	7.3	6.9	9.4	11.6
	생산관련직	11.6	17.6	7.2	10.7	4.2	6.3	9.9	15.5
	전문관리/사무직	22.3	24.1	15.2	19.6	11.6	10.7	17.9	17.9
	주부	4.1	9.3	2.1	2.8	0.7	3.4	4.5	8.3
	학생	23.5	23.5	7.8	13.7	3.9	3.9	9.8	9.8
	무직/기타	10.2	16.0	5.1	6.8	1.2	4.1	7.0	12.1
가구 소득별	100만원미만	7.7	15.0	6.1	8.9	2.4	7.7	4.9	9.7
	100~199만원	8.1	13.6	4.7	7.2	2.8	6.4	4.3	10.4
	200~299만원	9.2	14.4	4.4	7.3	1.8	3.2	9.2	12.8
	300만원이상	15.3	15.7	7.2	7.6	5.5	3.0	13.6	14.4
	무응답	24.1	28.9	15.7	17.5	8.4	8.4	14.5	16.3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	10.3	16.5	6.6	8.8	3.6	6.1	8.8	12.9
	뇌병변장애	18.2	15.6	6.5	8.4	2.6	2.6	11.7	13.0
	시각장애	13.0	15.4	7.4	9.3	4.3	5.6	6.2	8.6
	청각/언어장애	7.8	13.5	3.5	7.1	2.1	2.8	2.8	9.9

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자주함)로 측정함
· 표현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기부(금전/재능) 및 봉사활동, 지역/정치/사회참여 관련 커뮤니티(카페/모임) 활동을 하는 것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6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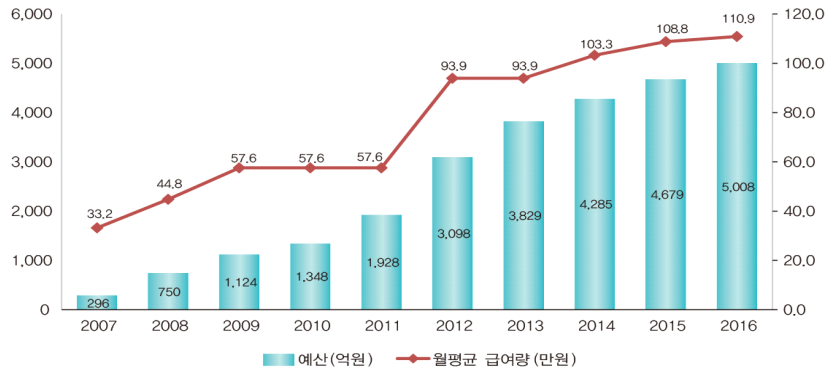
–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PC보다 모바일이 높게 나타남.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참여율이 낮음
–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고, 30대 이하,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가장 높고, 고졸 이상, 중졸, 초졸 이하 순으로 학력의 역순으로 참여율이 높음
– 직업별 참여율은 전문관리/사무직이 가장 높고, 학생,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 순이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 참여율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가장 높고, 다른 장애유형은 비슷한 참여율을 보임

10. 사회보장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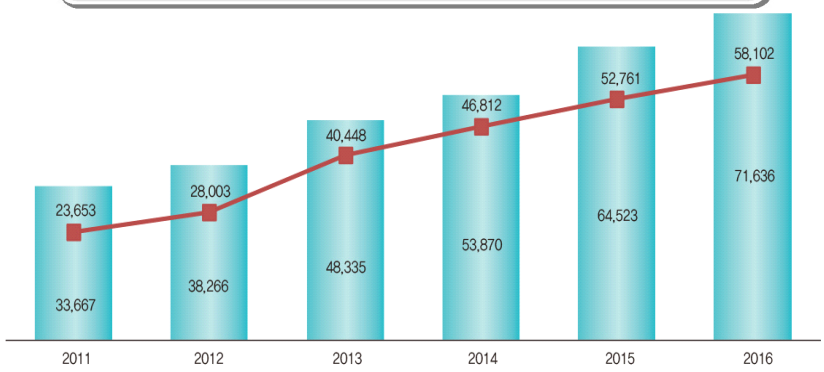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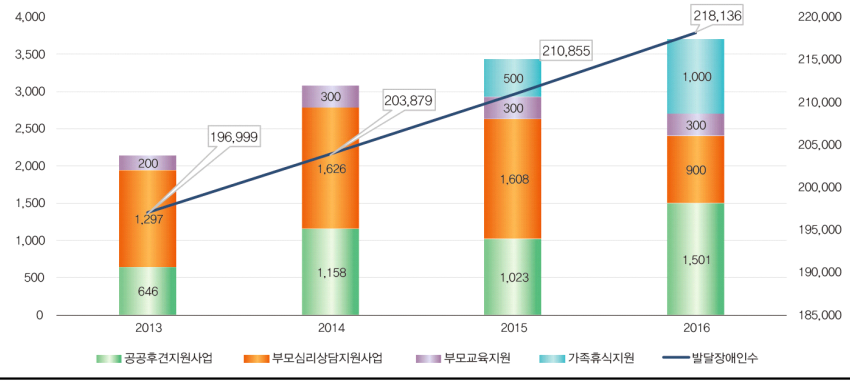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79,727명에서 2016년 78,074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함
- 2016년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512,314명, 수급자는 350,161명으로 수급률은 68.3%로 나타남
- 2016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336,22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0년부터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16년 19,93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16년 5,008억원으로, 월평균 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에서 2016년 110.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대비 지원 규모 및 활동보조인 활동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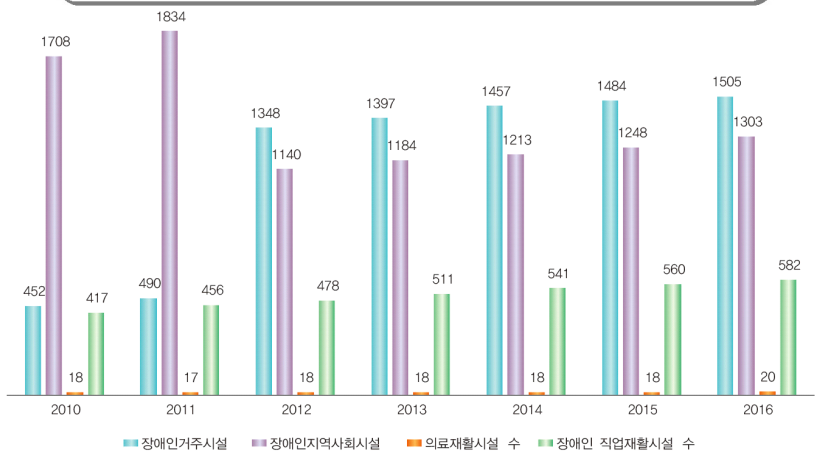
[그림 2-10-4]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지원 규모(이용인원)는 2007년 14,515명에서 2016년 71,63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활동보조인의 활동인원은 58,102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 646백만원으로 첫 편성된 후 2016년 1,501백만원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의 2016년 예산은 90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00백만원으로 동일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2016년 예산은 1,00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그림 2-10-5] 장애인 관련 시설 수



- 2012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505개소로 나타남. 이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었기 때문임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선 가장 많았으나, 2012년부터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거주시설 다음으로 많은 시설로 나타남
-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2016년 전년도에 비해 2개소 증가한 20개소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2010년 417개소에서 2016년 582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

① 가입한 연금 종류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개인연금 (사적)	기타
2005	20.8	0.8	-	-	0.1	2.1	-
2011	32.9	1.4	0.2	0.4	1.9	3.2	0.1
2014	35.0	2.1	0.4	0.3	1.9	3.8	0.2
남	46.4	2.8	0.5	0.4	2.4	4.3	0.3
여	19.7	1.1	0.3	0.2	1.2	3.0	0.1
계	35.6	2.1	0.4	0.3	1.5	4.0	0.2
중증(1-3급)	25.4	1.1	0.3	0.1	1.9	3.1	0.1
경증(4-6급)	41.8	2.7	0.5	0.4	1.3	4.5	0.3
지체	40.4	2.2	0.5	0.3	1.7	4.7	0.3
뇌병변	29.3	2.1	0.7	0.1	3.2	2.9	0.3
시각	37.6	3.8	0.6	0.5	2.4	3.7	-
청각	30.9	2.0	0.2	0.4	1.7	2.0	-
언어	36.8	-	-	1.8	2.9	-	-
지적	18.2	-	-	-	0.5	2.3	0.1
자폐성	9.6	-	-	-	-	4.6	-
정신	10.0	-	-	-	1.5	0.9	-
신장	37.4	1.6	-	0.6	3.7	5.2	-
심장	30.7	-	-	-	-	8.2	-
호흡기	29.7	1.4	-	-	5.5	4.8	-
간	48.2	5.1	-	-	1.6	2.6	-
안면	33.5	-	-	-	-	-	-
장루요루	42.3	4.3	-	-	1.8	3.2	-
뇌전증	11.0	-	-	-	-	-	-

주: 1) 중복응답임
2) 전체 계와 장애정도 계의 차이는 추정 수 차이에 의해 발생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연금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35.0%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4% 이하의 낮은 가입률을 보임
  -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연금의 가입률이 높으며 경증이 중증보다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연금 종류에 따른 장애유형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간 장애가 각각 48.2%, 5.1%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임
  -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경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만이 가입되어 있고, 군인연금의 경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장애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두 연금 모두 가입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보훈연금은 호흡기장애 5.5% 개인연금은 심장장애가 8.2%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임

② 장애연금 수급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소계		1급		2급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2010	79,727	333,603,890	76,280	296,304,705	11,007	57,972,283	25,145	107,518,566
2011	79,375	347,466,360	75,895	305,547,438	11,229	61,569,109	25,218	112,288,852
2012	78,796	349,116,465	75,934	314,462,857	11,307	64,383,918	25,400	116,872,640
2013	78,034	364,904,555	75,041	326,167,915	11,292	66,879,131	25,302	121,795,089
2014	78,038	366,074,576	75,387	331,603,350	11,357	68,102,787	25,749	124,895,468
2015	78,285	372,089,942	75,688	336,567,621	11,393	69,260,983	26,081	127,855,760
2016	78,074	373,380,465	75,497	337,332,457	11,657	70,885,857	26,820	132,030,529
남	64,994	316,626,166	62,881	286,062,444	9,880	61,045,403	22,205	111,581,341
여	13,080	56,754,299	12,616	51,270,013	1,777	9,840,454	4,615	20,449,188
20세 미만	-	-	-	-	-	-	-	-
20-24세	42	201,322	26	75,142	6	75,142	12	32,390
25-29세	287	1,327,003	233	837,986	64	83,986	78	274,620
30-34세	1,310	6,041,021	1,173	4,567,279	263	4,567,279	415	1,676,310
35-39세	3,187	15,112,962	2,994	12,611,397	542	12,611,397	1,069	4,812,779
40-44세	5,874	28,554,320	5,553	24,211,397	951	24,211,397	1,935	9,353,314
45-49세	9,179	44,751,188	8,777	38,924,388	1,422	38,924,388	2,898	14,350,441
50-54세	12,681	62,933,574	12,115	54,500,578	1,835	54,500,578	4,015	19,836,341
55-59세	17,843	88,920,711	17,126	78,146,169	2,484	78,146,169	5,764	29,050,184
60-64세	12,289	55,535,939	12,119	53,465,177	1,929	53,465,177	4,541	22,127,614
65-69세	8,052	36,460,274	8,051	36,450,795	1,208	36,450,795	3,108	15,517,050
70세 이상	7,330	33,542,151	7,330	33,542,149	953	33,542,149	2,985	14,999,486

주: 1)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 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음
2) 장애일시보상금의 7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없으나, 미 수령 수급액 지급에 의해 수급액이 발생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각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전체 장애연금 수급액은 2010년 333,603,890천원에서 2016년 373,380,465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 전체 수급자 수는 2010년 79,727명에서 2016년 78,074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의 수가 64,994명으로 여성 수급자 13,08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체 수급자 중 55-59세가 17,843명으로 가장 많고 50-54세가 12,681명, 60-64세가 12,289명 순으로 나타남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계속)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3급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2010	79,727	333,603,890	40,128	130,813,857	3,447	37,299,185
2011	79,375	347,466,360	39,448	131,689,477	3,480	41,918,922
2012	78,796	349,116,465	39,227	133,206,299	2,862	34,653,608
2013	78,034	364,904,555	38,447	137,493,695	2,993	38,736,640
2014	78,038	366,074,576	38,281	138,605,095	2,651	34,471,226
2015	78,285	372,089,942	38,214	139,450,878	2,597	35,522,321
2016	78,074	373,380,465	37,020	134,416,071	2,577	36,048,008
남	64,994	316,626,166	30,796	113,435,700	2,113	30,563,722
여	13,080	56,754,299	6,224	20,980,371	464	5,484,286
20세 미만	-	-	-	-	-	-
20-24세	42	201,322	8	10,826	16	126,180
25-29세	287	1,327,003	91	245,162	54	489,017
30-34세	1,310	6,041,021	495	1,437,880	137	1,473,742
35-39세	3,187	15,112,962	1,383	4,782,651	193	2,501,565
40-44세	5,874	28,554,320	2,667	9,373,154	321	4,342,923
45-49세	9,179	44,751,188	4,457	16,257,446	402	5,826,800
50-54세	12,681	62,933,574	6,265	23,252,515	566	8,432,996
55-59세	17,843	88,920,711	8,878	33,620,804	717	10,774,542
60-64세	12,289	55,535,939	5,649	19,317,114	170	2,070,762
65-69세	8,052	36,460,274	3,735	13,468,563	1	9,479
70세 이상	7,330	33,542,151	3,392	12,649,956	-	2

주: 1)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 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음
2) 장애일시보상금의 7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없으나, 미 수령 수급액 지급에 의해 수급액이 발생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각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장애연금 급수별로 살펴보면, 1급 수급자는 11,657명, 2급 26,820 명, 3급 37,020명으로 등급이 낮아질수록 수급자 수가 증가함
-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는 격년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4년 기점으로 감소함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함.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에 따라 결정됨.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하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③ 산재보험 수급

〈표 10-1-3〉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단위: 명, 원)

구 분	수급자	금액
2005	55,781	922,185,208,280
2006	61,894	1,067,385,111,250
2007	67,227	1,170,646,840,950
2008	70,580	1,265,916,132,330
2009	74,584	1,291,083,501,960
2010	88,863	1,397,872,234,060
2011	91,906	1,509,244,845,760
2012	95,229	1,712,958,058,080
2013	93,524	1,629,026,710,510
2014	93,689	1,667,219,394,800
2015	93,953	1,710,783,723,310
남	83,964	1,604,338,897,950
여	9,989	106,444,825,360
1급	3,316	132,652,045,780
2급	4,028	131,084,767,210
3급	4,241	128,626,050,000
4급	2,636	71,063,652,660
5급	8,374	183,575,003,920
6급	14,882	283,922,867,030
7급	14,918	230,354,926,120
8급	1,205	49,458,362,180
9급	1,584	43,835,069,380
10급	3,123	81,335,191,070
11급	7,730	116,455,962,440
12급	8,836	122,969,602,210
13급	7,574	73,199,457,410
14급	12,447	62,250,765,900
20세미만	171	1,351,776,070
20-29세	2,175	23,166,221,490
30-39세	7,393	101,423,321,280
40-49세	18,076	331,997,693,760
50-59세	30,548	608,251,111,750
60-69세	22,745	433,708,872,040
70-79세	11,232	187,920,611,130
80-89세	1,570	22,359,364,900
90-99세	43	604,750,890

주: 1) 2015년 12월 말 기준
2) 장해등급은 지급일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음
3)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자료: 고용노동부(2016). 「2015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 2015년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급자 수는 93,953명이며, 수급액은 1,710,783,723,310원으로 나타남
  - 남성 수급자 수는 83,964명으로 여성 9,989명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장해등급은 7급이 14,918명으로 가장 많고 6급 14,882명, 14급 12,447명 순임
  - 산재보험 수급자의 연령은 50-59세가 30,548명으로 가장 많고 60-69세 22,745명, 40-49세 18,076명 순으로 나타남

산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임.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됨
  - 단, 장해 1~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함

④ 건강보험 가입

〈표 10-1-4〉 건강보험 가입현황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계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2005	100.0	44.8	40.4	9.7	4.8	0.3
2011	100.0	53.1	29.4	14.4	2.7	0.4
2014	100.0	53.6	30.6	14.3	1.3	0.2
남	100.0	52.5	32.1	13.8	1.4	0.2
여	100.0	55.1	28.6	14.9	1.2	0.1
중증(1-3급)	100.0	45.1	28.3	24.0	2.4	0.1
경증(4-6급)	100.0	59.3	31.4	8.6	0.7	0.1
지체	100.0	56.5	31.5	11.1	0.6	0.2
뇌병변	100.0	55.4	27.1	15.9	1.3	0.3
시각	100.0	54.6	32.5	11.0	2.0	-
청각	100.0	58.5	29.3	11.3	0.8	0.1
언어	100.0	59.3	27.6	13.1	-	-
지적	100.0	40.7	32.9	21.4	4.9	-
자폐성	100.0	51.8	39.5	8.7	-	-
정신	100.0	19.6	25.4	50.5	4.4	0.2
신장	100.0	48.5	35.1	16.1	-	0.3
심장	100.0	75.4	22.5	2.1	-	-
호흡기	100.0	48.0	26.2	24.4	1.3	-
간	100.0	56.4	26.8	3.3	13.5	-
안면	100.0	60.7	26.4	12.9	-	-
장루요루	100.0	64.5	19.3	16.2	-	-
뇌전증	100.0	26.3	15.0	55.6	3.1	-

주: 전체 계와 장애정도 계의 차이는 추정 수 차이에 의해 발생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2014년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84.2%로 2011년에 비해 1.7%p증가함. 반면, 의료급여(1종+2종)의 경우 2014년 15.6%로 2011년에 비해 1.5%p 감소함
  - 연금 종류별로는 직장건강보험의 가입률이 53.6%로 가장 높고, 지역건강보험 30.6%, 의료급여 1종 14.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의 가입률이 각각 3.5%p, 0.2%p 높고, 직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1종의 가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2.6%p, 1.1%p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의 가입률은 경증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1종+2종)의 경우 중증의 가입률이 높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은 심장장애가 75.4%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지역건강보험은 자폐성장애 39.5%, 의료급여 1종은 뇌전증 55.6%, 의료급여 2종은 간장애 13.5%로 각각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임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수(전체 수급자 비교)

(단위: 가구, 명, %, 백만원)

구분	전체수급자						장애인수급자
	총수급자		수급률	급여액			가구 (비율)
	가구	인원		계	국비	지방비	
2004	753,681	1,424,088	2.9	2,366,116	1,797,823	568,293	123,418 (16.38)
2005	809,745	1,513,352	3.1	2,818,411	2,139,727	678,684	136,892 (16.91)
2006	831,692	1,534,950	3.1	3,175,667	2,406,967	768,700	144,747 (17.40)
2007	852,420	1,549,848	3.1	3,437,763	2,599,698	838,065	154,066 (18.07)
2008	854,205	1,529,939	3.1	3,676,117	2,882,107	794,011	162,527 (19.03)
2009	882,925	1,568,533	3.2	3,923,031	3,082,479	840,552	171,330 (19.40)
2010	878,799	1,549,820	3.1	3,997,766	3,160,556	837,210	173,322 (19.72)
2011	850,689	1,469,254	2.9	4,017,270	3,200,277	816,992	173,751 (20.42)
2012	821,879	1,394,042	2.7	3,930,268	3,151,909	778,359	174,112 (21.18)
2013	810,544	1,350,891	2.6	4,088,384	3,275,973	812,411	175,867 (21.70)
2014	814,184	1,328,713	2.6	4,071,549	3,276,898	794,651	178,397 (21.91)
2015	1,106,056	1,646,363	3.2	3,409,522	2,770,603	638,919	191,723 (17.33)

주: 1) 전체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 주민등록인구 수) * 100
2) 비율 = (장애인 수급자 가구 수 / 총수급자 가구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646,36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3.9% 증가하였으나 총 급여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16.3% 감소한 3조 410억원임
• 2015년 장애인수급가구는 191,723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 대비 비율은 17.33%로 지난해 21.91%에 비해 감소함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 급여유형별

(단위: %)

구분	계	수급자			비수급자
		일반수급가구	조건부수급가구	의료,교육, 자활,특례	
2005	100.0	11.5	0.7	0.9	86.9
2011	100.0	16.2	0.7	–	83.0
2014	100.0	16.3	0.5	0.1	83.1
남	100.0	15.5	0.6	0.1	83.8
여	100.0	17.4	0.4	0.1	82.2
중증(1-3급)	100.0	26.4	0.9	0.2	72.4
경증(4-6급)	100.0	10.3	0.2	–	82.8
지체	100.0	12.9	0.1	–	86.9
뇌병변	100.0	17.1	0.5	0.3	82.1
시각	100.0	13.9	1.0	0.1	85.0
청각	100.0	12.0	0.4	0.2	87.4
언어	100.0	13.1	–	–	86.9
지적	100.0	27.1	0.8	0.2	71.9
자폐성	100.0	8.7	–	–	91.3
정신	100.0	54.5	1.8	–	43.7
신장	100.0	17.9	–	–	82.1
심장	100.0	2.1	–	–	97.9
호흡기	100.0	23.4	–	–	76.6
간	100.0	6.5	13.5	–	80.0
안면	100.0	12.9	–	–	87.1
장루요루	100.0	21.0	–	–	79.0
뇌전증	100.0	58.4	3.1	–	38.5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은 비수급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고 수급자 중에서는 일반수급가구의 비율이 16.3%로 가장 높음
-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1.6%p 높으며 장애정도별 수급률은 중증이 경증보다 10.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수급률은 뇌전증 61.5%로 가장 높고 정신장애 56.3%, 지적장애 28.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정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
- 생계급여(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임

(2) 장애인연금

① 장애인연금 수급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0	수급자 수	244,319	50,384	19,756	20,999	981	47,160	44,383	1,516
2011	수급자 수	293,122	57,455	24,569	27,439	1,288	54,510	60,717	2,116
2012	수급자 수	305,913	57,500	24,700	27,517	1,431	66,052	60,023	2,585
2013	수급자 수	305,394	56,339	24,614	27,465	1,534	69,406	58,142	3,165
2014	수급자 수	328,414	59,308	26,279	30,621	1,881	73,795	63,495	4,000
2015	수급자 수	342,444	59,661	26,935	32,380	2,156	78,755	65,542	4,953
2016	수급권자 수	512,314	105,236	38,485	52,187	3,375	102,239	100,636	8,845
	수급자 수	350,161	59,269	27,089	33,408	2,294	82,465	65,894	5,792
	수급률	68.3	56.3	70.4	64.0	68.0	80.7	65.5	65.5
남	수급권자 수	297,604	69,317	19,618	27,537	2,331	59,878	52,905	7,537
	수급자 수	192,661	35,959	12,944	16,472	1,572	47,250	32,045	4,934
	수급률	64.7	51.9	66.0	59.8	67.4	78.9	60.6	65.5
여	수급권자 수	214,710	35,919	18,867	24,650	1,044	42,361	47,731	1,308
	수급자 수	157,500	23,310	14,145	16,936	722	35,215	33,849	858
	수급률	73.4	64.9	75.0	68.7	69.2	83.1	70.9	65.6
1급	수급권자 수	177,025	33,501	31,069	6,059	141	42,739	48,784	5,529
	수급자 수	126,942	20,437	22,069	4,256	106	36,905	32,506	3,799
	수급률	71.7	61.0	71.0	70.2	75.2	86.3	66.6	68.7
2급	수급권자 수	315,288	65,216	6,649	43,850	2,030	56,107	49,042	3,310
	수급자 수	210,120	35,235	4,514	27,633	1,380	43,083	31,536	1,988
	수급률	66.6	54.0	67.9	63.0	68.0	76.8	64.3	60.1
3급 중복	수급권자 수	20,001	6,519	767	2,278	1,204	3,393	2,810	6
	수급자 수	13,005	3,586	503	1,514	804	2,477	1,828	5
	수급률	65.0	55.0	65.6	66.5	66.8	73.0	65.1	83.3
기타 수급자 수		94	11	3	5	4	–	24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수	134,432	27,755	9,723	9,765	752	33,661	17,799	670
	수급률	26.2	26.4	25.3	18.7	22.3	32.9	17.7	7.6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45,085	7,471	4,533	5,087	293	7,315	10,992	396
	수급률	8.8	7.1	11.8	9.7	8.7	7.2	10.9	4.5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	142,769	21,746	12,026	18,107	1,204	26,713	33,085	4,500
	수급률	27.9	20.7	31.2	34.7	35.7	26.1	32.9	50.9
시설수급자	수급자 수	27,875	2,297	807	449	45	14,776	4,018	226
	수급률	5.4	2.2	2.1	0.9	1.3	14.5	4.0	2.6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기타 수급자는 해당 월말 장애등급이 중증에서 경증장애로 하락되거나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3)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4) 소득별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소득별 수급률은(수급자 수(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 2016년 수급권자 수) * 100으로 구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현재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512,314명, 수급자는 350,161명으로 수급률은 68.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73.4%로 남성의 수급률 64.7%보다 높음
- 장애등급별 수급률은 1급이 71.7%로 가장 높고 2급 66.6%, 3급 중복 65.0% 순으로 장애등급이 낮아질수록 수급률이 감소함
- 소득분위별 수급률은 차상위초과계층 27.9%로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26.2%, 차상위계층 8.8% 순임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0	수급자 수	33,479	20,531	787	2,840	566	234	81	619	3
2011	수급자 수	33,907	24,615	743	3,456	490	250	84	570	913
2012	수급자 수	34,968	25,318	606	3,182	400	244	63	469	855
2013	수급자 수	32,971	26,527	531	3,006	356	241	56	404	637
2014	수급자 수	31,533	32,028	557	3,316	322	244	63	372	600
2015	수급자수	31,184	35,879	536	3,468	295	64	248	372	16
	수급권자 수	33,254	59,622	1,015	5,593	564	148	609	506	-
2016	수급자 수	30,853	38,074	512	3,514	255	68	261	397	16
	수급률	92.8	63.9	50.4	62.8	45.2	45.9	42.9	78.5	-
	수급권자 수	17,903	34,580	631	4,209	429	101	347	281	-
남	수급자 수	16,631	21,332	292	2,650	201	38	129	205	7
	수급률	92.9	61.7	46.3	63.0	46.9	37.6	37.2	73.0	-
	수급권자 수	15,351	25,042	384	1,384	135	47	262	225	-
여	수급자 수	14,222	16,742	220	864	54	30	132	192	9
	수급률	92.6	66.9	57.3	62.4	40.0	63.8	50.4	85.3	-
	수급권자 수	2,288	4,705	125	1,678	219	6	98	84	-
1급	수급자 수	2,041	3,481	65	1,071	81	3	52	70	-
	수급률	89.2	74.0	52.0	63.8	37.0	50.0	53.1	83.3	-
	수급권자 수	29,066	54,898	608	3,356	307	99	412	338	-
2급	수급자 수	27,161	34,560	291	2,104	150	45	173	267	-
	수급률	93.4	63.0	47.9	62.7	48.9	45.5	42.0	79.0	-
	수급권자 수	1,900	19	282	559	38	43	99	84	-
3급 중복	수급자 수	1,650	7	156	339	22	20	36	58	-
	수급률	86.8	36.8	55.3	60.6	57.9	46.5	36.4	69.0	-
기타 수급자 수		1	26	-	-	2	-	-	2	16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수급자 수	19,363	12,997	157	1,303	122	16	136	212	1
	수급률	58.2	21.8	15.5	23.3	21.6	10.8	22.3	41.9	0.0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2,649	5,722	80	428	31	11	34	43	-
	수급률	8.0	9.6	7.9	7.7	5.5	7.4	5.6	8.5	-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	3,714	19,255	269	1,767	102	41	91	137	12
	수급률	11.2	32.3	26.5	31.6	18.1	27.7	14.9	27.1	0.0
시설수급자	수급자 수	5,127	100	6	16	-	-	-	5	3
	수급률	15.4	0.2	0.6	0.3	-	-	-	1.0	0.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기타 수급자는 해당 월말 장애등급이 중증에서 경증장애로 하락되거나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3)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4) 소득별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소득별 수급률은(수급자 수(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 2016년 수급권자 수) * 100으로 구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유형별 수급률은 정신장애가 92.8%로 가장 높고 지적장애 80.7%, 뇌전증 78.5%, 시각장애 70.4%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임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세 이하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이면 예외로 인정함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임 3급에 대항하는 장애 외 장애가 하나 이상 추가되면 3급 중복장애(주된장애가 3급이며 그 외 부장애가 4-6급인 경우)임. 그러나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는 제외함
  - 급여액은 2016년 4월~2017년 3월 : 기초급여-최고(월) 204,010원(65세 이상은 기초급여는 미지급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8만원), 차상위계층(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월 2만원)을 지급함

(3) 장애수당

① 장애수당 수급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0	296,919	156,765	26,564	28,851	2,783	17,271	25,377	52
	(100.0)	(52.8)	(8.9)	(9.7)	(0.9)	(5.8)	(8.5)	(0.0)
2011	306,236	159,514	27,355	30,092	2,863	18,501	27,495	66
	(100.0)	(52.1)	(8.9)	(9.8)	(0.9)	(6.0)	(9.0)	(0.0)
2012	318,483	157,769	27,752	30,400	2,918	23,616	29,874	276
	(100.0)	(49.5)	(8.7)	(9.5)	(0.9)	(7.4)	(9.4)	(0.1)
2013	320,029	157,255	28,339	30,327	2,972	22,387	29,826	117
	(100.0)	(49.1)	(8.9)	(9.5)	(0.9)	(7.0)	(9.3)	(0.0)
2014	320,318	154,316	28,356	29,999	2,980	22,961	30,303	98
	(100.0)	(48.2)	(8.9)	(9.4)	(0.9)	(7.2)	(9.5)	(0.0)
2015	327,881	155,880	29,123	30,404	3,081	24,100	31,560	112
	(100.0)	(47.5)	(8.9)	(9.3)	(0.9)	(7.4)	(9.6)	(0.0)
2016	336,224	156,154	29,784	33,305	3,156	25,167	32,800	134
	(100.0)	(46.4)	(8.9)	(9.9)	(0.9)	(7.5)	(9.8)	(0.0)
남	167,725	73,605	14,747	14,005	2,099	13,857	19,859	119
	(100.0)	(43.9)	(8.8)	(8.3)	(1.3)	(8.3)	(11.8)	(0.1)
여	168,477	82,544	15,037	19,297	1,057	11,304	12,939	15
	(100.0)	(49.0)	(8.9)	(11.5)	(0.6)	(6.7)	(7.7)	(0.0)
1급	36	1	7	1	-	3	14	-
	(100.0)	(2.8)	(19.4)	(2.8)	-	(8.3)	(38.9)	-
2급	37	6	1	3	1	10	4	-
	(100.0)	(16.2)	(2.7)	(8.1)	(2.7)	(27.0)	(10.8)	-
3급 중복	48	5	1	3	2	17	12	-
	(100.0)	(10.4)	(2.1)	(6.3)	(4.2)	(35.4)	(25.0)	-
3급	127,782	30,657	2,707	6,944	1,525	25,131	13,309	134
	(100.0)	(24.0)	(2.1)	(5.4)	(1.2)	(19.7)	(10.4)	(0.1)
4급	69,994	43,197	3,203	10,630	1,627	-	7,475	-
	(100.0)	(61.7)	(4.6)	(15.2)	(2.3)	-	(10.7)	-
5급	71,088	45,497	4,003	10,926	1	-	6,211	-
	(100.0)	(64.0)	(5.6)	(15.4)	(0.0)	-	(8.7)	-
6급	67,217	36,786	19,862	4,795	-	-	5,773	-
	(100.0)	(54.7)	(29.5)	(7.1)	-	-	(8.6)	-
기초생활 수급자	223,744	99,385	18,353	18,415	2,350	19,979	21,651	93
	(100.0)	(44.4)	(8.2)	(8.2)	(1.1)	(8.9)	(9.7)	(0.0)
차상위 계층	99,952	53,595	10,855	13,757	729	3,387	9,702	40
	(100.0)	(53.6)	(10.9)	(13.8)	(0.7)	(3.4)	(9.7)	(0.0)
시설수급자	12,528	3,174	576	1,133	77	1,801	1,447	1
	(100.0)	(25.3)	(4.6)	(9.0)	(0.6)	(14.4)	(11.6)	(0.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성별, 장애등급별 계에서 '장애유형 미상' 21명 미포함
3)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임. 1급, 2급, 3급 중복자 중 수급을 받은 장애인은 201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경증에서 중증장애로 상향조정된 자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 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0	26,790	1,734	1,767	1,921	750	382	1,833	4,079	-
	(9.0)	(0.6)	(0.6)	(0.6)	(0.3)	(0.1)	(0.6)	(1.4)	-
2011	28,433	1,921	1,249	1,864	763	400	1,883	3,837	-
	(9.3)	(0.6)	(0.4)	(0.6)	(0.2)	(0.1)	(0.6)	(1.3)	-
2012	34,637	2,049	962	1,764	771	379	1,904	3,385	27
	(10.9)	(0.6)	(0.3)	(0.6)	(0.2)	(0.1)	(0.6)	(1.1)	(0.0)
2013	37,731	2,214	850	1,668	818	371	1,940	3,214	-
	(11.8)	(0.7)	(0.3)	(0.5)	(0.3)	(0.1)	(0.6)	(1.0)	-
2014	40,487	2,166	771	1,529	807	365	2,003	3,177	-
	(12.6)	(0.7)	(0.2)	(0.5)	(0.3)	(0.1)	(0.6)	(1.0)	-
2015	42,596	2,273	722	1,472	867	2,100	360	3,231	-
	(13.0)	(0.7)	(0.2)	(0.4)	(0.3)	(0.6)	(0.1)	(1.0)	-
2016	44,213	2,569	694	1,459	976	2,196	362	3,253	2
	(13.1)	(0.8)	(0.2)	(0.4)	(0.3)	(0.7)	(0.1)	(1.0)	(0.0)
남	22,860	1,402	393	1,020	678	1,147	171	1,763	-
	(13.6)	(0.8)	(0.2)	(0.6)	(0.4)	(0.7)	(0.1)	(1.1)	-
여	21,350	1,167	301	439	298	1049	191	1,489	-
	(12.7)	(0.7)	(0.2)	(0.3)	(0.2)	(0.6)	(0.1)	(0.9)	-
1급	-	10	-	-	-	-	-	-	-
	-	(27.8)	-	-	-	-	-	-	-
2급	3	7	-	1	-	-	1	-	-
	(8.1)	(18.9)	-	(2.7)	-	-	(2.7)	-	-
3급 중복	5	-	-	1	1	1	-	-	-
	(10.4)	-	-	(2.1)	(2.1)	(2.1)	-	-	-
3급	44,202	7	605	1,439	138	226	154	604	-
	(34.6)	(0.0)	(0.5)	(1.1)	(0.1)	(0.2)	(0.1)	(0.5)	-
4급	-	152	8	-	37	1,362	191	2,112	-
	-	(0.2)	(0.0)	-	(0.1)	(1.9)	(0.3)	(3.0)	-
5급	-	2,393	81	18	800	607	16	535	-
	-	(3.4)	(0.1)	(0.0)	(1.1)	(0.9)	(0.0)	(0.8)	-
6급	-	-	-	-	-	-	1	-	-
	-	-	-	-	-	-	(0.0)	-	-
기초생활 수급자	34,812	1,971	482	1,081	750	1,329	283	2,808	2
	(15.6)	(0.9)	(0.2)	(0.5)	(0.3)	(0.6)	(0.1)	(1.3)	(0.0)
차상위 계층	5,172	597	205	365	226	837	75	410	-
	(5.2)	(0.6)	(0.2)	(0.4)	(0.2)	(0.8)	(0.1)	(0.4)	-
시설수급자	4,229	1	7	13	-	30	4	35	-
	(33.8)	(0.0)	(0.1)	(0.1)	-	(0.2)	(0.0)	(0.3)	-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성별, 장애등급별 계에서 '장애유형 미상' 21명 미포함
3)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임. 1급, 2급, 3급 중복자 중 수급을 받은 장애인은 201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경증에서 중증장애로 상향조정된 자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336,22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수급률이 46.4%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 13.1%, 청각장애인 9.9% 순임
  -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 수가 168,477명으로 남성 수급자 167,725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3급 수급자 수가 127,782명으로 가장 많고 4급 69,994명, 5급 71,088명 순임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지체장애의 수급률이 각각 44.4%, 53.6%로 가장 높은 반면,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정신장애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
  - 가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해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정해짐.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임

② 장애아동수당 수급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0	18,938	1,621	684	888	340	10,310	2,945	1,578
	(100.0)	(8.6)	(3.6)	(4.7)	(1.8)	(54.4)	(15.6)	(8.3)
2011	19,457	1,469	690	903	334	10,932	3,005	1,655
	(100.0)	(7.5)	(3.5)	(4.6)	(1.7)	(56.2)	(15.4)	(8.5)
2012	18,631	1,251	607	849	315	10,747	2,812	1,649
	(100.0)	(6.7)	(3.3)	(4.6)	(1.7)	(57.7)	(15.1)	(8.9)
2013	21,777	1,240	655	886	323	13,105	3,373	1,819
	(100.0)	(5.7)	(3.0)	(4.1)	(1.5)	(60.2)	(15.5)	(8.4)
2014	21,121	1,026	619	773	307	13,130	3,189	1,754
	(100.0)	(4.9)	(2.9)	(3.7)	(1.5)	(62.2)	(15.1)	(8.3)
2015	20,464	835	542	727	320	12,975	2,989	1,782
	(100.0)	(4.1)	(2.6)	(3.6)	(1.6)	(63.4)	(14.6)	(8.7)
2016	19,934	729	494	700	346	12,833	2,741	1,798
	(100.0)	(3.7)	(2.5)	(3.5)	(1.7)	(64.4)	(13.8)	(9.0)
남	12,312	437	288	382	226	7,784	1,575	1,462
	(100.0)	(3.5)	(2.3)	(3.1)	(1.8)	(63.2)	(12.8)	(11.9)
여	7,621	292	206	318	120	5,049	1,166	336
	(100.0)	(3.8)	(2.7)	(4.2)	(1.6)	(66.3)	(15.3)	(4.4)
1급	6,287	201	194	180	4	2,873	1,926	883
	(100.0)	(3.2)	(3.1)	(2.9)	(0.1)	(45.7)	(30.6)	(14.0)
2급	5,924	83	27	277	20	4,414	280	766
	(100.0)	(1.4)	(0.5)	(4.7)	(0.3)	(74.5)	(4.7)	(12.9)
3급 중복	167	6	-	1	10	138	7	-
	(100.0)	(3.6)	-	(0.6)	(6.0)	(82.6)	(4.2)	-
3급	6,135	107	17	100	80	5,408	198	149
	(100.0)	(1.7)	(0.3)	(1.6)	(1.3)	(88.1)	(3.2)	(2.4)
4급	531	86	33	50	232	-	100	-
	(100.0)	(16.2)	(6.2)	(9.4)	(43.7)	-	(18.8)	-
5급	455	126	34	68	-	-	129	-
	(100.0)	(27.7)	(7.5)	(14.9)	-	-	(28.4)	-
6급	435	120	189	24	-	-	101	-
	(100.0)	(27.6)	(43.4)	(5.5)	-	-	(23.2)	-
기초생활 수급자	10,652	437	255	328	197	7,192	1,191	884
	(100.0)	(4.1)	(2.4)	(3.1)	(1.8)	(67.5)	(11.2)	(8.3)
차상위 계층	5,771	229	165	304	129	3,195	880	749
	(100.0)	(4.0)	(2.9)	(5.3)	(2.2)	(55.4)	(15.2)	(13.0)
시설수급자	3,511	63	74	68	20	2,446	670	165
	(100.0)	(1.8)	(2.1)	(1.9)	(0.6)	(69.7)	(19.1)	(4.7)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0년부터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16년 19,93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비율이 64.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가 증가하는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의 수급자 수가 12,312명으로 여성 수급자 7,621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1, 2, 3급의 경우 지적장애가 각각 45.1%, 71.9%, 8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급은 언어장애가 48.4%, 5급은 지체장애가 28.0%, 6급은 시각장애가 48.4%로 가장 높은 비율임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 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0	87	95	150	15	66	40	24	95	–
	(0.5)	(0.5)	(0.8)	(0.1)	(0.3)	(0.2)	(0.1)	(0.5)	–
2011	68	79	107	13	66	39	22	75	–
	(0.3)	(0.4)	(0.5)	(0.1)	(0.3)	(0.2)	(0.1)	(0.4)	–
2012	61	75	90	14	62	36	14	49	–
	(0.3)	(0.4)	(0.5)	(0.1)	(0.3)	(0.2)	(0.1)	(0.3)	–
2013	53	68	95	8	65	33	12	42	–
	(0.2)	(0.3)	(0.4)	(0.0)	(0.3)	(0.2)	(0.1)	(0.2)	–
2014	32	56	80	9	66	25	17	38	–
	(0.2)	(0.3)	(0.4)	(0.0)	(0.3)	(0.1)	(0.1)	(0.2)	–
2015	21	51	73	8	62	10	24	45	–
	(0.1)	(0.2)	(0.4)	(0.0)	(0.3)	(0.0)	(0.1)	(0.2)	–
2016	24	49	66	9	63	15	22	44	1
	(0.1)	(0.2)	(0.3)	(0.0)	(0.3)	(0.1)	(0.1)	(0.2)	(0.0)
남	8	33	42	7	23	5	14	26	–
	(0.1)	(0.3)	(0.3)	(0.1)	(0.2)	(0.0)	(0.1)	(0.2)	–
여	16	16	24	2	40	10	8	18	–
	(0.2)	(0.2)	(0.3)	(0.0)	(0.5)	(0.1)	(0.1)	(0.2)	–
1급	–	6	5	3	–	–	–	–	–
	–	(0.1)	(0.1)	(0.0)	–	–	–	–	–
2급	5	15	13	3	2	6	4	9	–
	(0.1)	(0.3)	(0.2)	(0.1)	(0.0)	(0.1)	(0.1)	(0.2)	–
3급 중복	–	–	4	–	–	–	1	–	–
	–	–	(2.4)	–	–	–	(0.6)	–	–
3급	19	–	39	2	–	1	8	7	–
	(0.3)	–	(0.6)	(0.0)	–	(0.0)	(0.1)	(0.1)	–
4급	–	–	–	–	–	8	7	15	–
	–	–	–	–	–	(1.5)	(1.3)	(2.8)	–
5급	–	28	5	1	61	–	2	1	–
	–	(6.2)	(1.1)	(0.2)	(13.4)	–	(0.4)	(0.2)	–
6급	–	–	–	–	–	–	–	–	1
	–	–	–	–	–	–	–	–	(1.0)
기초생활 수급자	18	30	31	5	34	11	15	23	1
	(0.2)	(0.3)	(0.3)	(0.0)	(0.3)	(0.1)	(0.1)	(0.2)	(0.0)
차상위 계층	6	18	34	4	28	4	6	20	–
	(0.1)	(0.3)	(0.6)	(0.1)	(0.5)	(0.1)	(0.1)	(0.3)	–
시설수급자	–	1	1	–	1	–	1	1	–
	–	(0.0)	(0.0)	–	(0.0)	–	(0.0)	(0.0)	–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모두에서 지적장애가 각각 67.5%, 55.4%,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에게 지원

(4) 정신질환 의료보장

① 만성 정신질환 급여

〈표 10-2-6〉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단위: 명, 일, 백만원)

구분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2006	1,852,458	35,471,637	147,359,332	1,328,246	1,114,468
2007	2,035,340	39,248,921	165,934,362	1,569,897	1,299,998
2008	2,098,927	42,709,802	180,075,209	1,991,178	1,599,179
2009	2,232,036	45,499,925	264,792,899	2,339,252	1,913,671
2010	2,345,642	48,704,589	289,496,830	2,658,294	2,179,126
2011	2,480,688	52,577,776	318,171,495	2,964,484	2,428,036
2012	2,640,366	57,388,812	351,814,052	3,267,902	2,666,329
2013	2,679,975	60,573,044	351,255,548	3,476,993	2,835,071
2014	2,741,609	63,965,263	404,192,088	3,848,742	3,122,054
2015	2,857,828	67,069,255	429,546,532	4,130,656	3,335,307
2016	3,039,137	71,005,336	467,315,609	4,511,888	3,625,008

주: 1) 만성질환 중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현황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 주요 만성질환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2) 연말 실거주지 기준임
3)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이며, 급여비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한 금액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 실인원은 2006년 1,852,458명에서 2016년 3,039,137명으로 내원일수는 2006년 35,471,637일에서 2015년 71,005,336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급여일수는 2006년 147,359,332일에서 2016년 467,315,609일로, 급여비는 2006년 1,114,468백만원에서 2015년 3,625,008백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진료비는 2013년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 1,328,246백만원에서 2016년 4,511,888백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② 정신질환 의료급여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진료건수	입 · 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관 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일당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2010		340,108	2,892,149	20,462,726	937,881,221	927,907,778	324,285	320,837	45,834	45,346	14,388	14,235
2011		351,427	2,862,985	21,226,595	995,154,335	985,786,593	347,593	344,321	46,882	46,441	15,132	14,989
2012	계	356,636	3,232,063	22,281,478	1,061,020,556	1,052,194,508	328,280	325,549	47,619	47,223	15,273	15,146
2013		353,289	3,302,454	22,903,389	1,106,842,965	1,098,006,186	335,158	332,482	48,327	47,941	15,300	15,178
2014		362,945	3,459,377	23,628,260	1,159,758,861	1,150,887,083	335,251	332,686	49,084	48,708	15,234	15,118
2015	계	381,137	3,616,648	24,264,510	1,198,994,952	1,189,894,900	331,521	329,005	49,414	49,038	15,077	14,962
	입원	101,136	810,893	21,328,295	1,017,630,874	1,013,360,052	1,254,951	1,249,684	47,713	47,512	45,920	45,728
	외래	314,723	2,642,958	2,773,418	165,296,993	160,532,169	62,542	60,740	59,600	57,882	3,147	3,057
	약국	40,884	162,797	162,797	16,067,086	16,002,678	98,694	98,298	98,694	98,298	3,315	3,302
1.치매 (F00–F03)	계	77,889	587,489	5,599,305	345,685,110	344,636,041	588,411	586,626	61,737	61,550	31,258	31,163
	입원	28,889	192,774	5,205,829	321,157,957	320,636,150	1,665,982	1,663,275	61,692	61,592	60,753	60,655
	외래	53,167	317,180	315,941	14,469,337	13,975,262	45,619	44,061	45,798	44,234	4,497	4,343
	약국	15,987	77,535	77,535	10,057,816	10,024,629	129,720	129,292	129,720	129,292	3,937	3,924
2.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 (F10)	계	30,599	249,054	3,592,149	157,968,002	156,238,081	634,272	627,326	43,976	43,494	27,857	27,552
	입원	20,517	150,023	3,488,366	151,640,391	150,161,231	1,010,781	1,000,921	43,470	43,046	40,651	40,254
	외래	18,232	97,786	102,538	6,236,321	5,986,107	63,775	61,216	60,820	58,379	3,267	3,136
	약국	421	1,245	1,245	91,291	90,743	73,326	72,886	73,326	72,886	2,885	2,868
3. 기타 정신 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1–F19)	계	1,554	4,747	14,426	1,069,481	1,047,034	225,296	220,568	74,136	72,580	12,254	11,997
	입원	421	771	10,323	777,758	765,302	1,008,765	992,610	75,342	74,136	64,405	63,374
	외래	1,059	3,683	3,810	270,600	260,725	73,473	70,792	71,024	68,432	4,020	3,873
	약국	174	293	293	21,123	21,007	72,093	71,696	72,093	71,696	2,679	2,664

주: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검사 등 포함)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 정신질환 의료급여 진료 실인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체로 증가 추이임
- 2015년 진료 실인원 수는 381,945명으로 2014년 362,945명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진료건수, 입 · 내원일수, 총 진료비, 기관부담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임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계속)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진료건수	입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관 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일당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4.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계	91,153	1,062,639	10,376,092	461,818,540	459,063,576	434,596	432,003	44,508	44,242	16,532	16,433
	입원	38,276	345,368	9,557,468	406,338,338	404,960,123	1,176,537	1,172,547	42,515	42,371	41,143	41,003
	외래	66,423	715,859	817,212	55,374,277	53,998,120	77,354	75,431	67,760	66,076	3,072	2,996
	약국	457	1,412	1,412	105,924	105,334	75,017	74,599	75,017	74,599	2,925	2,909
5. 기분 (정동성) 장애 (F30-F39)	계	99,831	842,882	1,924,491	98,634,025	96,773,128	117,020	114,812	51,252	50,285	5,366	5,265
	입원	9,644	47,245	1,114,475	48,147,283	47,770,687	1,019,098	1,011,127	43,202	42,864	39,620	39,310
	외래	94,194	782,568	796,947	49,707,224	48,227,915	63,518	61,628	62,372	60,516	2,946	2,858
	약국	4,238	13,069	13,069	779,518	774,526	59,646	59,264	59,646	59,264	2,661	2,644
6.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F40-F48)	계	65,862	357,357	465,359	23,473,312	22,876,589	65,686	64,016	50,441	49,159	3,834	3,736
	입원	1,926	5,477	112,539	5,227,270	5,187,026	954,404	947,056	46,449	46,091	41,086	40,770
	외래	62,998	327,676	328,616	17,292,979	16,745,319	52,775	51,103	52,624	50,957	3,116	3,017
	약국	8,382	24,204	24,204	953,062	944,244	39,376	39,012	39,376	39,012	2,138	2,119
7. 정신 발육지체 (F70-F79)	계	17,001	142,491	1,184,932	54,445,191	54,012,012	382,096	379,056	45,948	45,582	15,074	14,954
	입원	5,025	39,488	1,076,023	47,062,055	46,808,526	1,191,807	1,185,386	43,737	43,501	42,180	41,953
	외래	13,288	101,890	107,796	7,308,674	7,129,475	71,731	69,972	67,801	66,139	2,972	2,899
	약국	255	1,113	1,113	74,462	74,011	66,902	66,497	66,902	66,497	1,998	1,986
8.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F04-F09 ,F50-F69, F80-F99)	계	63,126	352,026	1,067,435	50,212,128	49,581,778	142,638	140,847	47,040	46,449	8,356	8,251
	입원	5,100	28,397	739,505	34,014,012	33,815,704	1,197,803	1,190,820	45,996	45,727	44,249	43,991
	외래	57,418	289,718	294,019	14,231,985	13,811,599	49,124	47,673	48,405	46,975	3,278	3,181
	약국	10,515	33,911	33,911	1,966,131	1,954,474	57,979	57,635	57,979	57,635	2,186	2,174
9. 뇌전증 (G40-G41)	계	3,793	17,963	40,321	5,689,163	5,666,660	316,716	315,463	141,097	140,539	8,764	8,729
	입원	519	1,350	23,767	3,265,809	3,255,303	2,419,118	2,411,336	137,409	136,967	113,106	112,742
	외래	1,134	6,598	6,539	405,596	397,647	61,473	60,268	62,027	60,812	5,109	5,008
	약국	2,646	10,015	10,015	2,017,759	2,013,710	201,474	201,069	201,474	201,069	3,730	3,723

주: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검사 등 포함)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 상병별 진료 실인원은 기분(정동성)장애가 99,8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91,153명, 치매 77,889명 순임
- 건당 진료비는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가 634,27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 588,411천원,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434,596천원 순으로 나타남

③ 정신보건 의료보장 이용

〈표 10-2-8〉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정신의료기관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2000		50,990 (100.0)	14,234 (27.9)	34,545 (67.7)		2,211 (4.3)
2001		53,711 (100.0)	16,057 (29.9)	31,433 (58.5)	3,656 (6.8)	2,565 (5.8)
2002		61,066 (100.0)	15,658 (25.6)	39,781 (65.1)	2,750 (4.5)	2,877 (4.7)
2003		64,083 (100.0)	16,391 (25.8)	41,507 (64.4)	3,349 (5.3)	2,836 (4.5)
2004		65,339 (100.0)	16,324 (25.0)	43,311 (66.3)	3,092 (4.7)	2,612 (4.0)
2005		67,895 (100.0)	15,744 (23.2)	45,508 (67.0)	3,970 (5.9)	2,673 (3.9)
2006		70,967 (100.0)	16,980 (23.9)	47,262 (66.6)	4,685 (6.6)	2,040 (2.9)
2007		70,516 (100.0)	17,814 (25.3)	45,797 (64.9)	4,573 (6.5)	2,332 (3.3)
2008		72,214 (100.0)	18,603 (25.8)	46,431 (64.3)	4,965 (6.9)	2,215 (3.1)
2009		74,919 (100.0)	21,752 (29.0)	47,963 (64.0)	3,120 (4.2)	2,084 (2.8)
2010		75,282 (100.0)	23,740 (31.5)	46,126 (61.3)	3,149 (4.2)	2,267 (3.0)
2011		78,637 (100.0)	25,784 (32.8)	48,323 (61.5)	2,627 (3.3)	1,903 (2.4)
2012		80,569 (100.0)	27,286 (33.9)	48,897 (60.7)	2,321 (2.9)	2,065 (2.6)
2013		80,462 (100.0)	27,117 (33.7)	49,141 (61.1)	2,227 (2.8)	1,977 (2.5)
2014		81,625 (100.0)	27,212 (33.3)	50,222 (61.5)	2,206 (2.7)	1,985 (2.4)
2015		81,105 (100.0)	25,896 (31.9)	50,385 (62.1)	2,760 (3.4)	2,064 (2.5)
정신의료기관	소계	70,628 (100.0)	24,549 (34.8)	41,406 (58.6)	2,620 (3.7)	2,053 (2.9)
	국립정신병원	2,273 (100.0)	498 (21.9)	552 (24.3)	40 (1.8)	1,183 (52.0)
	공립정신병원	3,351 (100.0)	885 (26.4)	2,341 (69.9)	96 (2.9)	29 (0.9)
	사립정신병원	38,202 (100.0)	12,926 (33.8)	23,199 (60.7)	1,546 (4.0)	531 (1.4)
	종합병원정신과	4,292 (100.0)	1,906 (44.4)	2,136 (49.8)	120 (2.8)	130 (3.0)
	병원정신과	18,426 (100.0)	6,355 (34.5)	11,221 (60.9)	690 (3.7)	160 (0.9)
	정신과의원	4,084 (100.0)	1,979 (48.5)	1,957 (47.9)	128 (3.1)	20 (0.5)
정신요양시설		10,477 (100.0)	1,347 (12.9)	8,979 (85.7)	140 (1.3)	11 (0.1)
노숙인 시설		3,408 (100.0)	–	3,408 (100.0)	–	–

주: 1) 2010년부터 추계에서 노숙인 시설 제외
2) 기타에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2017)「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정신보건시설 입원 · 입소자는 2000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정신보건시설 입원 · 입소자 중 의료급여(1종+2종) 수급자가 62.3%로 건강보험 가입자 34.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정신의료기관별 입원 · 입소자 수는 사립정신병원이 38,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과 공립정신병원은 5,624명으로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사회서비스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① 예산 및 실적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단위: 억원, 명, 만원, 시간)

구분	예산	지원 규모(이용자)	월평균 급여량	월 평균 지원시간
2007	296	14,515	33.2	46
2008	750	19,498	44.8	56
2009	1,124	27,818	57.6	72
2010	1,348	29,409	57.6	72
2011	1,928	33,667	57.6	83
2012	3,098	38,266	93.9	83
2013	3,829	48,335	93.9	110
2014	4,285	53,870	103.3	120
2015	4,679	64,523	108.8	123
2016	5,008	71,636	110.9	123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예산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16년 5,008억원으로, 지원 규모는 2007년 14,515명에서 2016년 71,63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월평균 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 2016년 110.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월 평균 지원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3시간임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7년 1월 기준)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 ,2, 3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2015.6월 3급으로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함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함
  -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인 경우에 선정함,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함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정조사결과(기본조사+생활환경 조사+욕구 조사)에 따른 인정점수에 의하여,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결정됨(기본급여:1~4등급,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1인/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일시부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출산가구, 자립준비 등임)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

② 수급자 수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1		46,502	10,606	8,383	297	8	12,798	8,775	4,621
2012		50,520	11,097	9,143	322	5	14,396	9,157	5,344
2013		60,435	11,648	9,439	361	52	19,651	9,874	7,430
2014		64,906	11,831	9,716	379	70	21,979	10,205	8,428
2015		72,212	12,344	10,199	404	141	25,603	11,120	9,574
2016		79,926	12,823	10,685	438	197	29,645	11,979	10,789
		(100.0)	(16.0)	(13.4)	(0.5)	(0.2)	(37.1)	(15.0)	(13.5)
남		49,277	7,869	6,205	245	121	17,208	7,039	8,988
		(61.7)	(16.0)	(12.6)	(0.5)	(0.2)	(34.9)	(14.3)	(18.2)
여		30,649	4,954	4,480	193	76	12,437	4,940	1,801
		(38.3)	(16.2)	(14.6)	(0.6)	(0.2)	(40.6)	(16.1)	(5.9)
장애등급	1급	55,191	10,843	10,154	315	9	16,639	9,547	6,698
		(69.1)	(19.6)	(18.4)	(0.6)	(0.0)	(30.1)	(17.3)	(12.1)
	2급	20,330	1,609	333	109	100	10,617	1,723	3,897
		(25.4)	(7.9)	(1.6)	(0.5)	(0.5)	(52.2)	(8.5)	(19.2)
	3급	4,405	371	198	14	88	2,389	709	194
		(5.5)	(8.4)	(4.5)	(0.3)	(2.0)	(54.2)	(16.1)	(4.4)
활동지원 등급	1등급	26,582	6,461	2,336	41	19	6,693	8,259	2,588
		(33.3)	(24.3)	(8.8)	(0.2)	(0.1)	(25.2)	(31.1)	(9.7)
	2등급	25,671	2,737	6,012	116	42	9,594	1,931	4,797
		(32.1)	(10.7)	(23.4)	(0.5)	(0.2)	(37.4)	(7.5)	(18.7)
	3등급	18,013	2,390	1,990	131	62	8,497	1138	2,771
		(22.5)	(13.3)	(11.0)	(0.7)	(0.3)	(47.2)	(6.3)	(15.4)
	4등급	9,660	1,235	347	150	74	4,861	651	633
		(12.1)	(12.8)	(3.6)	(1.6)	(0.8)	(50.3)	(6.7)	(6.6)
기초생활수급자		24,474	5,913	3,748	155	63	7,981	3,828	850
		(30.6)	(24.2)	(15.3)	(0.6)	(0.3)	(32.6)	(15.6)	(3.5)
차상위계층		8,209	1,202	911	62	21	3,272	1,545	836
		(10.3)	(14.6)	(11.1)	(0.8)	(0.3)	(39.9)	(18.8)	(10.2)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16,670	2,035	2,359	82	31	6,778	2,178	2,826
		(20.9)	(12.2)	(14.2)	(0.5)	(0.2)	(40.7)	(13.1)	(17.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5,598	1,934	2,156	65	51	6,001	2,256	2,745
		(19.5)	(12.4)	(13.8)	(0.4)	(0.3)	(38.5)	(14.5)	(17.6)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8,592	949	852	39	20	3,354	1,243	1,959
		(10.7)	(11.0)	(9.9)	(0.5)	(0.2)	(39.0)	(14.5)	(22.8)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		6,383	790	659	35	11	2,259	929	1,573
		(8.0)	(12.4)	(10.3)	(0.5)	(0.2)	(35.4)	(14.6)	(24.6)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11년 46,502명에서 2016년 79,92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29,6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2,823명, 뇌병변장애 10,789명 순임
  - 성별로는 남성이 49,277명으로 여성 30,649명보다 많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장애유형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2011		266	436	17	264	24	7	-	47
2012		253	455	18	253	19	8	-	50
2013		641	971	29	225	24	9	1	80
2014		740	1,191	27	215	23	9	1	92
2015		1,034	1,347	35	251	23	9	6	122
2016		1,383	1,477	39	280	24	10	5	152
		(1.7)	(1.8)	(0.0)	(0.4)	(0.0)	(0.0)	(0.0)	(0.2)
남		626	723	26	128	17	4	2	76
		(1.3)	(1.5)	(0.1)	(0.3)	(0.0)	(0.0)	(0.0)	(0.2)
여		757	754	13	152	7	6	3	76
		(2.5)	(2.5)	(0.0)	(0.5)	(0.0)	(0.0)	(0.0)	(0.2)
장애등급	1급	145	547	15	189	13	9	-	68
		(0.3)	(1.0)	(0.0)	(0.3)	(0.0)	(0.0)	-	(0.1)
	2급	866	928	15	63	6	1	2	61
		(4.3)	(4.6)	(0.1)	(0.3)	(0.0)	(0.0)	(0.0)	(0.3)
	3급	372	2	9	28	5	-	3	23
		(8.4)	(0.0)	(0.2)	(0.6)	(0.1)	-	(0.1)	(0.5)
활동지원등급	1등급	39	73	4	37	3	1	-	28
		(0.1)	(0.3)	(0.0)	(0.1)	(0.0)	(0.0)	-	(0.1)
	2등급	171	181	10	40	4	3	1	32
		(0.7)	(0.7)	(0.0)	(0.2)	(0.0)	(0.0)	(0.0)	(0.1)
	3등급	433	454	7	88	8	2	1	41
		(2.4)	(2.5)	(0.0)	(0.5)	(0.0)	(0.0)	(0.0)	(0.2)
	4등급	740	769	18	115	9	4	3	51
		(7.7)	(8.0)	(0.2)	(1.2)	(0.1)	(0.0)	(0.0)	(0.5)
기초생활수급자		990	727	20	131	10	9	-	49
		(4.0)	(3.0)	(0.1)	(0.5)	(0.0)	(0.0)	-	(0.2)
차상위계층		122	179	3	31	6	1	1	17
		(1.5)	(2.2)	(0.0)	(0.4)	(0.1)	(0.0)	(0.0)	(0.2)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98	193	6	44	2	-	1	37
		(0.6)	(1.2)	(0.0)	(0.3)	(0.0)	-	(0.0)	(0.2)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90	221	5	47	4	-	-	23
		(0.6)	(1.4)	(0.0)	(0.3)	(0.0)	-	-	(0.1)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47	90	4	22	-	-	-	13
		(0.5)	(1.0)	(0.0)	(0.3)	-	-	-	(0.2)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초과		36	67	1	5	2	-	3	13
		(0.6)	(1.0)	(0.0)	(0.1)	(0.0)	-	(0.0)	(0.2)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1급 장애가 55,191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69.1%를 차지하며, 활동지원등급에서도 1등급이 26,582명으로 가장 많음
-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자가 24,4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가 16,67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령별

(단위: 명)

구분		전체	6-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2011		46,549	907	11,450	8,000	5,771	6,907	8,307	3,226	1,981
2012		50,520	2,659	12,956	8,222	6,171	7,449	8,584	3,417	1,062
2013		60,435	4,084	16,614	10,074	6,834	8,194	9,694	3,660	1,281
2014		64,906	4,519	17,668	11,639	7,026	8,496	10,064	3,877	1,617
2015		72,212	5,399	18,790	13,619	7,648	9,176	10,983	4,596	2,001
2016		79,926	4,912	19,966	16,408	8,556	9,464	12,045	5,474	3,101
		(100.0)	(6.1)	(25.0)	(20.5)	(10.7)	(11.8)	(15.1)	(6.8)	(3.9)
남		49,277	3,383	13,226	10,583	5,095	5,455	6,889	3,031	1,615
		(61.7)	(6.9)	(26.8)	(21.5)	(10.3)	(11.1)	(14.0)	(6.2)	(3.3)
여		30,649	1,529	6,740	5,825	3,461	4,009	5,156	2,443	1,486
		(38.3)	(5.0)	(22.0)	(19.0)	(11.3)	(13.1)	(16.8)	(8.0)	(4.8)
장애등급	1급	55,191	1,762	12,097	11,902	6,655	7,283	8,899	3,930	2,663
		(69.1)	(3.2)	(21.9)	(21.6)	(12.1)	(13.2)	(16.1)	(7.1)	(4.8)
	2급	20,330	2,285	6,574	4,269	1,662	1,672	2,355	1153	360
		(25.4)	(11.2)	(32.3)	(21.0)	(8.2)	(8.2)	(11.6)	(5.7)	(1.8)
	3급	4,405	865	1295	237	239	509	791	391	78
		(5.5)	(19.6)	(29.4)	(5.4)	(5.4)	(11.6)	(18.0)	(8.9)	(1.8)
활동지원 등급	1등급	26,582	1,169	6,740	5,669	3,389	3,551	3,670	1,593	801
		(33.3)	(4.4)	(25.4)	(21.3)	(12.7)	(13.4)	(13.8)	(6.0)	(3.0)
	2등급	25,671	1,550	6,366	5,477	2,634	2,755	3,841	1,737	1311
		(32.1)	(6.0)	(24.8)	(21.3)	(10.3)	(10.7)	(15.0)	(6.8)	(5.1)
	3등급	18,013	1,452	4,657	3,650	1,729	1,953	2,643	1,233	696
		(22.5)	(8.1)	(25.9)	(20.3)	(9.6)	(10.8)	(14.7)	(6.8)	(3.9)
	4등급	9,660	741	2,203	1,612	804	1,205	1,891	911	293
		(12.1)	(7.7)	(22.8)	(16.7)	(8.3)	(12.5)	(19.6)	(9.4)	(3.0)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79,92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10-19세가 19,966명(25.0%), 20-29세가 16,408명(20.5%), 50-59세가 12,045명(15.1%)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등급별

(단위: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총계		79,926	12,823	10,685	438	197	29,645	11,979	10,789	1,383	1,477	39	280	24	10	5	152
1등급	소계	26,582	6,461	2,336	41	19	6,693	8,259	2,588	39	73	4	37	3	1	–	28
	440–	1,950	64	60	4	1	712	1,084	21	2	1	–	1	–	–	–	–
	430–	3,369	741	31	2	2	302	2,269	17	2	–	–	–	–	–	–	3
	420–	3,175	1,600	31	–	2	308	1,199	25	3	1	–	4	–	–	–	2
	410–	1,976	867	42	2	2	362	644	44	3	5	–	3	–	–	–	2
	400–	2,553	654	143	5	1	666	883	173	5	10	1	6	–	–	–	6
	390–	3,148	582	264	8	5	1,107	698	459	9	8	–	5	1	–	–	2
	380–	10,411	1,953	1,765	20	6	3,236	1,482	1,849	15	48	3	18	2	1		13
2등급	소계	25,671	2,737	6,012	116	42	9,594	1,931	4,797	171	181	10	40	4	3	1	32
	370–	1,074	118	134	6	2	464	144	197	4	4	–	1	–	–	–	–
	360–	2,138	200	302	9	4	937	222	441	12	8	–	1	–	–	1	1
	350–	3,580	247	718	7	6	1,539	224	803	17	7	1	6	–	–	–	5
	340–	5,913	363	1,278	12	7	2,443	291	1,455	28	20	1	8	1	1	–	5
	330–	5,059	508	1,474	25	10	1,784	409	753	51	30	4	3	–	–	–	8
	320–	7,907	1,301	2,106	57	13	2,427	641	1,148	59	112	4	21	3	2	–	13
3등급	소계	18,013	2,390	1,990	131	62	8,497	1,138	2,771	433	454	7	88	8	2	1	41
	310–	1,670	87	249	8	3	861	72	355	19	12	–	3	–	–	–	1
	300–	2,443	164	336	14	5	1,241	116	487	54	19	–	5	–	–	–	2
	290–	2,665	235	354	18	13	1288	155	503	43	38	1	13	2	–	–	2
	280–	3,113	323	382	15	12	1,538	231	481	71	51	–	3	2	–	–	4
	270–	3,153	481	326	28	13	1,432	204	438	97	97	2	19	2	2	1	11
	260–	4,969	1,100	343	48	16	2,137	360	507	149	237	4	45	2	–	–	21
4등급	소계	9,660	1,235	347	150	74	4,861	651	633	740	769	18	115	9	4	3	51
	250–	1,157	82	62	13	14	716	82	104	62	16	–	4	–	–	–	2
	240–	1,805	193	66	17	10	1,036	100	184	123	59	1	11	–	–	–	5
	230–	2,098	266	85	28	21	1,066	173	132	166	126	2	19	1	2	1	10
	220–	4,600	694	134	92	29	2,043	296	213	389	568	15	81	8	2	2	34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활동지원등급 심사를 받은 장애인 중 1등급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 380-389점을 받은 장애인 수가 10,411명으로 가장 많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 지체 장애가 각각 29,645명, 12,823명으로 가장 많음
  - 활동지원등급별로는 1등급에서는 뇌병변장애가 8,259명으로 가장 많고, 2, 3, 4등급은 지적장애가 각각 9,594명, 8,497명, 4,86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③ 인정조사 실시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실시현황

구분	계		적합		부적합		재조사		각하	
2011	11,721	(100.0)	11,164	(95.2)	283	(2.4)	45	(0.4)	229	(2.0)
2012	18,021	(100.0)	17,344	(96.2)	389	(2.2)	57	(0.3)	231	(1.3)
2013	34,970	(100.0)	32,477	(92.9)	2,167	(6.2)	92	(0.3)	234	(0.7)
2014	45,097	(100.0)	41,864	(92.8)	2,886	(6.4)	110	(0.2)	237	(0.5)
2015	60,227	(100.0)	53,597	(89.0)	6,240	(10.4)	148	(0.2)	242	(0.4)
2016	74,425	(100.0)	65,106	(87.5)	8,903	(12.0)	170	(0.2)	246	(0.3)
서울	11,973	(100.0)	10,653	(89.0)	1,243	(10.4)	40	(0.3)	37	(0.3)
부산	5,102	(100.0)	4,492	(88.0)	590	(11.6)	3	(0.1)	17	(0.3)
대구	3,435	(100.0)	2,956	(86.1)	460	(13.4)	11	(0.3)	8	(0.2)
인천	4,195	(100.0)	3,773	(89.9)	407	(9.7)	9	(0.2)	6	(0.1)
광주	2,749	(100.0)	2,317	(84.3)	412	(15.0)	4	(0.1)	16	(0.6)
대전	2,846	(100.0)	2,521	(88.6)	312	(11.0)	3	(0.1)	10	(0.4)
울산	1,240	(100.0)	1,096	(88.4)	133	(10.7)	6	(0.5)	5	(0.4)
세종	280	(100.0)	248	(88.6)	32	(11.4)	–	–	–	–
경기	16,567	(100.0)	14,708	(88.8)	1,761	(10.6)	47	(0.3)	51	(0.3)
강원	2,293	(100.0)	2,086	(91.0)	191	(8.3)	12	(0.5)	4	(0.2)
충북	2,468	(100.0)	2,157	(87.4)	304	(12.3)	3	(0.1)	4	(0.2)
충남	3,435	(100.0)	3,069	(89.3)	348	(10.1)	1	(0.0)	17	(0.5)
전북	3,119	(100.0)	2,563	(82.2)	522	(16.7)	14	(0.4)	20	(0.6)
전남	3,343	(100.0)	2,873	(85.9)	441	(13.2)	6	(0.2)	23	(0.7)
경북	3,828	(100.0)	3,386	(88.5)	424	(11.1)	7	(0.2)	11	(0.3)
경남	6,537	(100.0)	5,289	(80.9)	1,231	(18.8)	4	(0.1)	13	(0.2)
제주	1,015	(100.0)	919	(90.5)	92	(9.1)	–	–	4	(0.4)

주: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신규신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연도별 자료는 누적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말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를 받은 장애인은 74,425명이며, 적합판정을 받은 비율은 87.5%,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12.0%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6,56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1,97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분포 때문으로 예측됨
- 각 지역별 적합 판정률을 살펴보면, 강원이 91.0%로 가장 높은 판정률을 보였으며, 제주 90.5%, 인천 89.9% 순임
- 반면, 광주, 전북, 경남은 적합 판정률이 각각 84.3%, 82.2%, 80.9%로 다른 지역이 85% 이상의 적합 판정률을 보이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④ 기본급여 이용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소계	일반	심야	공휴	소계	차량 내	가정 내	소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2011	636,801	607,145		29,656	1,067	636	431	345	43	79	223
2012	616,905	589,922	26,983	29,804	2,127	1,519	608	422	42	165	215
2013	1,014,725	984,494	30,231	85,260	4,510	3,289	1,221	787	107	307	373
2014	1,175,466	1,136,746	38,720	85,434	5,426	3,965	1,461	853	64	356	433
2015	1,341,188	1,292,820	48,368	103,886	6,440	4,839	1,601	958	113	324	521
2016	1,594,834	1,442,438	54,023	98,373	6,827	5,299	1,533	816	–	–	–
-1시간 30분미만	80,861	78,500	1,137	1,224	6,811	5,290	1,526	801	–	–	–
1시간30분 이상 -2시간30분미만	158,773	151,820	2,848	4,105	11	5	6	13	–	–	–
2시간30분 이상 -3시간30분미만	171,110	163,387	2,553	5,170	1	1	–	–	–	–	–
3시간30분 이상 -4시간30분미만	249,728	235,170	3,748	10,810	2	2	–	–	–	–	–
4시간30분 이상 -6시간30분미만	465,701	431,670	12,409	21,622	1	1	–	1	–	–	–
6시간30분 이상 -8시간30분미만	468,661	381,891	31,328	55,442	1	–	1	1	–	–	–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방문목욕 소계는 중복제거 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 중 활동보조의 이용건수는 2016년 1,594,83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다른 급여 내용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방문목욕 이용건수는 6,8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방문간호는 81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장애인활동보조급여 중 일반은 4시간 30분-6시간 30분의 이용건수가 431,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6시간 30분 이상도 381,891건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활동보조급여의 심야 및 공휴일 이용건수는 6시간 30분-8시간 30분이 가장 높게 나타남

⑤ 추가급여 이용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인			취약			출산 가구	자립 지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생활
			최중증	1등급	2등급 이하	최중증	1등급	2등급 이하						
2011		15,852	1,392	4,023	–	625	–	–	40	28	8,583	1,161	–	–
2012		22,642	1,570	4,758	–	151	1,275	–	59	47	12,926	1,856	–	–
2013		34,424	1,787	1,571	4,485	711	705	2,248	41	25	18,755	3,317	74	705
2014		39,081	1,958	1,669	4,738	904	894	2,832	41	40	20,576	4,176	76	1,177
2015		45,816	2,214	1,832	5,764	1,036	989	3,432	46	66	23,302	5,445	115	1,575
2016		54,169	2,441	1,971	7,185	1,287	1,194	4,615	24	50	26,289	6,975	91	2,047
장애 등급	1급	37,373	2,371	1,871	4,857	1,257	1127	3,042	17	31	15,431	5,333	68	1,968
	2급	13,691	65	96	1,762	29	63	1,229	4	17	8,896	1,446	16	68
	3급	3,105	5	4	566	1	4	344	3	2	1,962	196	7	11
활동 지원 등급	1등급	18,762	2,441	1,971	–	1,287	1194	–	5	23	8,478	1,279	37	2,047
	2등급	17,155	–	–	3,333	–	–	2,174	10	14	8,532	3,068	24	–
	3등급	11,833	–	–	2,177	–	–	1,505	6	7	6,341	1,778	19	–
	4등급	6,419	–	–	1,675	–	–	936	3	6	2,938	850	11	–
기초생활수급자		17,421	1,671	1,342	5,008	842	751	2,969	10	46	3,855	669	49	209
차상위계층		5,642	273	177	601	168	116	418	2	1	3,097	560	6	223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10,289	166	123	330	120	150	610	1	1	5,698	2,534	14	542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0,644	156	172	689	79	105	365	6	2	6,765	1,788	12	505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5,845	88	74	305	39	39	138	5	–	4,034	789	6	328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		4,328	87	83	252	39	33	115	–	–	2,840	635	4	24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보호자 일시부재와 가족의 직업생활은 2013년에 추가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 이용건수는 2011년 15,852건에서 2016년 54,1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함
• 추가급여 유형별로 보면, 학교생활이 26,289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⑥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긴급지원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계	계	처	남편	부	모	자	제	형수	매부	제부	사뉴이	기타
2011	1	7		1		4							1
2012	33	27		10		5	2						10
2013	50	47	15	1	2	3	3	–	–	1	–	–	20
2014	97	67	25	1	1	2	1	1	4	1	1	1	29
2015	166	68	20	–	2	2	1	1	1	3	1	1	36
2016	258	90	7	–	–	–	1	–	1	–	–	–	81
1급	163	69	6	–	–	–	1	–	1	–	–	–	61
2급	72	15	1	–	–	–	–	–	–	–	–	–	14
3급	23	6	–	–	–	–	–	–	–	–	–	–	6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기타'는 행복e음 시스템 상 관계코드 없이 입력 된 자료임
3)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상황과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안내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긴급지원이용은 2011년 1명에서 2015년 258명으로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는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특수한 경우 일부 허용되고 있는데, 처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이 7명으로 가장 많음

⑦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계	미사용	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1인 평균 생성액	1인 평균 이용액
전체	65,368	696	674	1,456	24,217	38,325	1,109,771	1,107,490
1등급	23,368	137	240	592	12,295	10,104	1,605,039	1,590,412
2등급	21,420	177	194	384	5,485	15,180	972,427	980,779
3등급	13,817	174	151	295	4,642	8,555	756,714	759,723
4등급	6,724	196	84	182	1,787	4,475	553,068	550,240
긴급활동지원	39	12	5	3	8	11	852,000	627,346
기초생활수급자	21,090	444	274	589	7,428	12,355	1,243,899	1,227,729
차상위계층	6,709	41	84	164	2,463	3,957	1,128,739	1,128,292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13,535	81	101	236	5,138	7,979	1,033,107	1,037,998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2,320	69	99	231	4,673	7,248	1,022,755	1,029,015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6,682	29	63	133	2,621	3,836	1,026,632	1,031,095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	4,993	20	48	100	1,886	2,939	1,053,543	1,059,666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인 평균 생성액은 1,109,771원으로 1인 평균 이용액인 1,107,490원으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긴급활동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1인 평균 생성액이 이용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⑧ 본인부담금 수준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전체	면제	2만원	2-4 만원	4-6 만원	6-8 만원	8-10 만원	10-12 만원	12만원 이상	1인 평균 부담액
2011	40,894	13,856	4,250	4,778	8,102	6,025	3,776	58	49	24,851
2012	50,212	15,751	5,663	6,257	10,127	7,200	5,059	88	67	25,597
2013	60,524	28,738	5,430	2,334	4,875	7,220	10,045	1,147	675	34,887
2014	64,419	28,634	6,005	2,666	5,949	8,239	10,637	1,461	828	36,870
2015	71,707	21,811	7,858	4,315	9,407	11,275	9,918	5,784	1,339	46,731
2016	79,233	24,292	8,121	3,866	10,882	13,006	6,640	10,544	1,882	47,459
기초생활수급자	24,254	24,253	1	–	–	–	–	–	–	–
차상위계층	8,116	–	8,113	3	–	–	–	–	–	20,001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16,498	–	5	3,186	7,697	5,238	97	238	37	53,184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5,483	–	2	677	2,422	6,457	4,760	795	370	78,787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8,481	–	–	–	763	796	1,180	5,093	649	97,577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	6,362	–	–	–	–	515	603	4,418	826	105,811
긴급활동지원	39	39	–	–	–	–	–	–	–	–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실 납부액 기준으로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연도별 보장급여액이 커질수록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인 평균 부담액은 47,459원임
• 면제를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으로 6-8만원 부담하는 경우가 13,006건으로 가장 많았고, 4-6만원 10,882건, 10-12만원 10,544건 순임

⑨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단위: 개소)

구분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활동	전체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관	기타사회복지시설	기타	
2011	931	592	214	125	–	590	117	137	83	114	25	35	43	36	39
2012	959	614	223	122	–	614	128	140	87	110	32	32	47	38	41
2013	1,039	689	229	121	–	689	138	148	110	106	30	45	54	56	41
2014	1,057	723	224	110	–	723	157	143	114	108	47	31	59	64	42
2015	1,083	751	227	105	–	751	164	143	120	104	49	33	59	79	42
2016	945	756	143	33	13	756	130	125	158	80	20	23	4	216	53
서울	153	134	15	4	3	134	10	27	53	9	2	2	–	31	9
부산	68	64	2	2	1	64	13	8	10	8	1	7	1	16	3
대구	35	32	3	–	–	31	9	6	3	5	–	1	–	7	3
인천	46	35	9	2	–	35	5	5	6	6	3	1	–	9	2
광주	29	26	3	–	1	26	8	1	10	–	1	–	–	6	2
대전	21	21	–	–	2	22	7	2	5	3	–	–	–	5	2
울산	10	7	1	2	–	7	2	–	1	–	–	–	–	4	2
세종	7	5	1	1	–	5	1	–	1	–	1	–	–	2	1
경기	152	121	22	9	–	121	9	22	32	7	1	3	3	44	8
강원	45	30	13	2	–	30	2	6	3	5	2	1	–	11	2
충북	36	29	5	2	–	29	6	11	5	–	–	–	–	7	2
충남	50	41	8	1	2	41	9	9	4	7	–	–	–	12	3
전북	51	35	15	1	1	35	8	4	5	4	2	1	–	11	3
전남	75	55	17	3	–	55	13	6	5	5	5	3	–	18	3
경북	58	47	10	1	–	47	9	12	–	9	1	1	–	15	5
경남	87	69	17	1	3	69	18	4	13	12	1	3	–	18	2
제주	9	5	2	2	–	5	1	2	2	–	–	–	–	–	1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활동보조인 등록인원은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인원을 의미하며, 계약해지자는 제외됨
3) 활동인원은 당월 결제 내역이 있는 인원을 의미함
4) 시도별로 활동지원인력이 중복 등록되어 시도별 합과 전체 등록인이 불일치 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활동지원기관은 945개소, 활동보조기관은 756개소,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53개소임
-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보조지원기관이 756개소로 가장 많은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지원기관의 경우 각각 143개, 33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함
- 활동보조기관의 경우 IL센터가 158개소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단체 130개소, 장애인복지관 125개소 순임. IL센터와 기타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나머지 기관은 감소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기관은 각각 서울, 경기, 경남 순으로 많았고,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경우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⑩ 활동보조인 현황

〈표 10-3-12〉 활동보조인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 근무시간 및 월 평균 보수

(단위: 명, 시간, 원)

구분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보수
2011	31,234	23,653	–	–
2012	42,467	28,003	112	756,795
2013	67,823	40,448	130	941,499
2014	56,531	46,812	128	916,323
2015	61,366	52,761	125	936,221
2016	64,145	58,102	135	1,267,490
남	7,362	6,537	135	1,292,564
여	56,783	51,565	135	1,264,777
20대 미만	73	61	89	898,800
20대	1,585	1,346	110	1,074,522
30대	4,118	3,685	126	1,198,570
40대	17,887	16,401	132	1,244,273
50대	27,811	25,273	139	1,304,706
60대	11,748	10,506	135	1,272,649
70대 이상	923	830	127	1,198,426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2011년 월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보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활동보조인의 활동인원은 58,102명으로 매해 증가 추세이며, 월 평균 근무시간과 월 평균 보수는 각각 135시간, 1,267,49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활동보조 활동인원이 51,565명으로 남성 6,5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
- 연령별 활동인원은 40-50대가 전체의 약 70% 이상으로 나타남

(2) 대상별 지원서비스

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실적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0	42,779	801	3,070	28,313
2011	48,111	996	4,166	35,119
2012	56,111	1,178	4,647	39,486
2013	63,811	1,520	5,166	46,979
2014	62,911	1,570	5,526	50,769
2015	65,192	1,646	5,025	51,609
2016	70,019	1,791	5,358	52,200
2월		1,825	5,347	51,260 (68,875)
3월		1,832	5,424	51,754 (68,877)
4월		1,830	5,452	52,301 (68,090)
5월		1,833	5,780	52,725 (68,549)
6월		1,836	5,878	53,053 (68,661)
7월	–	1,840	5,608	53,285 (69,102)
8월		1,843	5,826	52,728 (68,340)
9월		1,841	5,850	52,733 (68,085)
10월		1,841	5,728	52,508 (67,967)
11월		1,838	5,679	52,494 (67,692)
12월		1,791	5,358	52,200 (67,455)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2) 월별추진실적은 2016년 각 월
3) 이용자 수에 ( )안 수치는 바우처 생성자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2010년 42,779백만원에서 2016년 70,019백만원으로, 제공기관은 2010년 801개소에서 2016년 1,791개소로, 이용자는 2010년 28,313명에서 2016년 52,2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공인력은 2016년 5,35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②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0	603	80	-	196
2011	2,412	517	64	1,083
2012	2,412	500	102	1,087
2013	1,930	503	249	924
2014	624	585	123	313
2015	1,930	636	145	398
2016	507	655	152	421
2월		665	136	406 (875)
3월		666	149	411 (897)
4월		667	149	419 (884)
5월		661	153	427 (883)
6월		661	163	435 (892)
7월	-	660	162	419 (882)
8월		658	154	427 (884)
9월		659	169	426 (890)
10월		660	168	431 (894)
11월		659	159	422 (894)
12월		655	152	421 (885)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2) 월별추진실적은 2016년 각 월
3) 이용자 수에 ( )안 수치는 바우처 생성자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공기관은 2010년 80개소에서 2016년 655개소로 꾸준히 증가함
  - 예산은 2016년 50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제공인력과 이용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함

언어발달지원사업

-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자녀를 지원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③ 양육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돌보미		이용자	
			등록	활동	계획	실 인원
2010	1,570	16	509	282	688	714
2011	4,038	17	1,372	994	2,500	3,149
2012	4,038	17	1,485	1,335	2,500	3,259
2013	4,663	18	1,647	1,443	3,000	3,684
2014	7,091	18	1,962	1,836	3,000	3,012
2015	8,043	18	2,205	2,073	3,300	3,331
2016	8,206	18	2,137	2,022	3,300	3,318

주: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④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6〉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제공 내용						
		학비		고등학생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8	1,266		1,001	927	–	406	393	993
2009	1,150		1,012	939	–	434	437	999
2010	1,021		897	921	–	400	414	937
2011	919		919	950	–	422	432	1,015
2012	919	179	779	774	258	470	466	868
2013	1,009	127	593	649	367	476	441	790
2014	747	108	409	491	394	448	400	650
2015	600	51	246	346	360	393	326	481
2016	24	–	–	18	24	32	23	32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은 2017년 종료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교육부로 이전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2010년 1,570백만원에서 2016년 8,206백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의 수는 2010년 282명에서 2015년 2,022명으로, 이용 실 인원은 2010년 714명에서 2015년 3,318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
-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은 2017년 종료사업이며, 2016년은 장애인지원관리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4백만원이 편성됨. 기존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은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교육부)에서 제공함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자녀와 장애인 본인의 교육비를 지원함
  - 초,중,고등학생인 1-3급인 장애인과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함
  - 가구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제외하고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함

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실적

〈표 10-3-17〉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사업실적	
			프로그램 수	연 인원
2006	200	2	54	2,635
2007	400	8	95	23,223
2008	400	10	118	40,600
2009	640	16	230	61,786
2010	640	16	300	70,000
2011	640	28	340	63,682
2012	640	30	336	62,542
2013	576	31	307	50,024
2014	893	31	383	50,187
2015	612	35	296	45,782
2016	1,596	48	419	55,196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예산	결산	집행건수
2012	876	388	579
2013	876	391	587
2014	639	410	610
2015	1,426	779	1,160
2016	1,124	850	1,271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2016년 예산, 제공기관, 사업실적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의 2016년 예산은 1,12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결산액과 집행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경우에 지원함

⑦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표 10-3-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양성인원	심판청구 건수	활동인원
2013	646	211	868	27	15
2014	1,158	504	714	290	127
2015	1,023	704	924	177	182
2016	1,501	776	815	116	211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2013년 9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0-3-20〉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결산	제공기관	이용인원
2013	1,279	108	60	367
2014	1,608	360	247	682
2015	1,608	332	162	858
2016	900	335	137	661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2016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1,501백만원, 776백만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양성인원과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활동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의 2016년 예산은 90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제공기관과 이용인원 또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음
  * 단,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경우
  * 발달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대상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 제외 대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표 10-3-2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이용인원
2012	100	100	238
2013	200	195	653
2014	300	297	6,656
2015	300	294	6,562
2016	300	297	8,80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0-3-2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총 인원	발달장애인	가족	도우미
2015	500	386	4,712	1,567	2,261	884
2016	1,000	905	9,028	2,816	4,592	1,62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2015년 8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201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38명이 처음으로 이용하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8,800명이 이용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2016년 예산은 1,00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하였고, 이용한 발달장애인 · 가족 수와 도우미 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함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양육스트레스 경감 및 양육방법을 코칭하며, 진행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경남으로,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 받을 수 있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장애아동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보미를 파견해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아동 가족 대상의 상담, 모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동과 거주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액 적용)이 지원대상이 됨

(3) 복지시설

① 장애인 거주시설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397	26,912	23,243	38	2,697	2,230	14	1,096	760	11	792	519	172	10,733	9,539
2010	452	28,571	24,395	40	2,640	2,055	14	1,092	744	10	732	462	196	11,463	10,178
2011	490	29,419	25,345	39	2,594	2,102	15	1,122	787	9	552	361	226	12,161	10,788
2012	1,348	35,545	30,640	40	2,563	2,057	16	1,151	786	8	519	335	278	13,366	11,748
2013	1,397	35,813	31,152	39	2,468	1,978	16	1,151	770	8	482	320	293	13,422	12,001
2014	1,457	35,860	31,406	44	2,627	2,208	15	991	632	7	373	270	309	13,562	12,136
2015	1,484	35,746	31,222	39	1,933	1,668	16	970	628	7	373	255	321	13,971	12,369
2016	1,505	35,232	30,980	40	2,178	1766	17	1010	711	7	373	228	317	13,450	12,112
서울	284	4,657	3,971	3	180	158	3	142	123	1	62	34	18	929	806
부산	70	1,677	1,428	3	158	129	1	95	25	–	–	–	13	785	691
대구	49	1,616	1,473	3	383	335	–	–	–	–	–	–	6	427	398
인천	72	1,392	1,095	2	154	72	1	70	54	1	50	20	7	264	208
광주	72	1,238	985	5	236	128	2	109	45	–	–	–	15	494	456
대전	69	1,328	1,188	1	70	63	1	70	59	–	–	–	8	421	392
울산	24	708	645	–	–	–	–	–	–	1	55	34	1	60	60
세종	4	176	163	–	–	–	–	–	–	–	–	–	3	106	102
경기	311	7,097	6,334	8	190	163	4	124	100	2	96	68	81	2,866	2,587
강원	67	1,664	1,518	1	29	24	1	80	77	–	–	–	17	650	600
충북	81	2,258	1,982	3	120	101	2	170	95	1	85	56	20	926	823
충남	60	2,049	1,833	–	–	–	–	–	–	–	–	–	19	1,112	1000
전북	74	2,034	1,781	4	168	136	1	50	46	–	–	–	34	1,211	1,102
전남	52	1,500	1,282	2	127	127	1	100	87	1	25	16	24	858	730
경북	88	3,052	2,747	3	209	189	–	–	–	–	–	–	29	1,302	1,173
경남	96	2,147	1,952	2	154	141	–	–	–	–	–	–	15	782	741
제주	32	639	603	–	–	–	–	–	–	–	–	–	7	257	243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12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505개소로 나타남. 이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었기 때문임
• 연도별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수를 살펴보면, 최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계속)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153	11,042	9,728	9	552	467	–	–	–	–	–	–
2010	182	12,052	10,364	10	592	491	–	–	–	–	–	–
2011	191	12,404	10,798	10	586	509	–	–	–	–	–	–
2012	201	12,536	11,006	10	592	510	128	1,683	1,438	667	3,140	2,760
2013	216	12,904	11,412	9	528	473	131	1,724	1,432	685	3,134	2,766
2014	223	12,802	11,344	9	539	466	137	1,766	1,495	713	3,200	2,855
2015	233	12,762	11,314	10	622	541	141	1,783	1,548	717	3,332	2,899
2016	233	12,514	11,192	9	522	452	146	1,902	1,616	736	3,283	2,903
서울	23	1,980	1,588	2	95	93	40	445	442	194	824	727
부산	7	341	321	2	91	76	2	30	30	42	177	156
대구	8	546	500	1	96	91	2	26	23	29	138	126
인천	12	580	505	1	50	39	5	56	47	43	168	150
광주	3	169	152	–	–	–	3	47	43	44	183	161
대전	10	420	387	–	–	–	17	211	168	32	136	119
울산	8	475	446	–	–	–	5	82	72	9	36	33
세종	1	70	61	–	–	–	–	–	–	–	–	–
경기	51	2,769	2,515	1	100	94	25	296	233	139	656	574
강원	15	702	632	–	–	–	6	70	66	27	133	119
충북	11	748	710	–	–	–	3	45	37	41	164	160
충남	16	706	690	–	–	–	7	113	62	18	118	81
전북	11	433	352	1	50	39	2	20	20	21	102	86
전남	7	292	249	–	–	–	3	35	25	14	63	48
경북	30	1,318	1,188	–	–	–	10	148	135	16	75	62
경남	14	705	649	1	40	20	12	224	164	52	242	237
제주	6	260	247	–	–	–	4	54	49	15	68	64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각 지역별 전체 시설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11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이 284개소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736개소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 거주시설 317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33개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46개소 순임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표 10-3-2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 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2009	1,573	9,058	185	4,969	395	1,252	27	298	154	811	162	590	24	105	4	23
2010	1,708	10,004	191	5,372	443	1,472	27	312	154	870	176	684	23	103	2	11
2011	1,834	10,803	199	5,825	485	1,624	27	327	156	875	180	700	27	106	4	10
2012	1,140	9,741	205	5,856	526	1,715	28	374	156	895	191	771	30	117	4	13
2013	1,184	10,437	219	6,271	558	1,958	29	334	155	946	199	830	23	92	1	6
2014	1,213	10,716	223	6,359	592	2,111	29	369	156	944	193	835	19	92	1	6
2015	1,248	11,037	224	6,423	625	2,291	30	388	156	959	193	877	19	93	1	6
2016	1,303	11,914	231	6,920	663	2,534	34	421	159	979	194	897	20	103	2	60
서울	200	2,711	46	1,735	117	391	7	168	1	211	26	143	2	9	1	54
부산	77	734	14	488	55	165	1	22	1	19	5	29	1	11	–	–
대구	55	378	6	182	41	127	2	25	1	17	4	21	1	6	–	–
인천	48	475	10	306	34	129	1	3	1	18	1	15	1	4	–	–
광주	38	348	7	192	28	116	1	5	1	16	1	19	–	–	–	–
대전	57	457	7	255	40	129	3	28	1	12	5	29	1	4	–	–
울산	41	279	4	106	32	103	2	44	1	16	1	6	1	4	–	–
세종	4	35	1	20	1	5	–	–	1	5	1	5	–	–	–	–
경기	216	2,274	32	1,257	113	606	4	42	31	185	31	155	5	29	–	–
강원	64	434	10	218	16	67	–	–	19	72	18	75	1	2	–	–
충북	50	443	12	252	15	68	1	20	11	51	10	44	1	8	–	–
충남	57	557	14	365	12	45	1	3	15	83	15	61	–	–	–	–
전북	76	525	12	270	29	102	3	13	15	69	15	65	2	6	–	–
전남	78	586	18	364	25	90	2	6	15	58	17	64	1	4	–	–
경북	114	725	20	389	40	155	4	16	24	73	24	80	1	6	1	6
경남	102	614	13	297	47	155	2	26	20	61	19	70	1	5	–	–
제주	26	339	5	224	18	81	–	–	1	13	1	16	1	5	–	–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3)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명칭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5.8.3., 일부개정)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수와 종사자수는 2012년 부터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이 231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2개소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전체 216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0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구가 주로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 체육관의 경우는 각 시도별로 그 수가 다른 시설들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세종, 강원, 충남과 제주에는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광주, 세종, 충남지역은 1개소도 없었으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서울,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시설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표 10-3-2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시설 수	종사자수
2009	18	868
2010	18	921
2011	17	889
2012	18	–
2013	18	946
2014	18	892
2015	18	1,076
2016	20	1,279
서울	7	598
부산	1	7
대구	1	9
인천	2	148
광주	–	–
대전	2	221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1	111
충북	1	15
충남	1	6
전북	–	–
전남	–	–
경북	1	37
경남	2	105
제주	1	22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2012년 종사자 수는 미 조사됨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2015년까지 18개소(2011년 제외)를 유지하다가, 2016년 20개로 증가하고 종사자수 또한 약 200명 가량 증가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지역은 의료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0-3-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시설 수	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종사자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정원	현원
2010	417	11,770	44	1,761	373	10,009	2,395	2,052
2011	456	12,870	53	2,190	403	10,680	2,504	2,260
2012	478	13,758	56	2,384	422	11,374	2,763	2,488
2013	511	14,739	64	2,653	447	12,086	3,187	2,820
2014	541	15,651	64	2,721	477	12,930	3,553	3,160
2015	560	16,414	64	2,798	496	13,616	3,590	3,133
2016	582	17,131	63	2,762	516	14,335	4,115	3,256
서울	124	4,081	12	689	111	3,372	800	680
부산	32	944	2	64	30	880	188	157
대구	39	1047	6	219	33	828	226	166
인천	28	854	4	188	24	666	218	158
광주	22	677	4	157	18	520	191	133
대전	19	543	3	137	15	406	161	126
울산	14	289	1	31	13	258	75	54
세종	3	77	–	–	3	77	15	14
경기	98	2,960	13	540	84	2,406	830	675
강원	33	778	4	141	29	637	210	158
충북	21	760	1	80	20	680	155	156
충남	18	587	–	–	18	587	142	113
전북	19	504	2	64	17	440	125	99
전남	17	402	1	30	16	372	111	66
경북	38	1,136	2	106	36	1030	278	201
경남	48	1,142	5	166	43	976	278	206
제주	9	350	3	150	6	200	112	88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종사자는 근로장애인을 관리 감독하는 비장애인 직원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2010년 417개소에서 2016년 582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종사자 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에 비하여 보호작업장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82개소 중 124개소가 서울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대비 근로장애인 수를 비교하여 보면 약 1:5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⑤ 정신보건기관

〈표 10-3-27〉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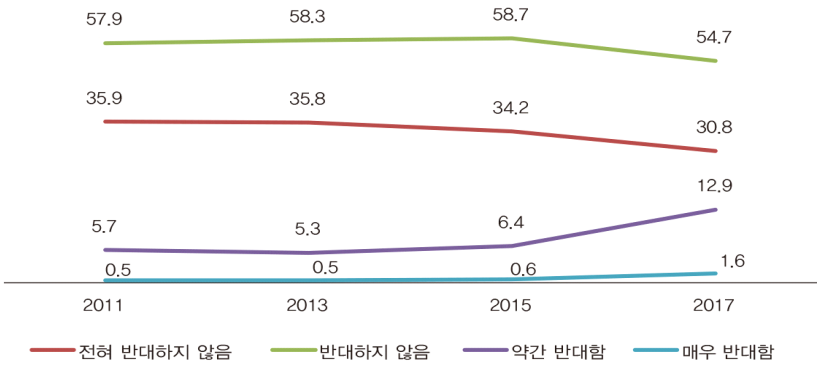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
합계				2,015	2,069	2,144	–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 소계			1,717	1,769	1,841	4.1
	의료기관	병원	국립정신병원	6	6	6	–
			공립정신병원	12	12	12	–
			사립정신병원	169	174	174	–
			종합병원정신과	181	186	185	△0.5
			병원정신과	133	129	134	3.9
		의원	정신과의원	853	895	938	4.8
		의료기관 소계		1,354	1,402	1,449	3.4
	정신요양시설			59	59	59	–
	사회복귀시설			304	308	333	–
지역사회재활기관	지역사회재활기관 소계			298	300	303	1.0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1	12	15	25.0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89	200	209	4.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50	50	–
	기본형정신건강증진사업			48	38	29	△23.7

주: 1) 2015년부터 국고미지원 시설을 포함하였기에 증감율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2)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2017)「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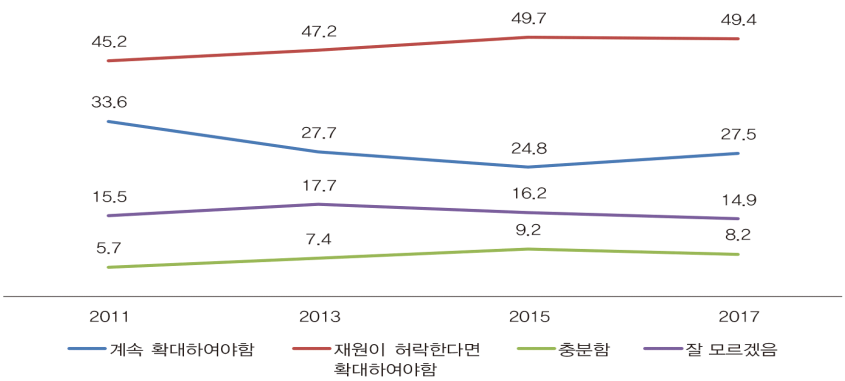
–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재활기관은 2,144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의료기관이 1,449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정신과의원이 938개소로 가장 많음
- 지역사회재활기관에서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9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11. 인권보호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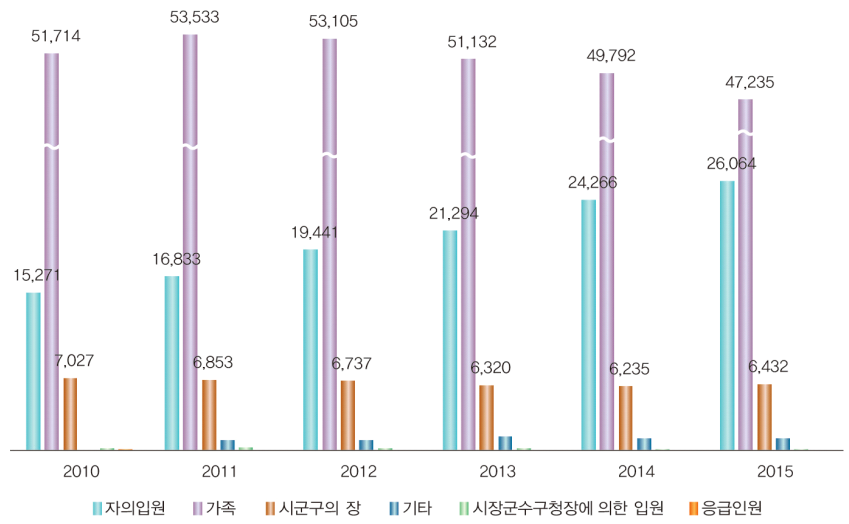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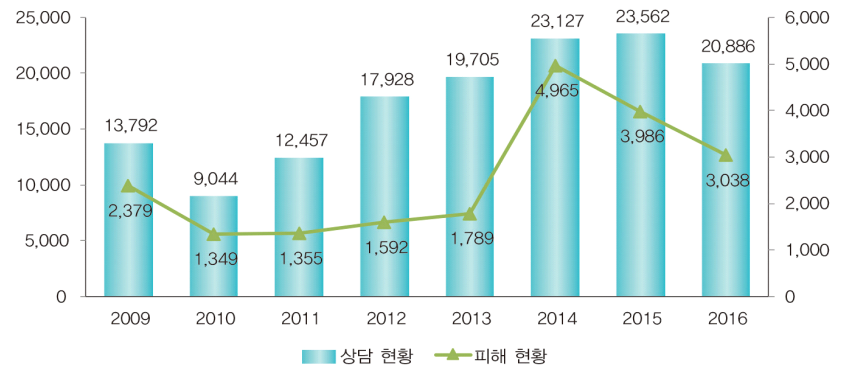


-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5%가 반대하지 않는 것(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14.5%로 이전 년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이 49.9%로 가장 많이 나타남

[그림 2-11-3] 정신보건시설 입원 유형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정신보건시설입원 현황은 2015년 전체 81,105명으로 가족에 의한 입원이 58.2%이고, 자의에 의한 입원이 32.1%로 2001년 6.7%에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소폭 감소함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03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음

1) 사회적 차별

(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입학,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7.1	13.4	26.6	13.3	24.4	5.0	38.8	29.8
	초등학교	38.8	31.8	34.2	27.0	39.0	45.0	53.6	36.0
	중학교	31.6	25.7	25.8	15.9	30.0	33.7	48.6	30.2
	고등학교	25.1	18.2	21.6	12.7	21.0	8.1	42.6	25.9
	대학교	12.5	9.5	9.8	9.4	11.6	25.9	27.1	4.5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18.7	9.8	30.4	9.7	12.1	28.6	32.0	24.4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38.3	44.0	32.1	45.6	59.7	65.0	52.6
	학부모로부터	13.7	7.8	23.8	7.8	6.9	16.4	25.5	20.1
결혼		16.4	12.5	20.6	16.3	16.4	32.9	48.9	-
취업		35.8	29.3	58.0	34.7	42.7	45.7	47.7	66.7
직장 생활	소득(임금)	23.9	19.8	38.9	19.6	29.2	26.3	41.4	41.7
	동료와의 관계	20.0	14.5	28.2	16.5	33.6	30.5	37.3	25.3
	승진	13.3	9.7	26.5	12.2	15.2	15.1	25.3	16.4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10.2	7.4	11.0	20.4	8.6	30.8	28.7	-
보험제도 상(계약 시)		45.4	41.0	55.6	37.0	40.1	56.0	67.7	76.6
의료기관 이용 시		4.6	2.9	7.8	4.6	4.6	2.5	9.6	7.0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9	0.7	1.9	2.6	7.8	1.4	1.4	-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7.3	4.3	12.2	6.1	8.8	4.1	18.6	23.9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보험제도 계약 시' 45.4%,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38.8%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인은 보험제도 상(계약 시)과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이 각각 41.0%, 38.3%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뇌병변장애인은 취업과 보험제도 상(계약 시)에서의 차별이 각각 58.0%, 55.6%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시각장애인 또한 취업과 보험제도 상(계약 시)에서 각각 34.7%, 37.0%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청각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 45.6%, 취업 42.7%, 보험제도 상(계약 시) 40.1%로 여러 분야에서 높은 차별을 경험하였고, 언어장애인도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 59.7%, 보험제도 상(계약 시) 56.0%, 취업 45.7%, 초등학교 입학·전학 45.0%로 전 영역에 걸쳐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지적·자폐성·지적장애인 또한 전 영역에 걸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결혼과 직장생활 중 소득의 비율이 각각 48.9%, 41.4%(지적장애인), 51.8%, 56.8%(정신장애인)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입학,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0.2	-	20.6	-	-	36.9	-	15.8
	초등학교	38.3	-	20.6	39.0	-	52.7	-	37.0
	중학교	42.1	-	20.6	41.3	-	49.2	-	16.6
	고등학교	40.5	-	20.6	32.6	-	49.2	-	14.2
	대학교	19.8	-	-	41.6	52.8	-	-	33.9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30.5	17.2	9.3	-	-	-	-	20.5
	또래학생으로부터	58.2	26.5	9.3	15.6	-	73.5	-	54.0
	학부모로부터	10.2	-	-	-	-	-	-	26.5
결혼		51.8	18.4	12.9	1.4	22.0	-	8.9	18.3
취업		69.8	42.4	75.0	32.8	39.3	63.1	31.3	37.5
직장 생활	소득(임금)	56.8	18.3	40.8	22.0	21.9	26.7	36.0	29.8
	동료와의 관계	64.7	11.4	31.5	14.2	-	36.5	15.6	29.8
	승진	48.6	6.8	14.7	14.2	-	36.5	-	26.6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26.1	5.1	-	15.0	-	-	-	100.0
보험제도 상(계약 시)		59.4	66.2	68.0	40.3	63.8	59.7	43.9	66.4
의료기관 이용 시		9.0	4.0	-	4.5	3.8	29.2	5.0	-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2.6	-	-	4.7	-	-	3.7	-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13.2	2.0	9.9	7.7	-	34.2	8.5	5.5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신장장애인은 보험제도 상(계약 시) 59.4%, 취업 42.4%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심장장애인 또한 취업 75.0%, 보험제도 상(계약 시) 68.0%, 직장생활 중 소득 40.8%로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장애인은 보험제도 상(계약 시) 40.3%, 취업 32.8% 그리고 입학·전학 전 영역에 있어서 차별 비율이 높음
- 간장애인은 보험제도 상(계약 시) 63.8%, 취업 39.3%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안면장애인은 전 영역에 있어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역사회생활에서 경험한 차별 경험 비율이 34.2%로 높게 나타남
- 장루·요루장애인은 보험제도 상(계약 시) 43.9%, 직장생활 중 소득 36.0%, 취업 31.3%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뇌전증장애인은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100.0%, 보험제도 상(계약 시) 66.4%,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차별 54.0%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입학,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7.1	23.6	33.5	36.9	27.2	3.2	11.7	33.6	9.7	27.1
	초등학교	38.8	35.9	43.5	47.0	40.1	38.5	27.3	44.4	28.1	38.4
	중학교	31.6	30.0	34.4	33.0	35.3	28.2	21.2	39.0	19.0	31.3
	고등학교	25.1	26.6	22.2	21.7	28.8	20.5	16.1	32.2	13.0	24.4
	대학교	12.5	12.6	12.3	-	12.6	13.1	9.6	19.7	5.2	11.9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18.7	17.6	20.6	21.7	23.0	16.3	7.8	23.9	8.5	18.0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43.3	53.6	48.8	50.0	46.1	38.1	54.4	33.9	46.4
	학부모로부터	13.7	13.4	14.3	22.0	14.6	11.8	8.4	19.2	4.2	13.4
결혼		16.4	15.2	18.3	-	27.7	19.6	9.8	28.8	9.8	16.2
취업		35.8	37.1	32.8	-	42.3	38.9	24.5	52.9	27.1	35.4
직장 생활	소득(임금)	23.9	24.6	21.9	-	24.6	26.5	19.0	38.2	17.8	23.7
	동료와의 관계	20.0	20.4	19.1	-	24.6	20.7	14.6	35.2	12.9	19.6
	승진	13.3	14.6	10.0	-	16.4	14.3	8.4	25.8	7.6	13.2
운전면허제도상(취득 시)		10.2	10.2	10.1	-	10.0	10.6	9.1	19.2	6.7	10.0
보험제도상(계약 시)		45.4	44.4	47.2	71.3	57.6	46.3	31.4	60.8	36.8	45.7
의료기관 이용 시		4.6	4.7	4.3	8.2	5.6	5.2	3.4	8.5	2.2	4.6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9	1.8	2.0	1.5	1.8	2.2	1.7	2.7	1.4	1.9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7.3	7.6	6.8	15.9	10.9	7.8	4.9	14.7	2.6	7.3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특히 보험제도 상(계약 시)의 경우, 17세 이하의 차별 경험 비율이 71.3%이고, 65세 이상은 31.4%로 다른 영역에 비해 연령별 비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취업과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의 경우 중증이 경증에 비해 25.8%p, 23.9%p 정도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항상 느낀다	8.7	5.8	11.1	7.9	10.5	27.7	18.1	29.5	18.7	5.1	1.1	4.9	7.8	25.9	10.0	19.4
	가끔 느낀다	31.2	27.3	35.2	30.6	39.7	40.8	40.5	31.6	38.6	24.4	23.3	26.1	27.0	72.4	17.2	39.1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38.4	38.4	34.9	36.5	25.8	24.5	17.0	28.5	36.2	30.3	46.6	40.6	-	47.1	34.3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28.6	15.4	26.5	13.3	5.7	16.9	21.9	14.2	34.3	45.3	22.5	24.5	1.7	25.7	7.2
2014	항상 느낀다	6.2	3.7	10.1	6.0	6.0	5.3	16.1	10.1	12.8	3.3	8.3	3.4	4.8	-	5.8	4.3
	가끔 느낀다	31.6	23.0	40.0	32.6	40.3	43.3	52.9	67.6	50.3	20.4	29.1	38.3	23.3	66.1	34.6	43.8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6.8	37.8	41.2	40.5	39.4	24.5	15.3	26.4	48.1	51.2	27.6	36.7	31.8	42.9	31.2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6.4	12.0	20.2	13.2	12.1	6.4	6.9	10.5	28.2	11.4	30.8	35.2	2.1	16.7	20.7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2014년 장애 때문에 본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항상 또는 가끔 느낀다고 인식한 장애인의 비율은 37.8%이며, 별로 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62.2%로 나타남. 이러한 현황은 2011년과 2014년에 큰 차이가 없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인 중 77.7%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낀다고 하였고, 지적장애인 69.0%, 안면장애 66.1%, 정신장애인 63.1%, 뇌병변장애인 50.1% 또한 높은 비율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항상 느낀다	8.8	9.8	7.4	14.8	9.3	10.8	5.9	16	6.7	8.8
	가끔 느낀다	31.2	31.5	30.7	39	37.8	30.6	28.1	40.6	28.8	31.5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34.8	38.5	21	30.5	36	40.7	28.8	38.3	36.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23.9	23.4	25.1	22.3	22.6	25.3	14.7	26.2	23.6
2014	항상 느낀다	6.2	6.9	5.2	14.3	11	7.2	3	11.6	2.9	6.3
	가끔 느낀다	31.6	31.5	31.7	53.7	41	32.1	26.1	43.9	23.3	31.4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0.8	43	21.8	30.6	40.1	48.6	33.9	46.6	41.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0.8	20.1	10.2	17.4	20.6	22.3	10.6	27.2	20.7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7세 이하는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장애정도별로 차별을 인식한 비율은 중증이 55.5%, 경증이 26.2%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3)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사회)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전혀 없다	0.8	1.0	0.7	0.9	0.6	1.1	1.4	–	0.3	–	–	–	–	–	–	–
	별로 없다	18.5	20.0	16.9	15.6	20.1	16.5	10.5	1.6	17.5	20.8	28.4	20.1	9.6	0.0	34.1	12.6
	약간 많다	48.3	48.3	47.1	50.9	51.1	27.1	45.0	41.2	45.6	43.9	44.8	62.2	66.8	61.2	52.2	49.0
	매우 많다	32.4	30.7	35.2	32.6	28.2	55.2	43.1	57.2	36.6	35.3	26.8	17.7	23.6	38.8	13.8	38.4
2014	전혀 없다	1.0	1.2	0.8	0.2	0.4	–	0.6	0.7	0.7	3.6	–	9.4	–	–	2.4	–
	별로 없다	26.4	30.4	20.5	28.5	24.7	28.2	9.8	14.1	19.9	28.0	21.0	15.3	26.4	23.4	33.2	31.7
	약간 많다	46.2	46.0	46.5	43.9	51.4	41.7	43.5	42.5	53.9	40.0	37.5	41.7	54.4	29.3	40.8	37.9
	매우 많다	26.4	22.4	32.1	27.4	23.5	30.1	46.2	42.8	25.4	28.4	41.5	33.7	19.2	47.2	23.6	30.4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전혀 없다	0.8	0.8	0.9	1.2	0.9	0.4	1.3	0.8	0.8	0.8
	별로 없다	18.5	17.0	20.5	9.4	11.6	16.2	24.7	14.0	19.6	18.3
	약간 많다	48.3	48.1	48.6	42.6	48.5	48.0	49.0	45.4	49.0	48.2
	매우 많다	32.4	34.1	30.0	46.9	39.0	35.4	25.0	39.8	30.6	32.7
2014	전혀 없다	1.0	0.8	1.3	0.4	0.3	0.4	1.9	1.1	0.9	1.0
	별로 없다	26.4	23.7	30.0	8.9	13.5	24.3	34.1	18.4	31.7	26.5
	약간 많다	46.2	47.0	45.2	44.9	47.1	45.1	47.0	46.2	45.6	45.8
	매우 많다	26.4	28.5	23.4	45.7	39.1	30.2	17.0	34.4	21.8	26.7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조사 결과, '약간 많다'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많다' 26.4%, '별로 없다' 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별로 없다'가 2011년 대비 2014년 증가한 반면, '매우 많다'는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의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안면장애가 47.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지적장애 46.2%, 자폐성장애 42.8%, 심장장애 41.5%의 순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는 '매우 많다'의 비율이 45.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반면, '별로 없다'의 비율은 8.9%로 낮은 편임. 반면, 65세 이상은 '매우 많다'의 비율은 17.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반면, '별로 없다'의 비율은 34.1%로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매우 많다'의 비율이 12.6%p정도 높게 나타남

(4)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구분	계	전혀 반대하지 않음	반대하지 않음	약간 반대함	매우 반대함
2007	100.0	34.4	59.8	5.4	0.4
2009	100.0	37.9	55.4	6.2	0.5
2011	100.0	35.9	57.9	5.7	0.5
2013	100.0	35.8	58.3	5.3	0.5
2015	100.0	34.2	58.7	6.4	0.6
2017	100.0	30.8	54.7	12.9	1.6
도시(동부)	100.0	30.8	54.7	12.9	1.6
농어촌(읍면부)	100.0	30.4	54.6	13.0	2.1
남자	100.0	31.6	54.8	11.9	1.7
여자	100.0	29.9	54.7	13.8	1.6
장애인	100.0	44.8	47.2	6.4	1.6
비장애인	100.0	30.1	55.1	13.2	1.6
13 – 19세	100.0	31.5	56.6	10.3	1.6
20 – 29세	100.0	35.7	52.6	10.2	1.6
30 – 39세	100.0	31.7	52.7	13.8	1.7
40 – 49세	100.0	31.4	54.4	13.1	1.2
50 – 59세	100.0	29.4	55.9	13.3	1.4
60세 이상	100.0	27.2	56.2	14.4	2.2
65세 이상	100.0	27.0	55.9	14.7	2.4
초졸 이하	100.0	29.2	54.5	13.9	2.4
중졸	100.0	28.5	57.3	12.5	1.7
고졸	100.0	31.3	55.0	12.3	1.4
대졸 이상	100.0	31.6	53.6	13.2	1.6
전문 관리	100.0	33.6	52.9	12.3	1.2
사무	100.0	30.7	54.4	13.3	1.6
서비스판매	100.0	32.1	53.5	13.4	1.0
농어업	100.0	26.6	52.0	18.8	2.7
기능노무	100.0	30.1	56.1	12.4	1.4
100만원 미만	100.0	30.7	54.9	12.8	1.6
100–200만원 미만	100.0	32.4	54.5	11.6	1.6
200–300만원 미만	100.0	31.0	55.0	12.1	1.9
300–400만원 미만	100.0	31.1	55.1	12.5	1.3
400–500만원 미만	100.0	28.7	55.9	13.9	1.5
500–600만원 미만	100.0	29.8	54.2	14.6	1.4
600만원 이상	100.0	30.6	53.0	14.3	2.1

주: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5%가 반대하지 않는 것(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14.5%로 이전 년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 여부별로 살펴보면, 반대하지 않는 비율은 장애인이 92.0%로 비장애인 85.2% 보다 높게 나타나며, 반대하는 비율은 비장애인 14.8%로 장애인 8.0%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상부터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5)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계	계속 확대하여야함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함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07	100.0	34.4	59.8	5.4	0.4
2009	100.0	37.9	55.4	6.2	0.5
2011	100.0	33.6	45.2	5.7	15.5
2013	100.0	27.7	47.2	7.4	17.7
2015	100.0	24.8	49.7	9.2	16.2
2017	100.0	27.5	49.4	8.2	14.9
도시(동부)	100.0	27.8	49.9	7.6	14.7
농어촌(읍면부)	100.0	25.9	47.2	11.0	15.9
남자	100.0	27.8	50.8	8.1	13.2
여자	100.0	27.1	48.0	8.4	16.6
장애인	100.0	40.4	43.6	6.9	9.1
비장애인	100.0	26.8	49.7	8.3	15.2
13 – 19세	100.0	29.0	42.0	7.7	21.4
20 – 29세	100.0	28.2	48.5	6.4	16.9
30 – 39세	100.0	31.9	51.2	5.1	11.8
40 – 49세	100.0	31.8	51.9	6.2	10.1
50 – 59세	100.0	25.9	52.1	9.0	13.1
60세 이상	100.0	20.9	47.3	12.9	18.9
65세 이상	100.0	20.0	45.1	13.7	21.2
초졸 이하	100.0	22.5	40.0	14.2	23.3
중졸	100.0	23.9	46.1	10.8	19.2
고졸	100.0	26.4	50.9	7.6	15.1
대졸 이상	100.0	31.4	52.6	5.8	10.3
전문 관리	100.0	33.3	51.9	5.5	9.2
사무	100.0	30.5	54.3	5.3	10.0
서비스판매	100.0	27.5	51.0	8.0	13.4
농어업	100.0	19.8	47.1	17.1	16.0
기능노무	100.0	26.7	50.0	8.8	14.5
100만원 미만	100.0	23.3	43.0	12.4	21.3
100–200만원 미만	100.0	25.7	46.7	10.1	17.5
200–300만원 미만	100.0	27.2	48.9	9.0	14.9
300–400만원 미만	100.0	28.0	51.0	7.4	13.6
400–500만원 미만	100.0	29.6	50.7	6.6	13.1
500–600만원 미만	100.0	28.3	52.6	5.8	13.3
600만원 이상	100.0	30.4	53.9	5.1	10.7

주: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이 49.4%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장애 여부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함'의 비율은 장애인이 40.4%로 비장애인 26.8% 보다 높은 반면,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은 비장애인이 49.7%로 장애인 43.6%보다 높게 나타남

(6)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알고 있다	7.8	8.6	5.3	8.5	5.8	9.8	7.5	16.6	4.7	11.8	7.9	6.9	24.7	15.3	2.0	13.2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24.1	17.7	21.9	14.5	15.6	17.9	31.8	15.7	25.9	10.4	37.0	35.9	17.0	20.9	8.4
	알지 못한다	70.8	67.3	77	69.6	79.7	74.6	74.6	51.6	79.6	62.3	81.7	56.1	39.4	67.7	77.2	78.4
2014	알고 있다	8.3	8.9	7.3	7.4	5.3	2.5	10.4	28.9	4.2	9.0	18.4	11.7	15.1	15.5	8.5	4.8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4.0	23.7	24.5	18.1	19.0	21.1	40.2	20.7	26.5	13.0	7.9	27.1	46.8	13.4	33.6
	알지 못한다	68.7	67.2	68.9	68.1	76.6	78.4	68.4	30.9	75.1	64.5	68.6	80.4	57.8	37.7	78.1	61.6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알고 있다	7.8	10.4	4.3	10.3	12.8	9.4	3.8	10.5	7.2	8.0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24.1	17.5	23.4	29.2	24.3	14.5	21.6	21.7	21.6
	알지 못한다	70.8	65.5	78.2	66.3	58.0	66.3	81.7	68.0	71.1	70.4
2014	알고 있다	8.3	10.0	6.0	18.6	12.7	10.9	3.6	10.5	7.2	8.5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6.4	18.5	35.6	33.9	26.6	15.1	23.9	23.3	23.6
	알지 못한다	68.7	63.6	75.5	45.8	53.4	62.5	81.2	65.7	69.5	68.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지 못한다'가 68.7%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다'는 8.3%에 불과함. 반면,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비율은 23.1%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황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음
  - 장애유형별로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호흡기장애가 8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언어장애 78.4%, 장루·요루장애 78.1%, 청각장애 76.6% 순임
  - 성별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75.5%로 남성 63.6%에 비해 높음
  - 연령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2008년 4월 11일 시행)

2) 장애인 인권보호

(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및 수용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63	37	24	2
2010	6	–	6	–
2011	5	2	3	–
2012	4	3	1	–
2013	7	6	1	–
2014	7	3	3	1
2015	9	3	5	1
2016	15	10	5	–

주: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4)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7). 「2016 인권통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권고, 의견표명,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총 누계 건수는 63건으로 그중 37건이 권고, 24건이 의견표명, 2건이 의견제출로 나타남
  • 2016년도에는 권고 10건, 의견표명 5건, 총 1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 중	권고 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 수용	불수용		
누 계	37	27	14	13	–	10	100.0
2010	–	–	–	–	–	–	–
2011	2	2	–	2	–	–	100.0
2012	3	2	–	2	–	1	100.0
2013	6	5	3	2	–	1	100.0
2014	3	3	2	1	–	–	100.0
2015	3	1	–	1	–	2	100.0
2016	10	2	2	–	–	8	100.0

주: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4)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7). 「2016 인권통계」

–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2016년까지의 누적 권고건수 총 37건 중 수용은 14건, 일부 수용은 총 13건, 검토 중은 10건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총 3건이 권고되어 1건이 일부 수용, 2건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총 10건이 권고되어 2건이 수용, 8건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0,340	1,695	886	1,340	1,312	1,139	1,142	1,511
장애유형별	지체	3,402	508	297	492	380	402	334	629
	시각	2,296	427	142	193	299	290	439	329
	뇌병변	741	136	57	87	71	92	93	101
	청각	1137	275	72	142	251	112	101	93
	지적(발달)	1291	181	214	231	115	104	100	246
	언어	73	8	8	13	7	13	5	7
	정신장애	424	73	48	47	50	55	30	62
	기타	976	87	48	135	139	71	43	44
차별영역별	고용	632	82	64	82	75	94	69	56
	교육	1024	55	62	96	45	66	55	535
	재화 · 용역	6,082	1,269	487	808	706	677	731	643
	사법행정	378	26	77	36	30	42	37	46
	참정권	163	13	3	57	41	19	–	16
	괴롭힘 등	1175	176	105	111	303	123	121	89
	기타	886	74	88	150	112	118	131	126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7). 「2016 인권통계」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142건으로 지난해 1,139건에 비해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가 4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290건에 비해 약 1.5배 증가함
- 차별영역별로는 재화 및 용역(서비스)이 7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31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고발	수사의뢰	징계권고	권고	조정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10,661	809	10	2	4	417	9	367	9,848	5,835	47	3,953	13	4
	2010	1,101	85	3	–	–	25	1	56	1,016	663	15	332	6	
	2011	952	156	4	1	–	119	–	32	796	381	4	410	1	
	2012	1,508	136	–	1	–	115	–	20	1,371	616	1	754		1
	2013	1,563	108	1	–	1	27	–	79	1,455	755	1	699		–
	2014	1,096	79	2	–	–	15	1	61	1,014	560	5	449		3
	2015	1,085	36	–	–	3	14	–	19	1,049	663	6	380		
	2016	1,640	51	–	–	–	19	3	29	1,589	1199	7	383		–
고용	소계	68	3	–	–	–	1	–	2	65	48	1	16	–	–
	모집·채용	27	3	–	–	–	1	–	2	24	18	–	6	–	–
	임금·복리후생	5	–	–	–	–	–	–	–	5	4	1	–	–	–
	배치	5	–	–	–	–	–	–	–	5	5	–	–	–	–
	승진	2	–	–	–	–	–	–	–	2	1	–	1	–	–
	직무관련	6	–	–	–	–	–	–	–	6	5	–	1	–	–
	퇴직·해고	16	–	–	–	–	–	–	–	16	11	–	5	–	–
	기타	7	–	–	–	–	–	–	–	7	4	–	3	–	–
교육	소계	516	2	–	–	–	1	–	1	515	506	–	9	–	–
	전·입학 거부	6	–	–	–	–	–	–	–	6	3	–	3	–	–
	시설물 접근·이용	5	–	–	–	–	–	–	–	6	3	–	3	–	–
	수업·시험 편의제공	80	–	–	–	–	–	–	–	80	79	–	1	–	–
	수업 등교 내 활동배제	81	–	–	–	–	–	–	–	81	81	–	–	–	–
	특수학급설치	–	–	–	–	–	–	–	–	–	–	–	–	–	–
	괴롭힘	7	1	–	–	–	–	–	1	6	6	–	–	–	–
	기타	337	1	–	–	–	1	–	–	336	334	–	2	–	–
재화용역	소계	766	39	–	–	–	16	3	20	727	439	5	283	–	–
	재화·용역	248	15	–	–	–	4	2	9	233	165	2	66	–	–
	보험·금융	75	3	–	–	–	1	–	2	72	39	–	33	–	–
	시설물접근	150	8	–	–	–	2	1	5	142	101	1	40	–	–
	이동교통수단	76	6	–	–	–	4	–	2	70	36	1	33	–	–
	정보접근· 의사소통	198	5	–	–	–	5	–	–	193	89	–	104	–	–
	문화·예술·체육	9	–	–	–	–	–	–	–	9	4	–	5	–	–
	기타	10	2	–	–	–	–	–	2	8	5	1	2	–	–
사법행정		31	–	–	–	–	–	–	–	31	23	–	8	–	–
참정권		14	–	–	–	–	–	–	–	14	9	–	5	–	–
괴롭힘 등	소계	109	6	–	–	–	1	–	5	103	81	1	21	–	–
	따돌림	3	–	–	–	–	–	–	–	3	2	–	1	–	–
	유기·방치	–	–	–	–	–	–	–	–	–	–	–	–	–	–
	성폭행	4	1	–	–	–	–	–	1	3	3	–	–	–	–
	폭행·학대	24	–	–	–	–	–	–	–	24	17	1	6	–	–
	금전착취	5	1	–	–	–	1	–	–	4	3	–	1	–	–
	모욕·비하	62	4	–	–	–	–	–	4	58	46	–	12	–	–
	기타	11	–	–	–	–	–	–	–	11	10	–	1	–	–
기타		136	1	–	–	–	–	–	1	135	92	–	43	–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7). 「2016 인권통계」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1,640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55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766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 516건, 기타 136건, 괴롭힘 등 109건, 고용 68건, 사법행정 31건, 참정권 14건 순으로 나타남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단위: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809	52	51	507	14	13	72	100
2010	85	14	11	44	2	-	12	2
2011	156	8	1	126	4	-	14	3
2012	136	1	4	117	3	1	3	7
2013	108	4	6	78	2	-	8	10
2014	79	8	10	33	1	8	12	7
2015	36	7	1	18	-	-	8	2
2016	51	3	2	39	-	-	6	1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7). 「2016 인권통계」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재화·용역이 50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괴롭힘 등 72건, 고용 52건, 교육 51건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 제1항											법 제32조 제3항	법 제39조 제1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9,788	5,826	963	36	129	75	140	9	94	4,273	101	6	9	3,953	538	1,036	2,379
2010	995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332	61	94	177
2011	79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410	59	146	205
2012	1,370	615	62	3	14	9	16	4	9	495	3	–	1	754	74	115	565
2013	1,454	754	215	5	37	2	20	–	6	459	9	1	1	699	62	102	535
2014	1,009	556	52	3	8	11	17	1	2	452	10	–	4	449	86	123	240
2015	1,043	661	49	1	8	7	14	1	12	561	8	–	2	380	62	139	179
2016	1,582	1,198	101	12	11	4	16	–	3	1,048	3	–	1	383	66	119	198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7). 「2016 인권통계」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을 기각·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와 관련된 사유로는 제8호가 4,27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법 제39조(진정의 기각)와 관련된 사유로는 제3호가 2,37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신보건시설 입원현황

〈표 11-2-7〉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시설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인원
				가족	시·군·구의 장	기타		
2001		60,079	4,041	39,167	16,871	–	–	–
		(100.0)	(6.7)	(65.2)	(28.1)	–	–	–
2002		61,066	3,946	40,263	16,857	–	–	–
		(100.0)	(6.5)	(65.9)	(27.6)	–	–	–
2003		64,083	4,182	41,853	17,293	755	–	–
		(100.0)	(6.6)	(65.9)	(26.3)	(1.2)	–	–
2004		65,349	5,024	44,024	15,618	683	–	–
		(100.0)	(7.7)	(67.4)	(23.9)	(1.0)	–	–
2005		67,895	6,036	45,958	15,316	585	–	–
		(100.0)	(8.9)	(67.7)	(22.6)	(0.9)	–	–
2006		70,967	6,534	49,935	13,919	579	–	–
		(100.0)	(9.2)	(70.4)	(19.6)	(0.8)	–	–
2007		70,516	6,841	51,028	11,961	686	–	–
		(100.0)	(9.7)	(72.4)	(17.0)	(0.9)	–	–
2008		68,110	9,387	50,425	7,476	822	–	–
		(100.0)	(13.8)	(74.0)	(11.0)	(1.2)	–	–
2009		74,919	12,087	50,575	11,154	851	176	76
		(100.0)	(16.1)	(67.5)	(14.9)	(1.1)	(0.2)	(0.1)
2010		75,282	15,271	51,714	7,027	910	251	109
		(100.0)	(20.3)	(68.7)	(9.3)	(1.2)	(0.3)	(0.1)
2011		78,637	16,833	53,533	6,853	1,045	323	50
		(100.0)	(21.4)	(68.1)	(8.7)	(1.3)	(0.4)	(0.1)
2012		80,569	19,441	53,105	6,737	1,013	230	43
		(100.0)	(24.1)	(65.9)	(8.4)	(1.3)	(0.3)	(0.1)
2013		80,462	21,294	51,132	6,320	1,401	262	53
		(100.0)	(26.5)	(63.5)	(7.9)	(1.7)	(0.3)	(0.1)
2014		81,625	24,266	49,792	6,235	1,159	147	26
		(100.0)	(29.7)	(61.0)	(7.6)	(1.4)	(0.2)	(0.0)
2015		81,105	26,064	47,235	6,432	1,200	131	43
		(100.0)	(32.1)	(58.2)	(7.9)	(1.5)	(0.2)	(0.1)
정신의료기관	소계	70,628	24,591	41,578	3,085	1,200	131	43
		(100.0)	(34.8)	(58.9)	(4.4)	(1.7)	(0.2)	(0.1)
	국립정신병원	2,273	512	542	21	1,181	15	2
		(100.0)	(22.5)	(23.8)	(0.9)	(52.0)	(0.7)	(0.1)
	공립정신병원	3,351	932	2,114	265	–	37	3
		(100.0)	(27.8)	(63.1)	(7.9)	–	(1.1)	(0.1)
	사립정신병원	38,202	11,798	24,347	2,010	3	25	19
		(100.0)	(30.9)	(63.7)	(5.3)	(0.0)	(0.1)	(0.0)
	종합병원정신과	4,292	1,591	2,508	168	2	11	12
		(100.0)	(37.1)	(58.4)	(3.9)	(0.0)	(0.3)	(0.3)
	병원정신과	18,426	7,834	9,981	549	14	43	5
		(100.0)	(42.5)	(54.2)	(3.0)	(0.1)	(0.2)	(0.0)
	정신과의원	4,084	1,924	2,086	72	–	–	2
		(100.0)	(47.1)	(51.1)	(1.8)	–	–	(0.0)
정신요양시설		10,477	1,473	5,657	3,347	–	–	–
		(100.0)	(14.1)	(54.0)	(31.9)	–	–	–
노숙인 시설		3,408	–	–	3,408	–	–	–
		(100.0)	–	–	(100.0)	–	–	–

주: 1) 2011년부터 노숙인 시설 입소자 제외
2) 기타에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이 포함됨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센터(2016) 「2015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 보건복지부·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센터(2017)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정신보건시설입원 현황은 2015년 전체 81,105명으로 가족에 의한 입원이 58.2%이고, 자의에 의한 입원이 32.1%로 2001년 6.7%에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 정신의료기관 현황은 2015년 기준 70,628개소이며, 정신요양시설은 10,477개소, 노숙인시설은 3,408개소임

3) 가정폭력

(1) 장애인 가정폭력

〈표 11-3-1〉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차별·폭력 정도	자주 있음	1.1	0.4	1.2	0.4	1.2	–	5.7	3.3	4.8	0.7	–	0.7	–	–	–	–
	가끔 있음	6.1	3.7	9.0	4.2	5.5	2.2	15.6	12.2	21.9	5.2	–	3.6	–	–	4.7	2.1
	없음	92.7	95.9	89.8	95.4	93.3	97.8	78.7	84.5	73.4	94.1	100.0	95.7	100.0	100.0	95.3	97.9
차별·폭력 유형	언어폭력	57.3	52.7	58.6	65.1	63.8	48.8	48.8	86.3	65.4	49.1	–	100.0	–	–	87.1	100.0
	정신적 폭력	19.9	25.4	18.6	25.3	17.5	51.2	13.9	–	15.9	50.9	–	–	–	–	12.9	–
	신체적 폭력	9.4	7.5	5.0	2.8	12.7	–	18.3	–	9.7	–	–	–	–	–	–	–
	성적학대	–	–	–	–	–	–	–	–	–	–	–	–	–	–	–	–
	방임 및 유기	9.0	9.6	15.4	0.0	4.8	–	9.7	13.7	8.0	–	–	–	–	–	–	–
	경제적 폭력	4.3	4.9	2.3	6.9	1.2	–	9.3	–	1.0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주 가해자	배우자	34.1	45.0	50.5	38.1	56.4	–	5.3	7.2	23.1	22.7	–	100.0	–	–	100.0	100.0
	부모	17.8	4.2	13.9	10.9	4.6	–	42.0	50.5	21.5	22.1	–	–	–	–	–	–
	자녀 (며느리, 사위 포함)	15.9	26.0	22.6	5.4	24.1	48.8	4.7	–	5.8	21.9	–	–	–	–	–	–
	형제, 자매	25.5	16.9	11.2	35.0	12.9	51.2	38.2	34.6	41.8	33.3	–	–	–	–	–	–
	조부모	0.9	–	–	–	–	–	3.7	7.6	–	–	–	–	–	–	–	–
	손자녀	0.5	0.9	1.8	–	–	–	–	–	–	–	–	–	–	–	–	–
	배우자의 가족	2.6	4.2	–	7.5	2.0	–	0.5	–	4.3	–	–	–	–	–	–	–
	기타	2.6	2.8	–	3.0	–	–	5.6	–	3.4	–	–	–	–	–	–	–

주: 1)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차별·폭력 정도' 중 '자주 있음'과 '가끔 있다'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2)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 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2014년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를 살펴보면, '없다'라는 응답이 92.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7.2%는 차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내 차별·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57.3%로 가장 많으며, 정신적 폭력 19.9%, 신체적 폭력 9.4%, 방임 및 유기 9.0% 순임
– 주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34.1%로 가장 많으며, 형제·자매 25.5%, 부모 17.8%, 자녀 15.9%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자주 있음)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5.7%, 4.8%, 3.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족 내 차별·폭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장루·요루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언어폭력 피해 경험비율은 각각 87.1%, 86.3%, 65.4%, 65.1%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또한 언어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정신적 폭력 피해 경험비율은 각각 51.2%, 50.9%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배우자로부터 차별·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호흡기장애인 100.0%, 장루·요루장애인 100.0%, 뇌전증장애인 100.0%, 청각장애인 56.4%, 뇌병변장애인 50.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자폐성장애인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차별·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50.5%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자녀와 형제·자매로부터 차별·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각각 48.8%, 51.2%로 높게 나타남

〈표 11-3-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차별·폭력 정도	자주 있음	1.1	1.1	1.2	2.5	2.5	1.2	0.5	2.4	0.3	1.1
	가끔 있음	6.1	5.5	7.0	11.9	8.6	6.9	4.1	9.7	3.5	5.9
	없음	92.7	93.4	91.8	85.5	88.9	91.9	95.4	87.9	96.2	92.9
차별·폭력 유형	언어폭력	57.3	58.8	55.8	69.1	51.7	60.4	55.5	56.4	54.9	55.9
	정신적 폭력	19.9	19.9	20.0	8.2	16.5	21.1	23.7	16.7	26.5	20.0
	신체적 폭력	9.4	8.0	11.0	18.9	16.9	5.1	7.4	12.0	5.2	9.8
	성적학대	–	–	–	–	–	–	–	–	–	–
	방임 및 유기	9.0	8.0	10.0	3.9	9.6	8.0	10.9	9.9	9.1	9.7
	경제적 폭력	4.3	5.3	3.3	–	5.3	5.5	2.5	4.9	4.3	4.7
	기타	–	–	–	–	–	–	–	–	–	–
주 가해자	배우자	34.1	30.9	37.6	2.1	12.2	39.5	53.8	25.7	46.9	32.9
	부모	17.8	18.8	16.7	55.2	39.5	9.9	1.1	26.4	1.7	18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15.9	12.9	19.1	–	2.5	15.1	33.5	10	25.8	15.4
	형제, 자매	25.5	31.9	18.6	37.9	34.9	28.6	8.9	30.7	18.5	26.5
	조부모	0.9	1.3	0.5	4.9	2.4	–	–	1.5	–	1
	손자녀	0.5	0.5	0.6	–	–	0.7	0.9	–	1.6	0.6
	배우자의 가족	2.6	–	5.4	–	2.7	3.6	1.5	2.4	3.5	2.8
	기타	2.6	3.7	1.6	–	5.8	2.6	0.3	3.3	1.9	2.9

주: 1)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차별·폭력 정도' 중 '자주 있음'과 '가끔 있다'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2)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 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연령별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폭력 피해 경험비율이 높아지며, 차별·폭력 유형과 주 가해자도 연령에 따라 달라짐
  • 65세 이상의 가족 내 차별·폭력 경험비율(자주 있음과 가끔 있음을 합한 비율)은 4.6%인 것에 비해 17세 이하는 14.4%임
  • 17세 이하가 경험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 비율은 각각 69.1%, 18.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으며, 65세 이상은 다른 연령에 비해 정신적 폭력과 방임 및 유기의 비율이 각각 23.7%, 10.9%로 높게 나타남
  • 17세 이하는 주로 부모에 의해 차별·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55.2%로 가장 높은 반면, 65세 이상은 주가해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차별·폭력 피해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은 경증에 비해 신체적 폭력 비율이 6.8%p 정도 높은 반면, 경증은 중증에 비해 정신적 폭력 비율이 9.8%p 정도 높게 나타남
  • 주 가해자는 중증은 형제·자매(30.7%), 부모(25.8%), 배우자(25.7%) 순으로 나타난 반면, 경증은 배우자(46.9%), 자녀(25.8%), 형제·자매(18.5%) 순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가정폭력 관련 시설

〈표 11-3-3〉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상담소		205 (2)	34	11	4 (1)	6	7 (1)	5	4	42	11	7	13	9	10	22	15	4	1
보호시설	계	67 (3)	12 (1)	3	3	1	4 (1)	1	1	12 (1)	5	3	4	4	4	2	6	2	–
	일반시설	47	10	2	2	1	3	–	1	12	4	1	2	2	2	2	3	–	–
	가족보호시설	20	2	1	1	–	1	1	–	–	1	2	2	2	2	–	3	2	–

주: 1) 2017년 1월 1일 기준
2) ( )는 장애인보호시설 수임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205개소 중 장애인 상담소는 2곳으로 일반상담소에 비해 매우 적은 설치율을 보임
  - 일반 상담소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42곳이며, 다음으로 서울이 34곳으로 두 번째로 많은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7개 시설 중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12개소로 가장 많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 보호시설은 서울, 광주, 경기에 각각 1개소가 있음

4) 성폭력

(1) 장애인 성폭력

〈표 11-4-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경험 여부	있다	1.4	0.8	1.1	0.5	0.3	5.5	4.9	-	10.7	-	-	-	1.1	-	-	3.1
	없다	98.6	99.2	98.9	99.5	99.7	94.5	95.1	100.0	89.3	100.0	100.0	100.0	98.9	100.0	100.0	96.9
주 가해자	근친(가족)	10.2	12.1	-	23.6	-	-	9.3	-	12.8	-	-	-	-	-	-	-
	이웃	19.8	29.7	30.6	-	27.9	-	31.8	-	2.1	-	-	-	-	-	-	-
	먼 친척	0.5	-	-	-	-	-	-	-	1.7	-	-	-	-	-	-	-
	모르는 사람	39.6	43.6	69.4	44.4	72.1	54.6	22.7	-	35.2	-	-	-	-	-	-	100.0
	학교관계자	0.4	-	-	-	-	-	-	-	-	-	-	-	100.0	-	-	-
	남자친구	8.8	2.7	-	-	-	-	13.3	-	16.5	-	-	-	-	-	-	-
	종교인	2.4	-	-	-	-	-	-	-	8.2	-	-	-	-	-	-	-
	채팅상대자		-	-	-	-	-	-	-	-	-	-	-	-	-	-	-
	서비스제공자 (복지인력 등)	3.3	8.1	-	-	-	-	-	-	3.3	-	-	-	-	-	-	-
	학원관계자	2.5	3.9	-	-	-	45.4	-	-	-	-	-	-	-	-	-	-
	기타	12.5	-	-	31.9	-	-	22.8	-	20.3	-	-	-	-	-	-	-
대처 방법	무시한다	3.6	5.2	10.9	-	-	-	-	-	4.2	-	-	-	-	-	-	-
	참는다	51.5	48.5	26.8	-	100.0	45.4	47.5	-	68.6	-	-	-	100.0	-	-	-
	그 자리에서 항의	16.9	15.6	42.4	31.9	-	54.6	22.1	-	-	-	-	-	-	-	-	100.0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0.3	18.8	-	-	-	-	5.6	-	12.2	-	-	-	-	-	-	-
	몰라서 그냥 넘어감	14.9	3.9	19.9	68.1	-	-	22.8	-	15.0	-	-	-	-	-	-	-
	기타	2.8	8.1	-	-	-	-	2.0	-	-	-	-	-	-	-	-	-

주: '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2014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는 '없다'의 응답이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4%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39.6%로 가장 많으며, 이웃 19.8%, 기타 12.5%, 근친(가족) 10.2% 순임. 대처방법으로는 참는다가 51.5%로 절반 이상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의 피해경험 비율이 각각 10.7%, 5.5%, 4.9%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청각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72.1%, 69.4%, 54.6%, 44.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웃인 경우는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31.8%, 30.6%, 29.7%, 27.9%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참는다는 경우는 청각장애인, 간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100.0%, 100.0%, 68.6%, 48.5%, 47.5%, 45.4%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경우는 언어장애인의 비율이 54.6%,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68.1%로 높게 나타남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11-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경험 여부	있다	0.5	0.3	3.0	1.4	3.0	3.4	1.6	1.4	2.8	0.6
	없다	99.5	99.7	97.0	98.6	97.0	96.6	98.4	98.6	97.2	99.4
주 가해자	근친(가족)	10.2	–	11.7	–	11.6	12.2	5.4	9.3	9.5	9.4
	이웃	19.8	–	22.6	33.3	8.6	32.3	9.8	15.8	35.9	20.7
	먼 친척	0.5	–	0.6	–	–	1.2	–	0.7	–	0.5
	모르는 사람	39.6	19.9	42.4	8.3	34.2	40.1	64.1	38.1	38.8	38.3
	학교관계자	0.4	–	0.4	–	–	0.9	–	–	1.6	0.4
	남자친구	8.8	17.0	7.6	–	18.6	2.0	5.2	11.0	3.3	9.2
	종교인	2.4	–	2.8	–	6.3	–	–	3.4	–	2.5
	채팅상대자	3.3	–	3.8	–	2.5	–	15.6	4.5	–	3.4
	서비스제공자 (복지인력 등)	2.5	11.3	1.3	–	6.5	–	–	–	11.0	2.6
	학원관계자	12.5	51.8	6.8	58.4	11.7	11.4	–	17.1	–	13.0
	기타	–	–	–	–	–	–	–	–	–	–
대처 방법	무시한다	3.6	5.6	3.4	–	3.8	1.7	9.9	1.7	10.5	3.8
	참는다	51.5	89.3	46.1	62.5	50.5	62.2	20.9	52.5	48.5	51.6
	그 자리에서 항의	16.8	–	19.3	–	19.9	19.2	8.9	19.1	12.9	17.6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0.3	–	11.8	23.6	6.1	7.0	25.5	6.8	23.3	10.8
	몰라서 그냥 넘어감	14.9	5.2	16.3	5.6	19.8	9.9	19.1	16.0	4.8	13.3
	기타	2.8	–	3.2	8.3	–	–	15.6	3.8	–	2.9

주: '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성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3.0%로 남성 0.3%에 비해 피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주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학원관계자가 51.8%로 절반 이상인 반면, 여성의 경우 모르는 사람 42.4%, 이웃 22.6%, 근친(가족) 11.7% 등 가해자가 다양함
  • 성별 대처방법은 남성의 경우 참는다가 89.3%로 대다수이며, 여성의 경우 참는다 46.1%, 그 자리에서 항의 19.3%, 몰라서 그냥 넘어감 16.3%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18-64세 이하의 피해경험 비율이 6.4%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주 가해자는 17세 이하의 경우 학원관계자 58.4%, 이웃 33.3%로 높게 나타났으며, 18세 이상 부터는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34.2%, 40.1%, 64.1%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대처방법은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참는다가 각각 62.5%, 50.5%, 62.2%로 절반 이상임
– 장애정도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경증이 2.8%로 중증 1.4%에 비해 피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 주 가해자는 중증과 경증 모두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38.1%, 38.8%로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 대처방법 중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증이 23.3%로 중증 6.8%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성폭력 상담소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수	169	19	6	4	4	11	4	4	2	37	8	8	15	8	9	12	15	3
	(23)	(4)	(1)		(2)	(1)	(2)	(1)		(3)		(1)	(2)	(1)	(1)	(2)	(1)	(1)

주: 1) 2017년 1월 기준임
2) 신고 수는 휴지기관 1개소 포함임
3) ( )는 장애인상담소 수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2017년 11월 검색)

- 각 시도별 성폭력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167개 상담소 중 경기가 37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 상담소는 전국에 총 23개소가 있으며, 대구, 세종, 강원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1-4개소가 있음

(3)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표 11-4-4〉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09	전체	155,902	67,221	88,681	11,700	2,393	5,137	8,311	25,717	10,750	789	23,884
		100.0	43.1	56.9	7.5	1.5	3.3	5.3	16.5	6.9	0.5	15.3
	장애인	22,333	13,792	8,621	1,441	558	6	32	3,589	449	4	2,542
		100.0	61.4	38.6	6.5	2.5	0.0	0.1	16.1	2.0	0.0	11.4
2010	전체	138,900	68,530	70,370	8,878	1,323	3,717	7,604	17,546	7,967	2,086	21,249
		100.0	49.4	50.6	6.4	1.0	2.7	5.5	12.6	5.7	1.5	15.3
	장애인	14,310	9,044	5,266	1,047	214	94	106	770	286	26	2,723
		100.0	63.2	36.8	7.3	1.5	0.7	0.7	5.4	2.0	0.2	19.0
2011	전체	129,983	65,922	64,061	8,303	1,366	3,381	5,968	16,133	8,230	1,639	19,041
		100.0	50.7	49.3	13	2.1	5.3	9.3	25.2	12.8	2.6	29.7
	장애인	17,455	12,457	4,998	1,140	288	22	58	844	340	–	2,306
		100.0	71.4	28.6	22.8	5.8	0.4	1.2	16.9	6.8	–	46.1
2012	전체	144,692	77,099	67,593	8,169	1,179	2,946	6,326	15,468	7,924	2,234	3,347
		100.0	53.3	46.7	5.6	0.8	2.0	4.4	10.7	5.5	1.5	16.1
	장애인	24,671	17,928	6,743	1,355	336	95	43	1,018	760	243	2,891
		100.0	72.7	27.3	5.5	1.4	0.4	0.2	4.1	3.1	1.0	11.7
2013	전체	145,446	83,931	61,465	8,466	843	2,361	5,970	16,585	6,743	600	19,897
		100.0	57.7	42.3	5.8	0.6	1.6	4.1	11.4	4.6	0.4	13.7
	장애인	26,065	19,705	6,360	1,242	172	43	71	1,350	762	10	2,711
		100.0	75.6	24.4	4.8	0.7	0.2	0.3	5.2	2.9	0.0	10.4
2014	전체	146,750	89,975	56,775	9,506	746	1,964	5,061	13,358	6,844	886	18,410
		100.0	61.3	38.7	6.5	0.5	1.3	3.4	9.1	4.7	0.6	12.5
	장애인	29,135	23,127	6,008	1,020	144	91	124	1,771	721	12	2,125
		100.0	79.4	20.6	3.5	0.5	0.3	0.4	6.1	2.5	0.1	6.9
2015	전체	158,188	98,729	59,459	15,130	713	2,017	4,960	12,612	7,273	367	16,387
		100.0	62.4	37.6	9.6	0.5	1.3	3.1	8.0	4.6	0.2	10.4
	장애인	30,196	23,562	6,634	1,048	103	120	66	2,136	1,239	24	1,898
		100.0	78.0	22.0	3.5	0.3	0.4	0.2	7.1	4.1	0.1	6.3
2016	전체	158,029	101,028	57,001	14,587	646	1,779	3,948	12,533	5,294	385	17,829
		100.0	63.9	36.1	25.6	1.1	3.1	6.9	22.0	9.3	0.7	31.3
	장애인	28,203	20,886	7,317	1,090	113	86	234	2,241	496	7	3,050
		100.0	74.1	25.9	14.9	1.5	1.2	3.2	30.6	6.8	0.1	41.7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 소폭 감소함
- 2016년 장애인 전체 상담 중 성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74.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기타 상담에서는 기타 상담이 41.7%로 가장 높았고 성 상담 30.6%, 가정폭력 14.9%, 가족문제 6.8% 순임

(4)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표 11-4-5〉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379	1,349	1,355	1,592	1,789	4,965	3,986	3,0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 유형	강간	1,177	686	763	973	984	2,489	2,141	1,509
		(49.5)	(50.8)	(56.3)	(61.1)	(55.0)	(50.1)	(53.7)	(49.7)
	성추행	487	415	421	453	657	1,743	1,441	1,211
		(20.5)	(30.7)	(31.1)	(28.4)	(36.7)	(35.1)	(36.2)	(39.9)
	성희롱	317	122	106	98	12	–	–	–
		(13.3)	(9.0)	(7.8)	(6.2)	(0.7)	–	–	–
	기타	398	126	65	68	136	733	404	318
		(16.7)	(9.3)	(4.8)	(4.3)	(7.6)	(14.8)	(10.1)	(10.4)
장애 유형	지체	513	78	104	96	99	418	251	169
		(21.6)	(5.7)	(7.7)	(6.0)	(5.5)	(8.4)	(6.3)	(5.6)
	뇌병변	49	32	47	46	79	153	97	101
		(2.1)	(2.3)	(3.5)	(2.9)	(4.4)	(3.1)	(2.4)	(3.3)
	시각	35	24	24	31	47	218	72	45
		(1.5)	(1.7)	(1.8)	(1.9)	(2.6)	(4.4)	(1.8)	(1.5)
	청각, 언어	51	41	35	51	58	114	67	82
		(2.1)	(3.0)	(2.6)	(3.2)	(3.2)	(2.3)	(1.7)	(2.7)
	정신 지체	1,506	1,068	987	1,199	1,301	3,108	3,031	2,321
		(63.3)	(79.1)	(72.8)	(75.3)	(72.7)	(62.6)	(76.0)	(76.4)
	정신 장애	191	53	83	111	109	413	339	176
		(8.0)	(3.9)	(6.1)	(7.0)	(6.1)	(8.3)	(8.5)	(5.8)
	기타	34	53	75	58	96	541	129	144
		(1.4)	(3.9)	(5.5)	(3.6)	(5.5)	(10.9)	(3.2)	(4.7)

주: 1) 2013년까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 건수이며, 2014년부터는 장애인 전체 피해 건수임
2) 기타에는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등이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03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음
• 피해유형은 강간이 49.7%로 절반 정도이며, 피해를 당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지적장애)가 76.4%로 가장 높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0	2	2	1	1	2	2	1	–	5	1	2	1	2	2	2	2	2
일반	16	2	1	1	1	1	–	1	–	3	1	1	–	2	1	–	–	1
장애인	8	–	1	–	–	1	1	–	–	1	–	1	1	–	1	–	–	1
특별지원(친족피해 청소년)	4	–	–	–	–	–	1	–	–	1	–	–	–	–	–	1	1	–
자립지원 공동생활 가정	2	–	–	–	–	–	–	–	–	–	–	–	–	–	–	1	1	–

주: 1) 2017년 1월 기준
2) 30개소 모두 국비 지원 시설임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0개소 중 장애인 시설은 8곳이며,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지역에만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9개 지역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중 입소인원	연도 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2009	전체	312	299	142
	장애인	90	69	66
2010	전체	282	230	187
	장애인	90	62	88
2011	전체	226	226	181
	장애인	64	64	87
2012	전체	236	209	184
	장애인	78	78	105
2013	전체	238	230	218
	장애인	103	79	83
2014	전체	258	222	285
	장애인	113	92	167
2015	전체	277	262	286
	장애인	110	107	165
2016	전체	201	193	295
	장애인	84	70	180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장애인의 연도 중 입소인원은 84명으로 전체 201명의 41.8%를 차지함
  • 연도 중 퇴소인원은 장애인 70명으로 전체 193명의 36.3% 수준임
  • 보호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전체 295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180명(61.0%)으로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 이상
2009	전체	312	13	33	125	141
		(100.0)	(4.2)	(10.6)	(40.1)	(45.2)
	장애인	90	-	3	33	54
		(100.0)	-	(3.3)	(36.7)	(60.0)
2010	전체	282	10	30	120	122
		(100.0)	(3.5)	(10.6)	(42.6)	(43.3)
	장애인	90	-	5	29	56
		(100.0)	-	(5.6)	(32.2)	(62.2)
2011	전체	226	14	15	88	109
		(100.0)	(6.2)	(6.6)	(38.9)	(48.2)
	장애인	64	-	-	22	42
		(100.0)	-	-	(34.4)	(65.6)
2012	전체	236	10	12	108	106
		(100.0)	(4.2)	(5.1)	(45.8)	(44.9)
	장애인	78	1	1	25	51
		(100.0)	(1.3)	(1.3)	(32.1)	(65.4)

구분		계	5세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0)	-	(2.9)	(35.0)	(25.2)	(35.9)	(1.0)
2014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	4	66	42	54	1
		(100.0)	-	(2.4)	(39.5)	(25.1)	(32.3)	(0.6)
2015	전체	286	4	20	132	77	53	-
		(100.0)	(1.4)	(7.0)	(46.2)	(26.9)	(18.5)	-
	장애인	165	-	4	62	54	45	-
		(100.0)	-	(2.4)	(37.6)	(32.7)	(27.3)	-
2016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0)	(0.3)	(4.4)	(39.7)	(32.2)	(23.1)	(0.3)
	장애인	180	-	2	54	69	55	-
		(100.0)	-	(1.1)	(30.0)	(38.3)	(30.6)	-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현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인구에서는 13-18세 이하의 비율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 중에서는 19-24세 이하의 비율이 38.3%로 높게 나타남

〈표 11-4-9〉 보호시설 연령별 보호기간 현황

(단위: 명, %)

연 도	구분	계	7일 이내	8일-1개월	1-3개월	3-6개월	6-9개월
2009년	전체	299	30	66	80	64	59
		(100.0)	(10.0)	(22.1)	(26.8)	(21.4)	(19.7)
	장애인	69	5	8	19	14	23
		(100.0)	(7.2)	(11.6)	(27.5)	(20.3)	(33.3)
2010년	전체	230	36	37	54	52	51
		(100.0)	(15.7)	(16.1)	(23.5)	(22.6)	(22.2)
	장애인	60	6	4	12	16	22
		(100.0)	(10.0)	(6.7)	(20.0)	(26.7)	(36.7)
2011년	전체	225	20	40	69	42	54
		(100.0)	(8.9)	(17.8)	(30.7)	(18.7)	(24.0)
	장애인	62	2	4	20	13	23
		(100.0)	(3.2)	(6.5)	(32.3)	(21.0)	(37.1)
2012년	전체	209	24	39	42	41	63
		(100.0)	(11.5)	(18.7)	(20.0)	(19.6)	(30.2)
	장애인	78	4	13	13	14	34
		(100.0)	(5.1)	(16.7)	(16.7)	(17.9)	(43.6)

연 도	구분	계	1개월 이하	2~6개월 이하	7개월~1년 이하	1년~2년 이하	2년~3년 이하	3년 초과
2013년	전체	230	67	86	30	24	19	4
		(100.0)	(29.1)	(37.4)	(13.0)	(10.4)	(8.3)	(1.7)
	장애인	79	13	37	12	7	9	1
		(100.0)	(16.5)	(46.8)	(15.2)	(8.9)	(11.4)	(1.3)
2014년	전체	222	62	77	31	31	10	11
		(100.0)	(28.0)	(34.7)	(14.0)	(14.0)	(4.5)	(5.0)
	장애인	92	14	38	16	14	6	4
		(100.0)	(15.2)	(41.3)	(17.4)	(15.2)	(6.5)	(4.3)
2015년	전체	262	70	95	33	33	11	20
		(100.0)	(26.7)	(36.3)	(12.6)	(12.6)	(4.2)	(7.6)
	장애인	107	21	33	15	17	8	13
		(100.0)	(19.6)	(30.8)	(14.0)	(15.9)	(7.5)	(12.1)
2016년	전체	193	43	48	33	37	14	18
		(100.0)	(22.3)	(24.9)	(17.1)	(19.2)	(7.3)	(9.3)
	장애인	70	9	21	13	13	7	7
		(100.0)	(12.9)	(30.0)	(18.6)	(18.6)	(10.0)	(10.0)

주: 2016년 퇴소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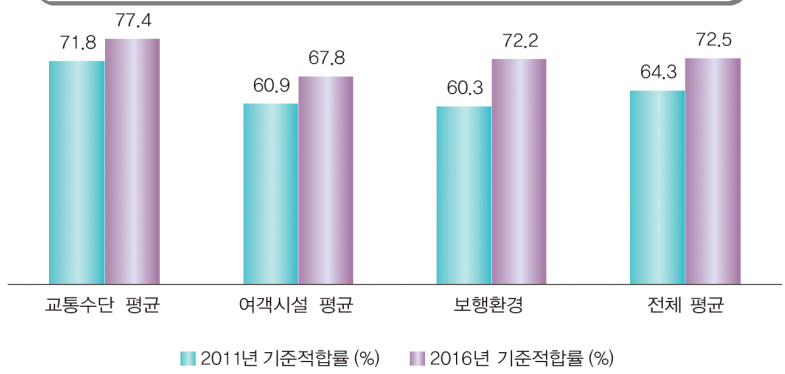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보호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인구와 장애인에서 2-6개월 이하의 비율이 각각 24.9%,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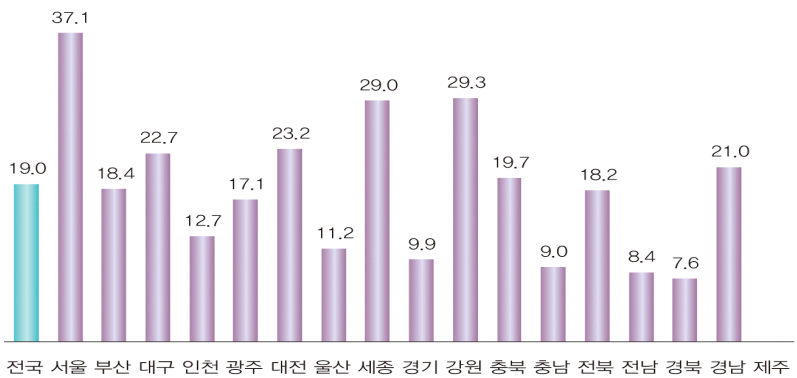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2. 접근성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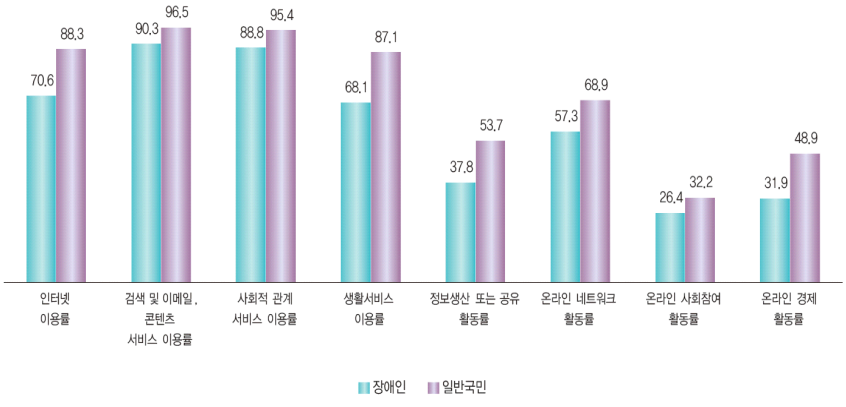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2016년 7월 기준)



– 2016년의 전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체 평균 기준적합률은 72.5%로, 2011년에 비해 8.2%p 증가함
  • 전 영역에서 2011년에 비해 2016년 기준적합률이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보행환경이 11.9%p 증가함

–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19.0%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37.1%로 가장 높았고 강원 29.3%, 세종 29.0% 순임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



-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이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88.8%, 인터넷 이용률 70.6%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수치가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남. 특히 '생활서비스 이용률'(19.0%p), '인터넷 이용률'(17.7%p), '온라인 경제활동률'(17.0%p)의 차이가 큼

1) 물리적 접근성

(1) 장애인 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상지의지	1.7	1.1	지적, 자폐성장애	교육과목훈련용 보조기구	8.2	1.7
	하지의지	2.2	1.7		터치모니터	7.3	1.9
	척추보조기	7.7	5.7		기타	1.2	0.3
	상지보조기	1.1	0.9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1.1	10.6
	하지보조기	4.4	3.4		기타	2.7	0.2
	맞춤형 교정용신발	4.3	2.4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47.4	27.4
	지팡이	18.5	18.3		인공호흡기	33.3	16.4
	목발	2.7	3.5		호흡근육훈련기	12.9	1.1
	보행기	7.8	6.1		기타	9.3	7.9
	전동휠체어	6.5	2.4	안면장애	압력옷	–	–
	수동휠체어	6.8	6.1		기타	–	–
	전동스쿠터	4.8	2.1	장루, 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1.6	91.6
	자세보조용구	3.5	1.4		피부보호판	90.9	90.5
	상하지운동기구	5.8	1.2		기타	39.0	39.0
	기타	4.1	3.7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4.0	2.0
시각장애	안경(콘텍트렌즈)	64.1	61.4		**욕창방지용방석**	3.0	1.5
	저시력보조기	17.5	7.3		**침대 (전동 및 수동)**	5.4	1.7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15.0	11.8		**기립보조기구**	2.9	0.6
	의안	9.7	8.4		**기저귀매트**	2.8	2.0
	스크린 리더	3.7	0.8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7.2	2.7
	화면 확대기	15.9	4.0		**이동변기**	4.5	2.7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3.4	2.0		**특수 키보드**	0.3	0.1

주: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중 굵은 글씨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지팡이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행기 7.8%, 척주보조기 7.7% 순이며, 소지여부는 지팡이 18.3%, 보행기 6.1%, 수동휠체어 6.1%, 척추보조기 5.7% 순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안경(콘텍트렌즈)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시력보조기 17.6%, 화면 확대기 15.9% 순이며, 소지여부는 안경(콘텍트렌즈) 61.4%,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11.8%, 저시력보조기 7.3% 순임
- 지적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교육과목훈련용 보조기구가 8.2%, 터치모니터가 7.3%로 나타났고 소지여부는 각각 1.7%, 1.9%임
- 신장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복막투석기구가 11.1%였고 소지여부는 10.6%임
- 호흡기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산소발생기가 47.4%, 인공호흡기가 33.3%로 나타났고 소지여부는 각각 27.4%, 16.4%임
- 장루·요루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장루주머니가 91.6%, 피부보호판이 90.9%로 나타났고 소지여부는 각각 91.6%, 90.5%임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계속)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시각장애	음성손목/탁상시계	12.4	4.9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9.6	9.6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2.6	–		음성증폭기	2.8	–
	점자프린터	1.3	0.1		기타	2.1	–
	화면해설기	4.1	1.3	전체	**특수 마우스**	0.3	0.1
	음성유도장치	4.6	0.9		**각종 스위치**	1.0	0.1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2.7	0.2		**음성인식장치**	0.9	0.1
	기타	3.9	3.2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3	0.1
청각장애	**보청기**	12.0	9.3		**환경제어장치**	0.4	0.1
	화상전화기	10.9	3.6		**의사소통보조기**	0.7	0.1
	골도전화기	1.8	0.4		**리프트**	0.4	0.1
	문자전화기	6.6	2.7		**주택개조 (경사로 등)**	5.7	0.4
	문자송수신기	1.8	1.0		**장애인용 의복**	0.2	0.1
	음성증폭기	12.2	2.2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7	0.3
	인공와우	7.6	3.6		**경보 시스템**	4.6	0.7
	자막수신기	7.6	2.5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구**	0.1	0.1
	신호표시기 (시각,음향)	8.7	1.4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구**	0.1	0.1
	기타	0.2	0.2		**기타**	0.5	0.4
					산소발생기	0.4	0.2
					인공호흡기	0.2	0.1

주: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중 굵은 글씨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청각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음성증폭기가 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청기 12.0%, 화상전화기 10.9% 순이며, 소지여부는 보청기 9.3%, 화상전화기 3.6%, 인공와우 3.6%, 문자전화기 2.7% 순임
– 언어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인공후두(성대)가 9.6%, 음성증폭기가 2.8%로 나타났고 소지여부는 각각 9.6%, 0%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기구 필요여부는 지팡이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행기 7.8%,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7.2% 순이며, 소지여부는 지팡이 18.3%, 보행기 6.1%, 수동휠체어 6.1%, 목발 3.5% 순임

(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실적

〈표 12-1-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현황 – 정부 부처별

(단위: 억원, 개수, 건수)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보험급여과	요양보험제도과	기초의료보장과	장애인 자립기반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	장애인고용과	보훈의료과	정보활용 지원팀
사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	산재보험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	정보격차 해소지원
지원기관	건보공단	건보공단	시·군·구	시·군·구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보훈병원	정보문화 진흥원
2016년 결산	1,101	1,262	278	14	63	64	61	39
2017년 예산	–	–	–	14	869	80	61	32
2017년 품목 수	85	17	85	22	204	58	44	21
지급실적	131,738	2,711,477	34,152	6,036	23,134	7,020	10,500	4,256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 및 차상위	산재보험 가입자	장애인고용 사업주	국가유공 상이자	등록 장애인
주요 지급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욕창방석 목욕의자	의지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욕창방석, 음성시계 등	의지보조기, 직업용 특수 휠체어	정보접근, 보조기구, 작업기구	의지보조기, 욕창방석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DB 관리체계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행복e음		통합노동보험 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업무 시스템	통합보훈 시스템	정보문화 진흥원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이 1,2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이 1,101억원, 의료급여가 278억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64억원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 품목수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이 204개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각각 85개, 보조공학기기지원이 58개임
-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2,711,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131,738건 , 의료급여 34,152건 순임

〈표 12-1-3〉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천원)

구 분	전 체	
	건수	금액
2001	22,150	6,489,959
2002	24,566	6,693,043
2003	27,067	7,149,238
2004	32,079	8,599,146
2005	48,957	21,669,161
2006	68,359	37,969,972
2007	96,844	61,536,703
2008	89,155	44,046,494
2009	77,106	34,286,658
2010	66,132	28,902,450
2011	68,125	27,180,231
2012	64,407	27,362,806
2013	71,350	32,306,026
2014	74,268	34,240,129
2015	83,077	46,323,900
2016	131,731	110,073,298
서울	23,171	16,046,322
부산	7,003	5,911,412
대구	6,366	5,252,177
인천	5,966	5,314,646
광주	3,075	2,720,859
대전	4,811	3,873,281
울산	2,065	1,810,790
세종	554	462,540
경기	26,717	21,527,969
강원	4,407	4,054,885
충북	4,516	4,261,678
충남	6,747	6,407,968
전북	8,482	7,429,892
전남	7,754	6,844,709
경북	10,728	9,423,706
경남	7,794	7,258,220
제주	1,575	1,472,244

주: 지급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 2016년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건수는 131,731건이며 지급액은 110,073,29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함
  -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부터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비율을 인하하고, 지원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5.6.30.,일부개정 / 2015.11.13., 일부개정)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이 지급건수 및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건복지부령 제521호, 2017.9.19., 일부개정)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실적

〈표 12-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2012		588,483	–	–	–	–	–	–	–
2013		800,020	–	–	–	–	–	–	–
2014		650,542	81,352	104,946	107,331	96,178	187,506	73,138	91
2015		638,285	81,227	105,256	105,014	96,905	186,465	63,399	19
2016		498,164	66,161	88,891	85,064	76,646	146,446	34,946	10
지체	지체(전환대상)	420	32	67	134	75	87	25	–
	지체(상지절단)	2,692	89	352	611	587	349	704	–
	지체(하지절단)	8,452	366	863	4,362	2,612	120	129	–
	지체(상지관절)	3,056	20	130	321	1,671	296	617	1
	지체(하지관절)	95,817	205	1,116	4,811	29,918	46,235	13,530	2
	지체(상지기능)	7,276	471	1,377	2,724	1,387	726	591	–
	지체(하지기능)	96,649	11,118	15,755	29,417	21,633	18,395	331	–
	지체(척추)	98,938	444	5,071	6,869	3,749	67,953	14,850	2
	지체(변형)	1,058	20	28	92	99	502	317	–
뇌병변		78,781	20,961	21,568	25,419	8,207	1,783	841	2
시각		29,235	10,397	2,227	4,404	3,979	5,704	2,524	–
청각	청각(전환대상)	13	2	2	4	2	2	1	–
	청각(청력)	6,560	7	1,578	1,535	1,682	1,272	486	–
	청각(평형기능)	224	–	2	61	49	112	–	–
언어		1,423	4	5	811	603	–	–	–
지적장애		19,738	14,823	3,140	1,775	–	–	–	–
자폐성장애		12,068	6,100	5,854	114	–	–	–	–
정신		1,354	187	400	765	–	–	–	2
신장		29,700	–	27,238	–	–	2,462	–	–
심장		647	54	281	264	1	47	–	–
호흡기		2,724	736	1,560	414	–	14	–	–
간		606	125	150	27	–	304	–	–
안면		117	–	21	38	58	–	–	–
장루.요루		437	–	61	49	255	72	–	–
뇌전증		179	–	45	43	79	11	–	1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굵은 글씨 부분은 현행 보행장애기준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유형별 등급으로 주차 가능 표지를 회수해야 할 대상임(약 130천건)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6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498,1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척추)장애가 98,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하지기능)장애 96,649건, 지체(하지관절)이 95,817건 순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4) 편의시설 설치

〈표 12-1-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단위: 개, %)

편의시설 종류	2008년도					2013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및 설치율		적정 설치 수 및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및 설치율		적정 설치 수 및 적정 설치율	
계	3,370,932	2,622,643	77.8	1,943,096	57.6	3,486,425	2,726,127	78.2	2,391,468	68.6
매개시설	1,342,840	1,035,594	77.1	754,353	56.2	1,455,010	1,202,226	82.6	1,063,331	73.1
내부시설	1,406,739	1,231,281	87.5	959,834	68.2	1,030,043	969,146	94.1	867,051	84.2
위생시설	512,965	286,607	55.9	183,238	35.7	808,790	414,059	51.2	336,763	41.6
안내시설	28,994	14,350	49.5	7,498	25.9	77,309	43,077	55.7	35,019	45.3
기타시설	79,394	54,811	69.0	38,173	48.1	115,273	97,619	84.7	89,304	77.5

주: 1) 설치기준 항목 수: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
2)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08). 「200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2008년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77.8%, 적정설치율은 57.6%인 반면, 2013년도의 설치율은 78.2%, 적정 설치율은 68.6%로 증가함
  - 2013년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내부시설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시설 84.7%, 매개시설 82.6% 순임

〈표 12-1-6〉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단위: 개, %)

구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및 설치율		적정 설치 수 및 적정 설치율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시도별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세종)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1,973	733,461	539,767	73.6	456,772	62.3
	민간시설	129,600	5,571,913	3,743,912	67.2	3,338,376	59.9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27,050	1,001,853	701,339	70.0	612,251	61.1
	2종 근린생활시설	10,190	301,604	199,605	66.2	181,666	60.2
	문화·집회시설	1,563	98,369	74,073	75.3	65,840	66.9
	종교시설	4,669	142,909	100,510	70.3	89,431	62.6
	판매시설	1,526	79,737	58,500	73.4	52,750	66.2
	의료시설	2,537	179,940	134,855	74.9	118,955	66.1
	교육연구시설	14,765	925,477	653,449	70.6	573,285	61.9
	노유자 시설	19,698	1,158,246	691,116	59.7	606,439	52.4
	수련시설	424	32,997	24,256	73.5	20,930	63.4
	운동시설	1,317	46,605	32,880	70.6	29,982	64.3
	업무시설	9,706	563,796	404,033	71.7	355,133	63.0
	숙박시설	4,335	212,873	149,000	70.0	132,230	62.1
	공장	5,483	263,260	138,490	52.6	124,925	47.5
	자동차관련시설	1,501	35,931	25,087	69.8	22,541	62.7
	방송통신시설	205	9,763	7,246	74.2	6,373	65.3
	교정시설	36	1,998	1,559	78.0	1,303	65.2
	묘지관련시설	98	4,199	2,731	65.0	2,426	57.8
	관광휴게시설	235	10,289	8,310	80.8	7,492	72.8
	장례식장	298	19,869	13,500	67.9	11,468	57.7
	공원	1,418	27,656	15,307	55.3	13,557	49.0
	공동주택	34,099	1,161,272	830,279	71.5	750,881	64.7
	기숙사	420	26,731	17,554	65.7	15,290	57.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72.2%로 가장 높았고 부산 71.5%, 강원 71.4% 순임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울산이 66.8%로 가장 높았고 부산 65.9%, 제주 64.7% 순임
- 시설주체별로 살펴보면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모두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각각 6.4%p, 2.4%p 높음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80.8%로 가장 높았고 교정시설 78.0%, 문화·집회시설 75.3% 순임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이 72.8%로 가장 높았고 문화·집회시설 66.9%, 판매시설 66.2% 순임

(5) 이동 편의시설 설치

〈표 12-1-7〉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준적합률						기준 적합률	기준 미적합	미설치
교통수단	버스차량	79.2	79.3	63.5	81.5	77.1	82.7	85.3	11.5	3.2
	철도차량	81.9	93.1	93.2	93.2	93.4	93.5	93.8	4.7	1.5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	–	–	91.6	–	91.7	–	91.7	7.5	0.8
	항공기	100.0	97.7	98.0	98.1	98.2	98.3	98.7	1.3	–
	여객선	10.4	16.9	16.8	16.7	17.1	17.0	17.6	9.9	72.4
	평균	67.9	71.8	72.6	72.4	75.5	72.9	77.4	7.0	15.6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47.0	42.8	49.8	51.4	51.5	56.9	54.4	12.4	33.2
	버스정류장	26.6	30.9	45.2	32.7	47.3	34.2	39.4	14.9	45.7
	철도역사	69.9	69.9	82.0	74.0	82.2	76.9	81.0	6.2	12.8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	82.4	83.8	79.4	84.1	82.7	84.7	83.6	5.7	10.7
	공항	66.8	75.0	81.4	74.9	82.2	75.3	80.9	4.8	14.3
	여객선터미널	56.3	62.8	64.2	63.3	71.0	64.2	67.6	9.5	22.9
	평균	58.2	60.9	67.0	63.4	69.5	65.4	67.8	8.9	23.3
보행 환경		36.7	60.3	74.3	62.6	74.5	65.8	72.2	12.3	15.5
전체 평균		54.2	64.3	71.3	66.1	73.2	68.0	72.5	9.4	18.1

주: 1) 특별·광역시와 10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 5년마다 전국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함
2) 2011, 2016년은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함
3) 2010년에는 9개도, 2012, 2014년에는 7대 특별·광역시, 2013, 2015년에는 9개 시·도 및 세종시(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각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2016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체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5%이며, 2011년 64.3%보다 8.2%p 향상됨
- 2016년 기준으로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평균 77.4%이며 항공기 98.7%, 철도차량 93.8%, 버스차량 85.3% 순임
- 2016년 기준으로 여객시설의 이동약자 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평균 67.8%이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 83.6%, 철도역사 81.0%, 공항 80.9% 순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2-1-8〉 저상버스 도입 현황

(단위: 대, %)

구분	합계	연도별 도입 대수					
		200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6,447 (19.0)	3,673	731	686	723	505	129
서울	2,757 (37.1)	1,739	197	263	236	186	136
부산	461 (18.4)	180	79	76	64	53	9
대구	345 (22.7)	145	26	30	25	80	39
인천	296 (12.7)	127	42	47	81	-3	2
광주	171 (17.1)	72	14	19	12	37	17
대전	224 (23.2)	111	24	26	14	39	10
울산	82 (11.2)	59	9	8	7	-2	1
세종	40 (29.0)	-	-	26	6	-	8
경기	1,051 (9.9)	761	147	73	203	32	-165
강원	167 (29.3)	95	29	18	8	14	3
충북	114 (19.7)	75	15	7	3	11	3
충남	85 (9.0)	17	3	22	15	1	27
전북	151 (18.2)	-	54	6	48	25	18
전남	60 (8.4)	33	5	8	-	9	5
경북	91 (7.6)	10	14	19	4	34	10
경남	347 (21.0)	239	73	39	-3	-7	6
제주	5 (-)	10	0	-1	0	-4	0

주: 1) 2016년 7월 기준임
2) ( )는 저상버스 보급률임. 보급률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시내버스 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3) 정상버스 보급대수의 음수는 저상버스가 폐차된 후 대차되지 않아 감차된 숫자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2017). 「20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2012년 이후 저상버스의 도입은 2014년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임.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447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의 19.0%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129건으로 가장 적음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37.1%로 가장 높았고 강원 29.3%, 세종 29.0% 순임

〈표 12-1-9〉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단위: 명, 대, %)

구분	장애인 1.2급	법정대수	운행대수	보급률
2013	548,724	2,780	1,752	63.0
2014	538,775	2,692	2,298	85.4
2015	546044	2726	2601	95.4
2016	543,659	2,731	2,820	103.3
서울	86,241	431	437	101.4
부산	36,317	182	201	110.4
대구	25,518	128	128	100.0
인천	27,765	139	140	100.7
광주	15,195	76	97	127.6
대전	15,61	78	82	105.1
울산	9,937	50	51	102.0
세종	2,038	10	10	100.0
경기	13,423	578	651	112.6
강원	20,65	103	98	95.1
충북	2,972	15	12	97.4
충남	26,409	131	100	76.3
전북	26,510	134	139	103.7
전남	29,138	146	100	68.5
경북	35,895	180	15	63.9
경남	42,243	21	319	151.2
제주	7,742	39	40	102.6

주: 1) 각년도 말 기준
2) 법정기준대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정하고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각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2016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820대로 법정대수 2,731대 대비 103.3%의 도입률을 나타내고 있음
  - 경남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151.2%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고, 경북이 63.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음

2) 정보 접근성

(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현황

(단위: %)

구분	디지털정보화수준 (디지털정보격차지수)	디지털정보접근지수	디지털정보역량지수	디지털정보활용지수
2014	60.2	79.9	45.0	59.7
2015	62.5	83.5	47.0	62.4
2016	65.4	88.1	49.8	64.6

주: 1)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종합) = 디지털정보접근지수(0.2) + 디지털정보역량지수(0.4) + 디지털정보활용지수(0.4)
2)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접근지수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3)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4)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6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단위: %, %p)

구분	일반국민	장애인	차이(%p)
인터넷 이용률	88.3	70.6	17.7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6.5	90.3	6.2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95.4	88.8	6.6
생활서비스 이용률	87.1	68.1	19.0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53.7	37.8	15.9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68.9	57.3	11.6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32.2	26.4	5.8
온라인 경제활동률	48.9	31.9	17.0

주: 1) 인터넷 이용률: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2)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정보 및 뉴스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콘텐츠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3)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SNS, 메신저,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3)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4) 생활 서비스 이용률: 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및 예약/예매,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5)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직접 만든 정보나 타인이 만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6)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 표현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사 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활동을 하는 것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6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임
  - 디지털정보격차 지수를 구성하는 지수 중 디지털정보접근지수가 88.1%로 가장 높은 반면,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49.8%로 가장 낮음
-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이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88.8%, 인터넷 이용률 70.6%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수치가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남. 특히 '생활서비스 이용률'(19.0%p), '인터넷 이용률'(17.7%p), '온라인 경제활동률'(17.0%p)의 차이가 큼

(2) 정보 접근성

〈표 12-2-3〉 장애인 정보 접근성 현황 -웹사이트

(단위: 개, 점, %)

구분		2012	2013	2015
웹사이트 수(민간)		199(199)	292(225)	700(-)
총점(민간)		90.1(90.1)	89(79)	83.9(-)
웹사이트 운영기관 특성별	공공기관	-	87.5	86.6
	교육기관	-	86	84.1
	문화예술체육	-	87.1	87.1
	민간기업	-	78.5	82.5
	방송언론	-	67.6	77.2
	복지시설	-	67.9	83.1
	의료기관	-	83.2	85.2
인식의 용이성	계	94.9	91.1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96.2	92	42.3
	자막제공	89.4	88.1	96.9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97	96.5	95.7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99.7	99.1	99.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96.4	80.9	68.4
	배경음 사용금지	99.5	100.0	99.8
운영의 용이성	계	85.6	89.9	
	콘텐츠 간의 구분	-	-	99.4
	키보드 사용보장	79.9	90	74.2
	초점 이동	82.3	85	74.1
	조작 가능	-	-	98.6
	응답시간 조절	100.0	100.0	99.9
	정지 기능 제공	79.6	71.6	93.2
	깜빡임 및 번쩍임 사용제한	99.5	100.0	99.9
	반복 영역 건너뛰기	80.5	88.8	78.2
	제목 제공	90.2	93.2	62.0
	적절한 링크 텍스트	97.6	98.3	92.0
이해의 용이성	계	89.8	77.4	
	기본 언어 표시	84.4	88	84.6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90.5	57.2	78.7
	콘텐츠의 선형화	95.5	82.6	94.1
	표의 구성	91.7	91.1	57.9
	레이블 제공	74.2	59.4	71.6
	오류정정	99	100.0	95.4
견고성	계	92.5	99.3	
	마크업 오류 방지	98.7	99.6	74.9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90.1	99.2	-

주: 1) %는 준수율을 나타내며, 2015년 하반기 검사점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2) 2012년과 2013년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적용하여 조사하였음
3) 2013년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대민서비스 기관을 제외한 점수이며, 각 기관의 총점은 92.4, 90.4, 88.7, 87.4로 집계됨
4) 2015년의 경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웹사이트는 인지도 및 이용률이 높은 100개의 사이트(랭키닷컴의 '15년 9월 접속 순위를 기준으로 100위까지 진단)를 포함하여 총 700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함
5) 2015년부터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검사 항목 기준을 적용함
자료: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2016). 「2015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_웹사이트」

- 공공부문의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총점은 매년 웹사이트 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2년 90.1점에서 2013년 89점, 2015년 83.9점으로 감소함
  - 웹사이트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체육분야가 8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송 · 언론분야가 77.2점으로 가장 낮음
  - 검사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83.9점보다 준수율이 낮은 검사항목은 총 10개 항목으로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키보드 사용보장, 초점 이동, 반복 영역 건너뛰기 링크, 제목제공,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마크업 오류 방지 등이 해당함
  - 특히, 적절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은 42.3%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여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
-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모든 기관·기업의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표 12-2-4〉 장애인 정보 접근성 현황 - 모바일 앱

(단위: 점, %)

구분	2015															
	전체	메신저	검색/포털	커뮤니케이션	지역/교통	기타 유틸리티	쇼핑	음악/라디오	동영상/방송	은행	금융/경제 기타	엔터테인먼트	음식/맛집	멤버십/마일리지	생활도구	사진/카메라
총점	78.1	86.1	91.5	75.9	73.8	83.8	74.0	73.3	87.1	78.2	73.8	67.4	78.9	70.9	73.7	76.1
대체 텍스트	57.0	79.2	77.9	57.0	50.8	64.5	48.3	47.2	70.8	54.2	36.7	41.7	56.3	50.0	59.5	50.0
초점	70.2	87.5	85.4	65.8	60.3	74.0	78.4	69.5	87.6	66.6	86.7	50.0	66.8	58.3	69.1	83.3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지원	92.6	66.5	95.8	96.4	80.0	100.0	98.3	100.0	100.0	98.0	86.8	100.0	79.0	86.1	95.3	100.0
누르기 동작지원	97.8	100.0	100.0	100.0	98.5	99.3	98.4	86.3	100.0	100.0	100.0	88.0	98.0	100	93.0	83.0
색에 무관한 인식	98.3	100.0	100.0	99.1	96.7	100.0	100.0	100.0	100.0	91.8	100.0	100.0	91.4	100	97.7	100.0
명도 대비	70.9	50.0	70.7	61.4	83.4	70.4	84.1	52.6	83.6	95.7	60.3	37.5	58.4	47.2	80.8	41.4
자막 수화제공	98.7	100.0	100.0	100	98.4	100.0	98.3	88.9	91.7	100.0	100.0	100.0	100.0	100.0	97.6	100.0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	95.1	100.0	91.6	90.4	96.0	98.5	100.0	100.0	100.0	91.3	100	100.0	95.9	61.0	97.7	100.0
알림 기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99.4	100.0	100.0	98.2	9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5	100.0
깜빡거림 사용제한	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5.2	100.0
배경음 사용금지	99.2	100.0	100.0	100.0	98.3	99.2	100.0	97.1	100.0	100.0	100.0	95.6	100.0	100.0	100.0	83.8

주: 1) %는 준수율을 나타내며, 2015년 하반기 검사점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조사는 랭키닷컴 상위 50위 앱과 자체선정 50개 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앱 유형은 랭키닷컴의 분류체계를 준용함
3) 각 항목은 매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107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으며 대체텍스트, 초점 항목의 배점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 높게 배점하였음

자료: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2016). 「2015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_모바일 앱」

- 모바일 앱 접근성은 2015년 78.1점으로 2014년 76.7점보다 1.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모바일 앱 유형별로는 검색/포털이 91.5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유틸리티 90.7점, 동영상/방송 87.1점, 메신저 86.1점 순이었음
  - 반면 엔터테인먼트는 67.4점, 멤버십/마일리지 70.9점, 음악/라디오 73.3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모바일 앱 접근성 항목별로는 알림기능 준수율이 모든 앱 유형에서 100.0%로 가장 높았고, 깜빡거림 사용제한 99.5%,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99.4% 순임
  - 반면 대체 텍스트 57.0%, 초점 70.2%, 명도대비 70.9% 순으로 준수율이 낮게 나타남

3) 사법 접근성

(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96.10.1.-'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민사 등	건	29,422	2,987	2,692	4,728	5,706	6,007	5,571	5,561	5,761	3,926	1,968	74,329
	금액	5,921	785	645	1,072	1,143	1,101	1,009	1,062	1,084	841	430	15,093
형사 등	건	4,356	516	317	461	384	359	362	393	343	279	187	7,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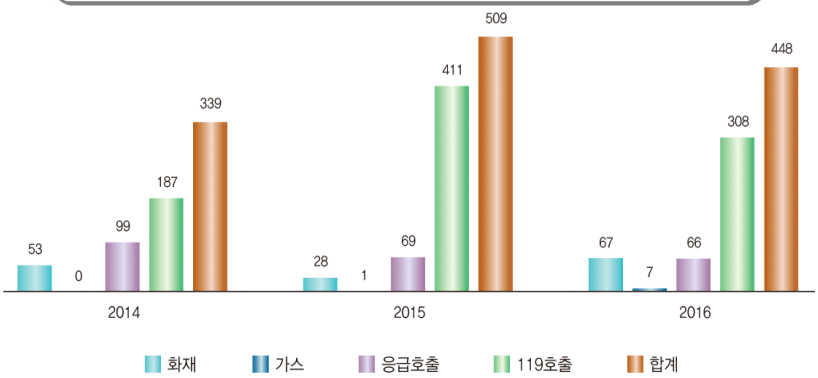
주: 1)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장애인(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자부담)
2) 대상자 증빙서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3)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무료는 1-6급),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범죄·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4)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증빙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치료비 명세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신체감정서,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기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2017.11.12. 검색)

- 2016년 민사 등의 건수는 1,968건이며 금액은 43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절반가량 감소함
- 2016년 형사 등의 건수는 18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폭 감소함

13. 재난 및 안전

[그림 2-13-1] 응급출동 현황



– 응급출동 현황은 2016년 44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응급상황별로 살펴보면 119호출이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67건, 응급호출 66건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에 비해 119호출은 감소한 반면, 화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1) 장애인 응급안전망

(1) 응급 출동 실적

〈표 13-1-1〉 응급 출동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응급상황			
			화재	가스	응급호출	119호출
2013년		25	2	–	7	16
2014년		339	53	–	99	187
2015년		509	28	1	69	411
2016년	계	448	67	7	66	308
	1월	35	3	–	5	27
	2월	27	–	–	6	21
	3월	31	3	–	10	18
	4월	50	–	–	17	33
	5월	40	9	–	6	25
	6월	38	12	–	2	24
	7월	35	4	–	3	28
	8월	52	8	–	3	41
	9월	52	7	6	2	37
	10월	67	9	–	4	54
	11월	11	8	1	2	–
	12월	10	4	–	6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응급출동 현황은 2016년 44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응급상황별로 살펴보면 119호출이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67건, 응급호출 66건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에 비해 119호출은 감소한 반면, 화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2) 장애인 안전시설

(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단위: 개, %)

구분	2008년도					2013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28,994	14,350	49.5	7,498	25.9	77,309	43,077	55.7	35,019	45.3
유도 및 안내 설비	5,612	1,389	24.8	896	16.0	16,237	8,523	52.5	7,720	47.5
경보 및 피난 설비	5,612	3,824	68.1	1,339	23.9	32,564	25,522	78.4	19,840	60.9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	17,770	9,137	51.4	5,263	29.6	28,508	9,032	31.7	7,459	26.2
승강기	173,763	152,065	87.5	138,852	79.9	73,350	70,813	96.5	68,211	93.0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율은 2008년 49.5%에서 2013년 55.7%로 증가하였고 적정 설치율 또한 2008년 25.9%에서 2013년 45.3%로 증가함
  - 2013년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승강기이며 각각 96.5%, 93.0%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경로 및 피난설비가 각각 78.4%, 60.9%, 유도 및 안내설비가 각각 52.5%, 47.5%,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이 각각 31.7%, 26.2%로 나타남

장애인 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
-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았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단위: 개, %)

구분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77,642	30,107	38.8	27,825	35.8	32,564	25,522	78.4	19,840	60.9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3,848	5,464	39.5	5,016	36.2	5,758	4,586	79.6	3,426	59.5
	민간시설	63,794	24,643	38.6	22,809	35.8	26,806	20,936	78.1	16,414	61.2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	–	–	–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2,013	674	33.5	627	31.1	831	684	82.3	513	61.7
	의료시설	11,966	4,314	36.1	3,915	32.7	5,018	4,104	81.8	3,250	64.8
	교육연구시설	41,526	16,784	40.4	15,639	37.7	17,477	13,540	77.5	10,550	60.4
	노유자시설	8,289	2,871	34.6	2,628	31.7	3,480	2,608	74.9	2,101	60.4
	업무시설	13,848	5,464	39.5	5,016	36.2	5,758	4,586	79.6	3,426	59.5
	숙박시설	–	–	–	–	–	–	–	–	–	–
	장례식장	–	–	–	–	–	–	–	–	–	–
	판매시설	–	–	–	–	–	–	–	–	–	–
	수련시설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	–	–	–	–
	교정시설	–	–	–	–	–	–	–	–	–	–
	공동주택	–	–	–	–	–	–	–	–	–	–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함.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2013년 기준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은 전반적으로 민간시설보다 공공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은 교육연구시설 40.4%, 업무시설 39.5%, 의료시설 36.1% 순으로 높음
- 경보 및 피난 설비의 설치율은 문화 및 집회시설 82.3%, 의료시설 81.8%, 업무시설 79.6% 순으로 높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계속)

(단위: 개, %)

구분		점자블록					승강기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85,524	27,014	31.6	23,046	26.9	244,500	227,888	93.2	208,200	85.2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35,463	12,672	35.7	10,524	29.7	20,920	19,695	94.1	17,802	85.1
	민간시설	50,061	14,342	28.6	12,522	25.0	223,580	208,193	93.1	190,398	85.2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31,668	9,073	28.7	7,407	23.4	26,140	24,014	91.9	21,670	82.9
	문화 및 집회시설	3,456	1,184	34.3	1,021	29.5	7,080	6,666	94.2	6,000	84.7
	의료시설	7,482	2,350	31.4	2,087	27.9	15,980	14,954	93.6	13,723	85.9
	교육연구시설	26,379	8,119	30.8	7,152	27.1	54,870	52,170	95.1	48,300	88.0
	노유자시설	5,259	1,374	26.1	1,169	22.2	35,090	32,362	92.2	29,287	83.5
	업무시설	8,685	4,343	50.0	3,713	42.8	32,520	30,230	93.0	27,582	84.8
	숙박시설	1,710	440	25.7	400	23.4	2,870	2,477	86.3	2,177	75.9
	장례식장	885	131	14.8	97	11.0	1,150	1,073	93.3	986	85.7
	판매시설	-	-	-	-	-	6,360	5,925	93.2	5,455	85.8
	수련시설	-	-	-	-	-	1,450	1,386	95.6	1,247	86.0
	자동차관련시설	-	-	-	-	-	130	109	83.8	99	76.2
	방송통신시설	-	-	-	-	-	300	264	88.0	236	78.7
	교정시설	-	-	-	-	-	20	17	85.0	14	70.0
	공동주택	-	-	-	-	-	60,540	56,241	92.9	51,424	84.9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함.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2013년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업무시설 50.0%, 문화 및 집회시설 34.3%, 의료시설 31.4% 순으로 높음
- 승강기의 설치율은 모든 건물 유형에서 80%이상으로 나타났고 수련시설 95.6%, 교육연구시설 95.1%, 문화 및 집회시설 9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3) 장애인 보호구역

(1) 보호구역 지정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2005	7,065	7,065	–	–
2006	8,346	8,346	–	–
2007	8,429	8,429	–	–
2008	9,096	8,999	97	–
2009	9,789	9,584	205	–
2010	13,472	13,207	265	–
2011	15,338	14,921	417	–
2012	15,730	15,136	566	28
2013	16,105	15,444	626	35
2014	16,537	15,799	697	41
2015	16,995	16,085	859	51
2016	17,531	16,355	1,107	69
서울	1,837	1730	102	5
부산	958	899	58	1
대구	823	771	49	3
인천	782	707	70	5
광주	659	601	47	11
대전	529	463	65	1
울산	372	346	24	2
세종	90	85	5	–
경기	3,726	3534	173	19
강원	796	771	25	–
충북	771	745	26	–
충남	1,280	1024	246	10
전북	1,019	997	22	–
전남	1,041	1019	22	–
경북	1,237	1157	80	–
경남	1,237	1193	44	–
제주	374	313	49	12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보호구역은 어린이(1995년), 노인(2008년), 장애인(2012년) 순으로 지정됨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19.]'에 의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복지시설)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201). 「2017 재난안전통계연보」

–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보호구역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16,355개로 가장 많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69개로 가장 적음
- 장애인 보호구역이 한 개도 없는 지역은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17개시도 중 7개 시도에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Ⅲ

국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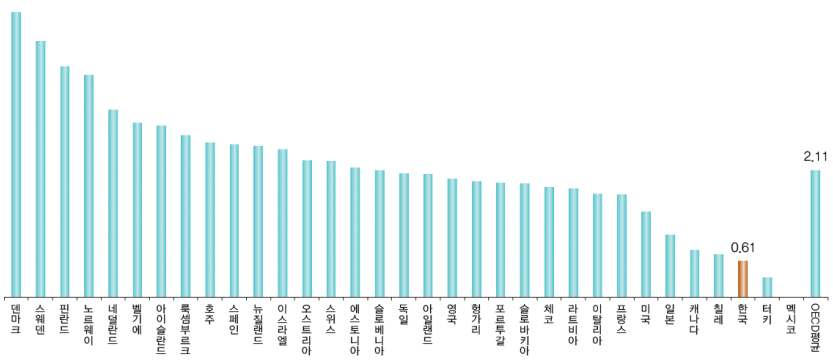
1. OECD
2. 프랑스
3. 독일
4. 스웨덴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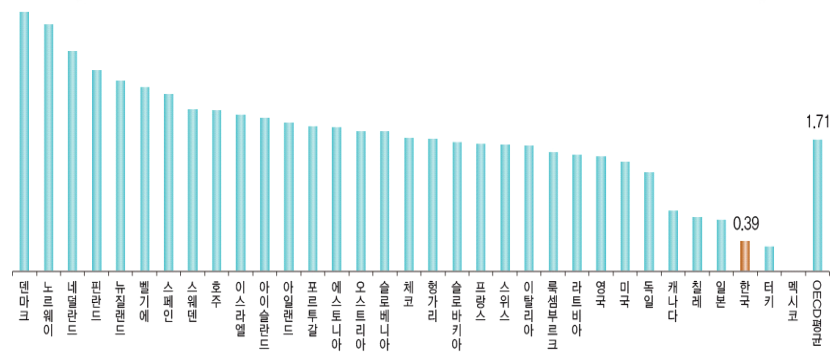
Ⅲ. 국외통계

1. OECD 회원국

[그림 3-1-1]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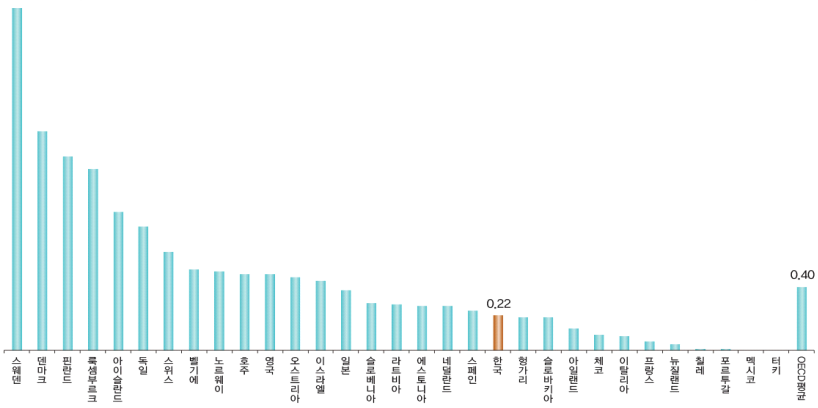


[그림 3-1-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2013년 기준)



- 2013년 OECD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1%로 한국의 0.61%에 비해 약 3.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4%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OECD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0.61%로 제시됨(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그림 3-1-3]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2013년 기준)



– OECD국가의 경우 GDP 대비 장애인복지 관련 현금급여의 비중은 1990년대 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84%로 다소 반등하였으나, 2010년 1.78%로 다시 감소하여 현재까지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2013년 현재 0.39%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1.71%의 약 1/5 수준임

– OECD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는 2013년 0.4%로 2005년부터 약 0.4%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0.22%로 OECD 평균 0.4%에 비하여 약 절반수준임
  • 한국의 경우 현물급여 수준은 2000년 0.09%에서 2005년 0.22%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2010년 0.1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 0.21%로 다시 반등하여 2013년 현재 0.22%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 장애인구

(1) 장애출현율

〈표 14-1-1〉 OECD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단위 : %)

구 분	장애인 출현율
그리스	7.1
네덜란드	13.6
노르웨이	20.1
뉴질랜드	24.0
덴마크	15.1
독일	14.9
룩셈부르크	21.2
미국	12.1
벨기에	13.9
스웨덴	16.1
스위스	17.4
스페인	8.1
슬로바키아	10.3
슬로베니아	18.6
아이슬란드	19.2
아일랜드	5.3
에스토니아	18.5
영국	16.7
오스트리아	23.5
이스라엘	25.0
이탈리아	8.6
일본	5.6
체코	8.3
캐나다	13.7
터키	17.6
포르투갈	17.2
폴란드	14.2
프랑스	21.1
핀란드	22.3
한국	5.6
헝가리	13.2
호주	18.5
OECD-32	15.2

주: 1) 2013~2016년에 각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임
2) OECD-32은 32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칠레와 멕시코 제외)
3)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호주 : 활동의 어려움 또는 보조기구 필요여부, 도움 필요여부 등 핵심적인 활동제약이 있는 사람
- 캐나다 :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특별한 제약이 있는 사람
-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람
- 캐나다 :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특별한 제약이 있는 사람
- 뉴질랜드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로 판정된 사람
- 유럽국가 : 이동, 걷기, 보기, 듣기, 기억 및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미국 : 청각, 시각, 인지, 보행, 자기관리, 자립생활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각 나라별로 출현율과 고용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출현율
- 유럽국가: 15~65세로 산출
- 이스라엘 : 18~67세로 산출
- 캐나다 : 15세 이상 연령만 산출
-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 전 연령으로 산출
• 고용률
-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 15~64세로 산출
- 이스라엘 : 18~67세로 산출
5)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의 장애관련 조사는 비슷하나, 국가별 비교가능성은 조사와 결과의 번역 및 문화적 차이와 장애판정의 주관적인 요소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음

자료: 1) 유럽국가: 2011 EU labor force survey, 2015.12.
2) 호주: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 2012」, 2013
3) 캐나다: Sta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2, 2013
4) 이스라엘: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srael facts & figures, 2014
5) 한국: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4.12.
6) 뉴질랜드: Statistics New Zealand, 2013 Disability Survey, 2014
7) 미국: U.S. Census Bureau, 「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5
8) 노르웨이: 2012 European health and social integration survey, 2015.12.
9) 일본: 일본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6.5.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6). 「2016 장애인 통계」자료에서 재인용함

– OECD국가(32개 국가)의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출현율은 평균 15.2%로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 5.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수준임
•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25.0%, 뉴질랜드 24.0%, 오스트리아 23.5%, 핀란드 22.3% 등임
•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5.6%, 그리스 7.0%, 스페인 8.1% 등임

한국의 2014년 장애인 출현율

– 한국의 2014년 장애인 출현율은 5.59%로 2011년 5.61%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나(전체 연령 기준), 장애인 수는 증가하였음. 그 이유는 인구 증가폭보다 장애인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사고의 감소 등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4-1-2〉 OECD 국가별 및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2000년대 후반)

(단위: %)

구 분	20-34세	35-49세	50-64세
한국	2.6	5.1	13.3
멕시코	4.5	6.8	13.9
이탈리아	3.5	8.0	15.8
아이슬란드	10.3	13.5	16.2
스위스	5.0	9.7	16.9
그리스	2.4	7.0	16.9
룩셈부르크	4.0	10.1	17.2
미국	6.1	10.5	19.8
캐나다	5.6	11.1	19.9
스페인	4.7	10.3	20.9
벨기에	6.4	13.4	21.9
프랑스	6.3	11.1	23.0
호주	5.2	10.4	23.2
아일랜드	6.7	11.3	23.6
체코	5.7	11.6	23.6
스웨덴	10.6	18.1	25.5
폴란드	3.2	7.9	26.0
네덜란드	9.0	15.5	26.1
슬로베니아	5.6	12.8	26.5
슬로바키아	5.2	11.1	26.5
오스트리아	5.7	11.6	26.8
노르웨이	8.5	13.2	27.2
영국	8.8	15.4	29.5
덴마크	12.7	18.6	29.9
독일	7.1	14.2	30.4
핀란드	10.5	17.4	32.4
포르투갈	7.5	15.4	35.9
헝가리	6.8	17.9	41.5
에스토니아	10.3	19.1	42.8
OECD-27	6.5	12.1	23.8

주: 1) 2000년대 후반 연령별 인구 대비 자가판정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2000년대 후반 OECD국가(27개 국가)의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20~34세 6.5%, 35~49세 12.1%, 50~64세 23.8% 이며, 동일연령대 기준으로 한국은 2.6%, 5.1%, 13.3%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50-64세의 장애출현율은 20-34세, 35-49세에 비해 각각 3.7배, 2.0배 이상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2014년 연령별 장애출현율

- 2014년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세 1.43%, 25-29세 1.37%, 30-34세 2.12%, 35-39세 2.56%, 40-44세 3.50%, 45-49세 4.47%, 50-54세 6.26%, 55-59세 8.92%, 60-64세 10.50%, 65-69세 15.07%, 70-74세 19.61%, 75-79세 23.40%, 80세 이상 18.48%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 교육

(1)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표 14-2-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포르투갈	86.8	64.4
그리스	69.1	34.2
스페인	67.4	42.9
아일랜드	65.3	30.5
이탈리아	62.1	43.9
프랑스	46.5	24.4
룩셈부르크	44.7	32.3
호주	44.7	28.1
덴마크	42.3	23.7
벨기에	39.8	18.0
네덜란드	39.6	22.1
아이슬란드	39.1	27.6
슬로베니아	32.7	16.5
노르웨이	32.0	20.5
핀란드	29.7	16.2
헝가리	29.3	15.4
영국	28.2	12.6
오스트리아	27.4	14.7
스위스	27.0	12.2
캐나다	25.5	13.9
폴란드	25.3	10.5
에스토니아	21.0	9.7
미국	20.3	10.0
스웨덴	19.8	11.8
체코	19.4	8.0
독일	18.7	13.5
슬로바키아	14.1	5.0
OECD-25	38.6	22.2

주: 1) 2000년대 후반 근로가능연령대(20-64세) 장애인 중 저학력수준(상등중등교육 미만의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저학력 수준(ISCED 0-2))의 비율을 의미함
2) OECD-25는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OECD국가의 2000년대 후반 근로가능연령대(20-64세) 장애인 교육수준을 보면, 저학력수준(ISCED 0-2)은 OECD 평균 38.6%로 비장애인의 22.2%에 비해 16.4%p 높음
  - 국가별로는 포르투갈이 86.8%로 가장 높았으며, 슬로바키아가 14.1%로 가장 낮은 수준임

OECD국가의 학력수준은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6)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18-29세 청년장애인 교육수준

〈표 14-2-2〉 18-29세 청년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구 분	초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소계	비장애인	장애인	소계	비장애인	장애인	소계
오스트리아	24.9	37.9	26.2	65.5	51.9	64.2	9.6	10.3	9.66
벨기에	27.1	45.1	28.4	46.3	36.8	45.6	26.6	18.0	26.0
캐나다	33.6	42.0	34.7	44.9	42.8	44.6	21.5	15.3	20.7
체코	23.2	32.0	23.9	64.6	56.2	64.0	12.2	11.8	12.2
덴마크	27.6	38.1	29.6	56.2	47.9	54.7	16.2	14.1	15.8
에스토니아	31.8	47.1	33.0	48.6	36.8	47.7	19.6	16.1	19.3
핀란드	22.1	26.5	22.8	59.3	58.5	59.1	18.7	15.0	18.1
프랑스	22.1	33.9	23.0	49.6	40.7	49.0	28.2	25.4	28.0
독일	36.6	47.7	38.2	54.0	45.4	52.8	9.4	6.9	9.0
헝가리	30.0	42.4	30.6	58.1	50.4	57.7	11.9	7.2	11.7
아이슬란드	41.0	62.0	43.1	44.5	32.4	43.3	14.5	5.6	13.6
아일랜드	14.1	33.5	15.6	59.6	49.4	58.8	26.4	17.1	25.6
이탈리아	30.7	39.2	31.2	57.0	51.9	56.7	12.3	8.9	12.1
라트비아	35.6	51.4	37.1	48.4	37.4	47.4	16.0	11.2	15.5
룩셈부르크	40.1	34.3	39.8	41.0	49.2	41.5	18.9	16.5	18.7
네덜란드	15.7	29.9	17.8	53.6	47.6	52.7	30.7	22.5	29.5
노르웨이	39.2	48.5	40.0	40.0	44.4	40.4	20.8	7.1	19.6
폴란드	20.5	27.6	21.0	61.4	61.3	61.4	18.1	11.0	17.7
포르투갈	45.1	52.1	45.7	36.7	39.2	36.9	18.3	8.7	17.4
슬로바키아	22.0	24.6	22.2	61.7	59.4	61.5	16.3	16.0	16.3
슬로베니아	17.7	24.1	18.4	70.3	69.1	70.1	12.1	6.8	11.5
스페인	38.4	48.1	39.1	36.5	34.8	36.4	25.1	17.1	24.5
스웨덴	14.8	24.9	15.5	59.9	56.7	59.7	25.3	18.3	24.8
영국	9.9	19.3	10.6	64.9	60.0	64.5	25.2	20.7	24.9
미국	15.5	32.6	16.0	57.8	58.6	57.8	26.8	8.8	26.3
OECD	27.2	37.8	28.1	53.6	48.8	53.1	19.2	13.5	18.7

주: 1) 교육수준은 초졸이하(llow: lower than upper secondary education), 고졸이하(medium: uppe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non-tertiary), 대학이상(high: university/tertiary education)으로 구분함
2) 캐나다는 2007년, 미국은 2010년 기준임
3) OECD 평균은 저자산출
4) 유럽국가는 EUSILC(2009), 캐나다(2007)와 미국(2010)은 LIS의 자료에 의함

자료: OECD(2014). OECD Family Database(CO1.9 Child disability), OECD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INDICATORS)

- OECD국가의 2009년 청년장애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ISCED levels 0-2)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37.8%로 비장애인 27.2%에 비하여 약 10.6%p 높음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다소 낮음
  - 고졸이하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48.8%로 비장애인 53.6%에 비해 4.8%p 낮으며, 대학 이상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13.5%로 비장애인 19.2%에 비하여 5.7%p 낮음

3) 고용

(1) 고용률

〈표 14-3-1〉 OECD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스웨덴	54.6	53.6	62.3	77.7	80.1	83.9
아이슬란드	–	–	61.3	–	–	86.4
에스토니아	–	–	55.8	–	–	82.2
멕시코	47.2	60.2	55.4	61.1	65.8	66.8
스위스	–	–	54.9	–	–	85.5
덴마크	55.7	50.1	52.3	79.1	81.6	81.6
룩셈부르크	–	49.7	50.4	–	71.7	71.3
독일	52.4	60.4	50.4	74.0	77.2	73.7
포르투갈	50.2	51.8	47.9	75.7	79.3	75.4
캐나다	–	43.8	46.9	–	76.9	79.0
프랑스	45.9	49.1	45.8	68.5	70.0	71.8
영국	38.0	42.1	45.3	81.2	80.9	81.4
한국	43.9	44.7	44.7	71.5	68.8	70.3
노르웨이	–	47.1	44.7	–	86.0	83.4
네덜란드	40.2	48.5	44.5	65.5	74.8	80.5
오스트리아	48.9	48.7	43.9	74.8	76.7	70.8
핀란드	48.4	54.4	43.5	69.7	77.3	76.8
슬로베니아	–	–	41.3	–	–	69.7
슬로바키아	–	–	41.1	–	–	74.0
이탈리아	34.9	32.8	40.7	58.3	59.1	63.7
호주	41.9	–	39.8	76.6	–	79.4
미국	40.4	35.1	38.5	84.7	83.6	83.9
벨기에	38.6	43.9	36.3	67.5	70.6	71.5
스페인	27.0	25.5	35.7	56.3	63.0	71.1
체코	–	–	35.0	–	–	73.1
그리스	35.0	31.7	34.2	62.5	65.0	67.0
아일랜드	25.7	33.6	32.9	60.0	71.5	72.7
헝가리	–	–	31.7	–	–	71.3
폴란드	24.8	21.0	17.6	70.7	66.7	62.1
OECD-27	–	–	43.6	–	–	75.1

주: 1) OECD-27은 27개국의 고용률과 19개국의 지난 10년간에 상대적 고용률 추세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평균을 말함(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평균임)
2) 본 조사에서 근로가능연령은 20-64세 이며, 2000년대 후반 기준임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2000년대 후반 OECD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3.6%로 비장애인 75.1%에 비하여 31.5%p낮음
  • 한국은 2000년대 후반 44.7%로 OECD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 43.6%와 비슷한 수준이며, 비장애인 70.3%에 비하여 25.6%p낮음
–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웨덴 62.3%, 아이슬란드 61.3% 등 이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비장애인과의 격차도 적음
  • 이에 반해 폴란드 17.6%, 헝가리 31.7% 등의 국가들은 OECD국가 중 매우 낮은 고용률을 보이며, 비장애인과의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2) 시간제 고용률

〈표 14-3-2〉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고용률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상대적 비율
네덜란드	41.1	26.9	1.5
스위스	39.0	23.9	1.6
아일랜드	38.4	23.9	1.6
노르웨이	36.3	16.8	2.2
폴란드	33.3	9.8	3.4
미국	33.1	14.6	2.3
호주	32.8	20.8	1.6
영국	27.4	20.0	1.4
벨기에	26.9	15.9	1.7
독일	25.7	20.3	1.3
스웨덴	22.0	7.4	3.0
캐나다	21.8	12.5	1.7
룩셈부르크	21.6	14.8	1.5
프랑스	21.4	12.4	1.7
멕시코	18.8	13.2	1.4
아이슬란드	18.0	7.2	2.5
한국	17.3	10.6	1.6
이탈리아	16.7	12.4	1.3
오스트리아	15.6	15.0	1.0
덴마크	14.5	6.7	2.2
그리스	14.3	10.6	1.4
핀란드	13.4	9.2	1.5
포르투갈	12.4	5.3	2.3
슬로베니아	11.6	2.6	4.4
스페인	10.2	8.8	1.2
슬로바키아	9.5	1.6	6.0
헝가리	8.4	3.2	2.6
체코	8.4	1.7	5.0
에스토니아	7.2	5.0	1.4
OECD-27	22.1	12.8	2.1

주: 1) 시간제 근로란 일반적으로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를 말함. 단, 미국의 경우 지난 4주간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를 말함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한 평균임)
3) 상대적 비율 = 장애인 시간제 고용률 / 비장애인 시간제 고용률
4) 2000년 후반 기준임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2000년대 후반 OECD국가의 장애인 시간제 고용률은 22.1%로 비장애인 12.8%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7배 높은 수준임
  - OECD국가는 장애인 중 100명중 22명이, 비장애인은 100명 중 약 12명이 평균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함
  - 스웨덴과 폴란드는 장애인이 시간제 일자리에 근로한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비슷한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 시간제 고용률은 2000년대 후반 17.3%로 OECD국가의 장애인 시간제 고용률 22.1%에 비해 낮은 수준임

(3) 실업률

〈표 14-3-3〉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상대적 비율
체코	28.3	9.4	3.0
벨기에	27.7	9.3	3.0
독일	23.1	9.2	2.5
폴란드	21.8	19.0	1.1
스페인	21.7	9.5	2.3
아일랜드	20.1	7.3	2.8
핀란드	19.5	8.4	2.3
오스트리아	18.7	6.6	2.8
그리스	18.0	9.4	1.9
프랑스	17.7	8.5	2.1
포르투갈	15.7	9.5	1.7
헝가리	14.4	9.6	1.5
슬로바키아	14.1	8.0	1.8
룩셈부르크	12.8	3.9	3.3
이탈리아	11.6	8.5	1.4
한국	11.3	3.6	3.2
캐나다	9.0	5.8	1.6
스위스	8.4	2.7	3.1
슬로베니아	27.4	9.8	-
네덜란드	8.0	3.4	2.4
호주	7.8	4.2	1.9
스웨덴	7.6	3.7	2.1
덴마크	7.6	4.5	1.7
영국	7.4	4.2	1.8
노르웨이	6.9	3.7	1.9
미국	6.5	4.7	1.4
에스토니아	8.2	4.6	-
멕시코	2.7	2.5	1.1
아이슬란드	1.2	1.0	1.2
OECD-27	13.7	6.7	2.1

주: 1)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한 평균임)
2) 상대적 비율 = 장애인 실업률 / 비장애인 실업률
3) 2000년대 중반 20-64세 기준임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2000년대 중반 OECD국가의 장애인 실업률은 13.7%로 한국의 장애인 실업률 11.3%에 비하여 약 2.4%p 높음
  - OECD국가의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 6.7%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음
  - 한국의 실업률은 11.3%로 비장애인 3.6%에 비하여 약 3.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 격차는 룩셈부르크 3.3배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장애청년층(18-29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

〈표 14-3-4〉 장애청년층(18-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구 분	고용률			실업률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오스트리아	52.6	54.1	53.9	10.3	6.7	7.1
벨기에	36.0	46.6	45.8	18.6	8.0	8.8
캐나다	54.4	65.7	64.3	9.3	5.2	5.7
체코	39.0	49.4	48.7	10.0	7.3	7.5
덴마크	44.4	48.9	48.1	13.6	4.9	6.5
에스토니아	51.7	46.0	46.5	7.7	11.7	11.3
핀란드	55.4	56.0	55.9	9.4	8.2	8.4
프랑스	44.7	51.2	50.8	12.1	10.5	10.6
독일	46.6	51.7	51.0	15.3	5.7	7.0
헝가리	20.7	40.2	39.2	15.8	9.0	9.3
아이슬란드	34.5	53.1	51.2	13.7	4.3	5.3
아일랜드	25.6	46.5	44.7	12.9	15.9	15.6
이탈리아	37.3	39.9	39.8	16.4	15.0	15.1
라트비아	31.0	45.8	44.4	27.2	19.9	20.6
룩셈부르크	52.4	50.7	50.9	6.2	8.7	8.6
네덜란드	45.7	58.7	56.8	3.5	2.9	3.0
노르웨이	37.6	56.2	54.6	11.9	4.4	5.1
폴란드	29.9	50.1	48.9	8.9	8.1	8.1
포르투갈	40.2	55.0	53.6	13.2	12.0	12.1
슬로바키아	41.0	44.1	43.8	8.4	8.8	8.7
슬로베니아	39.1	40.4	40.3	11.1	7.5	7.9
스페인	38.0	46.0	45.4	23.1	17.9	18.3
스웨덴	29.0	55.7	53.8	19.1	9.2	9.9
영국	45.7	62.7	61.6	12.4	7.9	8.2
미국	12.6	62.6	61.2	5.0	9.9	9.8
한국	28.6	–	40.1	7.4	–	13.5
OECD	39.0	51.1	49.8	12.4	9.2	9.7

주: 1) 캐나다는 2007년, 미국은 2010년 기준임
2) 한국은 2013년 기준이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함
3) OECD 평균은 저자산출
4) 유럽국가는 EUSILC(2009), 캐나다(2007)와 미국(2010)은 LIS의 자료에 의함
5)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4). OECD Family Database, OECD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3).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2009년 기준 장애 청년층(18-29세)의 고용률은 OECD국가 평균 39.0%, 비장애인은 51.1%인 반면에, 한국은 28.6%로 OECD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임
- OECD 국가의 장애 청년층(18-29세) 실업률은 평균 12.4%로 한국의 7.4%에 비하여 높음
- 특히 미국의 경우 장애청년층의 고용률은 12.6%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애청년층 실업률은 스페인 23.1%, 라트비아 27.2%로 가장 높음

4) 재정

(1)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표 14-4-1〉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73	2.36	2.56	2.27	2.19	2.17	2.32	2.36	2.39	2.46	2.51	2.57	2.64	–
오스트리아	2.61	2.84	2.72	2.43	2.33	2.21	2.18	2.33	2.34	2.32	2.30	2.27	–	–
벨기에	2.56	2.90	2.06	2.21	2.23	2.21	2.39	2.60	2.63	2.68	2.80	2.90	–	–
캐나다	1.15	1.14	0.94	0.91	0.88	0.87	0.88	0.93	0.88	0.85	0.83	0.79	0.77	0.74
칠레	0.88	0.89	0.91	0.70	0.68	0.70	0.78	0.90	0.81	0.77	0.75	0.72	0.70	–
체코	2.18	2.24	2.43	2.22	2.29	2.19	2.06	2.07	1.99	1.92	1.83	1.83	–	–
덴마크	3.68	4.11	3.81	4.43	4.39	4.58	4.61	5.02	5.03	4.89	4.87	4.73	–	–
에스토니아	–	–	1.54	1.77	1.72	1.77	2.22	2.64	2.29	2.17	2.11	2.15	–	–
핀란드	4.15	4.93	3.69	3.67	3.59	3.44	3.51	3.93	3.90	3.79	3.83	3.83	–	–
프랑스	2.04	2.05	1.68	1.79	1.60	1.57	1.58	1.65	1.66	1.67	1.70	1.71	–	–
독일	1.95	2.26	2.14	1.98	1.89	1.81	1.87	2.02	1.99	1.95	2.00	2.06	–	–
그리스	1.19	0.79	0.85	0.90	0.86	0.86	0.88	0.93	0.94	0.97	0.97	–	–	–
헝가리	–	–	2.62	2.81	2.78	2.72	2.72	2.75	2.40	2.15	2.04	1.93	–	–
아이슬란드	1.27	1.78	2.18	2.60	2.55	2.14	2.32	2.56	2.50	2.64	2.77	2.85	–	–
아일랜드	1.72	1.89	1.26	1.56	1.61	1.73	2.01	2.30	2.35	2.17	2.07	2.05	–	–
이스라엘	–	1.80	2.07	2.39	2.37	2.35	2.44	2.48	2.48	2.47	2.46	2.46	2.53	2.53
이탈리아	1.89	1.49	1.37	1.54	1.55	1.57	1.62	1.77	1.74	1.67	1.70	1.72	–	–
일본	0.57	0.69	0.73	0.71	0.77	0.81	0.88	0.99	0.95	0.99	1.02	1.04	–	–
한국	0.29	0.35	0.36	0.60	0.64	0.64	0.66	0.66	0.57	0.58	0.61	0.61	0.61	–
라트비아	–	–	1.54	1.35	1.37	1.25	1.54	2.24	2.08	1.83	1.73	1.80	–	–
룩셈부르크	2.76	2.93	2.97	3.31	3.10	2.79	2.82	2.81	2.71	2.68	2.76	2.69	–	–
멕시코	0.02	0.06	0.07	0.06	0.05	0.06	0.06	0.06	0.06	0.06	0.00	0.00	–	–
네덜란드	5.95	4.70	3.63	3.29	2.70	2.76	2.74	2.88	3.08	3.07	3.04	3.11	–	–
뉴질랜드	2.79	2.61	2.61	2.77	2.87	2.66	2.85	2.76	2.57	2.47	2.43	2.51	2.53	–
노르웨이	4.63	4.56	4.56	4.30	4.13	4.14	3.93	4.56	4.18	3.80	3.71	3.69	–	–
폴란드	3.28	5.54	3.45	2.78	2.60	2.37	2.40	2.39	2.35	2.28	2.23	–	–	–
포르투갈	2.30	2.31	2.24	2.11	2.09	2.05	1.92	2.01	1.93	1.93	1.79	1.90	–	–
슬로바키아	–	1.99	2.21	1.45	1.47	1.44	1.45	1.83	1.83	1.84	1.90	1.89	–	–
슬로베니아	–	–	2.58	2.36	2.25	2.09	2.05	2.15	2.27	2.20	2.13	2.11	–	–
스페인	2.22	2.42	2.33	2.48	2.45	2.46	2.51	2.62	2.61	2.58	2.48	2.54	–	–
스웨덴	5.25	4.74	4.87	5.28	5.02	4.73	4.56	4.63	4.20	4.10	4.17	4.25	–	–
스위스	1.64	2.20	2.37	2.76	2.60	2.50	2.31	2.46	2.34	2.33	2.29	2.26	–	–
터키	0.17	0.19	0.21	0.23	0.20	0.22	0.26	0.31	0.29	0.29	0.31	0.33	–	–
영국	2.00	2.73	2.35	2.19	2.28	1.84	1.91	2.04	2.03	2.03	2.02	1.97	–	–
미국	0.97	1.13	1.04	1.21	1.23	1.21	1.26	1.39	1.41	1.42	1.43	1.42	–	–
OECD – Total	2.26	2.34	2.14	2.15	2.10	2.03	2.07	2.23	2.17	2.11	2.10	2.11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이며,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의미함
2) 현금급여(cash benefits)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2013년 OECD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1%로 한국의 0.61%에 비해 약 3.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4%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OECD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0.61%로 제시됨(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사회지출 데이타베이스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복지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장애인관련 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됨. 현금급여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되며,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

(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표 14-4-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71	2.00	2.06	1.83	1.74	1.77	1.90	1.91	1.95	2.00	2.03	2.09	2.13	–
오스트리아	2.39	2.60	2.44	2.10	1.98	1.86	1.81	1.90	1.90	1.87	1.85	1.81	–	–
벨기에	2.52	2.10	1.73	1.81	1.81	1.80	1.96	2.13	2.16	2.20	2.28	2.38	–	–
캐나다	1.15	1.14	0.94	0.91	0.88	0.87	0.88	0.93	0.88	0.85	0.83	0.79	0.77	–
칠레	0.71	0.70	0.72	0.70	0.67	0.69	0.77	0.89	0.81	0.76	0.74	0.71	0.69	0.74
체코	2.18	2.09	2.25	2.06	2.12	2.13	2.00	2.01	1.90	1.83	1.73	1.73	–	–
덴마크	2.96	3.23	2.77	3.19	3.14	3.45	3.38	3.61	3.60	3.51	3.47	3.35	–	–
에스토니아	–	–	1.39	1.62	1.58	1.62	1.95	2.31	1.96	1.87	1.83	1.87	–	–
핀란드	3.75	4.21	2.96	2.80	2.72	2.58	2.61	2.89	2.84	2.68	2.65	2.60	–	–
프랑스	1.66	1.61	1.53	1.62	1.60	1.57	1.58	1.61	1.60	1.61	1.64	1.65	–	–
독일	1.60	1.64	1.47	1.29	1.22	1.16	1.19	1.28	1.25	1.23	1.25	1.28	–	–
그리스	1.15	0.77	0.80	0.84	0.80	0.81	0.83	0.87	0.89	0.91	0.90	–	–	–
헝가리	–	–	2.37	2.58	2.49	2.42	2.44	2.45	2.18	1.95	1.83	1.72	–	–
아이슬란드	0.76	1.13	1.34	1.60	1.54	1.46	1.59	1.84	1.78	1.92	1.94	1.98	–	–
아일랜드	1.68	1.83	1.19	1.47	1.53	1.64	1.92	2.19	2.19	2.01	1.93	1.92	–	–
이스라엘	–	1.40	1.67	1.95	1.93	1.92	1.99	2.06	2.07	2.05	2.04	2.03	2.09	2.1
이탈리아	1.86	1.44	1.29	1.46	1.46	1.48	1.53	1.66	1.63	1.57	1.61	1.63	–	–
일본	0.51	0.57	0.57	0.59	0.60	0.61	0.63	0.67	0.66	0.68	0.67	0.67	–	–
한국	0.26	0.28	0.27	0.38	0.39	0.41	0.41	0.40	0.38	0.37	0.39	0.39	0.39	–
라트비아	–	0.00	1.23	1.13	1.14	1.04	1.31	1.97	1.81	1.54	1.45	1.51	–	–
룩셈부르크	2.57	2.72	2.42	2.32	2.13	1.90	1.90	1.73	1.61	1.58	1.62	1.54	–	–
멕시코	0.02	0.05	0.06	0.06	0.05	0.05	0.05	0.06	0.06	0.05	0.00	0.00	–	–
네덜란드	5.95	4.54	3.43	3.11	2.53	2.41	2.40	2.50	2.67	2.69	2.67	2.84	–	–
뉴질랜드	2.71	2.61	2.61	2.77	2.87	2.66	2.85	2.76	2.52	2.42	2.39	2.47	2.50	–
노르웨이	3.93	3.55	3.71	3.54	3.42	3.45	3.40	3.99	3.63	3.29	3.21	3.19	–	–
폴란드	3.07	5.27	3.42	2.59	2.40	2.18	2.19	2.20	2.16	2.10	2.05	–	–	–
포르투갈	2.25	2.26	2.20	2.06	2.04	2.01	1.88	1.95	1.88	1.92	1.77	1.88	–	–
슬로바키아	–	1.87	2.05	1.27	1.30	1.28	1.29	1.63	1.63	1.64	1.69	1.67	–	–
슬로베니아	–	–	2.35	2.15	2.04	1.88	1.85	1.93	2.02	1.95	1.84	1.81	–	–
스페인	2.18	2.35	2.21	2.28	2.25	2.26	2.29	2.36	2.37	2.34	2.23	2.29	–	–
스웨덴	4.82	3.49	3.42	3.50	3.26	2.95	2.72	2.65	2.25	2.09	2.09	2.10	–	–
스위스	1.24	1.59	1.70	1.98	1.85	1.78	1.73	1.80	1.73	1.71	1.68	1.64	–	–
터키	0.13	0.12	0.18	0.23	0.20	0.22	0.26	0.31	0.29	0.29	0.31	0.33	–	–
영국	1.81	2.45	2.08	1.82	1.93	1.45	1.48	1.59	1.56	1.54	1.53	1.49	–	–
미국	0.97	1.13	1.04	1.21	1.23	1.21	1.26	1.39	1.41	1.42	1.43	1.42	–	–
OECD - Total	2.10	2.04	1.82	1.79	1.74	1.69	1.72	1.84	1.78	1.73	1.70	1.71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OECD국가의 경우 GDP 대비 장애인복지 관련 현금급여의 비중은 1990년대 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84%로 다소 반등하였으나, 2010년 1.78%로 다시 감소하여 현재까지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2014년 현재 0.39%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1.71%의 약 1/5 수준임
  - 한국은 1990년 0.26%에서 2005년에 약 0.4%로 증가하여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표 14-4-3〉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02	0.36	0.50	0.44	0.45	0.40	0.42	0.45	0.44	0.46	0.47	0.48	0.50	–
오스트리아	0.21	0.23	0.28	0.33	0.34	0.35	0.37	0.44	0.45	0.45	0.45	0.46	–	–
벨기에	0.05	0.80	0.34	0.40	0.42	0.41	0.44	0.48	0.47	0.48	0.52	0.51	–	–
캐나다	–	–	–	–	–	–	–	–	–	–	–	–	–	–
칠레	0.17	0.19	0.19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체코	–	0.15	0.18	0.16	0.17	0.06	0.06	0.06	0.10	0.09	0.10	0.10	–	–
덴마크	0.71	0.88	1.04	1.24	1.26	1.13	1.23	1.41	1.43	1.37	1.40	1.38	–	–
에스토니아	–	–	0.15	0.15	0.14	0.16	0.28	0.33	0.33	0.29	0.28	0.28	–	–
핀란드	0.40	0.73	0.73	0.86	0.86	0.86	0.91	1.04	1.06	1.10	1.18	1.22	–	–
프랑스	0.38	0.43	0.15	0.17	0.00	0.00	0.00	0.04	0.05	0.06	0.06	0.06	–	–
독일	0.35	0.62	0.67	0.69	0.66	0.65	0.68	0.74	0.74	0.73	0.75	0.78	–	–
그리스	0.04	0.02	0.05	0.06	0.06	0.05	0.05	0.06	0.06	0.06	0.06	–	–	–
헝가리	–	–	0.24	0.23	0.30	0.30	0.28	0.30	0.22	0.20	0.21	0.21	–	–
아이슬란드	0.51	0.64	0.85	1.00	1.01	0.69	0.73	0.71	0.73	0.73	0.83	0.87	–	–
아일랜드	0.04	0.06	0.07	0.09	0.08	0.09	0.10	0.11	0.16	0.15	0.15	0.14	–	–
이스라엘	–	0.40	0.41	0.44	0.44	0.43	0.45	0.42	0.41	0.41	0.42	0.44	0.44	0.43
이탈리아	0.03	0.05	0.08	0.08	0.08	0.08	0.09	0.11	0.11	0.10	0.09	0.09	–	–
일본	0.06	0.12	0.16	0.12	0.17	0.20	0.25	0.32	0.29	0.32	0.35	0.38	–	–
한국	0.03	0.07	0.09	0.22	0.26	0.23	0.25	0.26	0.19	0.21	0.23	0.22	0.21	–
라트비아	–	–	0.31	0.22	0.23	0.21	0.23	0.27	0.28	0.29	0.28	0.29	–	–
룩셈부르크	0.19	0.22	0.55	0.99	0.97	0.89	0.92	1.08	1.10	1.10	1.13	1.14	–	–
멕시코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	–
네덜란드	0.00	0.16	0.20	0.19	0.17	0.34	0.34	0.37	0.41	0.38	0.37	0.28	–	–
뉴질랜드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4	0.04	0.04	0.03	–
노르웨이	0.70	1.01	0.85	0.76	0.70	0.70	0.53	0.56	0.55	0.51	0.49	0.50	–	–
폴란드	0.21	0.28	0.03	0.19	0.20	0.19	0.21	0.19	0.19	0.18	0.19	–	–	–
포르투갈	0.05	0.05	0.04	0.04	0.04	0.04	0.05	0.06	0.05	0.02	0.02	0.01	–	–
슬로바키아	–	0.12	0.16	0.18	0.17	0.16	0.16	0.20	0.20	0.20	0.20	0.21	–	–
슬로베니아	–	–	0.24	0.21	0.21	0.21	0.20	0.22	0.25	0.25	0.29	0.30	–	–
스페인	0.04	0.06	0.12	0.19	0.20	0.20	0.22	0.25	0.25	0.24	0.25	0.25	–	–
스웨덴	0.43	1.25	1.45	1.78	1.76	1.78	1.84	1.97	1.95	2.01	2.08	2.15	–	–
스위스	0.39	0.60	0.67	0.78	0.75	0.71	0.58	0.65	0.61	0.62	0.61	0.62	–	–
터키	0.05	0.07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영국	0.19	0.27	0.26	0.37	0.35	0.40	0.43	0.45	0.46	0.50	0.49	0.48	–	–
미국	–	–	–	–	–	–	–	–	–	–	–	–	–	–
OECD – Total	0.18	0.33	0.34	0.38	0.38	0.36	0.37	0.41	0.41	0.41	0.40	0.40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OECD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는 2013년 0.4%로 2005년부터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0.22%로 OECD 평균(0.4%)에 비하여 약 절반수준임
  • 한국의 경우 현물급여 수준은 2000년 0.09%에서 2005년 0.22%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2010년 0.1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 0.21%로 다시 반등하여 2014년 0.21%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정책 대상자는 2급('13) → 3급('15)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있었음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4)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

〈표 14-4-4〉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0년)

(단위: %)

구분	2010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42	–	0.53	–	0.01	1.95	–	0.00	0.44	0.44
오스트리아	1.37	0.13	–	0.21	0.19	1.90	0.29	0.05	0.11	0.45
벨기에	1.55	–	0.03	0.57	0.02	2.16	0.42	0.03	0.03	0.47
캐나다	0.38	0.44	–	0.06	–	0.88	–	–	–	–
칠레	0.54	0.01	0.01	0.25	0.00	0.81	0.00	0.01	0.00	0.01
체코	1.24	0.01	0.08	0.47	0.11	1.90	0.07	0.00	0.03	0.10
덴마크	2.24	–	0.20	1.02	0.15	3.60	0.70	0.25	0.49	1.43
에스토니아	1.19	–	–	0.26	0.51	1.96	0.28	0.05	0.00	0.33
핀란드	1.96	0.15	0.08	0.47	0.18	2.84	0.36	0.30	0.41	1.06
프랑스	0.95	0.02	–	0.50	0.13	1.60	0.01	0.00	0.05	0.05
독일	0.08	0.09	0.02	0.30	0.76	1.25	0.50	0.22	0.03	0.74
그리스	0.78	–	–	0.11	0.00	0.89	0.01	0.04	0.01	0.06
헝가리	1.10	–	–	0.51	0.56	2.18	0.12	0.05	0.05	0.22
아이슬란드	1.73	–	–	0.03	0.01	1.78	0.48	0.01	0.24	0.73
아일랜드	1.11	–	–	1.07	0.01	2.19	–	0.09	0.07	0.16
이스라엘	1.48	0.29	–	–	0.30	2.07	0.01	0.17	0.23	0.41
이탈리아	0.60	–	–	0.17	0.86	1.63	0.05	0.01	0.04	0.11
일본	0.40	0.10	0.02	0.07	0.07	0.66	0.24	0.00	0.05	0.29
한국	0.12	0.16	0.06	–	0.04	0.38	0.02	0.00	0.17	0.19
라트비아	0.94	–	–	0.53	0.34	1.81	0.18	0.02	0.08	0.28
룩셈부르크	0.96	0.26	–	0.29	0.10	1.61	1.10	–	–	1.10
멕시코	0.01	0.04	–	–	0.00	0.06	–	–	0.01	0.01
네덜란드	1.75	–	–	0.80	0.12	2.67	–	0.39	0.01	0.41
뉴질랜드	0.91	–	–	–	1.61	2.52	0.00	0.00	0.04	0.04
노르웨이	2.13	0.00	–	1.33	0.17	3.63	0.19	0.26	0.10	0.55
폴란드	1.03	0.04	–	0.71	0.38	2.16	0.17	0.02	–	0.19
포르투갈	1.56	–	–	0.30	0.02	1.88	0.00	0.04	0.01	0.05
슬로바키아	1.00	–	–	0.39	0.24	1.63	0.20	0.00	0.00	0.20
슬로베니아	0.78	0.00	0.00	0.98	0.27	2.02	0.19	0.06	0.00	0.25
스페인	1.28	–	–	0.97	0.12	2.37	0.12	0.10	0.03	0.25
스웨덴	1.53	0.10	0.00	0.61	0.00	2.25	1.47	0.16	0.33	1.95
스위스	1.05	0.29	0.27	0.00	0.11	1.73	0.48	0.08	0.04	0.61
터키	0.22	0.03	–	0.04	0.00	0.29	0.00	–	0.00	0.00
영국	1.40	–	–	0.14	0.03	1.56	0.24	0.02	0.20	0.46
미국	0.84	0.05	–	0.24	0.29	1.41	–	–	–	–
OECD – Total	1.07	0.12	0.11	0.45	0.23	1.78	0.27	0.08	0.11	0.4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2010년 OECD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국가는 평균 1.78%로 장애연금 1.07% 기타상병보조금 0.45%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1%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7%의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는 산재보험(산업재해) 0.16%, 장애연금 0.12%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에서는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표 14-4-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1년)

(단위: %)

구분	2011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46	–	0.53	–	0.02	2.00	–	0.00	0.46	0.46
오스트리아	1.35	0.12	–	0.21	0.19	1.87	0.30	0.05	0.10	0.45
벨기에	1.58	–	0.02	0.59	0.02	2.20	0.43	0.03	0.03	0.48
캐나다	0.38	0.41	–	0.06	–	0.85	–	–	–	–
칠레	0.51	0.01	0.01	0.24	0.00	0.76	0.00	0.01	0.00	0.01
체코	1.21	0.01	0.08	0.43	0.11	1.83	0.07	0.00	0.03	0.09
덴마크	2.27	–	0.12	1.00	0.13	3.51	0.66	0.23	0.48	1.37
에스토니아	1.13	–	–	0.27	0.47	1.87	0.24	0.05	0.00	0.29
핀란드	1.84	0.14	0.08	0.46	0.17	2.68	0.37	0.30	0.43	1.10
프랑스	0.96	0.02	–	0.50	0.13	1.61	0.01	–	0.06	0.06
독일	0.08	0.09	0.02	0.31	0.73	1.23	0.49	0.22	0.02	0.73
그리스	0.80	–	–	0.11	0.00	0.91	0.01	0.05	0.01	0.06
헝가리	0.99	–	–	0.41	0.55	1.95	0.10	0.06	0.05	0.20
아이슬란드	1.87	–	–	0.03	0.01	1.92	0.62	0.01	0.10	0.73
아일랜드	1.03	–	–	0.98	0.01	2.01	–	0.09	0.07	0.15
이스라엘	1.45	0.29	–	–	0.32	2.05	0.01	0.16	0.24	0.41
이탈리아	0.56	–	–	0.17	0.84	1.57	0.04	0.02	0.04	0.10
일본	0.41	0.10	0.02	0.07	0.08	0.68	0.27	0.00	0.05	0.32
한국	0.12	0.16	0.05	–	0.04	0.37	0.03	0.01	0.17	0.21
라트비아	0.82	–	–	0.38	0.35	1.54	0.18	0.02	0.08	0.29
룩셈부르크	0.95	0.26	–	0.29	0.08	1.58	1.10	–	–	1.10
멕시코	0.01	0.04	–	–	0.00	0.05	–	–	0.00	0.00
네덜란드	1.70	–	–	0.86	0.13	2.69	–	0.37	0.01	0.38
뉴질랜드	0.87	–	–	–	1.55	2.42	0.00	0.00	0.04	0.04
노르웨이	2.03	0.00	–	1.11	0.16	3.29	0.19	0.22	0.10	0.51
폴란드	0.97	0.03	–	0.69	0.42	2.10	0.16	0.02	–	0.18
포르투갈	1.59	–	–	0.31	0.02	1.92	0.00	0.01	0.01	0.02
슬로바키아	1.01	–	–	0.39	0.24	1.64	0.20	0.00	0.00	0.20
슬로베니아	0.75	0.00	0.00	0.93	0.27	1.95	0.19	0.06	0.00	0.25
스페인	1.31	–	–	0.90	0.12	2.34	0.14	0.08	0.02	0.24
스웨덴	1.33	0.09	0.00	0.68	0.00	2.09	1.52	0.16	0.33	2.01
스위스	1.04	0.29	0.27	0.00	0.11	1.71	0.49	0.09	0.04	0.62
터키	0.22	0.02	–	0.04	0.00	0.29	0.00	–	0.00	0.00
영국	1.31	–	–	0.18	0.04	1.54	0.24	0.01	0.24	0.50
미국	0.84	0.04	–	0.25	0.29	1.42	–	–	–	–
OECD – Total	1.05	0.11	0.10	0.43	0.22	1.73	0.28	0.08	0.10	0.4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2011년 OECD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국가는 평균 1.73%로 장애연금 1.05%, 기타상병보조금 0.43%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1%으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8%의 가장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는 산재보험(산업재해) 0.16%,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에서는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3%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4-4-6〉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2년)

(단위: %)

구분	2012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49	–	0.52	–	0.02	2.03	–	0.00	0.47	0.47
오스트리아	1.31	0.12	–	0.21	0.21	1.85	0.30	0.05	0.10	0.45
벨기에	1.64	–	0.02	0.61	0.02	2.28	0.46	0.03	0.03	0.52
캐나다	0.36	0.40	–	0.07	–	0.83	–	–	–	–
칠레	0.49	0.01	0.01	0.24	0.00	0.74	0.00	0.01	0.00	0.01
체코	1.17	0.01	0.08	0.41	0.07	1.73	0.07	0.00	0.03	0.10
덴마크	2.25	–	0.16	0.94	0.12	3.47	0.69	0.23	0.48	1.40
에스토니아	1.13	–	–	0.25	0.46	1.83	0.23	0.05	0.00	0.28
핀란드	1.81	0.15	0.08	0.46	0.16	2.65	0.40	0.30	0.48	1.18
프랑스	1.02	0.02	–	0.49	0.12	1.64	0.01	–	0.06	0.06
독일	0.08	0.09	0.02	0.33	0.74	1.25	0.51	0.22	0.02	0.75
그리스	0.80	–	–	0.11	0.00	0.90	0.01	0.05	0.01	0.06
헝가리	1.18	–	–	0.38	0.27	1.83	0.11	0.06	0.04	0.21
아이슬란드	1.90	–	–	0.04	0.01	1.94	0.68	0.01	0.15	0.83
아일랜드	1.02	–	–	0.90	0.01	1.93	–	0.09	0.06	0.15
이스라엘	1.45	0.30	–	–	0.29	2.04	0.01	0.17	0.24	0.42
이탈리아	0.58	–	–	0.17	0.86	1.61	0.04	0.02	0.04	0.09
일본	0.41	0.09	0.02	0.07	0.07	0.67	0.31	0.00	0.04	0.35
한국	0.12	0.18	0.05	–	0.04	0.39	0.02	0.01	0.20	0.23
라트비아	0.77	–	–	0.33	0.35	1.45	0.18	0.02	0.08	0.28
룩셈부르크	0.95	0.25	–	0.34	0.08	1.62	1.13	–	–	1.13
멕시코	0.00	0.00	–	–	0.00	0.00	–	–	0.00	0.00
네덜란드	1.68	–	–	0.88	0.11	2.67	–	0.36	0.01	0.37
뉴질랜드	0.84	–	–	–	1.55	2.39	0.00	0.00	0.04	0.04
노르웨이	2.02	0.00	–	1.04	0.15	3.21	0.19	0.21	0.10	0.49
폴란드	0.95	0.02	–	0.69	0.38	2.05	0.17	0.02	–	0.19
포르투갈	1.45	–	–	0.30	0.03	1.77	0.00	0.01	0.01	0.02
슬로바키아	1.03	–	–	0.42	0.24	1.69	0.20	0.00	0.00	0.20
슬로베니아	0.62	0.00	0.00	0.97	0.26	1.84	0.21	0.08	0.00	0.29
스페인	1.37	–	–	0.75	0.11	2.23	0.14	0.09	0.03	0.25
스웨덴	1.26	0.08	0.00	0.75	0.00	2.09	1.59	0.16	0.34	2.08
스위스	1.01	0.28	0.28	0.00	0.11	1.68	0.49	0.09	0.04	0.61
터키	0.23	0.03	–	0.05	0.00	0.31	0.00	–	0.00	0.00
영국	1.23	–	–	0.27	0.03	1.53	0.24	0.01	0.24	0.49
미국	0.86	0.04	–	0.24	0.29	1.43	–	–	–	–
OECD – Total	1.04	0.06	0.04	0.36	0.20	1.70	0.24	0.07	0.10	0.4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2012년 OECD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국가는 평균 1.70%로 장애연금 1.04%, 기타상병보조금 0.36%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0%으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4%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는 산재보험(산업재해) 0.18%,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기타현물급여 0.2%,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 OECD국가들은 현물급여 중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14-4-7〉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3년)

(단위: %)

구분	2013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56	–	0.52	–	0.02	2.09	–	0.00	0.48	0.48
오스트리아	1.26	0.12	–	0.22	0.19	1.81	0.31	0.05	0.10	0.46
벨기에	1.71	–	0.02	0.64	0.02	2.38	0.45	0.03	0.03	0.51
캐나다	0.35	0.38	–	0.07	–	0.79	–	–	–	–
칠레	0.47	0.01	0.01	0.22	0.00	0.71	0.00	0.01	0.00	0.01
체코	1.15	0.01	0.08	0.44	0.06	1.73	0.07	0.00	0.03	0.10
덴마크	2.25	–	0.13	0.86	0.11	3.35	0.65	0.22	0.51	1.38
에스토니아	1.14	–	–	0.26	0.47	1.87	0.23	0.06	0.00	0.28
핀란드	1.78	0.15	0.08	0.45	0.15	2.60	0.41	0.31	0.51	1.22
프랑스	1.03	0.02	–	0.48	0.12	1.65	0.00	–	0.06	0.06
독일	0.09	0.09	0.02	0.33	0.75	1.28	0.54	0.21	0.02	0.78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1.14	–	–	0.37	0.21	1.72	0.11	0.06	0.04	0.21
아이슬란드	1.92	–	–	0.04	0.01	1.98	0.73	0.01	0.13	0.87
아일랜드	1.08	–	–	0.83	0.01	1.92	–	0.08	0.06	0.14
이스라엘	1.43	0.31	–	–	0.30	2.03	0.01	0.17	0.25	0.44
이탈리아	0.58	–	–	0.16	0.89	1.63	0.04	0.01	0.03	0.09
일본	0.41	0.09	0.02	0.07	0.08	0.67	0.33	0.00	0.05	0.38
한국	0.12	0.16	0.05	–	0.05	0.39	0.02	0.01	0.20	0.22
라트비아	0.76	–	–	0.36	0.39	1.51	0.18	0.03	0.08	0.29
룩셈부르크	0.90	0.23	–	0.34	0.07	1.54	1.14	–	–	1.14
멕시코	0.00	0.00	–	–	0.00	0.00	–	–	0.00	0.00
네덜란드	1.87	–	–	0.81	0.16	2.84	–	0.28	0.00	0.28
뉴질랜드	0.85	–	–	–	1.62	2.47	0.00	0.00	0.04	0.04
노르웨이	1.98	0.00	–	1.06	0.15	3.19	0.19	0.21	0.10	0.50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1.57	–	–	0.28	0.03	1.88	0.00	0.01	0.01	0.01
슬로바키아	1.05	–	–	0.38	0.25	1.67	0.21	0.00	0.00	0.21
슬로베니아	0.59	0.00	0.00	0.97	0.24	1.81	0.21	0.09	0.00	0.30
스페인	1.43	–	–	0.76	0.10	2.29	0.13	0.09	0.03	0.25
스웨덴	1.19	0.08	0.00	0.83	0.00	2.10	1.65	0.17	0.34	2.15
스위스	0.99	0.28	0.27	0.00	0.10	1.64	0.48	0.10	0.04	0.62
터키	0.25	0.03	–	0.06	0.00	0.33	0.00	–	0.00	0.00
영국	1.16	–	–	0.30	0.02	1.49	0.23	0.01	0.24	0.48
미국	0.85	0.04	–	0.24	0.29	1.42	–	–	–	–
OECD – Total	1.05	0.06	0.03	0.36	0.21	1.71	0.24	0.07	0.10	0.4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2013년 OECD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국가는 평균 1.71%로 장애연금 1.05% 기타상병보조금 0.36%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0%으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4%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는 산재보험(산업재해) 0.16%,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에서는 기타 현물급여 0.20%,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4-4-8〉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급여(2014년, 2015년)

(단위: %)

구분	2014					2015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호주	1.59	–	–	–	0.02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0.33	0.37	0.07	0.07	–	–	–	–	–	–
칠레	0.43	0.01	0.25	0.25	0.00	0.43	0.01	0.29	0.29	0.00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1.44	0.31	–	–	0.34	1.42	0.32	–	–	0.37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0.12	0.16	–	–	0.06	–	–	–	–	–
라트비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0.83	–	–	–	1.67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2014, 2015년의 경우 현금 및 현물 급여에 해당하는 자료의 업데이트가 늦어 일부 항목만 표기함

5) 복지

(1) 빈곤위험률

〈표 14-5-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상대적 비율
미국	47.6	24.0	2.0
호주	44.7	16.6	2.7
아일랜드	36.8	14.5	2.5
한국	35.6	14.6	2.4
캐나다	32.2	17.2	1.9
에스토니아	26.9	14.1	1.9
멕시코	25.5	23.9	1.1
포르투갈	25.5	15.1	1.7
슬로베니아	24.8	14.1	1.8
덴마크	24.8	15.0	1.7
스페인	24.1	17.4	1.4
영국	23.6	11.6	2.0
핀란드	21.6	12.6	1.7
이탈리아	21.2	15.4	1.4
독일	20.7	11.1	1.9
그리스	19.5	15.4	1.3
벨기에	18.8	10.8	1.7
폴란드	18.6	15.5	1.2
오스트리아	17.7	10.8	1.6
헝가리	17.5	12.5	1.4
프랑스	17.1	11.1	1.5
아이슬란드	16.4	15.8	1.0
룩셈부르크	16.0	10.8	1.5
체코	14.1	9.2	1.5
스위스	13.7	11.8	1.2
네덜란드	11.5	11.0	1.0
슬로바키아	11.3	12.1	0.9
노르웨이	10.8	11.4	0.9
스웨덴	10.4	12.2	0.9
OECD-27	22.1	14.1	1.6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OECD국가의 2000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위험률은 평균 22.1%로 비장애인의 14.1%에 비하여 약 1.6배 높음
  - 한국의 경우, 장애인 빈곤율은 35.6%로 OECD 국가의 평균 22.1%보다 약 1.6배, 비장애인 14.6%에 비해 약 2.4배 높음
  - 특히 미국 47.6%, 호주 44.7%, 아일랜드 36.8%, 한국 35.6% 등의 순으로, 동 국가들은 높은 장애인 빈곤율을 보이는 동시에 두 집단 간(장애인 vs 비장애인) 격차가 큰 국가로 분류됨
- 이에 반해 스웨덴의 장애인 빈곤율은 10.4%, 노르웨이 10.8%, 네덜란드 11.5%로, 북유럽 국가들의 빈곤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빈곤율의 격차 역시 낮은 국가로 나타남

OECD국가의 빈곤위험률

- OECD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율(=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
-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동 지표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함

6) 정신건강

(1) 정신질환관련 병상 수

〈표 14-6-1〉 OECD 국가별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	0.44	0.40	0.40	0.40	–	0.40	0.39	0.39	0.39	0.40	0.39	–	–	–
오스트리아	0.87	0.69	0.59	0.60	0.61	0.65	0.62	0.62	0.63	0.63	0.62	0.62	0.62	0.61	–
벨기에	1.91	1.95	2.59	2.50	1.83	1.80	1.80	1.79	1.77	1.75	1.74	1.74	1.73	1.74	1.74
캐나다	–	0.40	0.31	0.29	0.41	0.40	0.39	0.38	0.36	0.36	0.37	0.37	–	0.35	0.34
칠레	–	–	–	–	–	–	0.16	0.16	0.17	0.14	0.10	0.10	0.10	0.10	–
체코	1.40	1.14	1.13	1.11	1.09	1.07	1.05	1.04	1.02	1.01	0.99	0.97	0.97	0.97	–
덴마크	0.95	0.80	0.76	0.65	0.63	0.61	0.58	0.58	0.57	0.53	–	0.54	–	–	0.40
에스토니아	–	1.06	0.78	0.53	0.55	0.55	0.56	0.54	0.53	0.54	0.54	0.56	0.56	0.55	–
핀란드	–	1.28	1.03	0.93	0.92	0.88	0.85	0.80	0.75	0.71	0.69	0.64	0.61	0.62	–
프랑스	–	–	1.03	0.93	0.91	0.90	0.89	0.89	0.88	0.87	0.88	0.88	0.87	0.86	–
독일	–	1.15	1.07	1.07	1.08	1.10	1.13	1.15	1.18	1.21	1.25	1.26	1.27	1.27	–
그리스	–	1.09	0.98	0.88	0.88	0.87	0.83	0.81	0.75	0.73	0.77	0.70	0.72	0.73	–
헝가리	–	–	1.02	0.97	0.95	0.93	0.88	0.90	0.89	0.90	0.90	0.90	0.89	0.89	–
아이슬란드	–	–	–	–	–	0.59	0.61	0.60	0.48	0.48	0.47	0.46	0.44	0.44	0.44
아일랜드	2.63	1.85	1.41	0.96	0.91	0.85	0.78	0.39	0.38	0.35	0.35	0.35	0.36	0.35	–
이스라엘	1.53	1.22	0.89	0.77	0.49	0.48	0.47	0.46	0.45	0.45	0.44	0.42	0.43	0.42	0.42
이탈리아	0.84	0.49	0.15	0.13	0.13	0.12	0.11	0.11	0.10	0.10	0.10	0.10	–	0.09	–
일본	–	2.88	2.82	2.77	2.76	2.74	2.73	2.72	2.71	2.69	2.68	2.67	2.66	2.65	–
한국	0.18	0.28	0.65	0.75	0.77	0.76	0.81	0.85	0.90	0.88	0.91	0.91	0.98	–	–
라트비아	2.60	2.19	1.86	1.59	1.59	1.60	1.61	1.41	1.28	1.29	1.29	1.25	1.26	1.26	–
룩셈부르크	–	–	–	0.97	0.91	0.90	0.88	0.90	0.88	0.88	0.86	0.86	0.84	0.79	0.78
멕시코	–	0.05	0.05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3	–
네덜란드	1.78	1.71	1.56	1.41	1.37	1.35	1.37	1.39	–	–	–	–	–	–	–
뉴질랜드	–	–	–	–	–	–	–	0.14	0.22	0.20	0.20	0.17	0.23	0.24	0.31
노르웨이	0.89	0.71	0.69	1.55	1.53	1.48	1.40	1.37	1.34	1.30	1.21	1.16	1.16	1.14	–
폴란드	–	–	–	0.67	0.68	0.67	0.65	0.64	0.63	0.64	0.64	0.64	0.65	0.65	–
포르투갈	0.88	0.72	0.77	0.71	0.70	0.69	0.67	0.66	0.64	0.64	0.62	0.65	0.63	0.64	–
슬로바키아	–	–	0.93	0.84	0.84	0.83	0.81	0.80	0.80	0.77	0.78	0.82	0.82	0.81	–
슬로베니아	0.81	0.80	0.77	0.74	0.71	0.68	0.69	0.66	0.65	0.65	0.67	0.66	0.66	0.67	–
스페인	0.71	0.60	0.52	0.46	0.46	0.41	0.41	0.41	0.40	0.37	0.36	0.36	0.36	0.36	–
스웨덴	1.70	0.95	0.63	0.48	0.49	0.49	0.48	0.48	0.48	0.47	0.46	0.46	0.45	0.44	–
스위스	–	–	1.20	1.06	1.01	1.02	1.00	0.98	0.97	0.93	0.93	0.93	0.91	0.92	–
터키	–	–	0.06	0.06	0.06	0.05	0.06	0.07	0.06	0.06	0.06	0.06	0.06	0.05	–
영국	–	–	0.93	0.74	0.69	0.65	0.63	0.60	0.54	0.52	0.50	0.48	0.46	0.42	–
미국	–	0.42	0.31	0.28	0.27	0.26	0.26	0.25	0.25	0.23	0.22	0.22	–	–	–
OECD – Total	1.65	1.34	1.28	1.06	1.06	1.07	1.08	1.08	1.07	1.11	1.11	1.10	1.08	–	–

주: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OECD국가의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는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이후로는 약 1.1병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신과 병상 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14년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는 0.98병상으로 OECD 평균 1.08병상에 비해 다소 적은 수준이나, 일본 2.66병상, 벨기에 1.73병상, 독일 1.27병상, 라트비아 1.26병상, 노르웨이 1.16병상, 한국 0.98병상 등으로 정신과 관련 병상수가 많은 국가에 속함

(2) 인구 10만명 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표 14-6-2〉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단위: 개)

구 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멕시코	0.01
한국	0.01
폴란드	0.03
미국	0.06
포르투갈	0.07
에스토니아	0.15
일본	0.30
칠레	0.30
호주	0.67
독일	1.57
헝가리	2.07
프랑스	4.73
아이슬란드	16.67
아일랜드	17.89
OECD	3.18

자료: 1)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2) 원자료: OECD Mental Health Questionnaire 2012; WHO Mental Health Atlas 2011

- 2010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는 OECD국가 평균 3.18개소에 반해 한국은 0.01개소로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임

OECD 국가들은 과거 정신질환 관련 지원을 치료적 접근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서는 치료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변경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정신질환의 계획에 없던 재입원(조현병, 조울증)

〈표 14-6-3〉 30일 이내 같은 병원 입원비율

(단위: 환자 100명당)

구분	2006				2011			
	년도	명	95% 신뢰구간		년도	명	95% 신뢰구간	
			Lower	Upper			Lower	Upper
멕시코		–	–	–		5.5	0.7	0.7
포르투갈		–	–	–		5.5	1.0	1.0
스위스		–	–	–	2010	5.9	0.5	0.6
칠레	2007	9.3	1.2	1.2		6.2	0.8	0.8
핀란드		8.0	0.7	0.7		7.8	0.7	0.7
체코	2009	7.9	0.8	0.7		7.8	0.7	0.7
헝가리		10.0	0.6	0.7		8.9	0.6	0.6
슬로베니아						9.7	1.9	1.9
영국	2008	6.3	0.5	0.5		11.0	0.5	0.5
이탈리아		13.6	0.6	0.5		11.7	0.5	0.6
스페인		12.0	0.8	0.8		12.2	1.0	1.0
벨기엘		12.7	1.0	1.0	2010	12.3	1.1	1.1
아일랜드	2007	18.6	2.0	2.0		12.6	1.7	1.7
노르웨이						13.9	1.3	1.3
뉴질랜드		13.3	1.5	1.5		14.6	1.4	1.4
스웨덴	2008	14.8	1.0	1.0		15.1	1.0	1.0
덴마크		14.1	1.5	1.5		15.7	1.3	1.3
호주	2009	16.4	0.7	0.7		18.1	0.7	0.7
한국	2007	16.7	0.5	0.4		19.4	0.5	0.5
이스라엘		21.8	1.2	1.3		19.9	1.3	1.2
OECD15		13.0	–	–		12.9	–	–

자료: OECD(2013). Health at glance 2013

– 정신질환 관련 질환으로 인해 동일 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 2006년은 OECD 평균 환자 100명당 13.0명에서 2011년 12.9명으로 다소 감소함
  • 반면 한국은 2007년 16.7명에서 2011년 19.4명으로 증가함

최근 많은 회원국들은 병원진료 대신 다학제팀이 관여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진료로 이동하고 있음. 정신질환 역시 가능한 병원진료보다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의미에서 동 지표를 중요하게 이용하고 있음(OECD, 2013)

(4)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

〈표 14-6-4〉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단위: 1인당 USD, %)

구분	독일		한국		네덜란드		체코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병의원	146.7	33.0	71.7	66.4	294.6	45.4	36	69.4
장기요양	117.2	26.3	11.4	10.6	237.4	36.6	2.3	4.4
외래진료	78.1	17.5	14.7	13.6	48.4	7.5	11.7	22.6
조제약	55	12.4	6.9	6.4	33.7	5.2	0.1	0.2
기타 공급원	48.1	10.8	3.3	3.0	34.3	5.3	1.8	3.4
총지출	445	100.0	108.1	100.0	648.4	100.0	51.9	100.0

주: 1) 네덜란드: 병원지출의 89%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2) 체코: 병원지출의 75%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자료: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 주요 국가 및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과 체코의 경우 비교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지출수준을 보임
  -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총 의료비는 국민 1인당 108.1$로 대부분의 비용이 병원과 정신요양기관 등에 지출되고 있음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은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을 의미함.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⑸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률

〈표 14-6-5〉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률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덴마크	총	3.4	2.8	2.9	2.8	2.9	2.9	2.9	2.8
	남	3.3	2.8	3.0	2.8	3.0	2.8	2.8	2.6
	여	3.6	2.8	2.6	2.8	2.8	3.1	3.1	3.1
핀란드	총	5.3	5.7	4.6	4.0	5.2	3.9	3.3	2.9
	남	4.6	5.5	4.4	3.7	4.9	3.3	2.4	2.4
	여	6.7	6.1	5.0	4.4	5.5	5.2	5.0	4.0
이스라엘	총	1.8	1.9	2.2	1.9	2.3	2.4	1.8	2.4
	남	1.7	1.7	1.9	2.0	2.3	2.2	1.8	2.5
	여	2.0	2.2	2.5	1.8	2.1	2.8	1.6	2.1
한국	총	3.2	3.5	3.6	3.7	3.8	4.0	4.1	4.2
	남	3.0	3.1	3.4	3.4	3.6	3.9	4.0	4.1
	여	3.8	4.2	4.1	4.3	4.2	4.3	4.3	4.4
뉴질랜드	총	1.3	2.7	2.6	2.4	3.6	3.3	5.7	3.2
	남	1.1	3.2	3.0	2.4	3.5	2.9	6.3	2.4
	여	1.6	2.0	2.0	2.4	3.5	3.7	4.9	4.2
노르웨이	총	–	–	–	–	3.3	2.9	4.2	5.3
	남	–	–	–	–	3.3	2.6	3.9	5.8
	여	–	–	–	–	3.2	3.2	4.7	4.4
스웨덴	총	2.6	2.7	3.0	2.7	2.8	2.6	2.9	2.7
	남	2.5	2.8	3.1	2.7	2.9	2.5	2.9	2.6
	여	2.7	2.5	2.8	2.8	2.5	2.7	2.8	2.7

주: 초과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2017년 11월 30일 검색)

– OECD 인구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일생에 걸쳐 적어도 1번은 앓는 등 정신질환의 부담이 상당히 큼(OECD, 2014a). 질 높은 수준의 적시 치료가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 환자의 자살과 초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음
  -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높음. 1 보다 높은 '초과 사망률'은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음을 의미함
  - 2015년 조울증의 초과 사망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4.1%) · 여성(4.4%) 모두 노르웨이(5.3%)와 함께 세계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서 2015년에 걸친 초과사망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핀란드의 경우 2008년 5.3%를 기록하여 매우 높은 초과사망률을 보였으나,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는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흡연, 약물, 알코올 남용 등의 위험 요인들과 관련된 높은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 유병률, 정신과 치료의 부작용, 열악한 신체질환 치료, 높은 자살위험이 초과 사망률의 원인이 됨. 이러한 초과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일차의료를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열악한 신체건강의 예방, 보다 나은 신체적 · 정신적 치료의 통합, 행동적 중재, 의료인의 태도 변화 등 질병과 관련된 다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일차의료 또는 일차 예방이나 이차 예방이 충분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신체적 사유의 입원 진료의 이용을 모니터하고 있음(OECD, 2014a; OECD, 2014b).

〈표 14-6-6〉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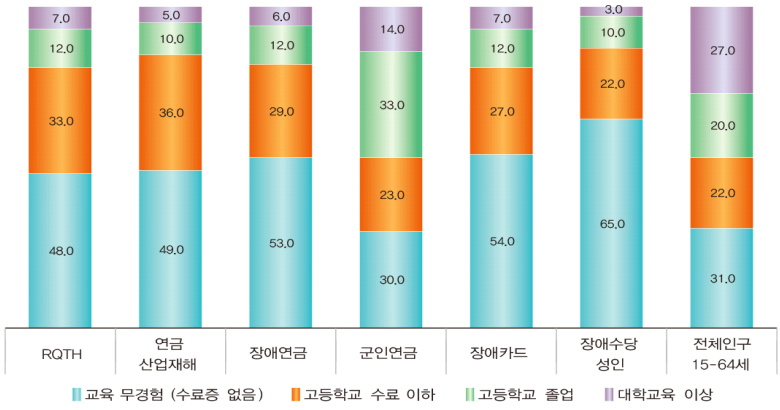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덴마크	총	3.8	4.0	3.7	4.1	4.1	3.9	4.5	4.1
	남	3.9	4.2	3.5	4.1	4.0	4.0	4.5	3.7
	여	3.7	3.8	3.9	4.1	4.2	3.6	4.6	4.6
핀란드	총	6.3	5.9	6.2	6.0	6.9	6.5	4.5	4.8
	남	5.9	5.4	6.3	4.9	5.7	6.6	3.1	3.8
	여	7.1	6.9	6.1	8.4	9.3	6.1	7.2	6.8
이스라엘	총	3.3	3.3	3.1	3.3	3.2	3.4	3.2	3.3
	남	3.1	3.4	2.8	3.1	3.1	3.2	3.3	3.1
	여	3.4	3.2	3.5	3.5	3.3	3.8	3.0	3.5
한국	총	4.1	4.3	4.3	4.3	4.4	4.5	4.5	4.5
	남	3.7	3.9	4.0	3.9	4.1	4.2	4.1	4.1
	여	5.0	5.2	5.0	5.2	5.2	5.4	5.5	5.3
뉴질랜드	총	4.5	4.7	3.7	5.2	5.3	4.9	4.9	4.5
	남	6.3	3.5	4.2	3.5	4.8	3.5	4.1	3.1
	여	2.2	6.3	3.0	7.3	6.0	6.9	6.1	6.6
노르웨이	총	–	–	–	–	4.6	4.9	6.3	5.7
	남	–	–	–	–	4.7	4.5	6.4	4.9
	여	–	–	–	–	4.3	5.6	6.3	6.8
스웨덴	총	4.0	4.3	4.0	4.0	5.0	4.5	4.3	4.8
	남	3.9	4.0	4.0	3.9	4.8	3.9	4.3	4.0
	여	4.2	4.6	4.0	4.2	5.1	5.2	4.2	6.0
라트비아	총	–	–	1.9	1.9	1.9	1.9	2.0	1.9
	남	–	–	1.9	1.5	1.8	1.7	1.7	1.7
	여	–	–	2.0	2.9	2.2	2.4	2.7	2.1

주: 초과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2017년 11월 30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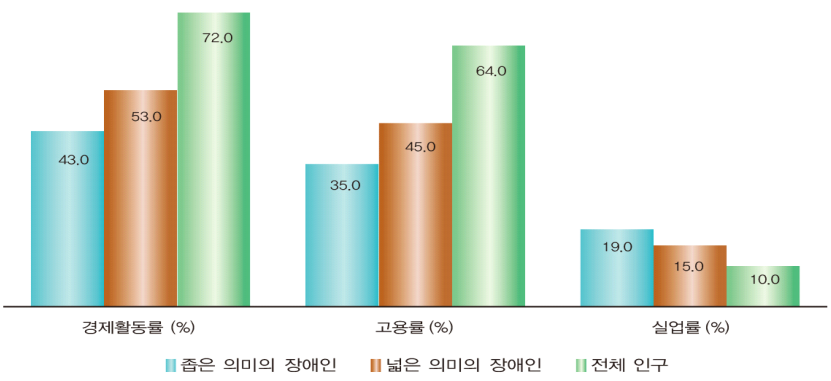
-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는 남성기준 4.1%로 노르웨이(4.9%), 스웨덴(4.0%)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임
- 여성의 경우도 5.3%를 기록해 핀란드 · 노르웨이(6.8%), 뉴질랜드(6.6%)를 뒤쫓고 있음

2. 프랑스

[그림 3-2-1]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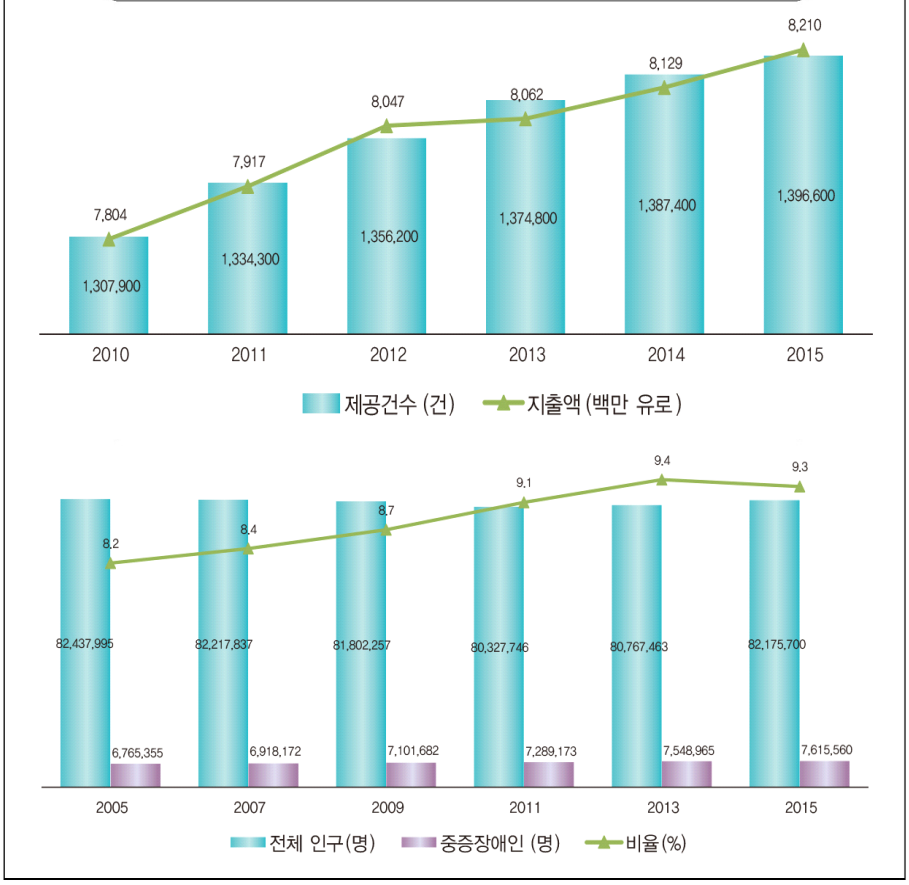
[그림 3-2-2]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비교



-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무경험 또는 수료증이 없는 비율이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에서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연금 수급자가 5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72%인 반면에,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43%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임
  - 전체인구의 고용률은 64%임에 반해, 넓은 의미의 장애인은 45%,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35%로 나타남
  - 실업률의 경우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19%로, 전체 인구 10%에 비해 약 두 배가 높음

[그림 3-2-3]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현황



– 60세 이상 장기요양보험(APA), 제3자보상수당(ACTP) 및 장애보상수당(PCH) 지출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2015년 60세 이상 개인자율수당(APA)의 제공 건수는 1,396,600건으로 2014년에 비해 0.7%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490,500백만 유로로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함
- 2015년 60세 이상 제3자보상수당(ACTP) 및 장애보상수당(PCH)의 제공 건수는 490,500건으로 2014년에 비해 3.8%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927백만 유로로 2014년에 비해 2.7% 증가함
- 제3자보상수당(ACTP) 및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제공 건수는 재가서비스가 위탁서비스 보다 높으나, 2014-2015 변화율은 위탁서비스가 12.4%로 큰 폭으로 증가함

1) 장애인구

(1) 정의에 따른 장애인구

〈표 15-1-1〉 장애인구 현황

(단위: 백만명, %)

구분	인구 수	넓은 의미의 장애인 비율	15-64세 전체 인구 비율
15-64세 전체 인구	39.4	-	100.0
넓은 의미의 장애인	14	100.0	24.0
좁은 의미의 장애인	2.4	20.0	5.0
넓은 의미의 장애인 - 좁은 의미의 장애인	11.6	80.0	19.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를 의미함
2) 2013년 기준임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n°. 17 2015년 11월
원자료: Insee, 2013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 2013년 기준으로 가정에 머물고 있는 15-64세 인구 중 약 240만 명이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았으며, 약 550만 명이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활동이 제한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
  - 남성인구에서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경우가, 여성인구에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높음

장애 정의

- 2005년 2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114조에 의거함. 즉 '가족과 사회복지 법전(Le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의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 114-1 조항에 의하면, "장애는 복합적, 심리적, 인지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기능의 한 가지 이상의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혹은 심각한 손상, 건강상의 장애문제로 인하여 한 사람의 모든 활동의 한계나 사회생활에의 참여 제한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
- 넓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구를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
-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 인구를 의미하며, 편의상 좁은 의미로 명명함
- 넓은 의미의 장애인 -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업수행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

〈표 15-1-2〉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RQTH	산업재해 연금	장애연금	장애카드	성인 장애수당	군인연금	15-64세 전체인구
2013	남	58.0	57.0	76.0	39.0	59.0	66.0	80.0	58.0
	여	42.0	43.0	24.0	61.0	41.0	34.0	20.0	42.0
	15-24세	2.0	3.0	0.0	0.0	3.0	4.0	1.0	2.0
	25-39세	18.0	22.0	9.0	7.0	29.0	25.0	10.0	18.0
	40-49세	31.0	33.0	27.0	24.0	30.0	29.0	28.0	31.0
	50-64세	49.0	42.0	64.0	69.0	37.0	42.0	61.0	49.0
2015	남	58.0	56.0	76.0	39.0	59.0	66.0	80.0	58.0
	여	42.0	44.0	24.0	61.0	41.0	34.0	20.0	42.0
	15-24세	2.0	2.0	0.0	0.0	3.0	4.0	1.0	2.0
	25-39세	18.0	21.0	8.0	7.0	27.0	24.0	10.0	18.0
	40-49세	30.0	32.0	27.0	24.0	30.0	28.0	27.0	30.0
	50-64세	50.0	45.0	65.0	69.0	40.0	44.0	62.0	50.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2) 일인당 행정적 인정 종류가 중복될 수 있음
3) RQTH: 장애인 근로자 자격 인정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17호 2015년 11월;「장애인 고용과 실업」66호 2016년 11월

원자료: Insee, 2011년 고용조사 보충자료; Dares 분석

– 2015년 기준으로 15-64세 전체인구 중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8.0%로 여성 42.0%에 비해 높고, 연령별로는 50-64세가 50.0%로 전체 장애인구 중 절반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중 남성의 경우 군인연금 80.0%, 산업재해연금 76.0%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중 50-64세는 장애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연금에 각각 69.0%, 65.0%, 62.0%를 차지하고 있음

좁은 의미의 장애인

–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인구를 지칭하는데, 이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인정(OETH) 자격 조건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함. 1987년 7월 10일 법 이후로 2005년 2월 11일 개정 및 강화되어 근로자 20인 이상의 공공 및 민간 사업장에서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의무적 고용하는 것임

– 이 때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인정(OETH)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기관마다 인적사항 및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인정(OETH) 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 근로자 자격 인정(RQTH)
- 장애연금(PI)
- 산업재해(AT-MP)– 영구적으로 10% 이상의 기능장애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 군인연금

– 2005년 이후 추가된 자격 조건
- 80% 이상의 장애율이 인정된 장애카드
- 성인장애수당

(2) 장애인 출현율

〈표 15-1-3〉 장애인 출현율 - 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 수(명)	1,276,000	1,109,000	2,645,000	2,890,000	19,380,000	20,060,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5.0	4.0	6.0	6.0	18.0	17.0
25-39세	18.0	16.0	18.0	17.0	29.0	29.0
40-49세	23.0	26.0	23.0	23.0	22.0	22.0
50-64세	54.0	54.0	53.0	54.0	31.0	32.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를 의미함
2) 2013년 기준임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n°. 17 2015년 11월 발행; 원자료: Insee, 2013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 장애출현율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 넓은 의미의 장애인과 좁은 의미의 장애인에 속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데 반해 15-64세 전체인구에서는 약 30%를 차지함

2) 교육

(1) 장애정의별 교육 수준

〈표 15-2-1〉 교육수준 - 장애정의별, 성별

(단위: %, 명)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15-64세 전체 인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 수(명)	1,276,000	1,109,000	2,645,000	2,890,000	19,380,000	20,060,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 무경험(수료증 없음)	45.0	47.0	40.0	42.0	28.0	28.0
고등학교 수료 이하	33.0	26.0	33.0	24.0	26.0	20.0
고등학교 졸업	11.0	13.0	13.0	15.0	19.0	21.0
대학교육 이상	11.0	15.0	14.0	19.0	27.0	31.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2) 2013년 기준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n°. 17 2015년 11월 발행
원자료: Insee, 2013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표 15-2-2〉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교육수준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RQTH	산업재해 연금	장애연금	군인연금	장애카드	성인 장애수당	15-64세 전체인구
계	1,155 (100.0)	371 (100.0)	766 (100.0)	11 (100.0)	758 (100.0)	673 (100.0)	39,693 (100.0)
교육 무경험 (수료증 없음)	556 (48.0)	181 (49.0)	407 (53.0)	3 (30.0)	408 (54.0)	435 (65.0)	12,277 (31.0)
고등학교 수료 이하	378 (33.0)	132 (36.0)	224 (29.0)	2 (23.0)	205 (27.0)	152 (22.0)	8,899 (22.0)
고등학교 졸업	134 (12.0)	38 (10.0)	91 (12.0)	4 (33.0)	91 (12.0)	68 (10.0)	7,914 (20.0)
대학교육 이상	87 (7.0)	20 (5.0)	44 (6.0)	2 (14.0)	54 (7.0)	18 (3.0)	10,603 (27.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를 의미함
2) 2011년 기준
3) 일인당 행정적 인정 종류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n°. 17 2015년 11월 발행
원자료: Insee, 2011년 고용조사 보충자료; Dares 분석

- 15-64세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에서 교육에 대한 무경험 또는 수료증이 없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 무경험(수료증 없음)은 넓은 의미의 장애인구 41%보다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46%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무경험 또는 수료증이 없는 비율이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에서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연금 수급자가 5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 구직자 교육 수준

〈표 15-2-3〉 연도별 구직자 교육수준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교육 무경험 (수료증 없음) (노동자, 인부)	42.0	31.0	42.0	31.0	40.0	30.0	40.0	30.0	39.0	30.0	39.0	30.0
고등학교 수료 이하	30.0	19.0	30.0	19.0	29.0	18.0	29.0	19.0	27.0	18.0	26.0	17.0
고등학교 졸업 이상	22.0	42.0	22.0	42.0	24.0	44.0	23.0	43.0	25.0	45.0	26.0	45.0

주: 1)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대상
3) 무응답의 비율은 동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1)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2)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표 15-2-4〉 2015년 구직자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구직 중인 장애인구			구직 중인 전체 인구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인원 수(명)	256,054	212,369	468,423	2,755,566	2,773,402	5,528,9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율	55.0	45.0	100.0	50.0	50.0	100.0
중학교 수료 이하	26.0	29.0	27.0	18.0	18.0	18.0
고등학교 수료 이하	52.0	43.0	48.0	42.0	33.0	38.0
고등학교 졸업	13.0	17.0	15.0	19.0	23.0	21.0
대학 학부 졸업	5.0	7.0	6.0	10.0	12.0	11.0
대학원 이상	4.0	5.0	4.0	10.0	14.0	12.0

주: 1) 2015년 6월 말 구직자 카테고리 A,B,C 전체 대상 ; 프랑스 전체
2) 2015년 6월 기준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n°. 17 2015년 11월 발행
원자료: Dares-Pole emploi, STMT ; Dares 분석

- 매년 전체인구 및 장애인구 모두 교육 무경험자가 감소하고 교육 수준이 상승하는 추세임
  - 2016년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경우, 전체인구는 45%로 전년도에 비해 변함가 없으나, 장애 인구는 26%로 저년도에 비해 1%p 증가함
- 중학교 수료 이하의 비율이 구직 중인 전체 인구는 18.0%, 장애 인구는 27.0%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 인구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직 중인 장애 인구에서 고등학교 수료 이하는 52.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표 15-2-5〉 고용 및 비활동 장애인구 교육수준 현황

(단위: %, 명)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15-64세 전체 인구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고용	인원 수(명)	878,000	938,000	2,579,000	2,569,000	25,462,000	26,034,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 무경험(수료증 없음)	34.0	29.0	29.0	25.0	19.0	16.0
	고등학교 수료 이하	34.0	33.0	31.0	31.0	25.0	25.0
	고등학교 졸업	14.0	17.0	17.0	18.0	20.0	20.0
	대학교육 이상	18.0	21.0	23.0	26.0	36.0	39.0
비경제활동	인원 수(명)	1,312,000	1,514,000	2,534,000	2,676,000	11,168,000	11,485,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 무경험(수료증 없음)	56.0	54.0	54.0	52.0	48.0	47.0
	고등학교 수료 이하	26.0	28.0	24.0	27.0	18.0	18.0
	고등학교 졸업	10.0	11.0	12.0	11.0	21.0	21.0
	대학교육 이상	8.0	8.0	10.0	9.0	13.0	14.0

주: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17호 2015년 11월, Dares「장애인 근로자 고용 진입」32호 2017년 5월
원자료: Insee, 2013년, 2015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 2013년에 비해 2015년 고용상태인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에 반해 비경제활동 상태인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큰 변동은 없음
  - 2013년과 2015년 사이 고용상태인 장애인의 교육 무경험 비율은 5%p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 상태인 장애인은 2%p 감소함
  - 전체 비경제활동 상태인 인구와 장애인 모두에서 교육 무경험이 절반 가량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에서 54%를 차지하며 현저하게 높음

3) 고용

(1) 경제활동참여

〈표 15-3-1〉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단위: %)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인원 수 (명)		2,385,000	5,535,000	39,441,000
계		100.0	100.0	100.0
경제활동인구	고용	37.0	46.0	65.0
	실업	8.0	8.0	7.0
비경제활동인구		55.0	46.0	28.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를 의미함
2) 2013년 기준임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n°. 17 2015년 11월
원자료: Insee, 2013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표 15-3-2〉 경제활동참여율, 고용율 및 실업률

(단위: %)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경제활동률	45.0	43.0	54.0	53.0	72.0	72.0
고용률	37.0	35.0	46.0	45.0	65.0	64.0
실업률	18.0	19.0	14.0	15.0	10.0	10.0
명 (수)	2,385,000	2,665,000	5,535,000	5,702,000	39,441,000	40,558,00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2) 경제활동률 : 해당 연령층 인구 대비 직업 활동중이거나 실업중인 인구 수의 비율
3) 고용률: 해당 연령층 인구 대비 직업활동중인 인구 수의 비율
4) 실업률: 세계노동기구(BIT)의 의미로 해당 연령층의 직업 활동중이거나 실업중인 인구 대비 실업중인 인구 수의 비율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17호 2015년 11월, Dares「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32호 2017년 5월
원자료: Insee, 2013년, 2015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 장애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해당인구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좁은 의미의 장애인에서 경제활동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10% 더 높음
- 2013년과 2015년 사이 경제활동률은 전체인구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좁은 의미/넓은 의미)장애인구는 감소함
-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72%인 반면에,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43%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임
- 전체인구의 고용률은 64%임에 반해, 넓은 의미의 장애인은 45%,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35%로 나타남
- 실업률의 경우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19%로, 전체 인구 10%에 비해 약 두 배가 높음

(2) 고용

〈표 15-3-3〉 고용 장애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인원 수(명)			878,000	938,000	2,579,000	2,569,000	25,462,000	26,034,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55.0	51.0	50.0	48.0	52.0	52.0
	여성		45.0	49.0	50.0	52.0	48.0	48.0
연령	15 - 24 세		3.0	3.0	3.0	3.0	7.0	7.0
	25 - 39 세		23.0	20.0	23.0	22.0	36.0	35.0
	40 - 49 세		32.0	31.0	30.0	29.0	28.0	28.0
	50 세 이상		42.0	46.0	44.0	46.0	29.0	30.0
직급	농부, 장인, 상인, 사업자		6.0	6.0	8.0	8.0	8.0	8.0
	고위 간부직		7.0	8.0	10.0	10.0	17.0	17.0
	중간 관리직		20.0	19.0	21.0	22.0	25.0	26.0
	사무직		33.0	35.0	33.0	34.0	29.0	28.0
	노동직		34.0	31.0	28.0	26.0	21.0	20.0
고용 소속	민간 기업체	소계	74.0	70.0	69.0	68.0	69.0	68.0
		근로자 20인 이상 규모	43.0	–	35.0	–	32.0	–
		근로자 20인 미만 규모	18.0	–	21.0	–	23.0	–
		정보 없음	13.0	–	13.0	–	14.0	–
	공공 기업체	소계	19.0	22.0	21.0	22.0	20.0	21.0
		근로자 20인 이상 규모	13.0	–	14.0	–	14.0	–
		근로자 20인 미만 규모	3.0	–	3.0	–	3.0	–
		정보 없음	3.0	–	4.0	–	3.0	–
	자영업		7.0	8.0	10.0	10.0	11.0	11.0
고용 상태	자영업		7.0	8.0	10.0	10.0	11.0	11.0
	정규직 및 공공직		83.0	80.0	84.0	80.0	77.0	76.0
	계약직		8.0	10.0	7.0	8.0	9.0	9.0
	도제, 실습, 임시직 및 기타		2.0	2.0	2.0	2.0	4.0	3.0
근로 시간	전일제		70.0	68.0	74.0	72.0	82.0	81.0
	시간제		30.0	32.0	26.0	28.0	18.0	19.0
종사 업종	농업		3.0	3.0	4.0	3.0	3.0	3.0
	산업, 공업		16.0	13.0	15.0	13.0	14.0	13.0
	건설업		6.0	4.0	7.0	6.0	7.0	6.0
	식료품 상업, 교통, 숙박, 식당업		18.0	19.0	19.0	20.0	21.0	22.0
	정보 · 커뮤니케이션업		2.0	1.0	2.0	2.0	2.0	3.0
	회계, 보험, 부동산업		4.0	4.0	4.0	4.0	4.0	5.0
	전문, 연구, 기술, 행정서비스지원		8.0	9.0	9.0	9.0	10.0	11.0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39.0	40.0	34.0	37.0	31.0	31.0
	기타 서비스업		5.0	5.0	6.0	5.0	6.0	5.0

주: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자료: DARES, 「장애인의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32호 2017년 5월
원자료: Insee, 2013년, 2015년 고용 조사, DARES 분석

- 2015년 기준 15-64세 근로자 약 총 2,600만명에서 3.6%(938,000명)가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아(좁은 의미의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고용된 장애인구는 15-64세 전체인구에 비하여 연령대가 높은 편임
- 2013년과 2015년 사이 모든 인구에서 전일제는 감소하고, 시간제는 증가함
- 장애를 인정받은 인구는 노동자인 비율이 31.0%로 높은 편이고 고위간부직은 8.0%에 불과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5-3-4〉 고용의무 기업체의 장애인구 근로자 및 근로자 인정 방식에 따른 근로자수

(단위: 개소,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고용의무 기업체 수		99,600	100,200	99,800	101,000
고용의무 기업체 전체에 고용된 전체 인구 수		9,271,100	9,234,600	9,019,900	9,255,000
고용의무제 기준 원칙에 따라 기업체가 고용해야 하는 장애 인구 수		504,800	503,000	490,400	503,900
요구되는 장애인 고용률(%)		5.4	5.4	5.4	5.4
계약협정 기업체 수		10,900	11,300	11,100	11,400
계약협정 기업체 고용 전체 인구 수		2,257,900	2,244,900	2,053,800	2,318,400
전체 고용의무 기업체의 근로자 수에 대한 계약협정 기업체의 근로자 부분 비율		24	24	23	25
고용의무 기업체(전체)	실질적으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수	367,400	376,600	386,700	400,400
	반일제(이상)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306,100	315,400	322,900	333,200
	반일제(이상)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	3.3	3.4	3.6	3.6
	전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280,800	288,700	295,400	304,300
	전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	3.0	3.1	3.3	3.3
계약협정 고용의무 기업체	실질적으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수	92,900	98,400	97,400	112,200
	반일제(이상)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수	77,200	84,000	82,400	95,100
	반일제(이상)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	3.4	3.7	4.0	4.1
	전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72,200	76,300	74,700	86,300
	전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	3.2	3.4	3.6	3.7

주: 1) 기업체는 프랑스 전체.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상업 관련 민간, 공기업을 의미함
2) 근로자는 기업체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 대상임. 즉 하청업체, 인턴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기업체의 장애 인구에 대한 고용의무 장애인구 수는 기업체 고용 인구 수 정원의 6%임. 일반적으로 6%가 유지되지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예를 들면 33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6% x 33 = 1.98 이지만 소수점 자리를 빼면 1명으로, 1명(3%)을 의무고용 수로 인정하게 됨
4) 장애인구 근로자 단위 수: 계약 형식(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상관없이 근로시간으로 파악함. 반일제 이상 근로인 경우 1, 반일제 미만 근로인 경우 0.5로 계산함
5) 프랑스에서는 더블카운트제도(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고려함)는 없지만,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그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하는 패널티 금액을 삭감 또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배치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자료: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2014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66호, 2016년 11월 발행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traitements DARES

- 2014년 고용의무 기업체는 101,000개로 2013년 99,800개에 비해 증가하였고,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 또한 2014년 9,255,000명으로 2013년 9,019,900명에 비해 증가함
- 2014년 기준 고용된 전체 근로자 총 9,255,000명 중 503,900명이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의무(OETH) 자격에 속함
- 전체 고용의무 기업체 내 반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은 3.6%, 전일제 비율은 3.3%이며, 계약협정 고용의무 기업체 내 반일제 비율은 4.1%, 전일제는 3.7%임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의무(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고용의무자격(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함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기여금(패널티)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패널티)을 민간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에, 공공사업체는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FIPHFP)에 납부해야함
- 이 법은 2005년 장애인 개정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SMIC)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이를 수 있음

〈표 15-3-5〉 고용의무자격(OETH) 장애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연도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 인구 중 고용의무자격(OETH) 대상				20인 이상 고용된 기업 (공사(Epic) 포함)에 고용된 인구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성별	남성	61.0	59.0	58.0	58.0	58.0	58.0	59.0	58.0
	여성	39.0	41.0	42.0	42.0	42.0	42.0	41.0	42.0
연령	15 - 24세	2.0	2.0	2.0	2.0	8.0	7.0	7.0	7.0
	25 - 39세	21.0	19.0	18.0	18.0	39.0	38.0	37.0	37.0
	40 - 49세	32.0	31.0	31.0	30.0	28.0	29.0	29.0	29.0
	50세 이상	45.0	48.0	49.0	50.0	25.0	26.0	27.0	27.0
경력	1년 미만	11.0	10.0	9.0	9.0	10.0	9.0	10.0	9.0
	1년 이상 2년 미만	7.0	7.0	6.0	6.0	7.0	8.0	7.0	7.0
	2년 이상 5년 미만	14.0	13.0	13.0	13.0	18.0	16.0	15.0	17.0
	5년 이상 10년 미만	16.0	17.0	18.0	18.0	17.0	18.0	18.0	19.0
	10년 이상	52.0	53.0	54.0	54.0	48.0	49.0	50.0	48.0
직급	고위 간부직	6.0	7.0	7.0	7.0	22.0	23.0	21.0	20.0
	중간 관리직	16.0	16.0	16.0	17.0	26.0	27.0	27.0	26.0
	사무직	32.0	33.0	32.0	33.0	23.0	22.0	23.0	23.0
	노동직	46.0	44.0	45.0	43.0	29.0	28.0	29.0	30.0
고용상태	정규직	89.0	89.0	90.0	89.0	89.0	89.0	89.0	89.0
	계약직	7.0	7.0	7.0	7.0	6.0	6.0	6.0	6.0
	임시직 및 기타	4.0	4.0	3.0	4.0	5.0	5.0	5.0	5.0
근로시간	전일제	74.0	74.0	74.0	73.0	87.0	87.0	86.0	86.0
	시간제	26.0	26.0	26.0	27.0	13.0	13.0	14.0	14.0
종사업종	산업, 공업	31.0	30.0	30.0	29.0	28.0	29.0	28.0	26.0
	건설업	6.0	6.0	6.0	5.0	6.0	6.0	6.0	6.0
	식료품 상업, 교통, 숙박, 식당업	63.0	24.0	26.0	26.0	66.0	26.0	25.0	26.0
	정보 · 커뮤니케이션업		3.0	2.0	2.0		5.0	5.0	5.0
	회계, 보험, 부동산업		6.0	6.0	6.0		5.0	6.0	6.0
	전문, 연구, 기술, 행정서비스지원		13.0	12.0	13.0		14.0	14.0	14.0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16.0	16.0	17.0		13.0	14.0	14.0
	기타 서비스업		2.0	2.0	2.0		2.0	2.0	3.0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거주자.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상업 관련 민간, 공기업
자료: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2012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66호 2016년 11월 발행.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Insee, 2012, 2013 고용 조사, DARES 분석

- 전체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고용의무자격이 있는 장애 인구는 근로자 전체에 비하여 연령대가 높으며, 특히 2014년의 경우 50세 이상은 전체인구에서 27.0%인 것에 비해 장애 인구는 50.0%로 절반가량을 차지함
- 경력의 경우, 고용의무자격 장애 인구에서 10년 이상이 54.0%로 절반 이상이며, 직급의 경우 노동직 비율이 43.0%로 높고 고위 간부직 비율은 7.0%로 낮음(전체인구의 경우 각각 30.0%, 20.0%임)
- 고용상태의 경우 정규직이 대부분이며, 근로시간의 경우 전일제 비율이 높으나 전체인구 대비 시간제 비율이 장애 인구에서 높게 나타남
- 종사업종의 경우 고용의무자격 장애 인구에서 산업 및 공업 분야가 29.0%로 가장 높은 반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2.0%로 가장 낮음(전체인구에서는 각각 26.0%, 5.0%임)

〈표 15-3-6〉 고용의무 민간기업체의 장애인구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인 이상 고용된 기업 (공사(Epic) 포함)에 고용된 인구
인원 수(명)		307,800	336,900	367,400	361,100	386,700	7,972,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65.0	64.0	61.0	59.0	58.0	59.0
	여성	35.0	36.0	39.0	41.0	42.0	41.0
연령	15 - 24세	2.0	2.0	2.0	2.0	2.0	7.0
	25 - 49세	55.0	54.0	53.0	51.0	49.0	66.0
	50세 이상	43.0	44.0	45.0	47.0	49.0	27.0
직급	기업 운영자 및 고위 간부직	5.0	5.0	6.0	7.0	7.0	21.0
	중간 관리직	13.0	13.0	16.0	16.0	16.0	27.0
	사무직	28.0	29.0	32.0	33.0	32.0	23.0
	노동직	54.0	53.0	46.0	44.0	45.0	29.0
근속 기간	1년 미만	11.0	12.0	11.0	10.0	9.0	10.0
	1년 이상 2년 미만	7.0	7.0	7.0	7.0	6.0	7.0
	2년 이상 5년 미만	15.0	16.0	14.0	13.0	13.0	15.0
	5년 이상 10년 미만	17.0	16.0	16.0	17.0	18.0	18.0
	10년 이상	49.0	49.0	52.0	53.0	54.0	50.0

주: 범위: 상공업 분야의 공공 및 민간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 프랑스 전체
자료: Dares, Emploi et chomage des personnes handicapees, 2015년 11월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 Insee, 2013년 고용조사, Dares 분석

- 고용의무 민간 기업체에 고용된 장애 인구수가 상승하는 추세임
- 고용의무 민간 기업체에 고용된 장애 인구에서 남성이 절반 이상이지만 성 불균형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연령대를 보면 50세 이상이 전체 인구 2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장애 인구에서는 49%를 차지함
- 전체인구에서 다양한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장애 인구에서는 노동직이 45%로 절반가량을 차지함
-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며 장애 인구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표 15-3-7〉 고용의무 민간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 규모 및 활동분야별

(단위: %)

구분		고용의무 기업체 전일제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고용의무 기업체 반일제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전체 기업		3.3	3.6
기업 규모	20-40인	3.0	3.3
	50-99인	3.3	3.6
	100-199인	3.3	3.6
	200-499인	3.4	3.8
	500인 이상	3.6	3.9
활동 분야	산업, 공업	3.9	4.1
	건설업	2.9	3.0
	식료품 상업, 교통, 숙박업, 식당업	3.5	3.8
	정보 · 커뮤니케이션업	1.4	1.6
	회계, 보험, 부동산업	2.7	3.0
	전문, 연구, 기술, 행정서비스지원	2.5	2.9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4.1	4.8
	기타 서비스업	3.0	3.3

주: 1) 대상: 상공업 분야의 공공 및 민간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 프랑스 전체
2) 2013년 기준
자료: Dares, Emploi et chomage des personnes handicapees, 2015년 11월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 Insee, 2013년 고용조사 ; Dares 분석

- 기업의 근로자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구 전일제 및 반일제 모든 고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전일제의 경우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3.0%,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3.6%이고 반일제의 경우 각각 3.3%, 3.9%로 나타남
- 전일제의 경우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분야에서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산업 · 공업에서 3.9%, 식료품 상업, 교통, 숙박업, 식당업에서 3.5% 순임. 가장 낮은 분야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1.4%임
- 반일제의 경우 전일제와 같이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에서 4.8%로 가장 높고 식료품, 상업, 교통, 숙박업 및 식당업에서 3.8%로 두 번째로 높음

〈표 15-3-8〉 고용의무 공공기업체의 장애인구

(단위: 명, %)

구분		정부부처	지방정부	의료부문	공공기관 전체
인원 수(명)		69,700	88,500	49,600	207,800
공공기관 고용 비율		34.0	42.0	24.0	100.0
성별	남성	47.0	49.0	26.0	43.0
	여성	53.0	51.0	74.0	57.0
연령	15-25세	1.0	1.0	1.0	1.0
	26-40세	22.0	15.0	15.0	17.0
	41-55세	57.0	58.0	63.0	58.0
	56세 이상	21.0	25.0	22.0	24.0
직급	A	30.0	3.0	8.0	13.0
	B	23.0	7.0	17.0	15.0
	C	31.0	82.0	69.0	61.0
	정부 소속 노동자	2.0	-	-	1.0
	기타(카테고리 해당없음)	14.0	8.0	6.0	10.0

주: 1) 대상: 20인 이상 전일제(동등인정) 근로자 고용 공공기관 (재판소 및 사회보장기금 제외); 프랑스 전체
2) 2013년 기준
3) 직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A: 대학학부과정 졸업요건으로 채용되는 고위관리직(더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특정 직급은 예외로 함)
- B: 대학학부과정 이수조건으로 채용되는 팀, 서비스, 작업장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직
- C: 직업학교졸업 및 자격증 조건으로 채용되는 현장실천직
- 정부 소속 노동자: 일반적으로 국방부 소속의 기술자를 지칭함

자료: Dares, Emploi et chomage des personnes handicapees, 2015년 11월
원자료: FIPHFP

〈표 15-3-9〉 고용의무 공공기업체의 고용의무 달성 정도

(단위: 개, %)

구분	정부부처	지방정부	의료부문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제외한 공기업	전체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없음	72(19.0)	1,030(13.0)	231(10.0)	1,333(13.0)	56(20.0)	1,389(13.0)
고용의무자격자 고용+기여금	170(43.0)	2,044(27.0)	1,016(46.0)	3,230(31.0)	166(59.0)	3,396(32.0)
고용의무자격자 고용	149(38.0)	4,605(60.0)	997(44.0)	5,751(56.0)	60(21.0)	5,811(55.0)
합계	391(100.0)	7,679(100.0)	2,244(100.0)	10,314(100.0)	282(100.0)	10,596(100.0)

주: 1) 대상: 20인 이상 전일제(동등인정) 근로자 고용 공공기관 (재판소 및 사회보장기금 제외) ; 프랑스 전체
2) 2013년 기준
자료: Dares, Emploi et chomage des personnes handicapees, 2015년 11월
원자료: FIPHFP

- 2013년 207,800명의 장애인구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고용되었으며 정부부처 34%, 지방정부가 42%, 의료부문이 24%를 차지함
-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총 10,596개소로 그 중에서 55%는 고용의무자격자(OETH)를 고용하였고, 32%는 고용의무자격자 고용하면서 기여금 납부하였으며, 13%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고 오직 기여금만을 납부함
  - 기여금(패널티) 납부를 선택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만을 한 경우는 지방정부가 60%로 가장 높고 의료부문이 44%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중앙정부는 38%를 차지함

(3) 실업 및 구직

〈표 15-3-10〉 장애인구의 실업률

(단위: %)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2011	전체	20.0	23.0	21.0	12.0	14.0	13.0	8.0	10.0	9.0
	15-24세	-	-	-	30.0	31.0	31.0	19.0	24.0	22.0
	25-39세	21.0	19.0	20.0	16.0	21.0	18.0	9.0	11.0	10.0
	40-49세	21.0	25.0	23.0	11.0	12.0	11.0	6.0	7.0	7.0
	50-64세	18.0	23.0	20.0	9.0	10.0	10.0	6.0	7.0	7.0
2013	전체	19.0	17.0	18.0	15.0	13.0	14.0	10.0	10.0	10.0
	15-24세	31.0	35.0	33.0	29.0	30.0	30.0	24.0	25.0	24.0
	25-39세	19.0	19.0	19.0	18.0	15.0	17.0	11.0	10.0	11.0
	40-49세	18.0	17.0	17.0	14.0	12.0	13.0	7.0	8.0	7.0
	50-64세	19.0	15.0	17.0	13.0	11.0	12.0	7.0	7.0	7.0
2015	전체	20.0	17.0	19.0	17.0	13.0	15.0	11.0	10.0	10.0
	15-24세	-	-	30.0	-	-	34.0	-	-	26.0
	25-39세	-	-	19.0	-	-	17.0	-	-	11.0
	40-49세	-	-	17.0	-	-	14.0	-	-	8.0
	50-64세	-	-	18.0	-	-	13.0	-	-	7.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2) 실업률: 세계노동기구(BIT)의 의미로 해당 연령층의 직업 활동중이거나 실업중인 인구 대비 실업중인 인구 수의 비율
자료: 프랑스 경제 통계연구소(Insee) 2011년 보완조사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n°. 17 2015년 11월,「장애인 근로자 고용 진입」n°. 32 2017년 5월
원자료: Insee, 2011년 고용조사 보충자료; 2013년 고용조사; Dares 분석

- 2013년에 비해 2015년 전체인구의 실업률은 변화가 없는 반면 장애인구의 실업률은 증가함
- 2015년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의 실업률은 19.0%이며 전체인구의 실업률 10.0%와 비교했을 때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5-3-11〉 장애인구 구직률 -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장애 인구 구직자			전체 인구 구직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인원 수(명)	256,054	212,369	468,423	2,755,566	2,773,402	5,528,968
비율	55.0	45.0	100.0	50.0	5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3.0	3.0	3.0	13.0	12.0	13.0
25-49세	51.0	48.0	50.0	64.0	63.0	63.0
50세 이상	46.0	49.0	47.0	24.0	25.0	24.0

주: 1) 구직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A, B, C 카테고리, 프랑스 전체
2) 2015년 6월말 기준
자료: Dares「장애인 고용과 실업」n°. 17 2015년 11월
원자료: Dares-Pole emploi, STMT; Dares 분석

- 2015년 장애인구의 구직자는 468,423명으로 전체인구의 8.5%를 차지함
- 장애인구의 구직자는 전체인구에 비해 남성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50세 이상의 구직자 비율도 전체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구직자 (les demandeurs d'emploi)

- 프랑스 구직센터 (Pole emploi)에 등록된 대상을 일컫는 용어로 다음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뉘며 실업자를 지칭할 때의 구직자 용어 사용은 A, B, C 카테고리를 일컬음. 장애인구의 구직자는 고용의무자격 장애인구를 뜻함
  - A: 완전 실업 상태
  - B: 짧은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하)
  - C: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상)
  - D: 실습, 직업훈련,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 상태
  - E: 고용된 상태

〈표 15-3-12〉 장애인구의 구직률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구직자		4,193,879	4,351,883	4,584,152	4,977,082	5,269,775	5,593,700	5,607,511	5,846,527
장애인 구직자		231,227 (5.6)	259,516 (6.0)	295,611 (6.4)	370,674 (7.4)	413,421 (7.8)	452,701 (8.1)	461,924 (8.2)	489,360 (8.4)
성별	남성	-	57.0	56.0	56.0	55.0	55.0	54.0	54.0
	여성	-	43.0	44.0	44.0	45.0	45.0	46.0	46.0
연령별	50세 미만	66.0	63.0	59.0	57.0	57.0	55.0	54.0	52.0
	50세 이상	34.0	37.0	41.0	43.0	43.0	45.0	46.0	48.0

주: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카테고리 A, B, C 대상
자료: 공공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 및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년도), 「장애인과 고용-주요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 (Pôle emploi)

〈표 15-3-13〉 구직 기간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1년 이상	53.0	39.0	55.0	42.0	56.0	43.0	58.0	45.0	56.0	44.0
2년 이상	30.0	19.0	32.0	21.0	35.0	24.0	36.0	25.0	36.0	25.0
3년 이상	19.0	11.0	20.0	12.0	22.0	14.0	24.0	15.0	24.0	16.0

주: 프랑스 구직센터 등록 인구
자료: 1)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2)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전체 구직자 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장애인 구직자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임
  - 특히 2011-2012년은 전체 구직자 수와 장애인 구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2016년에는 남성이 54.0%, 여성이 46.0%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50세 미만은 감소하고 있음
- 구직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보다 장애인구의 구직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며,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구직 기간이 매 년 늘어나는 추세임
  - 2016년 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인구에서 16.0%, 장애인구에서 24.0%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5-3-14〉 고용의무자격 구직자의 주요 신청 (종사)업종군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구 (명)	장애인구 (%)	전체인구 (%)	장애인구 (명)	장애인구 (%)	전체인구 (%)	장애인구 (명)	장애인구 (%)	전체인구 (%)	장애인구 (%)
인적 및 지역사회서비스	97,466	24.0	21.0	108,940	24.0	21.0	114,681	24.0	21.0	25.0
기업 지원	62,316	16.0	12.0	67,145	15.0	12.0	70,485	15.0	12.0	15.0
상업, 판매 및 배급	43,596	11.0	15.0	49,777	11.0	15.0	52,552	11.0	15.0	11.0
교통 지원	44,495	11.0	9.0	50,495	11.0	9.0	52,255	11.0	9.0	11.0

주: 1) 인적 및 지역사회 서비스 : 지역사회 안전 및 유지 역할
2) 기업 지원: 회계 및 구매 지원
3) 교통 지원: 운전, 배달, 운반
4) 범위: 프랑스 구직센터 등록 인구
자료: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년도),「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구직자의 신청 업종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인적 및 지역사회 서비스군에 대하여 매년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임

4) 재정

(1) 장애인복지 지출

〈표 15-4-1〉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변화율(%)	2010-2015 변화율(%)
60세 이상 개인자율수당(APA) 경우								
전체 수당(서비스) 제공 건수	*1,307,900*	*1,334,300*	*1,356,200*	*1,374,800*	*1,387,400*	*1,396,600*	*0.7*	*6.8*
재가 서비스	730,100	741,400	749,500	755,600	758,400	764,500	0.8	4.7
위탁 서비스	577,800	592,900	606,700	619,200	629,200	632,100	0.5	9.4
전체 지출	*7,804*	*7,917*	*8,047*	*8,062*	*8,129*	*8,210*	*1.0*	*5.2*
재가 서비스	3,397	3,395	3,371	3,324	3,357	3,332	△0.7	△1.9
위탁 서비스	4,153	4,262	4,396	4,469	4,522	4,643	2.7	11.8
60세 이상 제3자보상수당(ACTP), 장애보상수당(PCH) 경우								
전체 수당(서비스) 제공 건수	*371,600*	*403,500*	*430,500*	*450,700*	*472,500*	*490,500*	*3.8*	*32.0*
재가 서비스	251,700	279,200	300,900	317,200	335,600	336,600	0.3	33.7
위탁 서비스	119,900	124,200	129,500	133,500	136,900	153,900	12.4	28.4
전체 지출	*6,417*	*6,845*	*7,217*	*7,464*	*7,717*	*7,927*	*2.7*	*23.5*
재가 서비스	1,709	1,862	2,002	2,092	2,154	2,217	2.9	29.7
위탁 서비스	4,542	4,796	5,023	5,158	5,348	5,491	2.7	20.9

주: 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Mayotte 제외)
2) 전체 수당(서비스) 제공 횟수: n(해당연도)-1 12월 31일과 해당 연도의 평균값으로, 서비스 수혜자 수가 아닌 제공된 서비스 수임
3) 재가서비스: 장애인 본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ACRP, PCH 및 APA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칭함
4) 위탁서비스: 위탁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의 가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가족수당 기여금 징수 연합(Urssaf)에 신고하여 허가된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유료 돌봄서비스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 통계국(DREES), 「2014년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 보고서」 2016년 2월, 「2015년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 보고서」, 2017년 1월

원자료: DREES, enquêtes Aide sociale. CNAF, MSA pour les allocataires du RMI, du RSA « socle », « socle majoré » et du RSA expérimental. DARES pour les bénéficiaires des contrats uniques d'insertion, des CI-RMA, et des contrats d'avenir.

- 60세 이상 장기요양보험(APA), 제3자보상수당(ACTP) 및 장애보상수당(PCH) 지출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2015년 60세 이상 개인자율수당(APA)의 제공 건수는 1,396,600건으로 2014년에 비해 0.7%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490,500백만 유로로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함
  - 2015년 60세 이상 제3자보상수당(ACTP) 및 장애보상수당(PCH)의 제공 건수는 490,500건으로 2014년에 비해 3.8%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927백만 유로로 2014년에 비해 2.7% 증가함
  - 제3자보상수당(ACTP) 및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제공 건수는 재가서비스가 위탁서비스 보다 높으나, 2014-2015 변화율은 위탁서비스가 12.4%로 큰 폭으로 증가함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하며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제3자보상수당(ACTP)은 2006년 1월부터 장애보상수당(PCH)으로 이름이 바뀌어 내용이 보완되어 대체됨
  - 장애보상수당(PCH)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른 보조금 액수 변동에 대한 혼란과 불평으로 인해 기존 ACTP 수혜자들에 한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ACTP를 유지하거나 PCH로 변경할 수 있음
  - ACTP나 PCH를 수급 받는 도중 60세가 되면 APA로 서비스 수급이 변경되지만, 수급자가 원할 시 기존에 받고 있던 ACTP나 PCH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 가능함

개인자율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 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가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를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

〈표 15-4-2〉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

(단위: 유로(€))

유형	서비스형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인적도움	881	794	806	857	841	841	837	856
2	기술·전문적 도움	915	838	798	769	773	791	835	875
3	집안개조	3,456	3,333	3091	3125	2,921	2,999	3,007	3,083
	자동차 개조	2,633	2,381	2498	2532	2,679	2,758	2,481	2,612
	교통수단 보조수당	–	–	–	142	130	136	133	146
	교통수단 보조수당(일시적)	–	–	–	–	–	–	3453	3,069
4	특수·예외수당	268	225	262	294	338	543	587	658
5	안내·보호견	99	47	113	69	47	51	49	52

주: 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2) 월별 수령: 인적도움, 교통수단 보조수당, 안내 및 보호견 등임
3) 일시적 수령: 기술 및 전문적 도움, 집안개조, 자동차 개조, 교통수단 보조수당, 특수 및 예외수당 등임
4) 사회가족복지법 245조 3항에 의하면 1. 인적도움 2. 기술·전문적 도움 3. 집안개조·자동차개조·교통수단 보조수당 4. 특수·예외수당 5. 안내·보호견으로 총 5가지 유형의 장애보상수당으로 분류됨. ① 인적도움: 일상생활(화장실, 옷 입기, 식사하기, 이동 등)하는 데에 활동보조인(가족부양자도 가능)의 도움, ② 기술·전문적 도움: 필요한 장애용구 구입 및 렌트, ③ 집안·자동차 개조: 장애인이 생활 및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맞춤 개조, 교통수단 보조수당: 활동보조인과 동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또는 50km 이상 거리의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장애인 맞춤 교통수단 이용, ④ 특수·예외수당: PCH에 속한 유형(인적도움, 기술전문도움, 집안 및 자동차 개조, 교통수단, 안내보호견) 외의 장애 관련한 다른 필요한 수당(예: 의료용 침대 수리비용 등), ⑤ 안내·보호견: 자율성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과 본인이 안내견을 키울 수 있는 경우에 (미리 훈련된)안내·보호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자료: 노인과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CNSA)(각년도), 「장애 보상 수당 분석」

원자료: Enquete mensuelle PCH, CNSA

–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은 각 유형별로 특정한 경향을 찾을 수 없음
- 5개의 서비스 유형은 월별 및 일시적 평균 금액으로 나뉠 수 있는데, 유형 3에서 교통수단 보조수당, 집안개조와 자동차 개조가 일시적인 지급 금액이 높지만 월별 수당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형 1 인적도움 서비스의 지급 금액이 가장 높음(2016년 856유로)
- 특수 · 예외 수당이 증가추세로 2015년 658유로임
- 장애보상수당(PCH) 중 안내·보호견 수당 금액이 가장 낮으며, 2016년 52유로임

장애보상수당(PCH)은 공식기관을 통한 간접 고용 뿐만 아니라 일대일 직접 고용에도 지급됨. 즉, 전문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자에게도 해당됨. 인적도움 지급금액은 지역장애인센터(MDPH)의 종합평가사정팀에 의하여 개인장애보상계획 시 책정됨

5) 복지

(1) 경제활동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

〈표 15-5-1〉 경제활동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

(단위: 천명 유로, %)

구분	2012				2013			
	인구 분포	중위소득 수준 (2013년 유로)	빈곤 인구수	빈곤율	인구 분포 (%)	중위소득 수준 (2013년 유로)	빈곤 인구수	빈곤율 (%)
총계	100.0	20,020	8,824	14.3	100.0	20,100	8,648	14.0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45.7	21,560	3,120	11.1	45.4	21,610	2,968	10.5
취업자	41.1	22,360	2,020	8.0	40.9	22,320	1,927	7.6
임금근로자	36.4	22,300	1,551	6.9	36.3	22,320	1,411	6.3
자영업자	4.7	23,100	469	16.2	4.6	22,370	516	17.9
실업자	4.6	13,730	1,100	38.7	4.5	14,120	1,041	37.3
18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31.9	19,220	2,897	14.7	32.2	19,220	2,954	14.8
은퇴자	21.8	20,590	1,039	7.7	10.1	20,690	1,078	7.9
기타 비활동인구 (학생 포함)	10.2	15,750	1,858	29.6	22.1	15,640	1,876	30.1
18세 미만	22.4	18,110	2,807	20.4	22.4	18,230	2,726	19.6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대상
자료: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2013년 삶, 소득수준」2015년 9월, 「2013년 삶, 소득수준」2015년 9월
원자료: Insee, DGFiP, Cnaf, Cnav, CCMSA, 2010, 2011, 2012, 2013년도 사회-회계 소득 조사

- 2013년 기준 경제활동 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중위 소득 수준은 21,610 유로이며, 18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중위소득은 19,220 유로로 나타남
  - 2013년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은 각각 10.5%, 14.8%로 나타남
- 2012년과 2013년의 실업자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38.7%에서 37.3%로 감소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5-5-1〉 경제활동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계속)

(단위: 천명 유로, %)

구분	2014				2015			
	인구 분포 (%)	중위소득수준 (2013년 유로)	빈곤 인구수	빈곤율 (%)	인구 분포 (%)	중위소득수준 (2013년 유로)	빈곤 인구수	빈곤율 (%)
총계	100.0	20,210	8,732	14.0	100.0	20,300	8,875	14.2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45.5	21,580	3,074	10.8	45.3	21,790	3,079	10.8
취업자	40.8	22,310	1,974	7.8	40.7	22,500	1,987	7.8
임금근로자	36.1	22,310	1,423	6.3	36.0	22,490	1,475	6.5
자영업자	4.7	22,340	551	18.7	4.7	22,680	512	17.3
실업자	4.7	14,230	1,100	37.3	4.6	14,060	1,092	37.6
18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32.0	19,510	2,885	14.4	32.3	19,560	3,005	14.9
은퇴자	22.3	20,880	1,000	7.2	22.4	21,080	1,028	7.3
기타 비활동인구 (학생포함)	9.7	15,620	1,885	30.9	9.9	15,260	1,977	32.1
18세 미만	22.5	18,330	2,773	19.8	22.4	18,370	2,791	19.9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대상
자료: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2013년 삶, 소득수준」2015년 9월, 「2013년 삶, 소득수준」2015년 9월
원자료: Insee, DGFiP, Cnaf, Cnav, CCMSA, 2010, 2011, 2012, 2013년도 사회-회계 소득 조사

- 2015년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은 10.8%로 전년도와 변함없음
  - 취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인구분포는 4.7%로 임금근로자 36%에 비하여 매우 적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율은 17.3%으로 작년에 비해 1.4%p 감소함. 이는 임금근로자 6.5%의 약 3배 수준임
  - 2012년과 비교 시 2015년의 실업자 빈곤율은 38.7%에서 37.6%로 감소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0.3%p 상승함
- 18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은퇴자 빈곤율은 2012년 7.7%에서 2015년 7.3%로 0.4%p 감소함

(2) 성인장애수당(AAH)

〈표 15-5-2〉 성인장애수당(AAH) 신청 건수와 수급자격 인정 현황

(단위: 건 수,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청 건수	336,000	347,000	371,000	396,000	425,000	451,000	526,000
신청 연별 변화율	–	+3.2	+7.0	+6.7	+7.4	+6.2	+16.5
수급자격 인정 연별 변화율	354,000	360,000	362,000	396,000	426,000	454,000	499,000
연별 인정률	–	+1.5	+0.6	+9.5	+7.5	+6.5	+10.1

주: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대상
자료: 노인과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CNSA), 「2007-2013년 성인장애수당(AAH)관련 MDPH 활동통계보고서」, 3호, 2015년 3월 발행

– 2013년 526,000건의 성인장애수당(AAH)의 신청이 있었으며, 2012년 451,000건과 비교했을 때 16.5% 상승함
– 2007년과 2013년 동안 성인장애수당(AAH)의 신청 수는 336,000건에서 526,000건으로 56.5% 상승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약 3%의 신청 건수 증가가 있은 후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성인장애수당 판정 담당인 장애인 권리·자율위원회(CDAPH)는 수급자격인정 수를 신청건수 증가율에 따라 높이지 않았음
  • 즉 2013년 16% 증가로 가장 높은 신청건수를 보였으나, 10% 안팎으로 수급을 인정함
  •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신청 건수가 증가한 만큼 수당 인정 판정 기간도 연장되어 2012년엔 4개월 1주, 2013년엔 약 5개월 소요되었음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 장애인의 최저 소득을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함
  •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 20세 이상 공식적인 은퇴 연령까지(60- 62세), 소득기준(아래 표 참고), 장애 정도가 최소 80%의 불능상태 혹은 50-79%의 불능상태로 장애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제한이 있는 자

〈성인장애보조금(AAH) 수혜대상 소득 기준표〉 (2017년 기준)

가족 상황	부양 의무 자녀 없음	부양 의무 자녀 있음
1인 가구	9,730.68 €	9,730.68 € + 4,865.34(자녀 한 명당)
부부	19,461.36 €	19,461.36 € + 4,865.34(자녀 한 명당)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5-5-3〉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특성 및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20세 이상 전체 인구
합계		1,040,500	1,062,300	48,726,300
성별	남	51.0	51.0	48.0
	여	49.0	49.0	52.0
연령	20-29	13.0	13.0	15.0
	30-39	17.0	17.0	17.0
	40-49	38.0	26.0	18.0
	50-59	32.0	32.0	18.0
	60세이상	11.0	12.0	32.0
가족상황	미혼	71.0	71.0	21.0
	편부모	6.0	6.0	8.0
	무자녀부부	14.0	14.0	32.0
	유자녀부부	9.0	9.0	39.0
장애인정률	50-79%	40.0	41.0	-
	80%이상	60.0	59.0	-

주: 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2) 장애인정률 80% 이상인 경우 중증에 해당함

자료: DREES, 「2015년 사회기초수당조사」, 2017년 발행

원자료: CNAF et MSA pour les effectifs, CNAF pour les réparations (97% des allocataires de l'AAH relèvent des CAF); INSEE, enquête Emploi 2015 pour les caractéristiques de l'ensemble de la population.

- 2015년 성인장애수당 수급자(특수 시설을 제외한 일반 가구에 거주) 수는 총 1,062,3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남녀 성비는 각각 약 50%수준으로 비교적 비슷함 (남 51%, 여49%)
  - 연령별로는 2015년 성인장애수당 수급자의 44%가 50세 이상이고 30%가 40세 미만임
- 2015년 장애인정률로 50-79%에서 전년도 보다 1%p 증가한 반면 80% 이상에서 1%p 하락함

〈표 15-5-4〉 고용의무자격 구직자 중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12월)		2013(9월)		2014(3월)		2015(9월)		2016(12월)	
	고용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자격 구직자 중 비율	고용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자격구직자 중 비율
AAH 수혜자	86,634	23.0	92,898	23.0	94,526	22.0	107,602	22.0	111,321	23.0
AAH만 수혜	26,775	7.0	27,686	7.0	27,115	6.0	30,937	6.0	33,924	7.0
AAH 외 다른 보조금 동시 수혜	59,859	16.0	65,212	16.0	67,411	16.0	76,665	16.0	77,397	16.0

주: 범위: 프랑스 구직센터 등록 인구
자료: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2013-2016년 사이 고용의무자격인정을 받은 인구 중 성인장애수당(AAH)을 수급하는 총 인구수는 2013년 9월 92,898명에서 2016년 111,321명으로 점차 증가함
  -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고용의무자격을 받아 구직신청 중인 인구 가운데 23.0%가 성인장애수당(AAH)을 수급 중인 것으로 전년도 9월에 비해 1%p 증가함
  - 23.0% 중 16.0%는 성인장애수당을 포함하여 행정적으로 장애를 두 가지 이상으로 인정 받은 경우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6) 정신건강

(1) 정신건강관련 시설

〈표 15-6-1〉 정신질환관련 지역사회 시설 수

(단위: 개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설 수	비율 (%)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계		595	100	586	588	579	577	–	635	621
국립 시설		272	45.7	–	–	–	–	–	–	–
비영리 시설	전체	165	27.7	–	–	–	–	–	–	–
	국립병원과 연관된 시설	107	64.8	–	–	–	–	–	–	–
	국립병원과 연관이 없는 시설	54	32.7	–	–	–	–	–	–	–
	미확인	4	2.5	–	–	–	–	–	–	–
영리 사립 시설		158	26.6	–	–	–	–	–	–	–

주: 1) 법적으로 등록된 기관이며 정신질환 외 다른 복합적인 질환관련 시설 포함,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대상
2) 해당 연도 12월 기준
3) 2009-2012년 자료(2009년 통계자료임)부터 정신질환관련 지역사회 시설 수에 대한 총 합계를 제외한 상세한 통계 자료 나와있지 않음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2008년 정신질환돌봄-치료 지역적분포」2011년 발행,「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년 (2015년 미발행으로 2013년 통계자료 없음)

원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프랑스 정신질환관련현황 보고서(RAPSY)

– 정신질환관련 지역사회 시설 수는 2008년 595개소에서 2015년 621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15-6-2〉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

(단위: 병상 수/일 수)

연도		2011				2012			
구분		국립 시설	사립시설		합계	국립 시설	사립시설		합계
			비영리	영리			비영리	영리	
전일제 돌봄, 치료	입원치료시설 (일수)	36,000 (11,689,700)	7,240 (2,274,500)	12,150 (4,294,800)	55,390 (18,259,000)	36,000 (11,676,800)	7,010 (2,229,100)	12,700 (4,408,900)	55,790 (18,314,900)
	홈스테이 치료시설 (일수)	2,680 (732,900)	180 (46,690)	–	2,860 (779,590)	2,590 (708,800)	170 (47,840)	–	2,760 (756,670)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일수)	600 (145,400)	530 (137,200)	290 (101,400)	1,420 (384,000)	590 (155,600)	620 (159,800)	310 (100,300)	1,520 (415,700)
	거주시설 (일수)	880 (210,400)	180 (43,770)	–	1,060 (254,170)	850 (210,400)	190 (44,490)	10 (3,120)	1,050 (258,000)
	재가입원시설 (일수)	620 (156,400)	50 (8,380)	–	670 (164,780)	580 (148,160)	50 (10,320)	–	630 (158,480)
	긴급시설센터 (일수)	260 (71,190)	7 (1,690)	14 (5,020)	281 (77,900)	310 (72,700)	7 (1,650)	8 (2,160)	325 (76,500)
시간제 돌봄, 치료	주간병원 (일수)	13,630 (2,618,000)	3,150 (601,200)	820 (226,000)	17,600 (3,445,200)	13,680 (2,552,200)	3,210 (622,300)	970 (278,900)	17,860 (3,453,380)
	야간병원 (일수)	1,060 (117,400)	250 (54,210)	60 (10,700)	1,370 (182,310)	1,010 (110,800)	240 (53,880)	80 (14,260)	1,340 (178,980)
	시간제 치료센터 (CATTP) 치료훈련시설 (일수)	1,080 (1,395,600)	130 (209,000)	–	1,210 (1,604,600)	1,100 (1,330,500)	130 (199,600)	–	1,240 (1,530,100)
통원 치료	정신질환 진찰치료센터 (일수)	1,960 (11,044,000)	230 (1,382,000)	–	2,190 (12,426,000)	1,780 (10,952,900)	210 (1,406,000)	–	1,990 (12,358,900)

주: 1) 소아·아동 대상 제외한 성인(만16세 이상) 일반 정신질환시설 자료임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각년도).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2013년도 자료 미발행)
원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프랑스 정신질환관련시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시간제 돌봄·치료시설과 통원치료센터로 나뉨

–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 입원치료시설: 다루기 힘든 심각한 증상으로 격리되어 계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돌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용
- 홈스테이치료시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가정에 맡겨져 돌봄을 받는 경우로 중,장기적으로 다른 돌봄치료와 함께 이용 가능
-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심각한 증상으로의 입원치료 후 자치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재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치료 연장의 경우 이용
- 거주시설: 병원을 벗어난 주거돌봄치료시설. 제한된 기간 내, 계속적으로 돌봄치료사가 필요한 경우 이용. 사회적 재진입을 목적으로 함
- 재가입원시설(HAD): 환자의 가정과 공동거주시설도 포함. 제한된 기간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재진단, 기간갱신 가능. 재가치료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 등)들의 협력하에 방문치료가 이루어짐
- 긴급시설센터: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각한 증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내내 운영. 단기간 강화된 돌봄 제공

– 시간제 돌봄·치료시설
- 주간병원: 주간 특정한 시간에 개인별로 강화되어 복합적인 돌봄치료 제공
- 야간병원: 야간 돌봄치료. 주간 동안 어느 정도의 자치능력이 있지만 밤과 주말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 시간제 치료센터 주간병원 수준의 강화된 돌봄이 아닌, 사회적 재적응과 자치적인 삶을 재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약화된 돌봄제공
- 치료재활시설: 사회 혹은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을 목적. 수공품, 예술품, 스포츠활동 등을 통한 작업요법 사용.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5-6-2〉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계속)

(단위: 병상 수/일 수)

연도		2014				2015			
구분		국립 시설	사립시설		합계	국립 시설	사립시설		합계
			비영리	영리			비영리	영리	
전일제 돌봄, 치료	입원치료시설 (일수)	35,132 (11,287,229)	7,024 (2,205,635)	13,056 (4,583,191)	55,212 (18,076,055)	34,776 (11,157,231)	6,944 (2,179,187)	13,138 (4,593,206)	54,858 (17,929,624)
	홈스테이 치료시설 (일수)	2,559 (659,915)	461 (45,442)	–	3,020 (705,357)	2,505 (653,161)	491 (45,004)	–	2,996 (698,165)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일수)	621 (161,605)	671 (176,923)	172 (61,181)	1,464 (399,709)	610 (152,364)	664 (174,304)	174 (61,576)	1,448 (388,244)
	거주시설 (일수)	849 (215,597)	189 (44,325)	–	1,038 (259,922)	1,192 (211,138)	205 (48,433)	–	1,397 (259,571)
	재가입원시설 (일수)	591 (145,040)	57 (14,588)	–	648 (159,628)	569 (143,076)	42 (11,337)	15 (1714)	626 (156,127)
	긴급시설센터 (일수)	376 (102,129)	12 (3,416)	12 (5,488)	400 (111,033)	407 (113,766)	27 (7,564)	18 (7,075)	452 (128,405)
시간제 돌봄, 치료	주간병원 (일수)	13,625 (2,534,912)	3,270 (596,339)	1,206 (354,141)	18,101 (3,485,392)	13,545 (2,514,506)	3,343 (591,403)	1,300 (413,511)	18,188 (3,519,420)
	야간병원 (일수)	849 (86,032)	225 (45,789)	137 (23,435)	1,211 (155,256)	812 (77,075)	223 (49,358)	129 (27,498)	1,164 (153,931)
	시간제 치료센터 (CATTP), 치료훈련시설 (일수)	275 (209,529)	15 (31,029)	1 (1,273)	291 (241,831)	230 (171,737)	40 (27,008)	1 (1,952)	271 (200,697)
통원 치료	정신질환 진찰치료센터 (일수)	1,857 (8,907,483)	222 (1,104,833)	108 (6,655)	2,187 (10,018,971)	1,939 (9,127,731)	230 (1,089,100)	2 (7,655)	2,171 (10,224,486)

주: 1) 소아·아동 대상 제외한 성인(만16세 이상) 일반 정신질환시설 자료임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각년도).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2013년도 자료 미발행)
원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 30년 동안 정신 질환 관련 전일제 입원 돌봄 수용 여력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
  • 이에 반해 시간제 돌봄 및 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임
– 전일제 돌봄 시설 유형에서는 입원치료시설 병상 수가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으며, 2015년 54,858병상임
  • 다음으로는 홈스테이 치료시설이 2,996병상,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1,448병상, 거주시설 1,397병상, 재가입원시설 626병상, 긴급시설센터 452병상 등의 순임
– 2015년 시간제 돌봄 시설 유형에는 주간병원이 18,188병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야간병원 1,164병상이며, 시간제 치료센터 및 치료훈련시설의 경우 2012년 1,240병상 수에 비하여 2014년 291병상으로 급격하게 낮게 나타났고 2015년의 경우 271병상임
– 전일제 돌봄 시설 유형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치료시설의 경우, 2011년 이후로 55,390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증가세에서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등 매년 유동적으로 나타남
  • 이 외 전일제 시설 중 홈스테이 치료시설은 2011년 2,860병상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3,020병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다시 감소하여 2,996병상임. 사회복귀 재적응 치료시설은 특정한 경향이 없이 유동적임
– 2011–2015년 시간제 돌봄치료시설 중 주간병원의 병상이 17,600개에서 18,188개로 증가함
– 2011년–2015년 비교했을 때, 다수를 차지하는 입원치료시설의 병상 수는 감소하였으며, 통원치료에서 치료센터 수와 통원 일수 모두 감소함

〈표 15-6-3〉 정신질환시설 치료환자 현황

(단위: 명, %, 일 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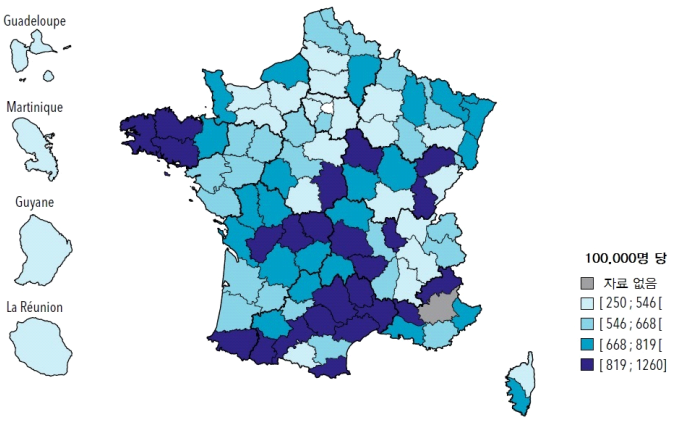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정신질환 아동 및 청소년 (≤만16세)	정신질환 성인 (≥만16세)	계	정신질환 아동 및 청소년 (≤만16세)	정신질환 성인 (≥만16세)	총
입원 치료	환자 수(명)	39,468	375,836	415,304	41,834	378,287	420,121
	비율(%)	67.0	50.0	51.0	66.0	50.0	51.0
	입원일 수	1,780,236	22,353,504	24,133,740	1,780,180	22,490,143	24,270,323
	부분적 입원일 비율	66.0	16.0	20.0	66.0	16.0	20.0
	평균 입원 기간	45.1	59.5	58.1	42.5	59.5	57.8
통원 치료	환자 수(명)	454,534	1,501,418	1,955,952	460,768	1,536,864	1,997,632
	비율(%)	61.0	46.0	50.0	61.0	47.0	50.0
	통원치료 횟수	5,280,603	15,514,567	20,795,170	5,376,335	15,882,025	21,258,360
	정신의학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	76.0	54.0	60.0	76.0	55.0	60.0
	평균 통원치료 일 수	11.6	10.3	10.6	11.7	10.3	10.6

주: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Mayotte을 제외한 DROM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2016,2017년
원자료: ATIH, RIM-P 2015,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2014년도에 비해 2015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임
- 2015년 정신질환시설의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 환자 수가 높음
  - 약 2백만명의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420,121명이 정신질환시설에서 입원하여 치료 받음
  - 그러나 환자 수에 비하여 입원치료일수가 24,270,323일로 통원치료횟수가 21,258,360건 보다 높음(1인당 평균 입원 기간 일수가 57.8인데 반해 평균 통원치료 일수는 10.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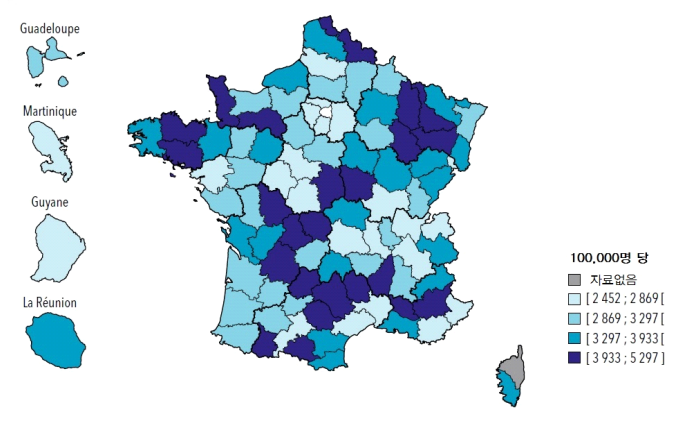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그림 3-2-4] 2015년 프랑스 정신질환시설 전일제 · 시간제 치료 환자 수 분포



주: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Mayotte을 제외한 DROM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2016,2017년
원자료: ATIH, RIM-P 2015,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그림 3-2-4] 2015년 프랑스 정신질환시설 통원치료 환자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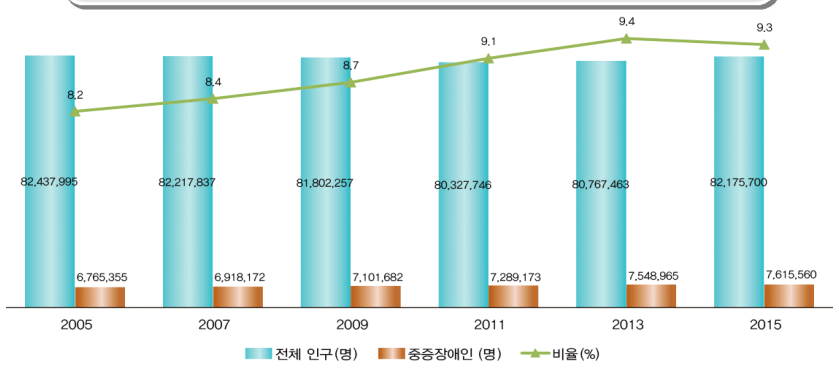


주: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Mayotte을 제외한 DROM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2016,2017년
원자료: ATIH, RIM-P 2015,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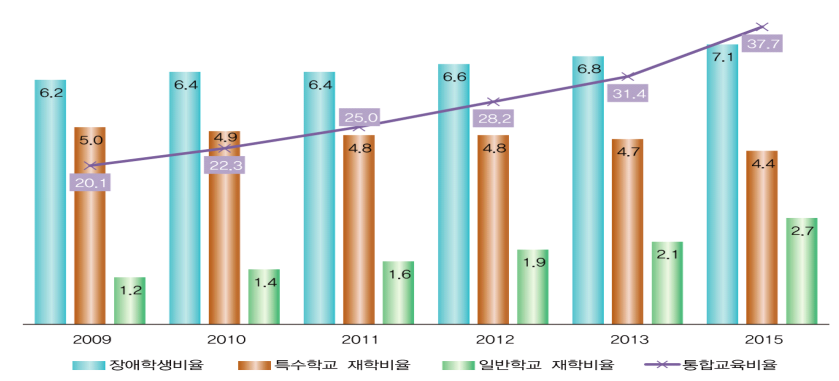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독일

[그림 3-3-1] 중증장애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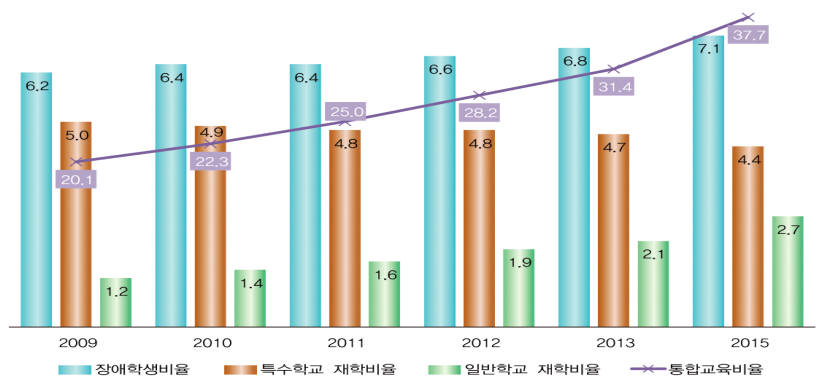
[그림 3-3-2]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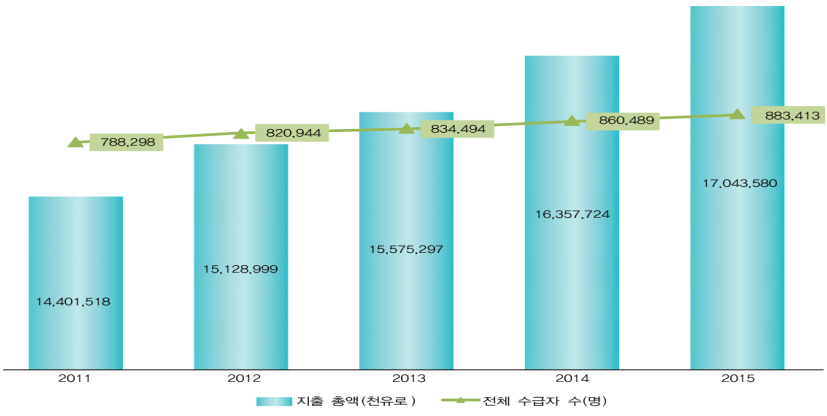
–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지난 2005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전체 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인구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약 9.3%로 독일 인구 중 약 10명당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비율은 7.1%로 2009/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0.9% 증가하였고 2013/2014년 대비 0.3%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장애학생 중 통합교육 비율에 있어서 2009년/10년도의 20.1%에서 2015/16년도에는 37.7%로 1.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통합교육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특수학교에서 재학하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2009/1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학교에서 재학하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일반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비율은 2009/10년 대비 225% 증가하여 통합교육이 일반교육 시스템에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3-3] 중증장애인 고용률



[그림 3-3-4]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독일의 연평균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2010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수와 법적의무고용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는 독일의 사회부조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서 총 지출금액과 수급자가 2005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1) 장애인구

(1) 중증장애인

〈표 16-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전체 인구(A)		82,437,995	82,217,837	81,802,257	80,327,746	80,767,463	82,175,700
중증장애인(B)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7,548,965	7,615,560
비율(B/A)		(8.2)	(8.4)	(8.7)	(9.1)	(9.4)	(9.3)
성별	남성	3,527,983	3,587,250	3,658,107	3,733,913	3,851,568	3,866,994
		(52.1)	(51.9)	(51.5)	(51.2)	(51.0)	(50.8)
	여성	3,237,372	3,330,922	3,443,575	3,555,260	3,697,397	3,748,566
		(47.9)	(48.1)	(48.5)	(48.8)	(49.0)	(49.2)
연령별	4세 미만	14,478	14,297	14,275	14,194	13,928	14,703
		(0.2)	(0.2)	(0.2)	(0.2)	(0.2)	(0.2)
	4–14세	105,735	105,930	109,044	112,364	113,956	116,119
		(1.6)	(1.5)	(1.5)	(1.5)	(1.5)	(1.5)
	15–24세	153,064	157,075	160,405	162,679	161,857	161,688
		(2.3)	(2.3)	(2.3)	(2.2)	(2.1)	(2.1)
	25–34세	200,061	200,510	210,081	223,679	236,602	245,741
		(3.0)	(2.9)	(3.0)	(3.1)	(3.1)	(3.2)
	35–44세	468,581	447,270	417,603	390,234	363,342	345,138
		(6.9)	(6.5)	(5.9)	(5.4)	(4.8)	(4.5)
	45–54세	794,660	826,264	874,509	916,329	931,886	910,665
		(11.7)	(11.9)	(12.3)	(12.6)	(12.3)	(12.0)
	55–64세	1,424,805	1,410,756	1,452,236	1,579,000	1,635,787	1,629,214
		(21.1)	(20.4)	(20.4)	(21.7)	(21.7)	(21.4)
	65세 이상	3,603,971	3,756,070	3,863,529	3,890,694	4,091,607	4,192,292
		(53.3)	(54.3)	(54.4)	(53.4)	(54.2)	(55.0)

주: 1) 독일전체인구 중 2011년 이전의 인구수는 이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서독: 1987년, 동독:1990)를 근거로 한 추정치이며 2011년 이후에는 2011년에 실시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2015년도 독일 전체 인구수를 추정함
2) 중증장애인 수는 원호청(Vorsorgungsamt)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법적인정받은 수치를 근거로 매 2년마다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자료: 연방건강보고에서 '중증장애인' 통계, 연방통계청에서 '중증장애인'통계

–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2015년에 7,615,560명으로 독일 전체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인구비율은 약 9.3%로 독일 인구 중 약 10명당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2005년 대비 약 12.6% 증가하였고 2013년과 비교하면 66,595명(약 0.9%)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증장애인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약 51%)이 여성(약49%)보다 다소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이후 중증장애인의 남녀성별 비율을 분석한다면 남성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도에 있어서 4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수는 계속 늘어나 2015년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수 중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의학적 발전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증장애인이 점차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개념
– 장애인은 사회법전(제9권 제2조 제2항)에서 '어떤 사람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된 자'로 정의
– 법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판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장애정도가 50이상(GdB50이상)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음
• 그와 함께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최소한 20이상(GdB20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GdB20이 되지 못한다면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함. 그러나 GdB30-40까지의 장애인은 노동현장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됨

〈표 16-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계		6,765,355 (100.0)	6,918,172 (100.0)	7,101,682 (100.0)	7,289,173 (100.0)	7,548,965 (100.0)	7,615,560 (100.0)
장애 정도 (GdB)	50	2,044,599 (30.2)	2,093,757 (30.3)	2,170,575 (30.6)	2,286,617 (31.4)	2,410,406 (31.9)	2,479,064 (32.6)
	60	1,098,587 (16.2)	1,119,760 (16.2)	1,143,002 (16.1)	1,173,261 (16.1)	1,202,750 (15.9)	1,203,371 (15.8)
	70	770,049 (11.2)	778,112 (11.2)	791,562 (11.1)	809,208 (11.1)	830,074 (11.0)	833,863 (10.9)
	80	828,419 (12.2)	842,713 (12.2)	861,327 (12.1)	876,456 (12.0)	904,636 (12.0)	915,363 (12.0)
	90	351,423 (5.2)	359,683 (5.2)	369,167 (5.2)	375,098 (5.1)	358,292 (4.7)	386,687 (5.1)
	100	1,672,278 (24.7)	1,724,417 (24.9)	1,766,049 (24.9)	1,768,533 (24.3)	1,815,807 (24.1)	1,797,212 (23.4)
장애 유형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78,804 (1.2)	73,831 (1.1)	68,796 (1.0)	64,332 (0.9)	62,390 (0.8)	59,625 (0.8)
	사지의 기능장애	950,760 (14.1)	953,675 (13.8)	996,689 (14.0)	976,663 (13.4)	985,086 (13.0)	959,762 (12.6)
	척추, 몸통의 기능 장애 및 흉부계 기형	878,018 (13.0)	870,049 (12.6)	885,733 (12.5)	867,029 (11.9)	906,221 (12.0)	886,920 (11.6)
	전맹과 시각장애	347,226 (5.1)	348,442 (5.0)	352,943 (5.0)	350,655 (4.8)	357,018 (4.7)	354,569 (4.7)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276,242 (4.1)	282,035 (4.1)	294,874 (4.2)	305,135 (4.2)	315,799 (4.2)	319,351 (4.2)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기타 유방장애	173,551 (2.6)	177,323 (2.6)	178,841 (2.5)	179,391 (2.5)	180,697 (2.4)	179,436 (2.4)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	1,745,571 (25.8)	1,748,483 (25.3)	1,744,865 (24.6)	1,806,355 (24.8)	1,870,556 (24.8)	1,899,752 (24.9)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1,231,147 (18.2)	1,305,481 (18.9)	1,357,633 (19.1)	1,459,841 (20.0)	1,539,007 (20.4)	1,598,275 (21.0)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084,036 (16.0)	1,158,853 (16.8)	1,221,308 (17.2)	1,279,772 (17.6)	1,332,191 (17.6)	1,357,870 (17.8)

자료: 연방건강보고 (https://www.gbe-bund.de/)에서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통계

-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현황은 장애정도가 50(GdB 50)인 중증장애인이 약 3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GdB100이 약 23.4%(약 1.8백만)를 차지하고 있어 두 그룹이 전체 장애인의 약 50% 이상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2013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지만 장애정도 100(GdB100)의 비율이 약간 하락함
- 장애유형별 현황으로는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를 제외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약 61%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음
  - 신체장애는 세부적으로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24.9%)', '사지의 기능장애(12.6%)','척추, 몸통 장애(11.6%)'를 포함하고 있음
  - 신체장애 다음으로 '하반신 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가 21%로 두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10여년간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하반신 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와 신체장애 중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는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및 장애유형

- 한 개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2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증가함
  - 장애정도가 50이상(GdB500이상)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음
- 독일의 장애유형은 전체 55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며 이것을 다시 크게 9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사지의 기능장애, 척추, 몸통의 기능 장애 및 흉부계 기형, 전맹과 시각장애,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기타 유방장애,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등임
- 독일의 장애유형 구분은 원인적 질병진단(예: 다중경화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형태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능제한(기능변화)을 토대로 이루어짐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 (2015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정도(GdB)					
		50	60	70	80	90	100
계	7,615,560	2,479,064	1,203,371	833,863	915,363	386,687	1,797,212
	(100.0)	(32.6)	(15.8)	(10.9)	(12.0)	(5.1)	(23.4)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59,625	11,355	6,844	8,440	8,917	5,434	18,635
	(0.8)	(0.5)	(0.6)	(1.0)	(1.0)	(1.4)	(1.0)
사지의 기능장애	959,762	332,126	191,241	130,840	108,140	53,928	143,487
	(12.6)	(13.4)	(15.9)	(15.6)	(11.8)	(13.9)	(8.0)
척추, 몸통의 기능장애 및 흉부계 기형	886,920	405,591	174,310	105,566	76,356	36,305	88,792
	(11.6)	(16.4)	(14.5)	(12.7)	(8.3)	(9.4)	(4.9)
전맹과 시각장애	354,569	52,834	30,008	30,004	29,819	24,338	187,566
	(4.7)	(2.1)	(2.5)	(3.6)	(3.3)	(6.3)	(10.4)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319,351	85,494	50,046	44,020	40,033	20,163	79,595
	(4.2)	(3.4)	(4.2)	(5.3)	(4.4)	(5.2)	(4.4)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기타 유방장애	179,436	72,466	38,949	15,398	21,892	6,648	24,083
	(2.4)	(2.9)	(0.3)	(1.8)	(2.4)	(1.7)	(1.3)
내부기관 또는 기관시스템 기능 장애	1,899,752	617,774	314,182	197,090	256,266	98,169	416,271
	(24.9)	(24.9)	(26.1)	(23.6)	(28.0)	(25.4)	(23.2)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1,598,275	455,367	194,786	157,004	207,401	71,975	511,742
	(21.0)	(18.4)	(16.2)	(18.8)	(22.7)	(18.6)	(28.5)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357,870	446,057	203,005	145,501	166,539	69,727	327,041
	(17.8)	(18.0)	(16.9)	(17.4)	(18.2)	(18.0)	(18.1)

주: 1)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통계는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2) 각각의 비율은 전체 중증장애인 수를 모수로 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에서 "중증장애인통계", 연방건강보고 (https://www.gbe-bund.de/)

-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 현황으로는 '내부기관, 또는 기관시스템 기능장애'와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유형은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전 중증장애인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음
  - GdB50~90 사이에는 내부기관, 또는 기관시스템 기능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최중증에 해당하는 GdB100에서는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가 최중증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GdB50~70 사이에서는 '척추, 몸통의 기능장애 및 흉부계 기형' 형태가 전체 중증장애인 중 평균 비율(11.6%)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GdB80~100 사이에서는 평균비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전맹과 시각장애' 형태의 경우 GdB50~90에서는 다른 장애형태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GdB100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전맹과 시각장애'인이 최중증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표 16-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단위: 명, %)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계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7,548,965	7,615,5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선천적 장애	307,980	306,641	302,433	301,368	298,308	290,248
	(4.6)	(4.4)	(4.3)	(4.1)	(4.0)	(3.8)
산업재해	78,142	74,965	71,881	69,069	67,190	63,585
	(1.2)	(1.1)	(1.0)	(0.9)	(0.9)	(0.8)
교통사고	41,718	40,873	39,939	38,925	38,172	36,594
	(0.6)	(0.6)	(0.6)	(0.5)	(0.5)	(0.5)
가정 내 사고	8,289	8,007	7,623	7,332	7,205	6,870
	(0.1)	(0.1)	(0.1)	(0.1)	(0.1)	(0.1)
그 외의 사고	28,287	27,626	27,139	25,175	24,731	23,688
	(0.4)	(0.4)	(0.4)	(0.3)	(0.3)	(0.3)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상해	96,373	76,989	60,067	46,357	34,171	24,425
	(1.4)	(1.1)	(0.8)	(0.6)	(0.5)	(0.3)
일반적 질병	5,617,993	5,696,509	5,830,578	6,079,359	6,416,813	6,583,463
	(83.0)	(82.3)	(82.1)	(83.4)	(85.0)	(86.4)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	586,573	686,562	762,022	721,588	662,375	586,687
	(8.7)	(9.9)	(10.7)	(9.9)	(8.8)	(7.7)

자료: 통계청(2015), "중증장애인통계"

- 2015년도 중증장애인의 장애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병(예: 척추질환으로 인한 기능제한, 만성질환, 암 등을 통한 내장기관장애)이 중증장애의 가장 큰 원인(약 86%)으로 드러남
  - 이것은 장애원인의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 중증장애의 두 번째 큰 원인으로는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 및 선천적 장애(약 3.8%)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각 두 명 중 한 명씩 선천적 원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질병을 통한 장애발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산업재해'와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상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교육

(1) 특수교육

〈표 16-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단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5/16
장애 학생 비율	계	6.2	6.4	6.4	6.6	6.8	7.1
	특수학교 재학비율	5.0	4.9	4.8	4.8	4.7	4.4
	일반학교 재학비율	1.2	1.4	1.6	1.9	2.1	2.7
통합교육비율		20.1	22.3	25.0	28.2	31.4	37.7

주: 1) 독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전통적으로 특수학교(Sonderschule)', '장애인학교(Schulen für Behinderte)'라는 불리었으나 그 명칭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분리시켜 낙인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현재 '촉진학교(Förderschule)' 또는 '특수교육적 촉진학교(Schule mit sonderpädagogischem Förderschwerpunkt)'로 명칭이 변하고 있음
2) 특수교육적 지원은 장애등록여부와 학습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을 현재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아동이나 학생으로 부르는 경향이 나타남
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은 전체 장애학생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자료: 1) 독일에서의 통합-정보와 요소(2015)
2)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15/2016)

– 일반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비율은 7.1%로 2009/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0.9% 증가하였고 2013/2014년 대비 0.3%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장애학생 중 통합교육 비율에 있어서 2009년/10년도의 20.1%에서 2015/16년도에는 37.7%로 1.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통합교육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특수학교에서 재학하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2009/1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학교에서 재학하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일반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비율은 2009/10년 대비 225% 증가하여 통합교육이 일반교육 시스템에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6-2-2〉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수치

(단위: 명 %)

년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특수교육적 지원 총 수치		학교별			
			특수학교		일반학교(통합교육)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2011/12	494,744	100.0	355,139	75.0	139,605	25.0
2012/13	500,544	100.0	355,139	71.8	138,061	28.2
2013/14	508,386	100.0	334,994	68.6	173,392	31.4
2015/16	517,384	100.0	322,518	62.3	194,866	37.7

주: 1) 독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전통적으로 특수학교(Sonderschule)', '장애인학교(Schulen für Behinderte)'라는 불리었으나 그 명칭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분리시켜 낙인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현재 '촉진학교(Förderschule)' 또는 '특수교육적 촉진학교(Schule mit onderpädagogischem Förderschwerpunkt)'로 명칭이 변하고 있음
2) 특수교육적 지원은 장애등록여부와 학습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을 현재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아동이나 학생으로 부르는 경향이 나타남
3) 독일의 학기제는 가을학기(통상적으로 9월이나 10월)가 신학기로 시작하여 다음해 여름학기까지 두 학기로 구성됨
4)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의 총 수치 비율, 특수학교 비율, 일반학교(통합교육)의 비율은 전체 비장애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5) 모든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통합교육 비율은 전체 장애학생 대비 통합교육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세밀한 분석(독일통계청 2014년)
2)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05년부터 2014년)
3)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15/2016)

- 2015/16년에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수는 2011/2012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517,384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14년 대비 8,998명(1.8%) 늘어난 수치를 보임
  - 특수교육적 지원이 제공되는 장소별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로 계속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일반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보다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격차(50%에서 24.6%)는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10명당 3명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교육을 받으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2-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지원영역 변화 (2013/2014 대비 2015/2016년)

(단위: 명, %)

구분	2013/14년			2015/16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전체 수	508,386			517,384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학습	115,871	75,675	191,546	104,742	85,634	190,376
시각	4,817	3,132	7,949	4,604	3,400	8,004
청각	10,731	7,813	18,544	10,528	8,632	19,160
언어	31,805	23,306	55,111	30,560	25,538	56,098
신체 및 운동발달	24,552	10,899	35,451	24,181	12,497	36,678
지적 발달	74,713	7,192	81,905	75,297	9,065	84,362
정서 및 사회적 발달	38,685	42,990	81,675	38,006	47,638	85,644
복합적 지원	12,028	1,474	13,502	2,502	509	3,011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11,329	–	11,329	11,902	–	11,902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10,463	911	11,374	10,455	964	11,419
분류 어려움			–	9,741	989	10,730

주: 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란 개별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학습을 위한 지원(촉진)을 의미함
2) 특수교육적 지원은 크게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정신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분류 어려움)와 같은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촉진학교(예전의 특수학교)의 유형이 되기도 함
3)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중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은 2012년 이후로 집계가 이루어진 영역임
4)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중 '분류 어려움'은 2013/2014에는 복합적 지원에 포함되어 산정되었지만 2015/2016년에는 별도로 분리되어 산정됨

자료: 1)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05년부터 2014년)
2)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15/2016)

-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은 학생의 수는 2015/16년에 총 517,384명으로 2013/2014년에 비하여 8,998명의 학생이 증가함
  - 2015/16년의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중 학습영역이 36.8%(37.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추론 가능함
  - 다음으로 '정서 및 사회적 발달'과 '지적 발달' 영역이 각각 16.6%와 16.3%로 지원영역의 상위에 위치함
  -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서 더욱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통합교육 경향을 추론 할 수 있음
  - '학습' 영역과 '지적 발달' 영역에서는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교보다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음
- 2015/16년의 특수교육적 지원영역을 2013/14년과 비교해 본다면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3,969명)과 지적발달 영역(2,457명)이 다른 영역보다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는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임
  - 2013/14년 대비 2015/16년에 복합적 지원 영역에서의 지원의 수치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그동안 함께 포함되었던 질병 영역에서의 지원이 분리 산정된 결과임

〈표 16-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단위: 개소, 명)

구분		2011/12	2012/13	2013/14	2015/2016
학교 수		3,258	3,191	3,117	2,986
학급 수	소계	37,093	36,079	35,086	33,871
	학습영역 학급 수	12,923	11,989	11,075	10,100
	기타 영역 학급 수	24,170	24,090	24,011	23,771
학급당 학생 수		9.6	9.5	9.5	9.5
교사 수		64,569	63,814	62,752	61,111
교사 당 학생 수		5.5	5.4	5.3	5.4

주: 학습영역의 학생 수와 기타영역의 학생 수 통계에 있어서 튀링엔 주(Thüringen)의 경우 지원영역을 나누지 않고 통계를 내기에 그 수치는 제외함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 통계: 교육문화부협의체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2005년부터 2014년)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15/2016)

– 2015/16년 특수학교 현황 통계로 2,986 학교, 33,871 학급, 61,111명의 교사가 있음
- 특수학교 수는 2011/12년 3,258 개소 대비 2015/16년에는 272개소 감소한 2,986개소로 나타나 특수교육이 특수학교 체계에서 통합교육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학급 수 또한 2013/14년도(35,086 학급)에 비하여 2015/15년에 1,215여개가 줄어들었으며 2011/12년도(37,093 학급) 대비 2015/15년에 3,222여개가 감소함
- 학급 수의 감소 경향에는 특히 학습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1/12년도에 비하여 2015/16년도는 약 2,823 학급이 감소하여 학습영역에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특수학교의 교사 수 또한 특수학급의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14년 대비 1,641여명이 감소함
- 학급당 학생 수와 특수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1/12년 이후로 거의 변동 없이 각각 9.5명, 5.4명으로 나타남

3) 고용

(1)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률 – 연도별

(단위: 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고용현황	의무고용 사업장	139,555	142,847	145,708	149,810	152,538	156,306
	전체 근로자	20,513,512	21,145,088	21,439,149	21,756,517	26,338,012	26,808,329
	(법적)의무고용인원	990,386	1,021,042	1,034,840	1,049,550	1,071,737	1,089,978
	(실제)의무고용인원	931,059	964,457	995,717	1,016,065	1,042,889	1,057,978
고용률	전체 고용률	4.5	4.6	4.6	4.7	4.7	4.7
	민간부문 고용률	4.0	4.0	4.1	4.1	4.1	4.1
	공공부문 고용률	6.4	6.5	6.6	6.6	6.6	6.6

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관한 내용 중 '(실제)의무고용인원'은 장애정도(GdB) 30-100 사이의 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통합청연례보고 2014/2015(2015). 연방건강보고

– 독일의 연평균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2010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수와 법적의무고용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수는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15,089명이 증가하였지만 2015년 중증장애인 전체 고용률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5%에 약간 못 미치는 4.7%로 나타남
- 부문별로 본다면, 2015년의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은 4.1%로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반면에 공공부문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6.6%로 나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독일의 고용의무제

– 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에 의하면 연평균 매달 20인 이상 규모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사업주는 최소한 근로자 일자리의 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은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4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
-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은 민간부문과 같이 근로자의 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의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음

– 의무고용 예외규정으로서 소규모의 기업, 20–40인 사이의 규모를 가진 고용주는 1인의 중증장애인을, 40–60인 사이 규모의 고용주는 2인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함

더블카운트 제도, 트리플카운트 제도

– 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최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고용에서 최대 세 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표 16-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2015년 평균)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전체		1,030,322	569,382	460,940
연령별	15세 미만	*	*	*
	15-19세	2,150	1,379	771
	20-24세	11,474	6,610	4,865
	25-29세	23,038	12,277	10,761
	30-34세	33,334	17,615	15,719
	35-39세	45,789	23,940	21,849
	40-44세	70,450	37,384	33,067
	45-49세	142,859	75,699	67,160
	50-54세	221,237	119,704	101,533
	55-59세	268,895	151,436	117,459
	60세 이상	211,083	123,334	87,749
	분류 제외	*	*	*
고용대상	직업훈련생	7,099	4,159	2,940
	중증장애인	853,110	469,207	383,902
	동등그룹	167,532	93,438	74,094
	기타그룹	2,581	2,577	4
	분류제외	*	*	*
산업부문	제조업	257,000	-	-
	공공업무	212,000	-	-
	상업 수선 및 자동차 수리	79,000	-	-
	건강 및 보건	74,000	-	-
	돌봄 및 사회	67,000	-	-
	운수 및 유통업	60,000	-	-
	전문적인 기업 업무	54,000	-	-
	은행, 회계 및 보험	38,000	-	-
	기타 산업근무(시간제 포함)	35,000	-	-
	교육 및 교습업	35,000	-	-
	광산, 에너지, 수도	27,000	-	-
	기타	26,000	-	-
	정보 및 통신	22,000	-	-
	건축업	19,000	-	-
	시간아르바이트	13,000	-	-
	요식 및 숙박업	11,000	-	-
	농업 및 임업	2,000	-	-

주: 1) 근로자 현황과 업종별 현황 통계는 사회법전 제80조 제2항의 '고지절차'에 의한 연방노동에이전트의 통계로 20인 이상의 사업장 기준으로 2015년 평균 수치임
2) *는 정보보호와 수치비밀유지 이유로 1 또는 2의 수치와 정보들 중에서 그러한 수치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은 익명으로 표기됨
3) 고용대상 중 '동등그룹'이란 GdB 30-40의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고보호'와 '추가적인 휴가'와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짐
4) 산업 부문에 따른 중증장애인 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평균화된 수치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1,057,978명)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5) 제조업은 원재료와 중간상품을 가공하여 최종상품을 생산해 내는 분야로 원자재, 투자재 생산, 소비재 생산 기업, 그리고 식량 및 기호품 생산 기업이 여기에 포함됨
6) 공공업무는 국가기관 및 정부기관과 같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가 포함됨
7) 기타 산업근무(시간제 포함)는 대여업, 노동중개업, 여행업, 보안업, 건물관리 및 정원 또는 조경관리업 등이 포함됨
자료: 통합청연례보고 2015/2016, 통합청;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2016, 연방노동에이전트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현황은 2015년 평균 1,030,321명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생산가능연령인 20-59세의 장애인이 약 79%(817,076명)를 차지함
  - 연령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연령(50-59세)에서 가장 높은 47.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20.7%(213,309명)와 20.4%(211,083명)를 차지함
  - 이것은 청 · 중년층(20-39세)보다는 장년층(40-59세)에서 더 많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 근로 활동하는 비율이 2014년(199,996명)에 비해 1.1%(11,108명)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증장애인이 고령화 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고령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는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성별 고용현황으로는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더 많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근로활동 비율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 고용대상별로는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GdB50-100)이 약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적 중증장애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노동현장에서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경증장애인(GdB30-40)이 약 16%(167,532명)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그룹별 수치는 독일의 장애인 고용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부문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을 본다면 제조업, 공공업무, 상업 수선 및 자동차 수리, 건강 및 보건 업무 순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제조업과 공공업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이 총 약 46%(469,000명)로 장애인이 근로활동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것은 독일 민간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발한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공업무에서의 많은 중증장애인의 근로활동은 공공부문에서의 높은 장애인의무고용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표 16-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5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의무고용 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실제 고용률
			고용주	전체 근로자	(법적)의무 고용인원	(실제)의무 고용인원	미고용	
2015년	전체		156,306	26,808,329	1,089,978	1,057,978	265,735	4.7
	민간부문		144,362	21,066,971	842,253	731,083	250,062	4.1
	공공부문	소계	11,944	5,741,359	247,726	326,859	15,672	6.6
		연방 최고기관	38	121,796	5,671	8,691	41	7.7
		연방기관*	29	166,630	9,342	15,558	5	10.0
		주(지방) 최고기관	181	1,825,077	80,904	98,123	5,009	6.1
		기타 공공기관	11,598	3,474,298	143,231	191,055	10,552	6.6
		기타 공공기관*	98	153,557	8,578	13,468	65	9.4
2014년 대비 2015년 비교	전체		3,768(2.5)	470,227(1.8)	18,241(1.7)	15,088(1.4)	7,131(2.8)	–
	민간 부문		3,618(2.6)	550,882(2.7)	21,750(2.7)	20,293(2.9)	6,193(2.5)	–
	공공부문	소계	150(1.3)	△80,655(△1.3)	△3,509(△1.4)	△5,205(△1.6)	938(6.4)	–
		연방 최고기관	△2(△5.0)	256(0.2)	△22(△0.4)	134(1.6)	△9(△18.5)	–
		연방기관*	△6(△17.1)	△2,861(△1.7)	△126(△1.3)	△93(△0.6)	△6(△50.5)	–
		주(지방) 최고기관	△2(△1.1)	94,373(5.5)	4,414(5.8)	2,302(2.4)	1,478(41.8)	–
		기타 공공기관	196(1.7)	△169,494(△4.7)	△7,782(△5.2)	△7,649(△3.8)	△526(△4.7)	–
		기타 공공기관*	△36(△26.9)	△2,929(△1.9)	6(0.1)	102(0.8)	2(3.0)	–

주: 1)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항목들은 중증장애인(GdB 50~100)뿐 아니라 고용현장에서 중증증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GdB 30~40 사이의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2) 연방최고기관이란 연방대통령기관, 독일연방의회기관(하원에 해당)와 독일연방참의원(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 해당)기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상급법원, 연방재판소(연방검찰청 포함), 연방철도공사를 의미함(사회법전 제9권 제71조)

3) 주 최고기관은 주의회기관, 회계검사기관, 주 법적기관, 복합적 주민행정기관 등을 의미함(사회법전 제9권 제71조)

4) *표시가 있는 연방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사회법전 제 9권 제15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기관, 공공재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방기관 및 주정부기관 중 1999년에 이미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를 달성한 기관으로 계속 6%를 유지하는 기관을 의미함

5) 2014년 대비 2015년 비교 내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 유형별 인원수 차이와 증감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2017, 연방노동에이전트

– 2015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는 1,057,978명으로 독일 전체근로자(26,808,329명)중 법정의무고용율인 5%(1,089,978명)보다 265,735명이 부족한 4.7%에 이르고 있음

- 민간부문의 경우 법정의무고용 인원보다 약 250,062명이 부족한 약 73만 명을 고용한 반면에 공공부문의 경우 약 79,133명을 초과한 약 73만 명이 고용되어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민간부분의 의무고용율은 4.1%에 이루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율은 6.6%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대비 2015년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약 1.4%(15,000명 이상)가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2014년 대비 더 높은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2.9%)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독일 경제의 안정으로 인한 민간부문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13년 대비 2014년의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현황과 관련하여 주(지방)최고기관과 연방최고기관은 실제의무고용인원의 수가 각각 2.4%와 약 1.6% 증가한 결과를 보임. 특히 연방최고기관의 경우 의무고용기관의 수와 법정의무고용인원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무고용인원의 수는 증가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 반면 연방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인원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체 근로자 수의 감소로 인해 중증장애인 고용률 또한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공부문에서 2000년 이후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5%를 넘어 6%~9%대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방최고기관과 연방기관의 경우 각각 10%와 7.7%의 고용율을 보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3-4〉 의무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2015년)

(단위: 명)

구분		조정금 납부 고용주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 고용주	중증장애인 고용한 고용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조정금 납부의무 없는 고용주	조정금1	조정금2	조정금3
전체		156,306	116,179	40,127	62,413	61,702	17,469	14,722
민간부문		144,362	105,461	38,901	54,864	58,423	16,777	14,298
공공부문	소계	11,944	10,718	1,226	7,549	3,279	692	424
	연방 최고기관	38	31	7	21	13	4	–
	연방기관*	29	*	*	25	4	–	–
	주(자치) 최고기관	181	*	*	150	27	*	*
	기타 공공기관	11,598	10,411	1,197	7,290	3,208	683	417
	기타 공공기관*	98	81	17	63	27	*	*

주: 1) *는 정보보호와 수치비밀유지 이유로 1 또는 2의 수치와 정보들 중에서 그러한 수치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은 익명으로 표기됨
2)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의 조정금 금액은 실제 조정금 납부 액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2016, 연방노동에이전트

– 독일에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고용주 수는 전체 156,306명으로, 그 중 중증장애인을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약 74.3%이며,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는 25.7%에 해당함. 이러한 수치는 2013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음

– 조정금 납부현황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의 고용주의 약 39.9%(62,413명)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약 60.1%는 (실제)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조정금을 납부하고 있음

- 조정금 1은 실제고용률이 3~5%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115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65.7%에 해당함
- 조정금 2는 실제고용률이 2~3%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200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18.6%에 해당함
- 조정금 3은 실제고용률이 2%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290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15.7%에 해당함

조정금

–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부담금'을 의미하며, 조정금의 액수는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률 중 실제 고용률에 따라서 산정됨. 20인 미만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따라서 산정됨

– 조정금은 1, 2, 3 세 가지 등급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부담기초액'을 의미함

- 조정금 1: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3-5% 이하의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 만큼 한 명당 115유로(약 15만원)를 납부해야 함.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을 위한 부담완화기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연평균 40인 이하의 근로자 일자리가 있는 작은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못하거나 연평균 60인보다 적은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2명보다 적은 의무고용을 하고 있다면 115유로를 납부해야 함
- 조정금 2: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2-3%의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 만큼 한 명당 200유로(약 25만원)를 납부해야 함. 또한 연평균 40-60인 사이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에 속함
- 조정금 3: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2% 미만의 중증장애인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290유로(약 36만원)를 납부해야 함

– 2016년부터는 각 조정금이 약 8.7%~10.3% 증가하여 조정금1은 125유로(약 15.4만원), 조정금2는 220유로(약 28만원), 조정금3은 320유로(약 41.5만원)로 인상됨

(3) 고용 관련 지출

〈표 16-3-5〉 연방 통합청(Integrationsamt) 지출 현황(2014~2015년)

(단위: 백만유로, 건, 수)

구분		2014년		2015년	
		지출금액	건수/대상자	지출금액	건수/대상자
총합계		507.08	50,613	520.08	
고용주에 대한 급여	전체	187.45	50,613	198.59	55,112
	근로 및 훈련자리 조성	22.62	2,412	20.38	2,349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34.25	10,253	30.73	9,809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	129.49	37,659	146.69	42,678
	직업훈련 수당과 장려금	0.83	289	0.67	276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	0.26	–	0.12	–
통합프로젝트 지원		76.45	11,052	78.80	11,443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43.11	7,254	47.33	23,500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급여	전체	43.45	9,632	45.81	9,446
	공학적 근로지원	5.49	2,034	5.05	2,007
	근로현장으로의 이동지원	4.64	832	4.76	877
	경제적 자립 지원	1.30	151	1.33	155
	장애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0.71	159	0.74	168
	직업적 지식 및 기능의 유지 확장을 위한 방안참여 지원	3.68	1,742	4.05	1,844
	특별한 생활상황 지원	2.51	1,007	2.15	999
	근로보조인 비용지원	23.56	3,009	26.55	3,005
	지원고용	1.56	698	1.19	391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76.64	59,543	76.83	61,160
제도적 지원(기관 지원)		57.84	426	48.38	401
정보제공과 (직업)교육		7.35	44,190	6.83	37,157
기타 급여		14.78	–	17.51	–

주: 1)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은 사회법전 제9권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권리, 특히 노동생활 편입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주마다 조직화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기관임
2) 연방통합청의 주된 기능은 크게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으로 볼 수 있음. 연방통합청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의 고용조정금을 통하여 운영됨
3) 연방통합청의 지출항목 중 '통합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직업연수 및 직업중재 등이 속함
4) 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는 직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별, 경제적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로 이때 명백하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임
5) 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은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불능상황(병, 출산 등)을 극복하고 고용 당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두는 경영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6) '통합프로젝트'는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함
7) 제도적 지원(기관지원)'은 장애인작업장, 기숙시설작업장 등 장애인고용기관의 지원을 의미함

자료: 연방노동에이전트(2016). 독일의 노동시장-중증장애인의 노동 상황
통합청연례보고 2015/2016, 통합청

- 연방통합청의 2015년의 총 지출은 약 520백만유로로 2014년도에 비해 약 2.6%가 증가함
  - 이러한 수치는 2013년 지출(약 446백만유로) 대비 2014년 지출(약 507백만유로)의 약 13% 증가율에 비해 적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지만 연방통합청의 지출과 대상인원 모두 증가하여 장애인고용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중 '고용주에 대한 급여'가 가장 큰 부분(약 38%)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합프로젝트' 지원비용(약15%)과 '고용주 및 중증장애인의 통합전문가 및 상담전문가들의 운영비용'(약 14.7%)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고용주에 대한 급여와 관련해서는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약 70%)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조성을 위한 지출이 두 번째 순임
  - 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고용주에게는 새로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동기를 부여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고용상황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비장애인근로자와 같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급여로서 연방통합청의 전체 지출 중 약 8.8%를 차지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 급여 중 '근로보조인 지원'이 약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학지원'이 약 11%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대비 2015년의 통합청의 지출에 있어서 대부분의 항목들은 증가한 반면에 '제도적 지원(기관지원)'은 약 17%가 감소한 약 48백만유로를 지출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보호고용 대신에 일반고용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 가능함

(4)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표 16-3-6〉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자 수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율
2010년	3,238,421	175,254	5.4
2011년	2,975,823	180,315	6.1
2012년	2,896,985	176,040	6.1
2013년	2,950,250	178,631	6.1
2014년	2,898,388	181,110	6.2
2015년	2,794,664	179,809	6.4

주: 전체 실업자 수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매년 합계를 낸 평균화된 수치를 의미함
자료: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 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2014/2015

〈표 16-3-7〉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15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 현황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전체		2,794,664(100.0)	179,809(100.0	△2,300(△1.3)
성별	남성	1,517,211(54.3)	106,887(59.8)	△1,444(△1.3)
	여성	1,277,452(45.7)	71,922(40.2)	△857(△1.2)
연령	25세 미만	238,547(8.5)	5,778(3.2)	△166(△2.8)
	25-54세	1,620,418(70.9)	101,030(56.5)	△2,835(△2.7)
	55세 이상	935,699(20.5)	72,001(40.3)	701(1.0)
국적	독일	2,226,377(79.7)	158,741(88.8)	△2,730(△1.7)
	외국인	563,447(20.2)	19,915(11.1)	431(2.2)

주: 전체 실업률과 중증장애인 실업률은 연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의 분석리포트-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분석 2015, 연방노동에이전트

- 2015년에 179,809명의 중증장애인이 실업자로 등록하여 독일 전체실업자 중 약 6.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14년과 비교한다면 1301명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실업자 중 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2010년 이후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5년의 중증장애인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전체 실업자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남성의 실업율이 비장애인 남성의 실업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와 중증장애인 실업자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25-54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55세 이상의 연령에서의 실업률이 40.3%로 동일 연령의 비장애인 실업률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2007년까지 지속되었던 노령인구를 위한 특별조항(사회법전 제3권 제 428조에 따라서 실업수당을 받은 노령층은 조기퇴직 조건으로 인정하여 연금과 같은 급여를 쉽게 신청하고 이들은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의 폐지와 같은 법적인 변화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의 실업상황을 2014년 대비 비교한다면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1.3% 감소하고 있으며 성별과 연령대에 있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5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1%의 증가세를 보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표 16-3-8〉 중증장애인 실업 지속기간(2015년 평균)

(단위: %)

연령	구분 \ 기간	3개월 이하	3개월-1년 이하	1년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21.0	33.0	46.0
	비장애인	29.0	35.0	37.0
15세-24세	중증장애인	38.0	44.0	18.0
	비장애인	51.0	38.0	10.0
25세-55세	중증장애인	22.0	33.0	45.0
	비장애인	28.0	35.0	36.0
55세 이상	중증장애인	18.0	33.0	49.0
	비장애인	19.0	32.0	49.0

자료: 연방노동에이전트(2016). 독일의 노동시장-중증장애인의 노동 상황

- 2015년 중증장애인의 실업기간과 관련하여 실업 중증장애인의 약 46%가 1년 이상의 실업상태를 경험하였으며 다음으로 약 33%의 실업 중증장애인이 3~12개월, 21%는 3개월 이내의 실업기간을 보임
  - 비장애인의 실업기간 또한 1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37%)를 보이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비율(46%)에 비해 적은 수치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이 실업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오랜 실업기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실업기간을 본다면 중증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업기간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일년 이상의 실업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남
  - 다만 15-24세의 연령대에서는 비장애인의 실업기간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의 실업기간 또한 다른 연령대보다는 짧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15-24세의 청년기의 중증장애인은 직업훈련생 및 근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다른 연령대보다 노동시장에의 재편입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과, 둘째, 고령장애인의 경우 실업 후 다시 노동현장에 편입되는 것이 더욱 어려운 환경을 보여줌

4) 재정

(1)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표 16-4-1〉 재정과 참여를 위한 지출(2015년)

(단위: 백만유로, %)

담담기관에 따른 급여항목	2013	2014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의료보험	2840	2,961	4.2
시설관련 재활 전체	1,691	1,730	2.3
시설 재활 전체	360	383	6.3
부모를 위한 재활	18	14	△18.9
외래 재활 전체	113	116	2.5
재활을 위한 사고보험 분담금	59	54	△9.7
재활스포츠/기능훈련	189	215	13.7
기타 보충급여	91	101	11.4
사회소아과 병원 급여	189	205	8.9
(근로)부담능력시험 및 노동치료	0.7	0.5	△30.4
조기치료실에서의 급여	99	107	8.2
재활 보충급여	20	21	3.9
개인예산제	12	15	29.3
연금보험	5,841	6,031	3.2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	3,830	3,947	3.1
노동생활 참여를 의한 급여(LTA)	1,194	1,246	4.4
§ 31 SGB VI에 따른 기타 급여	482	487	1.1
사회보험 분담금	335	350	4.6
개인예산제	0.5	0.5	5.8
농업주를 위한 고령보장	15	13	△8.7
사고보험	3,997	4,152	3.9
외래치료 및 의치	1,348	1,402	4.0
병원 치료 및 가정 환자돌봄	1,079	1,117	3.6
부상지원금과 특히 지원	640	659	2.9
기타 치료비용	747	788	5.4
노동생활 참여를 의한 급여(LTA)	184	186	1.6
농업주 보험조합	332	349	5.1
개인예산제	1.0	1.3	34.8
노동 에이전트	2,234	2,266	1.4
LTA의 의무급여	2,113	2,141	1.3
LTA의 심사급여	113	115	1.3
개인예산제	8.0	9.9	24.0
통합청	447	507	13.5
노동생활의 수반지원	346	384	11.0
노동시장프로그램	25	43	71.3
기타급여:	75	80	6.1
개인예산제	0.5	0.3	△27.7
편입급여	15,575	16,358	5.0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	35	36	3.2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	33	33	△1.7
공인 장애인작업장(WfbM) 급여	4,037	4,241	5.1
참여를 위한 기타 급여:	11,471	12,048	5.0
SGB IX § 55에 따른 공동체 삶의 참여를 위한 급여	9,843	10,305	4.7
SGB XII § 54dp 따른 편입급여의 추가 급여	1,199	1,304	8.7
편입급여의 기타 급여	429	440	2.6
지출 전체	31,280	32,636	4.3

주: '(근로(부담)능력 시험 및 노동치료'는 의료적 치료 후 직업활동으로 재편입하기 위한 개별적이고 점진적인 의학적 조치로서 예를 들면 의사의 감독하에 최소한의 노동시간으로부터 근로부담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지원임

(출처: https://www.bgw-online.de/DE/Leistungen-Beitrag/Rehabilitation/Zurueck-ins-Berufsleben/Belastungserprobung/Belastungserprobung_node.html)

자료: 재활정보 2016/1 재활을 위한 연방노동공동체

– 장애인 재활급여의 총 지출은 32,636백만유로로 이는 2013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장애인재활급여 중 사회부조 성격을 가지는 편입급여 지출이 16,358백만유로로 총 지출액 중 거의 절반(약 50.1%)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당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6,031백만유로(약 18.5%), 사고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4,152백만유로(약 12.7%), 의료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2,961백만유로(약 9.1%)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재활담당기관의 증감의 변화는 통합청이 가장 많은 증가비율(13.5%)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업주 사업공동체기관이 5.1% 편입급여가 5.0%, 그리고 의료보험담당기관이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개별적인 장애인 재활급여를 본다면 편입급여 중 (사회)참여를 위한 추가급여가 12,048백만유로(총 재활급여지출액의 약 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작업장 지원이 4,241백만유로(약 13%),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3,947백만유로, 약 12.1%),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의무급여(2,141백만유로, 약 6.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대비 개별적인 장애인 재활급여 항목을 살펴본다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출항목으로는 통합청의 노동시장프로그램지원으로 무려 7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의료보험담당기관의 개인예산제와 노동에이전트의 개인예산제로 각각 29.3%, 24.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재활급여에 있어서 '노동참여'를 통한 재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예산제의 증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급여이용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감소율을 보인 지출항목으로는 우선 (근로)부담능력 및 치료가 30.4%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통합청의 개인예산제가 27.7%, 부모를 위한 재활지원이 18.9%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5) 복지

(1)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표 16-5-1〉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유형별, 연령별

(단위: 천유로,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출 총액		14,401,518	15,128,999	15,575,297	16,357,724	17,043,580
전체 수급자 수		788,298	820,944	834,494	860,489	883,413
유형	재가	354,533	377,252	390,047	409,753	429,146
	시설	509,333	528,828	533,306	540,735	549,381
연령	18세 이하	228,913	238,843	238,541	241,462	248,387
	18-39세	237,079	244,095	247,955	256,834	262,996
	40-64세	286,249	299,977	307,568	318,504	325,406
	65세 이상	36,057	38,057	40,430	43,689	46,624

주: 1) 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는 급여 실행 장소에 따라서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됨
2) 재가급여는 자신의 고유한 주거지 또는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시설 안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과는 구분됨. 재가급여 대상자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재활)병원에서 단기간 지내지만 평소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포함됨
3) 시설지원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종일생활 또는 시간제 생활)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외부지원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형태를 의미함. 이 중 시간제 생활시설은 주간 또는 야간병원, 장애인작업장, 주간생활시설, 야간생활시설, 그 밖의 일정시간만을 보내게 되는 기타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급여의 실행은 수급권자(장애인)가 그 시설 안에서 지원을 받을 때만 가능함
4)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에서 전체수급자 수은 편입급여 수급장소(재가, 시설)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요청할 수 있기에 한명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나온 수치임

자료: 연방건강보고(https://www.gbe-bund.de/)

–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는 독일의 사회부조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서 총 지출금액과 수급자가 2005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5년의 장애인 편입급여의 지출 총액은 전체 사회부조 총 지출금액(30,306,354천유로)의 약 56%에 해당하는 수치임
- 편입급여의 대상자 또한 2011년 이후 2014년도에 약 9.5만 명이 증가하여 약 88만 명의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4년에 비해 약 2.7%(22,924명)가 증가한 것임
-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급여가 549,381명, 재가급여 429,146명으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게 편입급여가 보다 많이 제공됨
-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권자의 평균 연령은 34세이며, 40-64세(약 37%) 사이에서 편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하였으며 18세-39세의 장애인이 29.7%, 18세 이하의 장애인이 28.1% 순으로 편입급여를 이용함

사회부조(Sozialhilfe)
– 사회부조는 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에게 기존의 복지시스템만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삶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제공되는 사회보장정책의 공적급여임
– 사회부조 급여체계는 '생계급여',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장애인편입급여', '의료급여', '돌봄부조', '특별한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 '다른 생활환경의 지원'으로 구분됨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장애인 편입급여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즉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참여에 있어 불리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사회청(Sozialamt)에서 제공하는 사회부조 급여임
- 18-64세 사이의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감소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제공받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면 보충급여로서 '장애인 편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 편입급여의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정해짐. 이때 장애인 편입급여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예산제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지급함
- 지금까지 사회부조로서 장애인에게 중요하게 제공되었던 장애인편입급여는 2020년부터는 고유한 급여로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혁 예정임

〈표 16-5-2〉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 – 성별, 연령별, 이용시설 유형별(2015년)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전체		883,413	100.0
성별	남성	523,379	59.0
	여성	360,379	41.0
연령	18세 이하	248,387	28.0
	18 – 64세	588,402	67.0
	65세 이상	46,624	5.0
이용시설	재가	429,146	49.0
	시설	549,381	51.0

주: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은 2015년 동안 편입급여를 받았던 모든 사람의 수치임
자료: 연방통계청(2016). 사회적급여 통계-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83,413명의 장애인에게 개별적인 편입급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4년도에 비해 2.7%의 지급대상자가 증가한 수치임
- 편입급여 수급 장애인 현황으로는 생산가능연령대(67%)의 남성(59%)이 주로 신청하고 있으며, 시설장애인(51%)이 더 많은 편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편입급여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의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사회부조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많은 급여지출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표 16-5-3〉 장애인 편입급여 급여내용 및 지출액(2015년)

(단위: 명, 천유로)

구분		지출액		
		시설 외	시설 내	합계
전체		3,078,281	13,965,300	17,043,580
의료재활		20,087	14,748	34,853
노동생활참여		15,435	10,650	26,085
장애인자립작업장		–	4,406,414	4,406,414
사회생활 참여	전체	2,425,622	8,287,084	10,712,706
	아동의 특수교육적 지원	398,364	764,593	1,162,957
	실제적 지식과 기능습득 지원	14,126	620,943	635,069
	주거지에서의 자립생활	1,844,674	6,668,935	8,513,608
적절한 학교교육지원		472,388	863,149	1,335,537
직업을 위한 학교 직업교육		6,804	4,639	11,443
기타 활동을 위한 직업훈련		683	217	900
기타 고용기관에서의 지원		–	18,984	18,984
의료적 급여의 보장과 노동생활 보장을 위한 후속적인 지원		8,998	16,200	25,198
기타 급여		128,263	343,215	471,478

주: 편입급여의 주된 지원은 크게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여',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 '시설작업장 노동 참여를 위한 급여', '사회 공동체 삶의 참여를 위한 급여', '학교, 직업훈련 그리고 노동현장'으로 다양하게 구성됨(사회법전 제9권 제55조-제56조). 이러한 전체적인 급여는 개인예산제(현물 대신에 현금을 주어 장애인의 자기결정 하에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의 형태로 지원되기도 함

자료: 연방건강보고 (https://www.gbe-bund.de/)

- 2015년도 장애인의 편입급여는 883,413명의 장애인에게 약 170억원 유로가 지출되었으며 1인당 평균 편입급여 액수는 19,292유로(약 2,5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2014년도에 비해 총지출은 6억 8천유로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편입급여는 283유로(약 36만원)가 증가한 액수임
  - 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지출목록 중 '사회생활참여' 지출액이 전체 지출액의 약 62.9%인 107억 유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주거지에서의 자립생활'의 지출이 약 79.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사회생활 참여에서 '자립생활'지원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함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 급여'는 편입급여 전체 지출금액의 약 25.6%(약 44억 유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학교교육을 위한 급여'는 약 7.8%인 약 13.5억 유로가 지출되고 있음
- 2015년 장애인 편입급여의 지출을 급여장소로 구분해 본다면 재가장애인(18.1%)보다 시설장애인(약81.9%)에게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음
  - 시설장애인의 편입급여 지출 항목 중 '주거지에서의 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작업장 급여' 지출이 가장 높아 재가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지원과 시설장애인의 노동생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1인당 편입급여 지출액과 관련하여 시설장애인은 25,420유로(약 3,261만원), 재가장애인은 7,173유로(약 920만원)로 시설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개별적인 편입급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 대비 시설장애인은 420유로(약53만원), 재가장애인은 283유로(약36만원) 증가한 액수임

6) 정신건강

(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표 16-6-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2015년)

(단위: 명)

구분		시작된 급여	끝난 급여	12월 31일 시점의 급여
합계		27,624	24,357	64,073
성별	남성	19,090	16,532	45,922
	여성	8,534	7,825	18,151
연령별	1세 이하	42	10	29
	1~2세	71	38	86
	3~5세	1,225	333	1,464
	6~8세	6,708	2,378	8,247
	9~11세	8,752	6,514	20,581
	12~14세	4,957	6,106	16,442
	15~17세	2,224	4,209	9,981
	18세 이상	2,645	4,769	7,243
장소별	외래/부분병동	21,940	18,629	51,044
	돌봄지원인	292	245	844
	생활시설	5,392	5,483	12,185

주: 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부조) 제35조에 근거한 공적부조임
2)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두가지 기준을 충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하고 있음, 즉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함
3)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제공함
-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좌, 치료 등을 지원
-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변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
-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인을 위한 지원
- 주야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시설의 지원

자료: 아동 및 청소년급여의 통계-사회법전 제8권 제35조에 따른 편입급여 2015 (2017) 통계청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부조) 제35조에 근거한 공적부조임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두가지 기준을 충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하고 있음, 즉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함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제공함
-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좌, 치료 등을 지원
-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변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
-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인을 위한 지원
- 주야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시설의 지원

(2)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수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병상 수(2015년)

(단위: 개)

구분			2014	2015
전체			1,980	1,956
일반병원			1,646	1,619
기타 병원	기타병원 전체		334	337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정신의학과 전체	273	274
		99병상 이하	120	119
		100~199병상	68	70
		200~499병상	77	77
		500 이상 병상	8	8
	주간 또는 야간 병동		61	63
국군병원			5	5
병상 수				
전체			500,680	499,351
일반병원			429,465	427,314
정신의학 관련 병원		정신의학 관련 전체	71,215	72,037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및 정신치료	6,065	6,148
		정신의학 및 정신치료	54,988	55,450
		(그 중 중독치료)	4,351	4,478
		정신치료적 의학/정신심체	10,162	10,439

주: 병원통계를 위한 병원형태는 일반적 병원과 기타 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병원은 진료과에 입원병동(입원병상)을 가진 병원이며 기타병원은 주로 정신의학관련 병원을 의미하며 그 외 국군병원도 포함함

자료: 병원기본통계 (2014), 연방통계청

- 독일 병원 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1,956개로 산정됨
- 전체병원 중 일반병원은 1,956개이고 기타병원은 337개로 그 중 정신의학적관련병원은 274개, 주간 또는 야간병동은 63개, 그리고 국군병원은 5개로 나타남
- 정신의학과 관련 병원만을 본다면 99 이하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120개(43.8%)이고 다음으로 200~499병상을 가진 병원은 77개(28.1%), 100~199개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70개(25%)로 드러남
- 이러한 결과를 2014년과 비교한다면 전제병원은 24개, 일반병원은 27개 줄어든 반면 기타병원은 3개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정신의학관련 병원은 1개가 증가함
- 2015년의 병상 수는 전체 499,351개이며 그 중 일반병원의 병상수는 427,314개(85.6%)이며 정신의학관련 병원은 72,037개(14.4%)를 차지하고 있음
- 정신의학 관련 병원의 전체 병상수 중 정신의학 및 정신치료 병상은 55,450(77.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치료적 의학/정신심체 병상은 10,439개(14.5%),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및 정신치료 병상은 6,148개(8.5%)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대비 2015년 결과를 본다면 전체 병상수는 1,329개(0.26%), 일반병원의 병상수는 2,151개(0.50%) 감소한 반면 정신의학과 관련(전체) 병상수는 822개(1.15%)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표 16-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15년)

(단위: 명)

구분	환자입원			환자퇴원						평균 치료 기간
	입원 병동 치료	그 중		입원병동으로부터 퇴원	그 중				사망	
		다른 병원으로부터 입원	동일병원의 일시입원으로부터 입원		다른병원으로 이송	예방 및 재활기관으로의 이송	돌봄기관로의 이송	동일 병원의 부분입원병동으로 이송		
병원 전체	19,223,581	669,933	8,698	18,827,415	751,668	378,716	384,565	18,065	428,152	7.3
일반 병원	18,597,850	603,986	6,496	18,203,806	712,247	369,891	366,,727	7,714	425,891	6.8
정신 의학과 전체	625,731	65,947	2,202	623,609	39,421	8,825	17,838	10,351	2,261	24.5
99병상 이하	60,798	2,983	249	60,841	2,390	1,329	324	929	53	29.6
100~199 병상	125,146	14,226	277	124,844	7,567	1,231	2,339	1,819	483	26.7
200~499 병상	363,569	37,713	1,558	362,288	22,911	4,831	10,389	6,865	1,205	23.0
500 이상 병상	76,038	11,025	118	75,636	6,553	1,434	4,786	738	520	23.7
주간 또는 야간병동	63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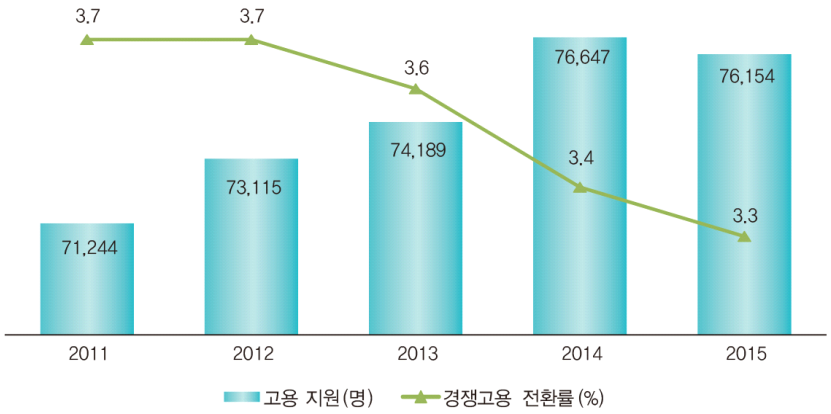
주: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형황에서는 전적으로 입원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만을 산출한 것으로 부분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제외한 수치임, 그리고 환자가 휴가를 갔다 돌아오는 것은 새로 입원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음

자료: 병원기본통계 (2014), 연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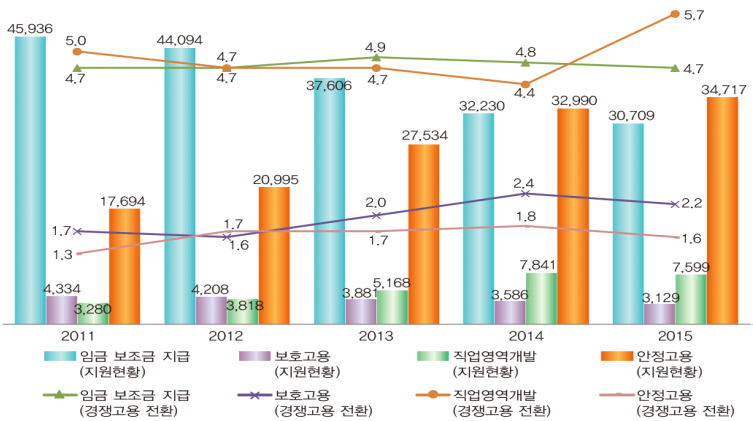
– 2015년 병원에 입원한 시민은 19,223,581명, 퇴원은 18,827,415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입원기간은 7.3일로 집계됨
  • 일반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은 18,597,850명이고 퇴원한 사람은 18,203,806명, 그리고 사망은 425,891명에 이루고 있으며 평균입원기간은 6.8일로 나타남
– 2015년에 정신의학 관련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25,731명이고 퇴원한 환자는 623,609, 사망은 2,261명, 그리고 입원기간은 24.5일로 나타남
  • 특히 정신의학관련 병원에 입원한 환자(625,731명) 중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송되어 입원한 환자는 65,947명이며 부분입원병동으로부터 이송되어 입원한 환자는 2,202명으로 드러남
  • 정신의학관련 병원에 퇴원한 환자(623,609명) 중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39,421명, 예방 및 재활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는 8,825명, 그리고 돌봄시설로 이송한 환자는 17,838명임
  • 정신의학 관련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입원기간은 24.5일로 일반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입원기간보다 3.6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남

4. 스웨덴

[그림 3-4-1] 장애인 고용 지원 및 경쟁고용 전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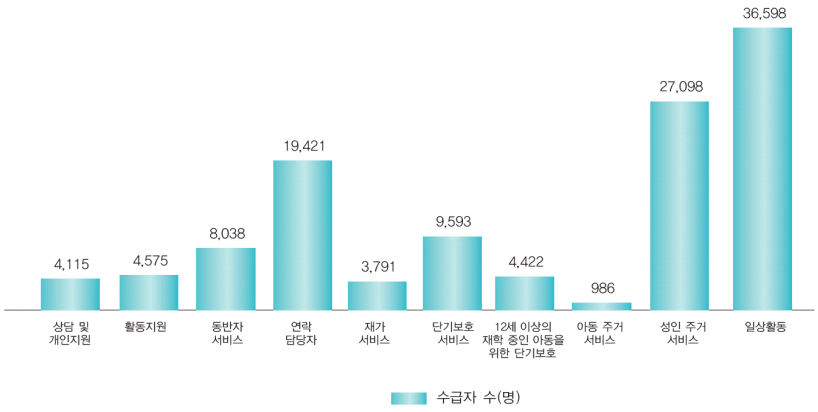
[그림 3-4-2] 경제적 상황 - 비장애인과 비교



- 장애인 고용 지원자 수는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증가하였으며, 2015년 76,15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경쟁고용 전환률은 2011년 3.7%에서 2015년 3.3%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경제적 상황을 장애유무별로 살펴보면, '현금 보유량 부족', '경제적 위기 경험', '낮은 소득'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4-3] LSS 서비스 지원 수급자 수 - 유형별



주: 2016년 10월 기준임

[그림 3-4-4] LSS 서비스 지원 수급자 수 - 연도별



- LSS 서비스 유형별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일상활동, 성인 주거서비스, 연락 담당자의 수급자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LSS 서비스 전체 수급자 수는 2007년 107,700명에서 2016년 118,600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함

1) 장애인구

(1) 장애 출현율

〈표 17-1-1〉 장애 출현율 및 노동능력 절감 비율 - 장애유형별

(단위: %)

장애유형	전체인구 대비 장애 출현율	노동능력 절감 비율
전체	16.0	69.0
이동능력 감소	5.6±0.4	91.0
천식, 알레르기 등	3.6±0.4	58.0
정신장애	2.7±0.3	89.0
난독증	2.0±0.3	65.0
청각장애	1.9±0.3	63.0
당뇨	1.7±0.3	47.0
소화기계 질환	1.3±0.2	69.0
신경정신학계 질환	1.2±0.2	75.0
심장혈관계 질환	1.1±0.2	82.0
건선	0.9±0.2	56.0
시각장애 및 상실	0.8±0.2	63.0
폐질환	0.3±0.1	-
말더듬, 언어 장애 등	0.3±0.1	-
간질	0.3±0.1	-
발달장애	0.1±0.1	-
난청 및 청각소실	0.1±0.1	-

주: 1) 2014년 기준임
2) 대상: 16-64세 인구
3) 폐질환/말더듬, 언어 장애 등/간질/발달장애/난청 및 청각소실의 노동능력 절감 비율은 보고되지 않음
자료: Susanna Larsson Tholen & Berth Danermark(2016). 「Funktionshinder och arbetsliv(장애와 노동생활)」
원자료: Statistics Sweden.(http://www.scb.se/en/)

- 2014년 기준으로 16세-64세 인구 중 16.0%에 장애가 있으며, 노동능력 절감 비율은 69.0%임
  - 장애유형별로는 이동능력 감소 5.6±0.4%, 천식, 알레르기 등 3.6±0.4%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동능력 감소와 정신장애, 심장혈관계 질환의 경우 노동능력 절감 비율이 각각 91.0%, 89.0%, 82.0%로 높게 나타남

스웨덴의 장애인 개념

- 장애에 관한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활동의 제약(activity limitation)" 혹은 "이동성 감소(reduced motion)", "활동능력의 감소(reduced activity)"라는 표현으로 장애라는 개념을 대신하고 있음

⑵ 활동능력 제한

〈표 17-1-2〉 활동능력 제한 정도 -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남	여	65 이상	16-64
EU 평균	24.3	29.4	54.5	19.0
스웨덴	18.1	23.6	31.8	17.4

주: 1) 2013년 기준임
2) 유럽연합의 평균과 비교하기 위하여 '활동능력 제한'이라는 개념을 자기보고 척도(3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및 분석함
자료: Susanna Larsson Tholen & Berth Danermark(2016). 「Funktionshinder och arbetsliv(장애와 노동생활)」
원자료: Statistics Sweden.(http://www.scb.se/en/),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 스웨덴의 연령별 활동능력 제한 정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31.8%로 16-64세 17.4% 보다 제한 정도가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23.6%로 남성 18.1%에 비해 높게 나타남
- EU 평균과 스웨덴의 활동능력 제한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EU에 비해 스웨덴의 활동능력 제한 정도가 낮게 나타남
  -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스웨덴의 활동능력 제한 정도가 31.8%로 EU 평균 54.5%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교육

(1) 교육비

〈표 17-2-1〉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현황 – 학교유형별

(단위: SEK)

구분	교육비
유치원	139,200
학생보육시설 : 방과 후 활동	35,500
초중등학교(의무교육)	100,100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초중등학교	487,800
고등학교	114,900
지적장애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422,500
지자체성인교육	46,600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강습	37,500

주: 2015년 기준임
자료: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https://www.skolverket.se)

〈표 17-2-1〉 학교 교육비 지원 현황 – 학교유형별

(단위: 10억 SEK)

구분	교육비
유치원	68.2
학생보육시설 : 방과 후 활동	16
초중등학교(의무교육)	97.1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초중등학교	4.2
고등학교	37.2
지적장애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2.9
지자체성인교육	4.4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강습	2.6

주: 2015년 기준임
자료: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https://www.skolverket.se)

– 국가가 학생 1명에게 지원해 주는 교육비 현황을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청소년을 위한 초중등학교', '지적장애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가 각각 487,800SEK, 422,500SEK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비 현황을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비의 규모는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스웨덴의 교육

– 스웨덴의 교육은 유치원(Pre-school), 초등학교 예비과정(Pre-school class), 초중등학교(Compulsory school), 학생보육시설(Skolbarnsomsorg[스콜반스옴소리]),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대학교(Universitet/Högskola)로 구분됨
– 장애인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이지만, 특수학교도 존재함
– 스웨덴의 의무교육은 초중등학교까지이며, 만 7세 아동부터 16세 청소년까지 무상교육을 받음.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음
– 고등학교 과정은 16-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실시함. 학교 형태는 일반 고등학교와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고등학교로 분류함
– 2015년 Arbetsförmedlingen(the Goverment emplyment service)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고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들 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남

3) 고용

(1) 고용현황

〈표 17-3-1〉 고용률 - 성별, 연령별, 활동능력 정도별

(단위: %, %p)

구분	성별		연령별					활동능력 정도별	
	남	여	16-24	25-34	35-44	45-54	55-64	중등	심각
EU 평균	52.1	45.4	26.2	57.7	61.6	57.9	33.2	56.2	28.6
스웨덴	64.8	63.4	32.3	64.2	74.6	74.1	52.4	70.7	50.8
EU평균 - 스웨덴	△12.7	△18.0	△6.1	△6.5	△13.0	△16.2	△19.2	△14.5	△22.2

주: 1) 2013년 기준임
2) 대상: 자기보고 척도에 의해 활동능력감소를 호소하는 16-64세 인구
자료: Susanna Larsson Tholen & Berth Danermark(2016). 「Funktionshinder och arbetsliv(장애와 노동생활)」
원자료: Statistics Sweden.(http://www.scb.se/en/),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표 17-3-2〉 실업률 - 성별, 연령별

(단위: %, %p)

구분	성별		연령별				
	남	여	16-24	25-34	35-44	45-54	55-64
EU 평균	20.1	17.9	28.2	20.9	17.6	17.7	19.9
스웨덴	12.5	13.0	25.2	19.1	11.3	8.3	12.5
EU평균 - 스웨덴	7.6	4.9	3.0	1.8	6.3	9.4	7.4

주: 1) 2013년 기준임
2) 대상: 자기보고 척도에 의해 활동능력감소를 호소하는 16-64세 인구
자료: Susanna Larsson Tholen & Berth Danermark(2016). 「Funktionshinder och arbetsliv(장애와 노동생활)」
원자료: Statistics Sweden.(http://www.scb.se/en/),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 스웨덴의 활동 제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성별 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 연령별로는 35-54세가 약 74%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EU 평균과 스웨덴의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성별의 고용률 격차를 살펴보면, EU 평균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6.7%p 낮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은 남녀 격차가 거의 없음
  -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EU평균 - 스웨덴'의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음. 이는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 지원이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함

- 스웨덴의 활동 제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성별 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 연령별로는 45-54세가 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EU 평균과 스웨덴의 실업율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성별의 실업률 격차를 살펴보면, EU 평균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2.2%p 높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 0.5%p임
  -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45-54세 실업률의 차이가 9.4%p로 가장 크게 나타남

(2) 고용 지원 현황

〈표 17-3-3〉 장애인 고용 지원 현황 - 연도별, 고용형태별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 보조금 지급	45,936	44,094	37,606	32,230	30,709
- 30세 이하 청년층	5,196	5,565	5,177	4,803	4,940
보호고용(공공부문 고용주)	4,334	4,208	3,881	3,586	3,129
- 30세 이하 청년층	365	385	374	396	320
직업영역개발	3,280	3,818	5,168	7,841	7,599
- 30세 이하 청년층	966	1,192	1,840	3,275	3,346
안정고용	17,694	20,995	27,534	32,990	34,717
- 30세 이하 청년층	2,071	2,487	3,293	3,948	4,061
합계	71,244	73,115	74,189	76,647	76,154
- 30세 이하 청년층 소계	8,597	9,629	10,684	12,421	12,668

주: 1) 대상: Arbetsförmedlingen에 등록된 16세~64세 장애인
2) 30세 이하 청년층 소계는 전체 합계에 합산하지 않음

자료: Arbetsförmedlingen(the Employment Service) Annual Report 2015.
(https://www.arbetsformedlingen.se/Om-oss/Statistik-och-publikationer/Rapporter/Arsredovisningar/2016-02-26-Arbetsformedlingens-arsredovisning-2015.html)

〈표 17-3-4〉 경쟁고용 전환 현황 - 연도별, 고용형태별

(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 보조금 지급	2,165(4.7)	2,094(4.7)	1,859(4.9)	1,562(4.8)	1,458(4.7)
- 30세 이하 청년층	321(6.2)	347(6.2)	324(6.3)	308(4.8)	310(6.3)
보호고용(공공부문 고용주)	74(1.7)	69(1.6)	77(2.0)	86(2.4)	69(2.2)
- 30세 이하 청년층	12(3.3)	11(2.9)	21(5.6)	21(5.3)	18(5.6)
직업영역개발	164(5.0)	178(4.7)	242(4.7)	344(4.4)	436(5.7)
- 30세 이하 청년층	49(5.1)	67(5.6)	70(3.8)	138(4.2)	204(6.1)
안정고용	223(1.3)	349(1.7)	479(1.7)	609(1.8)	562(1.6)
- 30세 이하 청년층	20(1.0)	55(2.2)	78(2.4)	87(2.2)	97(2.4)
합계	2,626(3.7)	2,960(3.7)	2,657(3.6)	2,601(3.4)	2,525(3.3)
- 30세 이하 청년층 소계	402(4.7)	480(5.0)	493(4.6)	554(4.5)	629(5.0)

주: 1) 대상: Arbetsförmedlingen에 등록된 16세~64세 장애인
2) 30세 이하 청년층 소계는 전체 합계에 합산하지 않음

자료: Arbetsförmedlingen(the Employment Service) Annual Report 2015.
(https://www.arbetsformedlingen.se/Om-oss/Statistik-och-publikationer/Rapporter/Arsredovisningar/2016-02-26-Arbetsformedlingens-arsredovisning-2015.html)

- 2015년 기준 총 76,154명이 국가로부터 고용 지원을 받았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안전고용', '임금 보조금 지급'이 각각 34,717명, 30,709명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임금 보조금 지급', '보호고용(공공부문 고용주)'의 지원이 점차 감소한 반면, '직업영역개발', '안정고용'은 점차 증가 추이를 보임. 이를 통해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고용 서비스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고용인(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30세 이하 청년층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고용 지원 추세와 비슷함을 알 수 있음

- 2015년 기준 총 2,525명이 경쟁고용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전체 수급자 중 3.3%에 해당됨. 고용형태별로 전환 비율은 '직업영역개발' 5.7%로 가장 높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경쟁고용 전환비율은 2011년 3.7%에서 2015년 3.3%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직업영역개발'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30세 이하 청년층을 살펴보면, 모든 고용형태에서 전체 경쟁고용 전환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17-3-5〉 기타 고용 지원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작업지원					
총	6,385	6,965	7,682	7,042	6,104
남	2,500	2,772	3,019	2,898	2,525
30세 이하 청년층	394	479	623	569	456
여	3,885	4,193	4,663	4,144	3,579
30세 이하 청년층	294	374	542	487	444
활동지원					
총	11,451	14,779	19,059	22,174	19,186
남	6,682	8,538	11,193	13,265	11,557
30세 이하 청년층	2,274	3,093	4,226	1,952	4,182
여	4,769	6,241	7,866	8,909	7,628
30세 이하 청년층	1,156	1,589	2,092	2,385	2,082
지원고용					
총	6,173	8,405	9,287	9,908	8,937
남	3,516	4,810	5,449	5,923	5,356
30세 이하 청년층	1,696	2,403	2,732	2,858	2,719
여	2,657	3,595	3,838	3,985	3,581
30세 이하 청년층	926	1,283	1,445	1,469	1,467
창업특별지원					
총	669	653	601	550	456
남	277	259	267	253	208
30세 이하 청년층	26	28	34	33	33
여	392	394	334	297	248
30세 이하 청년층	28	51	34	22	30

주: 대상: Arbetsförmedlingen에 등록된 16세~64세 장애인

자료: Arbetsförmedlingen(the Employment Service) Annual Report 2015.
(https://www.arbetsformedlingen.se/Om-oss/Statistik-och-publikationer/Rapporter/Arsredovisningar/2016-02-26-Arbetsformedlingens-arsredovisning-2015.html)

- 2015년 기준 고용지원 서비스 별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작업지원' 6,104명, '활동지원' 19,186명, '지원고용' 8,937명, '창업특별지원' 456명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활동지원과 지원고용 수급자 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감소함
  - 성별로 살펴보면, '작업지원', '창업특별지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반면, '활동지원', '지원고용'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급자 수가 더 많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복지

(1) 경제적 상황

〈표 17-4-1〉 경제적 상황 -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남	여	남 - 여
현금 보유량(SEK 15,000) 부족				
비장애인	14.0	11.0	16.0	△4.0
장애인	32.0	25.0	39.0	△14.0
경제적 위기 경험				
비장애인	12.0	12.0	12.0	0.0
장애인	26.0	22.0	32.0	△10.0
낮은 소득				
비장애인	13.0	13.0	12.0	1.0
장애인	25.0	24.0	26.0	△2.0

주: 1) 2014년 기준임
2) 대상: 16-64세 인구

자료: 1) The 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2015
2) The 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 (ANED). 2015

- 경제적 상황을 장애유무별로 살펴보면, '현금 보유량 부족', '경제적 위기 경험', '낮은 소득'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이는 장애 여성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할 확률이 비장애인 및 장애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줌

(2) LSS 지원 현황

〈표 17-4-2〉 LSS 서비스 지원 유형별 수급자 수 - 연령별

(단위: 명)

구분	0-6 세	7-12 세	13-22세	23-64세	65세 이상	합계
1. 상담 및 개인지원	111	340	936	2,573	155	4,115
2. 활동지원	190	402	709	2,559	715	4,575
3. 동반자서비스	7	325	2,902	3,904	900	8,038
4. 연락 담당자	5	150	3,707	13,664	1,895	19,421
5. 재가 서비스	652	1,820	1,074	202	43	3,791
6. 단기보호 서비스	365	2,555	5,458	1,180	35	9,593
7. 12세 이상의 재학 중인 아동을 위한 단기보호	-	24	4,391	7	-	4,422
8. 아동 주거 서비스	6	72	901	7	-	986
9. 성인 주거서비스	-	-	1,346	22,142	3,610	27,098
10. 일상활동	-	-	3,661	32,056	881	36,598
합계	1,336	5,688	25,085	78,294	8,234	118,637

주: 2016년 10월 기준

자료: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Act on Support and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에 근거하여 개입된 등록상황.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17.(http://www.socialstyrelsen.se/statistics)

- LSS 서비스 유형별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일상활동, 성인 주거서비스, 연락 담당자의 수급자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0-12세는 재가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의 수급자 수가 많으며, 13-22세의 경우 단기보호 서비스, 연락 담당자, 12세 이상의 재학 중의 수급자 수가 많음. 23세 이상부터는 연락 담당자와 성인 주거서비스 수급자 수가 많음

기능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이하 LSS)

- 스웨덴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가 있으나, 장애인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서비스도 있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능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임
- 이 법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장애인에게 원칙적으로 무료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줄 권리를 부여함
- LSS(1993:387)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심각하고 만성적인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완적으로 지원함
-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된 사람은 적용되는 지원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욕구 평가를 받음
  - 지적 장애가 있고 자폐증이나 자폐증과 유사한 상태의 사람들
  - 성인으로서 뇌 손상 후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지적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
  -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결과가 아닌 다른 중증 및 회복 불가능한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이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4-3〉 LSS 서비스 지원 유형별 수급자 수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상담 및 개인지원	8,200	6,700	5,800	5,100	4,700	4,500	4,300	4,300	4,400	4,100
2. 활동지원	3,300	3,500	3,400	3,600	3,800	3,900	3,900	4,100	4,300	4,600
3. 동반자서비스	9,700	9,700	9,600	9,300	9,200	8,700	8,500	8,400	8,300	8,000
4. 연락 담당자	18,000	18,400	19,200	19,500	19,500	19,600	19,400	19,500	19,500	19,400
5. 재가 서비스	3,400	3,300	3,400	3,400	3,400	3,400	3,500	3,600	3,800	3,800
6. 단기보호 서비스	10,100	10,200	10,000	10,000	9,900	9,700	9,600	9,600	9,700	9,600
7. 12세 이상의 재학 중인 아동을 위한 단기보호	5,100	5,200	5,100	5,200	5,000	4,800	4,500	4,500	4,400	4,400
8. 아동 주거 서비스	1,300	1,400	1,400	1,400	1,300	1,200	1,100	1,000	1,000	1,000
9. 성인 주거서비스	21,600	22,300	22,900	23,400	23,900	24,400	25,000	25,800	26,500	27,100
10. 일상활동	27,000	28,100	29,000	30,200	31,100	32,000	32,400	33,800	35,300	36,600
합계	107,700	108,800	109,800	111,100	111,800	112,200	112,200	114,600	117,200	118,600

자료: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Act on Support and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에 근거하여 개입된 등록상황.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17.(http://www.socialstyrelsen.se/statistics)

- LSS 서비스 유형별 수급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인 주거서비스와 일상활동의 수급자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상담 및 개인지원의 수급자 수는 매해 감소하여 2007년 대비 2016년 50% 수준임

기능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이하 LSS)

- LSS 9항에 따라 10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음
  - 상담 및 기타 개인 지원: 장애인과 관계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영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코디네이터가 상담 및 지원함. 이 지원은 지지적 특성을 가지며, 장애의 의학적 · 심리적 · 사회적 · 교육적 측면이 고려됨
  - 활동지원: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함(ex. 드레싱, 위생관리, 의사소통 등)
  - 동반자 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등 사회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 연락 담당자: 개인적인 지원과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공
  - 재가 서비스: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그 집에 가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 서비스: 짧은 기간 동안 장애인의 환경변화를 유도하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가정에 보내거나, 캠프 또는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서비스
  - 장애가 있는 12 세 이상의 학령기 어린이를 위한 단기보호: 12세 이상의 학령기 어린이를 위한 방과 전/후 보호 서비스
  - 가족주택 및 아동 청소년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있는 주택: 가족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다른 가정이나 그룹홈과 같은 주택에서 살 수 있음
  - 성인을 위한 그룹홈서비스
  - 일상 활동지원 서비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또는 뇌손상 후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하여 센터나 다른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3) 주택지원 및 각종 지원 현황

〈표 17-4-4〉 특별주택 수급자 수 - 연령별, 주택유형별

(단위: 명)

구분	주택유형							
	계	여러 개 침실	원룸 (부엌, 화장실, 샤워실 없음)	원룸 (화장실, 샤워실 있음, 부엌 없음)	1-1.5룸 (부엌, 화장실, 샤워실 있음)	2룸 (부엌, 화장실, 샤워실 있음)	3룸 이상 (부엌, 화장실, 샤워실 별도)	다른 주택 유형
65세 이상	88,886	53	978	16,283	59,130	9,003	394	3,045
0세-64세	4,424	4	38	493	2,592	1,004	66	227
합계	93,310	57	1,016	16,776	61,722	10,007	460	3,272

주: 2016년 10월 기준임

자료: Quantity statistics on care and care for elderly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Social Services Act,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socialstyrelsen.se/publikationer2017/2017-2-18)

〈표 17-4-5〉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가정도우미 서비스 지원 현황 - 연령별

(단위: 명, 시간)

구분	단기보호서비스		재가가정도우미 서비스	
	수급자 수	이용시간	수급자 수	이용시간
65세 이상	7,398	204,776	228,476	5,406,573
0세-64세	903	24,670	21,689	552,206
합계	8,301	229,446	250,165	5,958,779

주: 2016년 10월 기준임

자료: Quantity statistics on care and care for elderly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Social Services Act,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socialstyrelsen.se/publikationer2017/2017-2-18)

- 스웨덴의 전체 특별주택 수급자 수는 93,310명이며, 1-1.5룸(부엌, 화장실, 샤워실 있음)이 61,722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약 66%를 차지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88,886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약 95%를 차지함. 0-64세의 경우 1-1.5룸(부엌, 화장실, 샤워실 있음), 2룸(부엌, 화장실, 샤워실 있음)의 수급자가 많은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1-1.5룸(부엌, 화장실, 샤워실 있음), 원룸(화장실, 샤워실 있음, 부엌 없음)이 많음
- 단기보호서비스의 수급자 수는 8,301명이며, 이용시간은 229,446시간임
- 재가가정도우미 서비스의 수급자 수는 250,165명이며, 이용시간은 5,958,779시간임
  - 두 서비스 모두 65세 이상의 수급자 수가 전체 수급자 중 약 89-91%를 차지함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지원으로 주거를 개조할 수 있음. 주거 개조에는 문턱 제거, 지지대 레일 장착, 출입구 확장, 자동 도어 열림 장치 장착 또는 특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포함됨
- 특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그룹홈에 거주할 수 있으며, 그룹홈의 대안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아파트(the serviced flat)도 있음. 또한 기능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특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가족 가정(the family home) 서비스도 존재함
- 여행을 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스웨덴 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으로부터 자동차 수당을 제공 받을 수 있음

(4) 장애수당 및 아동보호 수당 지원 현황

〈표 17-4-6〉 장애 수당 지원 현황 - 연령별, 성별

(단위: 명, 1,000SEK)

구분	전체		남		여	
	수급자 수	총 지원액	수급자 수	총 지원액	수급자 수	총 지원액
-19	224	393	125	217	99	176
20-24	2,888	4,920	1,612	2,751	1,276	2,168
25-29	3,459	5,801	1,875	3,150	1,584	2,652
30-34	3,779	6,332	2,072	3,511	1,707	2,820
35-39	3,759	6,353	1,871	3,174	1,888	3,179
40-44	4,567	7,826	2,236	3,859	2,331	3,967
45-49	5,655	9,658	2,732	4,743	2,923	4,915
50-54	6,920	11,892	3,254	5,655	3,666	6,236
55-59	6,712	11,641	3,082	5,337	3,630	6,304
60-64	7,348	12,602	3,346	5,829	4,002	6,773
65-69	7,106	11,733	3,162	5,271	3,944	6,462
70-74	5,573	9,011	2,273	3,705	3,300	5,306
75-79	3,280	5,193	1,265	2,005	2,015	3,188
80-84	1,779	2,789	652	1,018	1,127	1,771
85-89	849	1,311	265	405	584	906
90-	379	552	109	158	270	395
합계	64,277	108,005	29,931	50,787	34,346	57,218

주: 2016년 12월 기준임
자료: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6.
http://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socialforsakring-m-m/stod-vid-sjukdom-och-handikapp/handikappersattning/)

- 스웨덴의 2016년 장애 수당 전체 수급자 수는 64,277명이며, 총 지원액은 108,005천SEK임
  - 연령별로는 40대부터 60대까지의 수급자 수가 많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급자수가 많음

〈표 17-4-7〉 아동보호 수당 지원 현황 - 연령별, 성별

(단위: 명, 1,000SEK)

구분	전체			남			여		
	수급자 수	추가보상 수급자 수	총 지원 액	수급자 수	추가보상 수급자 수	총 지원 액	수급자 수	추가보상 수급자 수	총 지원 액
-19	5	-	23	-	-	-	-	-	-
20-24	168	-	897	161	-	862	-	-	35
25-29	1,824	29	8,752	1,706	26	8,205	118	3	547
30-34	6,106	82	28,815	5,523	71	26,378	583	11	2,437
35-39	12,346	169	57,339	10,821	137	51,086	1,525	32	6,253
40-44	16,511	211	74,516	13,938	175	64,279	2,573	36	10,238
45-49	12,800	158	57,626	10,528	128	48,568	2,272	30	9,058
50-54	6,405	78	28,982	4,985	59	23,083	1,420	19	5,899
55-59	1,732	24	7,783	1,186	13	5,548	546	11	2,235
60-64	331	-	1,547	138	-	674	193	-	873
65-	104	-	479	-	-	65	-	-	414
합계	58,332	759	266,761	49,006	614	228,772	9,326	145	37,989

주: 1) 2016년 12월 기준임
2) 아동보호 수당 내에 장애아동보호 수당이 포함됨

자료: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6.
http://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socialforsakring-m-m/stod-vid-sjukdom-och-handikapp/handikappersattning/)

- 스웨덴의 2016년 아동보호 수당 전체 수급자 수는 58,332명이며, 추가보상 수급자 수는 759명, 총 지원액은 266,761천SEK임
  - 연령별로는 35-49세의 수급자 수가 많으며,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 수가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편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Ⅳ

지표설명

1. 국내통계 지표
2. 국외통계 지표

Ⅳ. 지표설명

1. 국내통계 지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함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나뉨 •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 가구조사, 장애판별조사 • 장애인 심층면접조사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출현율**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 3년 주기로 산출함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으로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이 있음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이상의 것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으로는 전화 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본인 물건 관리하기 등이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1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 ▪ 현금, 현물, 사적·공적 이전소득은 포함하며, 바우처 금액은 제외함 ▪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월평균 가구지출** ▪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 부채 및 이자 납부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 ▪ 저축, 사업용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제외 ▪ 연간 총 지출액만 아는 경우에는 연간 총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 조사항목으로는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기타 등이 있음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직장건강보험: 사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 의료급여 1종·2종: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 의료급여 1종·2종에 가입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일반수급가구: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의료·교육·자활·이행급여 특례 • 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급여. 의료급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1종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가 지원됨 • 교육: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출되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함 • 자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급함 • 이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창업에 성공하여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가구들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조사주기	– 1980년 이후 5년 마다 조사 – 1996년 12월 9일 지정통계로 지정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총 9차례 실시(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정보출처	– http://stat.mw.go.kr – http://www.kihasa.re.kr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16), 「2016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나뉨
조사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생활체육 참여형태** ▪ 생활체육(운동) :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의지에 의하여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 안에서 운동하는 자

구분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cst.go.kr – http://www.kosad.or.kr

○ 국립재활원(2016), 「장애와 건강 통계」 &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조사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건강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함 –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장애인 건강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건강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제시하고 보급하는게 주된 목적임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장애인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 사망현황'으로 나뉨
조사기관	– 국립재활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실시범위 및 대상: 1차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피부양자'이며, 2차 검진 대상자는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또는 만 70세, 만74세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판정자를 말함** ▪ 대상인원: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1차, 2차 대상자 수임 ▪ 수검인원: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1차, 2차 수검자 수임 ▪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인원/건강검진 대상인원*100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 실시범위 및 대상: 1차검진 대상자는 만40세, 만66세에 해당하는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 근로자, 직장피부양자이며, 2차검진 대상자는 1차검진 대상자 전체를 말함 ▪ 수검률: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인원/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인원*100 **– 암검진 수검률** ▪ **실시범위 및 대상** 검진종류 / 검진대상 위암 / · 만40세 이상인 자 대장암 / · 만50세 이상인 자 간암 /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유방암 / · 만40세 이상인 여성 자궁경부암 / · 만30세 이상인 여성 **– 구강검진 수검률** ▪ 수검률: 구강검진 수검인원/구강검진 대상인원*100 **–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진료실 인원: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 수 ▪ 입내원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를 통칭함 ▪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입내원일수/진료실인원 ▪ 1회당 진료비: 총진료비/입내원일수 **– 장애인 진료비 현황**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 **본인부담금: 심사 결정 된 총 진료비 중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rc.go.kr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개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조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은 크게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만 9~24세 청소년 자녀'로 나뉨 • 가구 구성표 : 가구 구성, 가구 특성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 기타 일반사항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 • 만 9~24세 청소년 자녀 : 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외국 성장 자녀, 경제 • 활동 상태
조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조사주기	– 3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gef.go.kr – http://www.kwdi.re.kr/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조사개요	–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 – 「주택법」 제5조 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현 주택의 거주 특성, 주택가격/임대료, 주택대출금/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거만족도, 주택 가치관,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 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향후 2년 내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가구현황 등이 있음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주택**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의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춤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단독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그 외 :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 오피스텔(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쪽방(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주거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주거용도로 사용되나 건축 재료나 구조측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기타(사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 점유형태 •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주거지원프로그램** ▪ 주거비 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가 포함됨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 대상임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20% 이내 우선 공급 대상임 • 장기전세주택 :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Shift가 대표적인 예임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현재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조사주기	– 1년 주기(일반조사는 짝수해, 특수조사는 홀수해에 실시) – 특수조사 대상으로는 노인가구·장년가구·시설거주 노인, 장애인가구, 임대주택가구, 저소득가구가 있음 • 노인가구·장년가구·시설거주 노인 : 2007년 실시 • 장애인가구 : 2009년, 2015년 실시 • 임대주택가구 : 2011년 실시 • 저소득가구 : 2013년 실시 • 신혼부부가구(패널) : 2014년, 2015년, 2016년
정보출처	– http://www.molit.go.kr – http://www.onnara.go.kr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조사개요	–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교육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진학률, 취업률** ▪ 진학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 •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 취업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 대비 취업한 학생비율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e.go.kr

○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조사개요	–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hw.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적극적 구직활동 :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 ▪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 **– 산업, 직업** ▪ 산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내용 ▪ 직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 **– 구직단념자** ▪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s://edi.kead.or.kr

○ 중소기업청·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장애인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조사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조사주기	– 2년 주기
정보출처	– www.smba.go.kr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6),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조사개요	–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등 가계의 재무건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함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 소비지출액** ▪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 기타 소비지출: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 비 소비지출액**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 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 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갭: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 균등화소득 :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에 소득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조정소득 ▪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가처분 소득: 경상소득 - 비 소비지출 **– 5분위 배율** ▪ 소득 5분위 소득/소득 1분위 소득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kostat.go.kr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설치율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편의시설 종류**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편의시설 설치율** ▪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조사주기	– 5년 주기 – 총 4차례 실시(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정보출처	– http://www.mohw.go.kr – http://www.koddi.or.kr

○ 국토교통부·교통안정공단(2016), 「20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조사개요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7대 도시 교통복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조사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저상버스, 특별 교통수단** ▪ 저상버스 :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특별 교통수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eak.mltm.go.kr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개요	– 시계열적 조사·분석을 통해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디지털정보화 수준 및 세부지수** ▪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종합)= 디지털정보접근지수(0.2)+디지털정보역량지수(0.4)+디지털정보활용지수(0.4) ▪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여부'로 측정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접근지수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컴퓨터 이용능력'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으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기타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외)

조사개요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등급심사** ▪ 2007년 4월 중증장애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급심사는 의사중심의 체계로 이뤄져 있어 이에 대한 심사 인원이 적은 편이었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재심사함으로 장애 등급심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음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란** ▪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	2.5%	2.7%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	2.5%	3%

– 장애인 고용 부담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장애인일자리사업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함.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산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 임.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장애인연금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세 이하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잦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이면 예외로 인정함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임 3급에 대항하는 장애 외 장애가 하나이상 추가되면 3급

중복장애(주된장애가 3급이며 그 외 부장애가 4-6급인 경우)임 그러나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는 제외함
-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2015년 기준은 단독가구 930천원 부부가구 1,488천원임

–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정해짐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임

–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에게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1,2,3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애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함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
- 만 6세이상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인 경우에 선정함,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때에 선정함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함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지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언어발달지원사업
-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자녀를 지원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자녀와 장애인 본인의 교육비를 지원함
- 초,중,고등학생인 1-3급인 장애인과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함
- 가구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제외하고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함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 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무료 이용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자,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대상: 등록장애인(정원의 30%이내) ▪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서비스 이용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일부 지역주민(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함)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진료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직업재활시설 종류: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함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 12조 제1항의 시설 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함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 ▪ 사회복귀시설로는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이 있음 ▪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 **– 응급알림 e서비스** ▪ 응급알림 e서비스는 위험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임
조사주기	–
정보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제도별 사업안내서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2. 국외통계 지표

1) OECD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개요	–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이해 도모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자기보고식에 의해 보고한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출현율** ▪ 각 국가별로 여러 방법을 통해 산출되고 있음. ▪ 우선적으로 자기평가를 기준으로 한 장애출현률을 의미 : OECD에서 설정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정의와 측정은 '전체 인구 중 적어도 6개월 동안 만성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의 비율'을 의미(EU-SILC) ▪ 한국의 장애인 출현률은 3년단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 **–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 낮은 학력수준(상등중등교육 미만의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저학력 수준(ISCED 0-2))을 가진 근로가능연령 인구(20~64세)의 비율임 ▪ OECD국가의 학력수준은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6)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장애인 고용률** ▪ 근로가능연령의 장애인(20-64세) 중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장애인의 비율 ▪ 시간제 근로란 일반적으로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를 말함. 단, 미국의 경우 지난 4주간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를 의미 **– 장애인 실업률**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수 대비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장애인의 비율 **– 빈곤위험률** ▪ 빈곤율 =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 ▪ OECD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율(=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 ▪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조사주기	– vol 1 :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2006) – vol 2 :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2007) – vol 3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2008) – 종합보고서 발간(2010) – 부정기
정보출처	– http://www.oecd.org/els/disability

○ OECE(2013),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조사개요	– OECD 34개국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 및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지표와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OECD 국가간 보건의료 현황파악이 가능하며, 향후 보건의료 발전가능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정신질환의 계획에 없던 재입원(조현병, 조울증)** ▪ '30일 이내 재입원을 계획에 없던 재입원'의 대리지표를 활용하고, 측정산식은 해당연도 조현병이나 조울증 관련 입원자수 대비 같은 질환으로 30일이내 같은 병원 재입원자수를 의미 ▪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에는 동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http://www.oecd.org/health/health-systems/health-at-a-glance

○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정신질환 관련 정책 및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질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별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인구 10만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 정신건강 지출** ▪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 ▪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조사주기	– 부정기
정보출처	– http://www.oecd.org/

○ OECD (2014), OECD Family Database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가족정책에 대한 주요 지표 및 관련 통계를 제공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18-29세 청년장애인 교육수준** ▪ 18-29세 비장애인 및 장애인 중 교육수준별(초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비율 ▪ 교육수준은 초졸이하(low: lower than upper secondary education), 고졸이하(medium: uppe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non-tertiary), 대학이상(high: university/tertiary education)으로 구분 **– 장애청년층(18-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 장애청년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로 한국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비교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3)의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활용함
조사주기	–
정보출처	–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or –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INDICATORS * 동 시기에만 장애인관련 항목을 비교하였음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건강 및 보건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www.oecd.org/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EX)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로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자발적 민간(Voluntary private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Public Social Expenditure)을 포함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출은 일반정부지출(중앙정부, 지방정부)과 사회보험급여, 공기업의 교통 및 할인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사회복자보건노동과 관련된 지출과 사회보험지출을 포함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현금 + 현물급여) 비율 ▪ 9개 항목 중 장애인복지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로서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현금급여	–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 산재보험(산재보험)(pensions: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상병급여(산재보험)(paid sick leave: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기타상병보조금(paid sick leave: 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 – 기타 현금급여
		현물급여	– 거주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 기타 현물급여
	–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비율 **–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비율		
조사주기	–		
정보출처	–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 프랑스

○ AGEFIPH, FIPHFP(2017), 「Les chiffres cles, Les personnes handicapees et l'emploi」

조사개요	– AGEFIPH, FIPHFP(2017),「장애인과 고용」 – 프랑스 장애인과 고용에 대한 주요 통계 총괄 – 장애인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으로의 경제활동 진입을 돕고 유지를 도모함
조사기관	–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기금(FIPHFP),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판별 기준	– 프랑스 구직센터에 장애인 근로자로 등록된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고용률** ▪ 근로 가능 장애인 의무 고용(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 고용의무자격(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구직률** ▪ 구직자 (les demandeurs d'emploi) : 프랑스 구직센터 (Pole emploi)에 등록된 대상을 일컫는 용어로 다음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뉘며 실업자를 지칭할 때의 구직자 용어 사용은 A,B,C 카테고리를 일컬음 A: 완전 실업 상태 B: 짧은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하) C: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상) D: 실습, 직업훈련,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 상태 E: 고용된 상태
조사주기	– 2016년을 조사점으로 2017년 9월 발간
정보출처	– http://www.agefiph.fr/

○ DARES(2015), 「Emploi et chomage des personnes handicapees en 2013」

조사개요	– DARES(2015),「2013년 장애인 고용과 실업」 – 장애인 고용과 실업 현황 파악 – INSEE 2013년 고용조사 바탕으로 DARES에서 분석
조사기관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장애판별 기준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 좁은 의미의 장애인 –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 • 넓은 의미의 장애인
조사주기	– 2013년 12월 31일 조사 시점으로 2015년 11월 발간
주요 지표 및 내용	**– 장애 정의** ▪ 2005년 2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114조에 의거함. 즉 '가족과 사회복지 법전(Le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의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 114-1조항에 의하면, "장애는 복합적 심리적, 인지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기능의 한 가지 이상의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혹은 심각한 손상, 건강상의 장애문제로 인하여 한 사람의 모든 활동의 한계나 사회생활에의 참여 제한이 있는 상태" 로 정의함 ▪ 넓은 의미의 장애인 :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구를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 ▪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 인구를 의미하며, 편의상 좁은 의미로 명명함.

	▪ 넓은 의미의 장애인 –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업수행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 **– 경제활동참여율** ▪ 활동인구와 비활동인구 정의 (국제노동기구(BIT) 기준) ▪ 경제활동인구: 고용되어있거나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고용상태와 실업상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만15세 미만, 학생, 퇴직자(연금수령자), 가정주부, 근로불가능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기타비경제활동인구" : 학생이나 퇴직자(연금수령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수령자) 상태는 아닌 경우. 예를 들면, 40세에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기타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 ▪ 경제활동참여: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에 의하면 경제활동참여는 사회활동참여 카테고리(자율성, 동거·혼인 경험, 교육 수료, 경제활동) 중 한 가지 유형에 속함
정보출처	–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

○ DARES(2016), 「L'Obligation d'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es en 2014」

조사개요	– DARES(2016),「2014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조사기관	–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장애판별 기준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 좁은 의미의 장애인 –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 • 넓은 의미의 장애인
조사주기	– 2013년 12월 31일 조사 시점으로 2015년 11월 발간
주요 지표 및 내용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고용의무자격(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고용의무 인구 수 계산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인구가 전일제인 경우 전체 포함하여 계산되고, 시간제인 경우 근로 주 당으로 할당하여 계산, 12월 31일 이전에 그만 둔 경우는 제외함. 계약직이나 외부 고용인, 임시직, 기간제, 등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노동 시간을 할당하여 계산. – 고용의무사항 이행 내용 :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임시(대리)직, 전일제, 시간제, 혹은 전문화수련 과정 형태) ▪ OETH 자격을 가진 장애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호된 영역의 인가된 기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 ▪ 하청업체, 납품업체, 맞춤 특수 기업(EA) 장애인 권리자율 위원회에 의해 노동시장으로 안내된 고용 근로가능 장애인구만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재가노동분배센터(CDTD) ▪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 담당하는 조직(ESAT). ▪ 직업훈련 인턴 장애인도 의무고용 인구 수의 2%로 제한하여 고용 가능 (실습 · 인턴 장애인은 빈번하지 않은 까닭에 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음). – 기여금(패널티)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패널티)을 민간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에, 공공사업체는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FIPHFP)에 납부해야함. ▪ 이 법은 2005년 장애인 개정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SMIC)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이를 수 있음.
정보출처	–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

○ DARES(2016), 「L'Obligation d'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es」

조사개요	– DARES(2016),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체 현황
조사기관	–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주요 지표 및 내용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고용의무자격(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고용의무 인구 수 계산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인구가 전일제인 경우 전체 포함하여 계산되고, 시간제인 경우 근로 주 당으로 할당하여 계산. 12월 31일 이전에 그만 둔 경우는 제외함. 계약직이나 외부 고용인, 임시직, 기간제, 등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노동 시간을 할당하여 계산. – 고용의무사항 이행 내용 :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임시(대리)직, 전일제, 시간제, 혹은 전문화수련 과정 형태) ▪ OETH 자격을 가진 장애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호된 영역의 인가된 기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 ▪ 하청업체, 납품업체, 맞춤 특수 기업(EA) 장애인 권리자율 위원회에 의해 노동시장으로 안내된 고용 근로가능 장애인구만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재가노동분배센터(CDTD) ▪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 담당하는 조직(ESAT). ▪ 직업훈련 인턴 장애인도 의무고용 인구 수의 2%로 제한하여 고용 가능 (실습 · 인턴 장애인은 빈번하지 않은 까닭에 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음). – 기여금(패널티)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패널티)을 민간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에, 공공사업체는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FIPHFP)에 납부해야함. ▪ 이 법은 2005년 장애인 개정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SMIC)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이를 수 있음.
조사주기	– 2013년 조사 시점으로 2016년 11월 발간
정보출처	–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

○ CNSA(2017), 「Les chiffres clés de l'aide à l'autonomie」

조사개요	– CNSA(2017), 「장애보상수당분석」 – 장애인의 민간 부문으로의 경제활동 진입을 돕고 유지를 도모함
조사기관	– 프랑스 노인과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 (CNSA)
장애판별 기준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 ▪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개인자율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가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를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
조사주기	– 2016년 조사 시점으로 2017년 발간
정보출처	– http://www.cnsa.fr/

○ DREES(2017), 「Depenses d'aide sociale departementale en 2015」

조사개요	– DREES(2017), 「2015년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 보고서」 – 복지부문 정부 지출 조사 목적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장애판별 기준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 ▪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개인자율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가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를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
조사주기	– 2015년 조사 시점으로 2017년 1월 발간
정보출처	– http://www.drees.sante.gouv.fr/

○ DREES(2017), 「Les etablissements de sante en 2015」

조사개요	– DREES(2017), 「2015년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 프랑스 정신질환 치료, 수용시설 조사 목적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프랑스 건강 관련 시설 연간 통계(SAE) – 프랑스 정신질환관련현황 보고서(RAPSY)
주요 지표 및 내용	**– 정신건강관련 시설** ▪ 프랑스 정신질환관련시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시간제 돌봄·치료시설과 통원치료센터로 나뉨. ▪ 종일제 돌봄, 치료시설 ① 입원치료시설 : 다루기 힘든 심각한 증상으로 격리되어 계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돌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용 ② 홈스테이치료시설 :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가정에 맡겨져 돌봄을 받는 경우로 중,장기적으로 다른 돌봄치료와 함께 이용 가능 ③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 심각한 증상으로의 입원치료 후 자치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재적응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 치료 연장의 경우 이용 ④ 거주시설 : 병원을 벗어난 주거돌봄치료시설. 제한된 기간 내, 계속적으로 돌봄치료사가 필요한 경우 이용. 사회적 재진입을 목적으로 함 ⑤ 재기입원시설(HAD) : 환자의 가정과 공동거주시설도 포함. 제한된 기간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재진단, 기간갱신 가능. 재가치료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 등)들의 협력하에 방문치료가 이루어짐. ⑥ 긴급시설센터 :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각한 증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내내 운영. 단기간 강화된 돌봄 제공 ▪ 시간제 돌봄, 치료시설 ① 주간병원 : 주간 특정한 시간에 개인별로 강화되어 복합적인 돌봄치료 제공 ② 야간병원 : 야간 돌봄치료. 주간 동안 어느 정도의 자치능력이 있지만 밤과 주말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③ 시간제 치료센터 : 주간병원 수준의 강화된 돌봄이 아닌, 사회적 재적응과 자치적인 삶을 재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약화된 돌봄제공 ④ 치료재활시설 : 사회 혹은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을 목적. 수공품, 예술품, 스포츠활동 등을 통한 작업요법 사용 ▪ 정신질환관련 미동의 입원 조치 정의 ① 자동(의무)입원(HO) : L'hospitalisation d'office, 정신적 질환이 사회질서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황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 (시설 종사 의사가 아닌) 의사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적용됨(도지사 명령) ② 제3자 요청 입원(HDT): L'hospitalisation a la demande d'un tiers, 최근 15일 이내의 두 명의 의사 진단서 (입원 필요성 동의 및 정황 설명)를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 일원 중 한 명 또는 관련인의 신청 (단, 시설 종사 중인 요양사는 제외)으로 적용됨. 환자 부모가 의사인 경우 해당 되지 않음 ③ 비동의 입원(HSC): L'hospitalisation sans consentement,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즉시 작성되는 진단서를 바탕으로 의사 진단서가 받아들여지면 시설 장은 도청, 지역 정신과 입원 위원회에 관련 서류들을 전송한다. 만일 환자가 입원을 유지할 시, 첫 입원 15일이 만료되기 3일 전에 "15일" 입원 진단서를 작성하며 이 진단서로 1개월의 입원이 유지될 수 있음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매 월 갱신신청을 해야함 ④ 일반 정신질환시설 전일 입원 입소 건수(H): Nombre d'entrees en hospitalisation complete en psychiatrie generale,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6세 이상의 성인 전일 입원 입소
조사주기	– 2015년 조사 시점으로 2017년 발간
정보출처	– http://www.drees.sante.gouv.fr/

○ DREES(2017), 「Les beneficiaires de minima sociaux en 2015」

조사개요	– DREES(2017), 「2015년 사회기초수당조사」 – 프랑스 사회기초수당 수혜자, 재정지출 조사 목적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장애판별 기준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장애인복지 지출** ▪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사회가족복지법 245조 3항에 의하면 1. 인적도움 2. 기술·전문적 도움 3. 집안개조·자동차개조·교통수단 보조수당 4. 특수·예외수당 5. 안내·보호견으로 총 5가지 유형의 장애보상수당으로 분류됨 ① 인적도움: 일상생활(화장실, 옷 입기, 식사하기, 이동 등)하는 데에 활동보조인(가족부양자도 가능)의 도움 ② 기술·전문적 도움: 필요한 장애용구 구입 및 렌트 ③ 집안·자동차 개조: 장애인이 생활 및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맞춤 개조, 교통수단 보조수당: 활동보조인과 동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또는 50km 이상 거리의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장애인 맞춤 교통수단 이용 ④ 특수·예외수당: PCH에 속한 유형(인적도움, 기술전문도움, 집안 및 자동차 개조, 교통수단, 안내보호견) 외의 장애 관련한 다른 필요한 수당(예: 의료용 침대 수리비용 등) ⑤ 안내·보호견: 자율성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과 본인이 안내견을 키울 수 있는 경우에 (미리 훈련된)안내·보호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자율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가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APA)를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 PCH를 수급받을 수 있음 ▪ 돌봄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 재가서비스 : 장애인 본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ACTP, PCH 및 APA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칭함 • 위탁서비스 : 위탁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의 가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가족수당 기여금 장수 연합(Urssaf)에 신고하여 허가된 (혈연관계가 아닌)위탁가정에서 행해지는 유료 돌봄서비스
조사주기	– 2015년 조사 시점으로 2017년 발간
정보출처	– http://www.drees.sante.gouv.fr/

○ INSEE(2017), 「Les niveaux de vie en 2015」

조사개요	– INSEE(2017), 「2015년 삶, 소득수준」 – 프랑스 전체 2015년도 소득 수준 조사 목적
조사기관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관련 지표 및 내용	**– 장애유형별 장애인구** ▪ 넓은 의미의 장애인: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 ▪ 좁은 의미의 장애인: 장애를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인구. 본래 행정 의미의 장애인으로 편의상 좁은 의미로 재명명함 **– 빈곤율** ▪ 빈곤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프랑스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이하(경제적 상황이나 기준에 따라)를 빈곤층으로 보고 있음. ▪ 2014년 현재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는 인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03유로, 무자녀 2인가구 1,205유로, 14세 미만의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1,687유로, 14세 이상의 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2,008유로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들을 지칭함(중위소득 50% 기준) **– 성인장애수당(AAH) 신청 건수 및 수급 인정 건수** ▪ 장애인의 최저 소득을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함 •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 20세 이상 공식적인 은퇴 연령까지(60– 62세), 소득기준(아래 도표 참고), 장애 정도가 최소 80%의 불능상태 혹은 50–79%의 불능상태로 장애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제한이 있는 자
조사주기	– 2015년 조사시점으로 2017년 9월 발간
정보출처	– http://www.drees.sante.gouv.fr/

○ DREES(2017), 「Le niveaux de v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조사개요	– DREES(2017), 「장애인구의 소득수준: 기능에 따른 차이」 – 프랑스 정신질환 치료, 수용시설 조사 목적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 프랑스 고용센터(POLE EMPLOI)
주요 지표 및 내용	**– 장애유형별 장애인구** ▪ 넓은 의미의 장애인: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 ▪ 좁은 의미의 장애인: 장애를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인구. 본래 행정 의미의 장애인으로 편의상 좁은 의미로 재명명함 **– 빈곤율** ▪ 빈곤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프랑스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이하(경제적 상황이나 기준에 따라)를 빈곤층으로 보고 있음. ▪ 2014년 현재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는 인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03유로, 무자녀 2인가구 1,205유로, 14세 미만의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1,687유로, 14세 이상의 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2,008유로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들을 지칭함(중위소득 50% 기준)
조사주기	– 2010년 조사 시점으로 2017년 3월 발간
정보출처	– http://www.drees.sante.gouv.fr/

3) 독일

○ Statistische Bundesamt(DESTATIS)

조사개요	– 독일의 정치, 행정, 경제 및 시민 등 객관적이고 질적인 가치가 있는 주요 통계적 정보들을 제공 및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50 이상(GdB50이상)으로 중증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장애인(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 ▪ 한 사람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된 자
조사주기	– 매2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 Die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GBE) des Bundes

조사개요	– 독일 인구의 건강상황과 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 제공 – 국민보건의 전제조건, 건강 상황, 건강행동과 건강의험요소, 건강문제와 질병, 보건 관리, 보건 및건강지출, 비용 그리고 국민보건재정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Statistische Bundesamt: DESTATIS) – 로베르트 코흐연구소(Robert Koch-Institu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Statistische Bundesamt(DESTATIS)의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과 동일 – 사회부조(Sozialhilfe) 중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 편입급여는 장애인만을 위한 공적급여로서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 편입급여는 2018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급여자격이 확대됨
조사주기	– 온라인정보시스템: 수시 업그레이드 – 출판물(중점보고서, 논문, 간행물 등): 정기(매달) 또는 비정기
정보출처	– https://www.gbe-bund.de/

○ 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

조사개요	– 독일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교육문화부협의체(Die Kultusministerkonferenz)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란 개별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학습을 위한 지원(촉진)을 의미 ▪ 특수교육적 지원은 크게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정신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분류 어려움)와 같은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촉진학교(예전의 특수학교)의 유형이 됨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https://www.kmk.org/dokumentation-und-statistik/statistik/schulstatistik/sonderpaedagogische-foerderung-an-schulen.html

○ Inklusion in Deutschland–Daten und Fakten

조사개요	– 독일 특수교육에 대한 통계적 정보와 설문조사
조사기관	– 브레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장애학생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의미 ▪ '특수학교재학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 ▪ '일반학교재학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지원받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 ▪ '통합비율'이란 전체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수 중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을 의미
조사주기	– 비정기 (특집본 2015년 10월)
정보출처	–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IB_Klemm-Studie_Inklusion_2015.pdf

○ 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 – eine differenzierte Analyse

조사개요	– 독일 특수교육의 최신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조사기관	– 독일 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현황 ▪ 특수교육적 지원장소 중 '특수학교(촉진학교)'란 특수교육적 지원욕구를 가진 학생(대표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로 비장애학생들과 분리되어 교육을 받는 학교시스템을 의미함 ▪ 특수교육적 지원장소 중 '일반학교'란 특수교육적 지원욕구를 가진 학생(대표적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 시스템을 의미함
조사주기	– 비정기(2014년 10월 특집본)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WirtschaftStatistik/BildungForschungKultur/SonderpaedagogischerFoerderbedarf_102014.pdf?__blob=publicationFile

○ BIH Jahesbericht–Hilfen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m Beruf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 – 중증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급여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 ▪ 여기에서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5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 ▪ 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심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고용에서 최대 세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조사주기	– 매년 발행 ▪ BIH Jahesbericht 2011/2012 (2012년 10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2/2013 (2013년 10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3/2014 (2014년 11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4/2015 (2015년 11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5/2016 (2016년 8월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integrationsaemter.de/jahresbericht/67c56/index.html

○ ZB Info-Behinderung und Beruf

조사개요	–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현황과 다양한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고용 관련 지출** ▪ 연방통합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 (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의미 ▪ 동 지표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급여, 통합프로젝트 지원,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제도적 지원, 기타급여를 포함함. ① 고용주에 대한 급여 : 근로 및 훈련자리 조성,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 직업훈련 수당과 장려금,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 ②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③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 공학적 근로지원, 근로현장으로의 이동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 적합한 주거확득 및 유지, 직업적 지식×기능의 유지 확장을 위한 방안참여 지원, 특별한 생활상황 지원, 근로보조인 비용지원, 지원고용 ④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⑤ 제도적 지원 ⑥ 기타 급여 ※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은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불능상황(병, 출산으로 인한)을 극복하고 고용 당사자들에게 근로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두는 경영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는 직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별, 경제적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로 이때 명백하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임 ※ '통합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직업연수 및 직업중재 등이 속함 ※ 연방통합청 ▪ 중증장애인의 권리, 특히 노동생활 편입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주마다 조직화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기관 주된 기능으로는 크게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 (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포함하며, 통합청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의 고용조정금을 통하여 운영됨
조사주기	– 매년 3~4회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integrationsaemter.de/publikationen/65c54/index.html

○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er Arbeitsmarkt in Deutschland-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조사개요	–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시장의 현황 관찰 – 다양한 근로그룹(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실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실업률** ▪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
조사주기	–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 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 –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2016년 5월 발행) –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2017년 5월 발행)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Arbeitsmarktberichte/Personengruppen/Personengruppen-Nav.html

○ Analyse des Arbeitsmarktes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노동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 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젠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 **– 중증장애인 실업** ▪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 – 노동정책 ▪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과 방안에 대한 분석
조사주기	– 매년 ▪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 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Statistikdaten/Detail/201512/analyse/analyse-arbeitsmarkt-schwerbehinderte/analyse-arbeitsmarkt-schwerbehinderte-d-0-201512-pdf.pdf

○ Bundesagentur fuer Arbeit (Statistik)–Arbeitsmarkt in Zahlen

조사개요	– 사회보장보험(의료보험, 연금보험, 돌봄보험, 실업보험) 현황 총괄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조정금 납부 수준** ▪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부담금'과 동일한 기능을 함 ※ 조정금 액수 ▪ 60인 이상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율 중 실제 고용율에 따라서 115유로에서 290유로까지 다양하게 산정 ▪ 60인 미만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따라서 산정
조사주기	– (일반적) 고용통계: 매달 – 사회보장의무대상자 현황: 매 3개월 – 고용지속기간과 노동급여 현황: 매년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Statistik-nach-Themen/Beschaeftigung/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Nav.html

○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조사개요	– 장애인 편입급여의 수급자와 지출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3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함. 즉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사회청(Sozialamt)에서제공하는 사회부조 급여임

	▪ 장애인 편입급여의 산정 • 편입급여의 지원금액은 중증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확정함 ▪ 편입급여제공형태 • 장애인 편입급여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예산제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함
조사주기	– 매 2년 –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2011 (2015년 5월 발행) –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2013 (2017년 5월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Sozialhilfe/Eingliederungshilfe_Behinderte.html

○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조사개요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편입급여 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편입급여**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청소년부조(사회법전 제8권)'의 틀 안에서 제공되는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예: 독자성과 사회적 능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임 •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급여 중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기관임 ▪ 편입급여제공형태 •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좌, 치료 등을 지원 •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변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 •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인을 위한 지원 • 주야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시설의 지원
조사주기	– 매년 – Erzieherische Hilfe,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 Eingliederungshilfen nach § 35a SGB VIII – 2015 (2017년 6월 발행) – Erzieherische Hilfe,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 Eingliederungshilfen nach § 35a SGB VIII – 2014 (2016년 4월 발행) – Erzieherische Hilfe,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 Eingliederungshilfen nach § 35a SGB VIII – 2013 (2015년 7월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KinderJugendhilfe/ErzieherischeHilfeEingliederungshilfe5225118157004.html

○ 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조사개요	– 독일의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실태, 의료인력과 비의료인력, 병상수치, 그리고 의료기관형태에 다른 의료기계 등에 관한 통계정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병원형태: 병원통계를 위한 병원형태는 일반적 병원과 기타 병원으로 구분함** ▪ 일반병원: 진료과에 입원병동(입원병상)을 가진 병원 ▪ 기타병원: • 전적으로 정신의학적 또는 정신요법적인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신경학적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 순수한 주간 또는 야간병원
조사주기	– 매년 – Gesundheit-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12) Statistisches Bundesamt – Gesundheit-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13) Statistisches Bundesamt

	– Gesundheit–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14) Statistisches Bundesamt – Gesundheit–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15) Statistisches Bundesamt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Gesundheit/Krankenhaeuser/GrunddatenKrankenhaeuser.html

○ Reha–Info

조사개요	– 독일의 재활관련 공적기관들의 연합체로서 장애인 재활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재활급여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조사기관	– 각 재활담당기관
장애판별 기준	– 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급여는 사회법전 제9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의료적 재활: 장애를 극복 또는 완화하고,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급여 ▪ 근로에 참여: 장애인의 생업능력을 유지, 증진, 회복시키고,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사회생활에 참여: 일상의 사회생활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에 의한 수발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생계지원 및 보충적 급여: 재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급여 – 급여기관으로는 법정의료보험담당기관(연방보건부 소속), 연방노동에이전트, 법정사고보험담당기관, 법정연금보험담당기관, 정쟁희생자원호와 전쟁희생자복지, 사회부조기관(연방노동사회부), 아동 · 청소년 조력담당기관(연방가족 · 고령자 · 여성 · 청년부 소속), 통합청(연방노동사회부 소속)으로 구분
조사주기	– 일년에 6회 온라인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ar-frankfurt.de/publikationen/reha-info/

4) 스웨덴

○ Funktionshinder och arbetsliv

조사개요	– 스웨덴의 장애인 노동 시장 상황 조사
조사기관	– 스웨덴 통계청(Statisitcs Sweden)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스웨덴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여 장애출현율, 노동능력 절감 비율, 고용률, 실업률을 파악** **– Eurostat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스웨덴과 EU 평균을 비교함**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Statistics Sweden.(http://www.scb.se/en/)** **–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017 장애통계연보

발 행 일 2017년 12월

발 행 처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412-0463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ISBN 978-89-6921-268-9(9333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합니다.